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急就篇』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梁 誠 義

2018年 2月

# 『急就篇』研究

指導教授 安在哲

梁誠義

이 論文을 中語中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2月

梁誠義의 中語中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 委員 長	金 琮 植
副委員 長	金 恩 希
委 員	金 利 璟
委 員	任 帥 眞
委 員	安 在 喆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2月



A Study on Ji Jiu Pian(急就篇)

Seong-Ewi Yang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2018.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Jong-Shik Kim

Eun-Hee Kim

Lee-Kyung Kim

Su-Jin Im

Thesis director, Jae-Cheol Ahn, Prof. of Literature

2018. 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目次

I. 서론 .....	1
1. 사유 『금취편』 .....	2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4
II. 소학과 소학서 .....	8
1. 소학 .....	8
2. 소학서 .....	9
1) 현대의 소학서 .....	26
2) 18세기 우리나라의 소학서 .....	32
III. 『금취편』의 전서 .....	44
1. 『금취편』 주해서 .....	44
1) 후한시기 .....	45
(1) 조수 『금취장』 .....	45
2) 남북조시기 .....	45
(1) 최호 『금취장』 .....	45
(2) 유방 『금취편속주음의증』 .....	47
(3) 두로씨 『금취장』 .....	47
3) 수당시기 .....	48
(1) 안지추 『금취장주』 .....	48
(2) 석지건 『금취장음의』 .....	48
4) 송원시기 .....	49
(1) 대표원 『금취편주석보유』 .....	49
5) 명청시기 .....	50
(1) 이본 『금취장주』 .....	50
(2) 만광태 『금취편보주』 .....	51
2. 『금취편』 범서본 .....	52
1) 후한시기 .....	52
(1) 최원 임서 『금취장』 .....	52
(2) 장지 장초 『금취장』 .....	53
2) 위진남북조시기 .....	55
(1) 중요 『금취편』 .....	55

(2) 삭정 장초 『급취편』 .....	56
(3) 위부인 『급취편』 .....	59
(4) 왕희지 장초 『급취편』 .....	60
(5) 소자운 『급취장』 .....	61
(6) 최호 초서 『급취장』 .....	61
3) 수당시기 .....	62
(1) 육간지 초서 『급취장』 .....	63
4) 송원시기 .....	64
(1) 송태종 초서 『급취장』 .....	64
(2) 조맹부 진서 『급취장』 .....	65
3. 송강 『급취장』 각비 .....	66

#### IV. 『급취편』의 체례 .....

1. 서문장 .....	68
1) 『급취편』 서문 .....	68
2) 안사고 주서 .....	72
3) 왕응린 후서 .....	75
4) 사고전서총목제요 『급취장』 .....	79
5) 서문장 분석 .....	82
2. 성명장 .....	107
1) 성씨의 기원 .....	107
2) 서성의 발생 .....	109
3) 名과 字의 명명방식 .....	118
4) 성명장 분석 요약 .....	126
3. 제물장 .....	128
1) 칠언구 운문 .....	129
2) 사물의 명칭과 육서 .....	130
3) 부류별 집록과 부수 .....	136
4) 제물장 분석 요약 .....	137
4. 오관장 .....	150
1) 오관의 기원 .....	150
2) 관제의 정립 .....	154
3) 성문법전 『주례』 .....	155
4) 오관장 분석 요약 .....	160
5. 가필장 .....	174
1) 가필장 분석 요약 .....	176

V. 結論 .....	180
參考文獻 .....	184
abstract .....	186
附錄 『急就篇』 原文 .....	188

## 【국문 요약】

한글은 소리를 표현해내는 글자로서 세계의 문자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글자이다. 그러나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이므로 소리만 표현될 뿐 그 소리에 담겨진 의미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 소리의 의미는 상당 부분 한자어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자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주장과 논쟁이 있어왔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천자문』보다는 『류합』을 가르치는 것이 글자를 익히는 데 효과적이라 하였는데 『류합』은 중국 『급취편』의 체례를 모방하여 지은 한자학습서이다.

본고는 『급취편』에 관한 논문이다. 『급취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학서이다. BC. 48년 西漢(서한) 元帝(원제)초기에 시중에 보급되어 宋代(송대)까지 일천여년 세월동안 소학서로 활용되었다. 『급취편』은 소학서로서 그 내용과 구성 면에서 독창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조와 시대를 넘어 소학의 교재로 사용된 기간이 여타 소학서와 비교되지 않는다. 또한 당세 학문의 태두와 서법대가들에 의해 필사되어 전해진 古典(고전)으로서 원문의 보존적 측면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급취편』이 왕조와 시대를 달리하면서 소학서로 그 생명력을 생생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자학습서로서의 교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급취편』의 교재적 특성은 실생활과 글자의 접촉이다. 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상용자를 학습자로 삼아 글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면서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지식을 아울러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급취편』은 성명장, 제물장, 오관장, 가필장으로 분장이 되었다. 성명장은 삼언구로 구성되었으며 인명이 나열되었다. 성명은 성과 이름이다. 성은 주어지는 것이나 이름은 짓는 것이다. 즉 이름은 짓는 문장이다. 따라서 성명장은 주어지는 성의 연원과 지어지는 이름이 문장으로 분석되었다. 제물장은 칠언구로 구성되었으며 사물이 나열되었다. 제물장은 사물의 명칭으로 생성되는 한자의 造字(조자)원리와 사용원리인 六書(육서)와 종류별 집록에 따른 部首(부수)의 발생이 분석되었다. 오관장은 칠언구와 사언구로 구성되었으며 관직이 나열되었다. 오관장은 관제의 기원과 관직의 정립 및 한대의 관제가 분석되었다. 가필장은 後漢末(후한말) 魏國(위국)의 확장된 영토가 나열되었으므로 그 지리적 역사가 고찰되었다.



## I. 서론

『급취편』은 西漢(서한)시기에 나온 소학서이다. 漢代(한대)에는 교육기관이 사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이 있었다. 사교육기관은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학당을 열어 학생들을 모집하여 글을 가르쳤다. 이른바 書館(서관) 또는 私塾(사숙)으로 불리는 소학교육기관이다. 공교육기관은 官學(관학)인 태학과 소학을 말한다. 한무제 건원 5년(BC. 136년)에 오경박사가 설치되었고 이 기관의 박사들에게 제자들을 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자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태학이라 하였다. 관립소학으로는 촉군 성도에 중국 최초의 관립학교가 설립되었다. 학교의 명칭은 문옹석실이 다. 경도에 태학이 관학으로 있었으나 소학이 관학으로 개설되기는 문옹석실이 최초의 관립소학이다. 문옹석실은 평민 자제들이 입학할 허용하여 이른바 국민교육기관이 되었다. 소학교육과정의 교재를 일컫는 소학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대예기·보부』 편이다. 사서에는 『한서·예문지』에서 소학서가 소개되었다. 「예문지」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 소학서가 나온 것은 주나라 선왕 때의 태사인 籀(주)가 지은 史籀(사주)15편이다. 이 사주편은 후한 광무제때에 6편이 망실되었다고 한다. 진나라 때에는 진의 승상 이사가 지은 창힐 1편 7장과 거부령 조고가 지은 원력 1편 6장과 태사령 호무경이 지은 박학 1편 7장이 있었다. 한나라가 들어서자 마을의 서관이나 사숙의 선생들이 창힐, 원력, 박학 삼편을 합쳐서 60자를 1장으로 하여 모두 55장으로 만들고 이를 倉頡篇(창힐편)이라 하였다. 한무제 때에 사마상여가 범장편을 지었는데 겹치는 글자가 없었다. 서한 원제 때에 황문령인 사유가 급취편을 지었다. 서한 성제 때에는 장작대장인 이장이 원상편을 지었다. 모두 창힐편 가운데서 상용자를 취한 것이었는데 범장편에서 뽑은 것도 적지 않았다. 원시 중년에 천하에 소학에 능통한 자들을 소집하였는데 백여 명이 모여들었다. 조정에서 각자에게 글자를 쓰도록 하였는바 양웅이 그들이 쓴 글자 가운데 유용한 글자를 골라내어 훈찬편을 지었고 이어서 창힐편 가운데 중복된 글자를 빼어내어 모두 89장으로 개편하였다. 반고가 다시 양웅을 이어 13장을 지어 붙여 놓아서 모두 102장이 되었는데 겹치는 글자가 없었으며 육예의 제서에 실린 글자들이 대략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 때까지 나온 소학서가 저자 10인에 45편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학서들이 모두 망실되고 오직 『급취편』 한 편만이 남아서 오늘날 기원전 상고시대의 교육

상을 보여주고 있다.

## 1. 사유 『급취편』

『급취편』은 원문이 보존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학서이다. 西漢(서한) 元帝(원제 재위 BC. 49년~BC. 33년)때에 黃門令(황문령) 史游(사유)의 저서이다. 『급취편』의 저자인 사유는 서한 원제 때에 황문령이었다. 사유에 관한 사서의 기록은 『한서·예문지』와 『후한서·환자열전』의 기록이 있다. 『한서·예문지』의 기록은 『급취편』의 저자로 서한 원제 때에 황문령이었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비교적 사유에 대한 사적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후한서·환자열전』의 기록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한나라가 세워졌으나 관제는 秦(진)나라의 관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중상시도 진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고 임용도 士人(사인)을 선발하였다. 사인으로 중상시가 된 자들은 모두 은고리가 달리고 담비꼬리가 왼쪽으로 장식된 관모를 쓰고 황제의 측근에서 시종하며 궁정의 업무를 살폈다. 서한 원제 때에 사유가 황문령이었는데 황제를 위하여 충절을 다하여 보필하였으므로 황제의 덕이 칭송되었다고 하였다. 中常侍(중상시)는 황제의 총신으로 황제의 측근에서 시종하는 관직이다. 中은 궁중을 이르는 것이며 常侍는 항상 황제를 모신다는 말이다. 관명이기는 하나 서한시기에는 명예직으로 列侯(열후)나 장군 또는 경대부등이 常侍의 직함을 받기도 하였다. 常侍는 항상 황제 곁에서 황제의 자문에 응하고 황명의 출납을 담당하였으므로 직위와 상관없이 황제의 총신으로 그 권세가 막강하였다. 「환자열전」에 기록된 서한시기의 상시들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당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황문령으로 중상시의 중임을 감당하면서 황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황제의 덕이 칭송되도록 한 인물로 사유가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게 된 근거로 사유의 『급취편』 저작을 들고 있다. 즉 사유가 황제의 덕이 칭송되도록 보필하였다는 것은 『급취편』을 저작하여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황제의 덕으로 칭송케 하였다는 것이다. 『급취편』은 『한서·예문

지』의 소학10가 45편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학서이다. 『급취편』은 BC. 48년에 시중에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시기는 『후한서·환자열전』의 기록에 사유 다음에 홍공과 석현이 기록되고 있는 점에서 추정되고 있는 시기이다. 홍공과 석현이 BC. 47년 12월에 소망지를 참소하여 소망지를 자결케 하였다. 소망지는 당시 급사중에서 승상으로 임명되려 할 때에 홍공과 석현의 모략으로 원제에게 소환 당하자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다. 이때는 홍공과 석현이 정권의 중심에 있었다. 『후한서·환자열전』에서 사유가 원제를 충절로 보필하여 원제의 덕이 칭송되었다는 기록은 홍공과 석현이 정권농단 이전의 기록이다. 사서의 기록은 사실의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다. BC. 49년에 원제가 등극하고 『급취편』이 市中에 보급됨으로 元帝의 덕이 칭송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급취편』이 저작된 것은 원제 등극이 전으로 보여 지고 원제가 등극할 때에는 시중에 소학서로 보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유가 원제 때에 황문령이라는 관직을 역임하였다는 것과 『급취편』이 저작된 시기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급취편』의 저작연대는 미상으로 보고 소학서로 시중에 보급된 시기를 BC. 49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황문령은 대궐의 출입문을 관장하는 직책이다. 대궐의 문이 황색이었기 때문에 대궐의 문을 黃門(황문)이라 하였고 그 황문을 관장하는 총책을 승(령)이라 하였다. 황문령은 질600석의 중간정도 직급이다. 한나라 때에는 관직의 등급을 秩(질) 몇 石(석)으로 표시하였다, 질은 곡물을 말하고 석은 곡물의 량을 말한다. 즉 관직의 봉급을 곡물로 주었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곡물의 량으로 직급을 구분하여 불렀던 것이다. 『급취편』의 서명은 『한서·예문지』의 ‘史游作急就篇(사유작급취편)’에서 유래되었다. 후일 『수서·경적지』에서 『급취장』이라 하였기 때문에 『급취장』이라는 서명도 함께 쓰이고 있다. 『급취편』은 두 가지 편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서인 사유의 『급취편』과 후대 加筆章(가필장)이 있는 加筆本(가필본)이 있다. 원서는 31장 1,953자로 이루어졌고, 가필본은 34장 2,144자로 이루어졌다. 현재 통행본은 가필본이다. 가필본은 안사고의 주석과 왕응린의 보주가 있는 주석본이다. 안사고의 주석은 32장에 주석되었고 나머지 33장과 34장은 왕응린의 주석만 있다. 본고의 저본인 『급취편』은 악록서사가 전통몽학총서발간방침에 따라 1989년에 간행한 인쇄본이다.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한글은 소리를 표현해내는 글자로서 세계의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글자이다. 한글은 만든 주체와 반포된 시기가 명확하고 특히 글자를 만들게 된 동기와 목적이 훈민정음서문에서 뚜렷이 선포된 글자이다.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 시각화 한 것이다. 즉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글자로 나타내어 눈으로 그 말소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소리만 표현될 뿐 그 소리에 담겨진 의미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글의 뜻은 한자가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0039호(2014. 12. 5.)의 조항을 보면 한글의 뜻을 한자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고시된 법령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 칙

제1항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위 한글맞춤법 조항을 이해하려면 사전의 도움 없이 이해가 불가능하다.

우선 제1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1장에서 1은 숫자 1인 것은 알겠는데 제와 장은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다.

제는 1. 2. 3. 4. 네 가지로 해설되었다.

1. 나의 낮춤말인 저의 특별히 변한 말. 조사 가 앞에서만 쓰임. 예문, 제가 하겠습니까.
2. 저기의 준말. 예문, 그놈이 제 있구먼.
3. 원망스럽거나 답답할 때 내는 소리. 예문, 제 하필이면 지금 온담.
4. 적에. 예문, 해 뜰을 제 왔다.

장에 대해서는 1. 2. 두 가지로 해설되었다.

1. 화투놀이에서 열 곳을 일컬음. 예문, 장땡.
2. 게딱지 속에 들어 있는 누르스름한 된장 같은 물질. 가을에 양이 많아지며 맛도 있음.

등이다. 국어사전에서 설명된 뜻으로 제1장의 뜻을 알려면 과연 그 뜻을 알 수 있겠는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제1장에서 제는 차례라는 말이고 장은 문장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에 어떻게 차례라는 뜻이 들어 있어서 차례임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제라는 소리에 차례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第(제)라는 한자에 ‘차례’라는 뜻이 들어 있어서 알게 되는 것이다. 第(제)를 읽으면 ‘제’라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이므로 ‘제’라고 적은 것뿐이다. 장 또한 마찬가지로 章(장)이라는 한자에 ‘문장’이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장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第1章으로 표기하면 된다. 이와 같이 한글맞춤법의 충칙을 정확히 표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야 한다.

#### 第1章 總 則

- 第1項 한글맞춤법은 標準語를 소리대로 적되, 語法에 맞도록 함을 原則으로 한다.
- 第2項 文章의 各 單語는 띄어 씀을 原則으로 한다.
- 第3項 外來語는 ‘外來語表記法’에 따라 적는다.

이상과 같이 표기된 것을 보면 중심 되는 말은 모두 한자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글맞춤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말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한자로 된 말이다. 이와 같이 한자는 우리말의 뜻을 담당하는 글자이다. 한자가 없으면 우리말은 뜻이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된다. 특히 학문분야에서는 한자어가 아니면 학문적 서술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한자가 없으면 학문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한자는 단순히 중국의 글자가 아니다. 한자는 곧 한국인의 말의 뜻을 알려주는 한국인의 글자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자교육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운 글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려 들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한자는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글자이므로 배우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가 배우기 쉽고 실용성

이 있어야 한다. 실용성이 없으면 배우는 학생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급취편』은 중국의 한자학습서이다. 西漢(서한)시대부터 宋代(송대)까지 일천년이 넘는 시대를 면면이 이어오면서 한자학습서로 각광받아온 소학서이다. 일천여년의 세월에 걸쳐 사용된 한자학습서라면 반드시 배우기 쉽고 실용성이 있는 특별한 교재적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급취편』의 특징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한자학습교재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急就篇(급취편)』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논문으로는 「史游《急就篇》析論及其在教育上的意義(사유 《급취편》 석론급기재교육상적의의)」<sup>1)</sup>의 소학교육의 측면적 연구논문과 「《識字、寫字教學基本字表》收字屬性分析(《식자、사자교학기본자표》수자속성분석)」<sup>2)</sup>의 문자적 측면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한국에서의 『급취편』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급취편』 연구는 홀로 전인 미답지를 가는 것과 같다. 본고에서 연구하려는 것은 『급취편』을 전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교재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취편』의 서지사항과 체례 및 내용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서지사항에서는 특히 『급취편』의 傳書(전서)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전서과정은 2000여년의 세월동안 시대별로 어떤 학자들의 손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탐색하여 『급취편』이 소학서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가를 가름하고 『급취편』이 소학서로서 응용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체례에 관하여는 『급취편』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체제로 구성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여타 소학서와 구별되는 특별한 체례가 무엇인가를 규명해 낼 것이다.

내용분석은 『급취편』의 각 장별로 그 내용이 분석될 것이다. 각장의 분석에는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내용 및 문자적 음운적 훈고적 통사적 분석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용분석에는 안사고의 주석과 왕응린의 보주를 참조하고자 한다. 주석자의 주석을 참조하는 것은 비단 『급취편』의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고문헌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주석서의 참조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고의 저본인 『급취편』은 악록서사가 전통몽학총서 발간방침에 따라 1989년에 간행한 안사고의 주석과 왕응린의 보주

1) 黃愷音, 「史游《急就篇》析論及其在教育上的意義」, 『市北教育學刊』, 2014.

2) 趙平, 「《識字、寫字教學基本字表》收字屬性分析」, 『聊城大學報』, 2014.

가 있는 인쇄본이다. 『금취편』 원문 및 인용되는 모든 한문원문의 국문번역은 필자의 번역이다. 일단 한문원문이 번역 되어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고의 연구는 한문원문 번역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 II. 소학과 소학서

소학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교육기관으로의 소학과 그 소학의 교재로서의 소학서이다. 청대까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소학과 소학의 교재로서의 소학서가 분류되어 일컬어지지 않고 소학으로 통칭되었다. 그러나 교육기관인 소학과 소학의 교재인 소학서는 분류하여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소학과 소학서를 분류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소학

고대중국의 교육기관으로 소학과 대학이 설치되었다. 有虞氏(유우씨)<sup>3)</sup>는 소학을 下庠(하상), 대학을 上庠(상상)이라 하였고, 夏后氏(하후씨)<sup>4)</sup>는 소학을 西序(서서), 대학을 東序(동서)라 하였고, 殷代(은대)<sup>5)</sup>에는 소학을 左學(좌학), 대학을 右學(우학)이라 하였다. 周代(주대)에는 塾(숙), 庠(상), 序(서), 學(학) 등 네 등급이 교육기관이 설치되었다. 塾(숙)은 閭(려)에 설치되었다. 閭는 25家(가)를 단위로 하는 취락 구역이다. 閭에는 마을 입구에 문을 세워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관리하였다. 그 문에 행랑채가 딸렸는데 그 행랑채의 명칭이 塾(숙)이다. 그 塾에서 마을 학생들이 글공부를 하였다. 庠(상)은 黨(당)에 설치되었다. 黨(당)은 500家(가)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다. 黨(당)의 중심지에 庠(상)을 세우고 塾(숙)에서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승급하여 庠(상)에서 공부하였다. 序(서)는 遂(수)에 설치되었다. 遂(수)는 12,000家(가)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다. 遂(수)의 중심지에 序(서)를 세우고 庠(상)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승급하여 序(서)에서 공부하였다. 學(학)은 王都(왕도) 및 國都(국도)에 설치되었다. 序(서)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승급하여 學(학)에서 수학하였다. 이것은 『예기·학기』에서 말하는 周代(주대)의 교육기관이다. 한편 漢代(한

3) 유우씨는 요순시대의 순임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설시기의 임금이다.

4) 하후씨는 순임금으로부터 제위를 선양 받은 하나라의 시조 우임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5)殷은 상탕이 세운 상나라를 이른다. 상나라의 국호는 전기를 상나라 후기를 은나라로 부르고 있다.



대)에 들어서서는 교육기관이 사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으로 분류 되었다. 사교육기관은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학당을 열어 학생들을 모집하여 글을 가르쳤다. 이른바 書館(서관) 또는 私塾(사숙)으로 불리는 소학교육기관이다. 공교육기관은 官學(관학)인 太學(태학)을 말한다. 한무제 建元(건원)<sup>6)</sup>5년(BC. 136년)에 五經博士(오경박사)가 설치되었고 이 기관의 박사들에게 제자들을 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자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태학이라 하였다. 한편 소학은 蜀郡(촉군) 成都(성도)에 중국 최초의 관립학교가 설립되었다. 학교의 명칭은 文翁石室(문옹석실)이다. 소학이 관학으로 개설되기는 문옹석실이 최초의 관립소학이다. 문옹석실은 평민 자제들이 입학할 허용하여 이른바 국민교육기관이 되었다. 문옹석실은 촉군태수인 文翁(문옹)이 세운 학교이다. 문옹(BC.156~BC.101)은 景帝後年(경제후년 BC.143~BC.141)에 촉군태수를 역임하였는데 부임 초에 문옹석실을 개설하여 촉군의 교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촉군의 인재들이 경도에서 齊魯(제노)<sup>7)</sup>의 선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이에 한무제가 조서를 내려 전 郡國(군국)에 관립소학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sup>8)</sup> 이후부터 소학이 관립학교가 되어 학동들이 교육기관이 되었다. 문옹석실은 현재 사천성 성도시에 최초 설립되었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고급중학교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촉군은 후한말엽 삼국시기에 유비가 세운 촉한의 땅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 2. 소학서

소학교육과정의 교재를 일컫는 소학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대대예기·보부』 편이다. 「보부」에

래자가 여색을 알 만한 나이가 되면 小學에 입학하여 수학하게 한다. 옛적에 8세가 되면 外舍로 나가 小藝와 小節의 교육을 받았다.<sup>9)</sup>

6) 建元(건원)은 서한의 제7대 황제 무제(재위, BC.140-BC.87)의 첫 번째 연호이다. 중국의 연호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건원은 BC.140-BC.135년까지 사용되었다.

7) 齊魯(제노)는 중국고대의 학문의 중심지였다. 제나라와 노나라를 이르는 것이다.

8) 班固 撰, 『漢書』: 「蜀地學於京師者比齊魯焉. 至武帝時乃令天下郡國皆立學校官.」 中華書局, 2007. 979쪽.

9) 王文錦 点校, 『大戴禮記解詁』: 「及太子少長, 知妃色, 則入於小學. 小者所學之宮也. 古者年八歲而出就外舍, 學小藝焉, 履小節焉.」 中華書局, 1983. 70쪽.

하였다. 外舍(외사)는 가정 밖의 교육장소로 조정의 남문 좌측에 학당이 있었다. 小藝(소예)는 六藝(육예)를 말하고 小節(소절)은 六儀(육의)를 말한다. 육예와 육의는 周代(주대)의 교육과목이다. 『주례·지관사도』의 「사씨」와 「보씨」에 周代(주대)의 교육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씨」는 三德(삼덕)과 三行(삼행)을 교육하였고, 「보씨」는 육예와 육의를 교육하였다.

「사씨」가 교육하였던 三德(삼덕)은 至德(지덕), 敏德(민덕), 孝德(효덕)으로 至德은 도덕의 근본을 교육하는 것이고, 敏德은 행실의 근본을 교육하는 것이며, 孝德은 인륜의 근본을 교육하는 것이다. 三行(삼행)은 孝行(효행), 友行(우행), 順行(순행)으로 실천덕목이다. 孝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友行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군자를 존경하여 본받는 것이며, 順行은 스승을 섬기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보씨」가 교육한 육예와 육의는 관료들이 실제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들이다. 육예는 五禮(오례), 六樂(육악), 五射(오사), 五馭(오어), 六書(육서), 九數(구수) 등 여섯 과목이다.

五禮는 제사의 의례인 吉禮(길례), 喪事(상사)의 의례인 凶禮(흉례), 출정과 개선의 의례인 軍禮(군례), 손님을 迎送(영송)하는 의례인 賓禮(빈례), 혼사와 연회의 의례인 嘉禮(가례)이다.

六樂은 黃帝(황제)의 음악인 雲門(운문), 요임금의 음악인 咸池(함지), 순임금의 음악인 大韶(대소), 우임금의 음악인 大夏(대하), 상탕왕의 음악인 大濩(대호), 주무왕의 음악인 大武(대무)이다.

五射는 弓矢(궁시)의 다섯 가지 사술이다. 활을 당겼을 때 화살촉이 활을 잡은 손가락까지 도달하게 하는 白矢(백시), 화살을 연이어 발사하는 參連(삼연), 과녁을 직접 겨냥하여 곧바르게 쏘는 剡注(섬주), 활을 공중을 향하여 들어 올려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과녁에 꽂히도록 하는 襄尺(양척), 과녁에 박힌 화살이 井字形(정자형)으로 방정하게 꽂히도록 하는 井儀(정의)이다.

五馭는 수레를 모는 다섯 가지 방법이다. 말방울소리가 말의 가는 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울리도록 하는 鳴和鸞(명화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몰아가는 逐水曲(축수곡), 임금의 앞을 지나는 것과 같이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가도록 모는 過君表(과군표), 춤을 출 때 몸을 돌리듯 유연하게 방향을 틀게 하는 舞交衢(무교구),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왼편으로 일정하게 몰아갈 수 있는 逐禽左(축금좌)이다.

六書는 象形(상형), 指事(지사), 形聲(형성), 會意(회의), 轉注(전주), 假借(가차)이

다. 六書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활용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상형, 지사, 형성, 회의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이고, 전주, 가차는 활용방식이다.

九數는 아홉 가지의 계산법으로 方田(방전), 粟米(속미), 差分(차분), 少廣(소광), 商功(상공), 均輸(균수), 方程(방정), 盈不足(영부족), 旁要(방요) 등이다. 方田은 논밭의 측량계산법이다, 粟米는 곡물교환 계산법이다. 差分은 비례배분 계산법이다. 少廣은 넓이와 부피의 계산법이다. 商功은 토목공정의 계산법이다. 均輸는 수륙교통의 운송 계산법이다. 方程은 방정식의 계산법이다. 盈不足은 남게 되는 수치와 부족하게 되는 수치의 계산법이다. 旁要是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 계산법이다.

六儀는 제사, 빈객, 朝廷(조정), 상사, 군려, 거마 등의 의식에서 갖추어야 할 격식에 맞는 몸가짐으로 제사에 참여할 때의 몸가짐인 祭祀之容(제사지용), 빈객을 접대할 때의 몸가짐인 賓客之容(빈객지용), 조정에서의 직분에 따른 몸가짐인 朝廷之容(조정지용), 상가에서의 몸가짐인 喪事之容(상사지용), 군대에서 계급에 맞는 몸가짐인 軍旅之容(군려지용),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탈 때의 몸가짐인 車馬之容(거마지용)이다. 이상은 『주례』의 소학서에 관한 기록이다.

史書(사서)에서는 『한서·예문지』에서 소학서를 다루고 있다. 「예문지」 육예략에 소학서의 저자 10가 45편의 편명과 이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다. 그 全文을 보면

사주 15편은 주나라 선왕의 태사가 지은 대전 15편이다. 建武(건무)<sup>10)</sup>때에 6편이 망실되었다. 팔체육기 8편이다. 팔체는 대전, 소전, 각부, 총서, 모인, 서서, 수서, 예서를 이른다. 창힐 1편 7장은 진나라 승상 이사가 지었다. 원력 1편 6장은 진나라 거부령 조고가 지었다. 박학 1편 7장은 진나라 태사령 호무경이 지었다. 범장 1편은 사마상여가 지었다. 급취 1편은 서한 원제 때의 황문령 사유가 지었다. 원상 1편은 서한 성제 때의 장작대장 이장이 지었다. 훈찬 1편, 별자 13편, 창힐전 1편, 양응창힐훈찬 1편은 양응이 지었다. 독립창힐훈찬 1편, 독립창힐고 1편은 독립이 지었다. 모두 10가 45편이다. 易(역)에 이르기를 ‘상고시대에는 結繩(결승)으로 처리하였는데 후세에 성인이 書契(서계)로 백관을 처리하고 만민을 살피게 되었다. 이는 夬卦(괘괘)에서 취한바 되었다. 夬(괘)는 왕의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은 왕이 조정에서 서계를 반포하였는바 그 쓰임이 매우 크게 되었다는 말이다. 옛적에 8세가 되면 소학에 들어갔다. 周官(주관)에 보씨가 國子(국자)의 양성을 담당하였는데 六書를 가르쳤다. 六書란 상형, 상사, 상의, 상성, 전주, 가차로 글자를 만드는 근본이다. 한나라가 들어서고 소학이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에 이르기를 ‘태사가 학동들을 시험하여 9000자 이상을 외우고 쓸 수 있으면 史를 삼고 史가 된 자들에게 六體(육체)를

10) 建武(건무)는 후한 초대황제 광무제의 연호로 AD.25년부터 AD.56년까지 32년간 사용되었다.

시험하여 최우수자는 상서어사, 사서령사를 삼는다. 吏民(리민)의 上書(상서)할 때에 글자가 바르지 않으면 즉시 탄핵한다.’ 하였다. 六體란 古文(고문), 奇字(기자), 篆書(전서), 隸書(예서), 繆篆(무전), 蟲書(충서)를 말하는 것이다. 모두 古今(고금)의 문자로 印章(인장)이나 幡信(번신)에 쓰였기 때문에 이를 통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옛 제도에 글은 반드시 同文(동문)<sup>11)</sup>을 쓰도록 하였기 때문에 同文(동문)을 모르게 되면 그 글자가 들어갈 난은 비워두고 여러 老學(노학)들에게 문의하였으나 禮樂(예악)이 쇠퇴한 세상이 되자 옳고 그름을 바로잡을 老學들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글자를 써대었다. 그러므로 孔子(공자)가 이르기를 ‘내가 오히려 史官(사관)의 闕文(궤문)은 보았으나 지금은 궤문된 것이 없도다!’ 하였다. 대저 문자의 사용이 바르지 못한 세대를 상심한 것이다. 史籀篇(사주편)이란 주나라 때에 사관이 학동들을 가르치던 글이다. 孔子(공자)의 집 벽속에서 나온 古文(고문)과는 書體(서체)가 달랐다. 창힐 7장은 진나라 승상 이사가 지은 것이다. 원력 6장은 진나라 거부령 조고가 지은 것이다. 박학 7장은 진나라 태사령 호무경이 지은 것이다. 문자가 史籀篇에서 취한 것이 많았는데 篆書(전서)의 書體(서체)가 상당히 달랐다. 이른바 秦篆(진전)이라 하는 것이다. 이즈음에 隸書(예서)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官獄(관옥)의 업무가 폭증하였으므로 간단하고 쓰기 쉬운 문자가 요구되었고 徒隸(도예)들이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나라가 들어서자 마을의 글선생들이 창힐, 원력, 박학 3편을 합쳐서 60자를 1장으로 하여 모두 55장으로 만들고 이를 蒼頡篇(창힐편)이라 하였다. 한무제때에 사마상여가 범장편을 지었는데 겹치는 글자가 없었다. 한원제때에 황문령인 사유가 급취편을 지었다. 한성제때에는 장작대장인 이장이 원상편을 지었다. 모두 창힐편 가운데서 상용자를 취한 것이었는데 범장편에서 뽑은 것도 적지 않았다. 元始(원시)<sup>12)</sup>연간에 천하에 소학에 능통한 자들을 소집하였는데 백여 명이 모여들었다. 조정에서 각자에게 글자를 쓰도록 하였는바 양웅이 그들이 쓴 글자 가운데 유용한 글자를 골라내어 訓纂篇(훈찬편)을 지었고 이어서 창힐편 가운데 중복자를 빼어내어 모두 89장으로 개편하였다. 반고가 다시 양웅을 이어 13장을 지어 붙여 놓아서 모두 102장이 되었는데 겹치는 글자가 없었으며 육예의 체서에 실린 글자들이 대략 갖추어지게 되었다. 창힐편에 古字(고자)가 많았는데 마을의 글 선생들은 古字의 讀音(독음)을 잊어버렸다. 한선제때에 제나라 사람이 古字에 능통하여 바르게 읽었으므로 그를 불러 장창에게 전수하도록 하였고 장창은 외손자인 두림에게 전수하여 두림이 蒼頡訓(창힐훈)과 蒼頡故(창힐고)를 지었으므로 함께 열거되었다.<sup>13)</sup>

11) 同文(동문)은 그 문장에 알맞은 한자를 말한다. 즉 한문문장을 작성할 때에 문법에 맞는 정확한 한자를 써야한다는 말이다.

12) 元始(원시)는 서한 제13대 황제인 평제의 연호로 AD. 1년부터 AD. 5년까지 사용되었다.

13) 班固 撰, 『漢書』: 「史籀十五篇,周宣王太史作大篆十五篇,建武時亡六篇矣. 八體六技. 蒼頡一篇上七章,秦丞相李斯作,爰歷六章,車府令趙高作,博學七章,太史令胡毋敬作. 凡將一篇,司馬相如作. 急就一篇,元帝時黃門令史游作. 元尚一篇,成帝時將作大匠李長作. 訓纂一篇,揚雄作. 別字十三篇. 蒼頡傳一篇. 揚雄蒼頡訓纂一篇. 杜林蒼頡訓纂一篇. 杜林蒼頡故一篇. 凡小學十家,四十五篇. 入揚雄,杜林二家二篇. 易曰,上古結繩以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蓋取諸夬,夬,揚於王庭. 言其宣揚於王者朝廷,其用最大也. 古者八歲入小學,故周官保氏掌養國子,教之六書,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造字之本也. 漢興,蕭何草律,亦著其法曰,太史試學童,能諷書九千字以上,乃得爲史,又以六體試之,課最者以爲尚書御史史書令史. 吏民上書,字或不正,輒舉劾. 六體者,古文,奇字,篆書,隸書,繆篆,蟲書,皆所以通知古今文字,摹印章,書幡信也. 古制,書必同文,不知則闕,問諸故老,至於衰世,是非無正,人用其私. 故孔子曰,吾猶及史之闕文也,今亡矣夫. 蓋傷其浸不正. 史籀篇者,周時史官教學童書也,與孔氏壁中古文異體. 蒼頡七章者,秦丞相李斯所作也,爰歷六章者,車府令趙高所作也,博學七章者,太史令胡毋敬所作也,文字多取史籀篇,而

하였다. 『사주편』은 주선왕의 태사인 籀(주)의 저술이다. 周宣王(주선왕 재위 BC.827년~BC.782년)은 西周(서주) 제11대 王이다. 부왕인 厲王(려왕)이 폭정으로 피폐된 나라를 중흥시켜 재위시대를 宣王中興(선왕중흥)의 시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籀文(주문)은 『사주편』의 서체이다. 『사주편』의 서체를 大篆(대전)이라 하였다. 西周(서주)시기 太史(태사)는 문서를 관장하는 고위관직이다. 제후와 경대부의 策命(책명)을 작성하고, 사실을 기록하여 史書(사서)를 편찬하였고, 서고의 서적과 천문역법, 제사 등을 관장하였다. 즉 태사는 문자를 사용하는 관리였다. 문자를 사용하는 관리가 소학서를 저술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다만 태사 籀(주)에 대한 기록은 「예문지」 소학가에서 설명된 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八體六技(팔체육기)』는 저자가 명시되지 않고 大篆(대전), 小篆(소전), 刻符(각부), 蟲書(충서), 摹印(모인), 署書(서서), 殳書(수서), 隸書(예서) 등 여덟 가지의 서체만 나열되었다.

小篆(소전)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書同文(서동문)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서체이다. 書同文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중국 각국에서 사용되었던 문자를 모두 폐기하고 小篆을 국가의 공식문자로 규정한 문자통일 정책을 말한다. 小篆은 大篆의 서체를 간략히 축소하였다는 뜻이다. 李斯(이사)가 大篆의 서체를 변형시켜 만들었다. 李斯(이사)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여 중국이 통일제국시대로 변모되는 역사적 전환기의 중요인물이다. 李斯(이사)의 사적은 『사기·이사열전』에 상술되었다.

刻符(각부)는 符信(부신)에 사용된 서체이다. 刻符는 符信에 새긴다는 말이다. 즉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반쪽으로 쪼개어 한쪽은 주는 사람이 보관하고 한쪽은 받는 사람이 휴대하여 증거로 삼는 증표이다. 대표적인 符信은 兵符(병부)를 들 수 있다. 秦代(진대)의 陽陵銅虎符(양릉동호부)에는 ‘甲兵之符右在皇帝左在陽陵(갑병지부우재 황제좌재양릉) 이 병부의 오른쪽은 황제에게 있고 왼쪽은 양릉에 있다.’는 銘文(명

篆體復頗異,所謂秦篆者也。是時始造隸書矣,起於官獄多事,苟趨省易,施之於徒隸也。漢興,閭里書師合蒼頡,爰歷,博學三篇,斷六十字以爲一章,凡五十五章,并爲蒼頡篇。武帝時司馬相如作凡將篇,無復字。元帝時黃門令史游作急就篇,成帝時將作大匠李長作元尚篇,皆蒼頡中正字也。凡將則頗有出矣。至元始中,徵天下通小學者以百數,各令記字於庭中,揚雄取其有用者以作訓纂篇,順續蒼頡,又易蒼頡中重複之字,凡八十九章。臣復續揚雄作十三章,凡一百二章,無復字,六藝群書所載略備矣。蒼頡多古字,俗師失其讀,宣帝時徵齊人能正讀者,張敞從受之,傳至外孫之子杜林,爲作訓故,并列焉。」中華書局, 2007. 416쪽.

문)이 호랑이 모양의 虎符(호부) 좌우에 두 줄로 새겨져있다. 황제가 병사를 움직이려할 때 황제에게 있는 兵符(병부)의 오른쪽을 전령에게 주고 병사의 이동을 명령하면 양릉에 주둔한 군사령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왼쪽 兵符(병부)와 맞추어보고 兵符(병부) 양쪽이 맞추어지게 되면 황제의 명령임을 확인하고 병사를 움직이게 된다.

蟲書는 새나 물고기 모양을 글자에 그려 놓은 서체이다. 蟲書는 기호로서의 문자라기보다는 회화적인 문양이므로 깃발에 그려서 신호용으로 사용된 서체이다.

摹印은 인장에 새기는 서체이다. 후일 인장에 새기는 서체는 대체로 大篆이나 小篆이 쓰였기 때문에 篆(전)의 字義(자의)에는 官印(관인)의 뜻도 인신의로 들어 있게 되었다.

署書는 편액의 서체를 말한다. 현재 남아 있는 署書가 없어서 서체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

戣書는 무기에 새기는 서체이다.

隸書는 秦代(진대)에 獄吏(옥리)들이 사용한 서체이다. 진나라는 小篆이 국가의 정식 서체였으나 官獄(관옥)의 업무가 많아지게 되자 옥리들이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옥리들이 만들어 사용한 문자라 하여 隸書(예서)라 하였다. 隸(예)는 노예 또는 관청의 용인을 이르는데 秦代(진대)의 감옥에서는 죄인을 관리하는 일에 노예를 부리거나 용인을 고용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글자라 하여 隸書(예서)라 한 것이다. 그러나 차츰 小篆을 대체하는 글자가 되었다. 여기서 글자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서의 문자개념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한자는 字形(자형)에 字音(자음)과 字義(자의)가 나타나 있다. 小篆까지는 字形(자형)에 字音(자음)과 字義(자의)가 나타나는 형상문자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隸書(예서)에서는 기호화하고 있다. 따라서 字形(자형)에서 나타나던 字音(자음)과 字義(자의)의 식별이 분명치 않게 되었다. 『설문해자·서』에

이때에 진나라가 서적을 불태우고 예전의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관리와 사명을 크게 징발하여 변방의 수비와 장성의 노역에 동원하였으므로 관아와 옥리의 업무가 번다하게 되었다. 이에 옥리들에게서 예서가 쓰이기 시작하였고 간결하고 쓰기 쉬운 글자를 선호하는 추세가 되어 이로부터 고문이 끊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진나라에는 팔체의 서체가 있게 되었는데 대전, 소전, 각부, 총서, 모인, 서서, 수서, 예서이다.<sup>14)</sup>

14) 許慎 撰, 『설문해자』: 「是時秦滅書籍滌除舊典. 大發吏卒興戍役. 官獄職務繁初有隸書以趣約易而古文由此而絕矣. 自爾秦書有八體, 一曰大篆二曰小篆三曰刻符四曰蟲書五曰摹印六曰署書七曰戣書八曰隸

하였다. 八體(팔체)는 진이 중국을 통일한 후 진나라에서 쓰였던 서체임이 드러나고 있으나 六技(육기)는 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서』의 주석에서도 팔체에 관한 주석은 있어도 六技(육기)에 대한 주석은 없다. 짐작컨대 팔체의 글씨를 쓰는 운필의 기능을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운필에는 붓을 쥐는 세 가지 집필법인 단구법, 쌍구법, 오지법이 있고, 붓을 놀리는 세 가지 용필법인 기필, 행필, 수필법 등이 있다. 이를 六技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서법이 왕성하게 일었던 후한 말 이후의 일이므로 팔체육기는 후세에 가필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필자의 짐작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창힐편』은 진나라 승상 李斯(이사)의 저서로 되어 있다. 李斯가 승상이 된 것은 秦(진)왕 政(정)이 중국을 통일하고 始皇帝(시황제)가 된 BC. 221년이다. 진나라의 관제는 三公九卿制(삼공구경제)로 승상이 최고위 관료로 황제를 보좌하고 백관을 통솔하였다. 李斯는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라 문필에도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李斯의 문장은 簡逐客書(간축객서), 論督責書(논독책서), 言趙高書(언조고서), 獄中上書(옥중상서) 등이 있고, 筆跡(필적)으로는 泰山封禪刻石(태산봉선각석), 琅琊刻石(낭야각석), 嶧山刻石(역산각석) 등의 탁본이 전해지고 있다. 李斯가 창힐편을 지은 것은 문필의 대가로서 당연한 저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趙高(조고)는 車府令(거부령)이었을 때 爰歷篇(원력편)을 지은 것으로 되었다. 車府令은 太衛(태위)의 속관으로 황제의 수레를 총관하는 직위이다. 漢代(한대)에는 車府令이 秩六百石(질육백석)의 중급관리였다. 胡毋敬(호무경)은 太史令(태사령)으로 博學篇(박학편)을 저술하였다 하였는데 太史令도 한대에는 車府令과 같은 秩六百石의 직위였다. 太史令은 史官으로 史書와 天文曆法(천문역법)을 관장하였다. 李斯가 창힐편을 저술하게 된 것은 書同文(서동문)정책을 시행하면서 표준이 되는 문자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李斯의 지위와 趙高와 胡毋敬의 지위로 미루어 볼 때 원력편과 박학편은 창힐편을 잇는 저술로 볼 수 있다. 1977년 안휘성 부양시에서 창힐편 殘簡(잔간)이 출토되었는데 그 殘簡에 ‘爰歷次地 繼續前圖(원력차이 계속전도)’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를 직역하면 ‘원력이 두 번째로 이어서 계속하여 전편을 잇는다.’는 말이다. ‘前圖(전도)’는 ‘앞의 책’이라는 말이므로 창힐편을 이르는 것이다. 창힐편의 편명은 창힐편의 첫머리인 ‘蒼頡作書 以教後嗣(창힐작서 이교후사)’에서

書.」天津古籍出版社, 2005. 2쪽.

‘蒼頡’을 따서 편명을 삼은 것이다. 한문전적은 특별히 書名(서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첫머리의 두 자를 따서 서명으로 삼는다. ‘蒼頡作書 以教後嗣(창힐작서 이교 후사)’를 직역하면 ‘창힐이 글자를 만들었다. 이로써 대를 이을 후손들을 교육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凡將篇(범장편)』은 司馬相如(사마상여)의 저술이다. 사마상여는 한문제 원년인 BC. 179년에 태어나 한무제 24년인 BC. 117년에 타계한 사천성 성도 사람이다. 『사기』에 문학가열전이 두 편이 있다. 하나는 「굴원·가생열전」이고 하나는 「사마상여열전」이다. 굴원은 楚辭(초사)의 대표적 인물로 離騷(이소)의 작가이고, 가생은 한문제때의 학자로 21세에 박사(사마)에 임명되고 태중대부, 태부를 역임하였으나 33세에 타계하여 짧은 생애를 살았던 한대초기의 준수였다. 가생은 가의의 별칭이다. 가의는 관료로서보다 문필가로 명성이 있다. 그의 문장으로 過秦論(과진론), 論積貯疏(논적저소), 治安策(치안책)이 있고, 賦(부)로 弔屈原賦(조굴원부), 鵬鳥賦(복조부)가 있다. 가의의 賦(부)는 漢賦(한부)의 효시로 알려지고 있다. 『사기』에서 「굴원·가생열전」은 기록 자수가 3,358자이고 「사마상여열전」은 기록 자수가 9,337자이다. 사마상여의 기록이 굴원과 가생 두 사람의 기록보다 약 2.8배가 되고 있다. 가의가 漢賦의 시초를 열었다면 사마상여는 漢賦를 완성하여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賦聖(부성)이라는 영예로운 미칭으로 추앙되고 있다. 사마상여의 작품으로 子虛賦(자허부), 上林賦(상림부), 大人賦(대인부), 長門賦(장문부), 美人賦(미인부), 哀秦二世賦(애진이세부) 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子虛賦(자허부)와 上林賦(상림부)가 유명하다. 사마상여의 관직은 한경제때에 무기상시를 지냈고 한무제때에 중랑장을 역임하였다. 『범장편』의 殘句(잔구)는 『예문류취』, 『문선』, 『다경』, 『설문해자』 등에 보이고 있다. 『예문류취』, 『문선』, 『다경』 등에서는 『범장편』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을 摘示(적시)하고 있으나, 『설문해자』에서는 ‘司馬相如曰(사마상여왈)’이라 하여 『범장편』이라는 편명을 적시하지 않았다. 『설문해자』에서 嘒(방), 隳(도), 廆(거) 등에서 ‘사마상여왈’이 인용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범장편』의 殘句(잔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嘒(방)의 引用句(인용구) 외에는 『범장편』의 殘句(잔구)라 보기 어렵다. 제서에 인용된 殘句(잔구)의 전문을 보면, 『예문류취』에는

사마상여 『범장편』 왈, 鍾磬竽笙筑坎侯(종경우생축감후).



라고 하여 『예문류취·악부·공후』에서 인용되었다. 모두 악기의 명칭이다. 『예문류취』는 당나라의 고조 7년(624년)에 칙령으로 급사중인 歐陽詢(구양순 557년~641년)이 주필이 되어 편찬된 類書(유서)이다. 『문선』에는

사마상여 『범장편』 왕, 黃潤織美宜制禪(황윤섬미의제곤).

이라 하여 『문선·촉도부』의 주석으로 인용되었다. 黃潤(황윤)은 대나무 통속의 얇고 부드러운 반투명이 막으로 대나무의 속껍질을 이룬다. 織美(섬미)는 섬세하고 아름답다는 말이며, 宜制禪(의제곤)은 속옷으로 만들어 입는 것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다. 『문선』은 六朝(육조)시대 梁(양)나라 소명태자 소통이 梁나라 이전의 詩文(시문)을 모아 편찬한 문집이다. 『문선』의 주석은 당나라 李善(이선 630년~689년)의 주석이 대표적이다. 李善이 당나라 고종 顯慶(현경)<sup>15</sup>3년(658년) 승현관직학사 재임 시 『문선주』 60권을 고종에게 헌정하였는데 이 『문선주』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다경』에서는

사마상여 『범장편』 왕, 烏啄桔梗□芫華(오탁길경□원화). 款冬貝母木蘂萼(관동패모목 열루). 芩草芍藥桂漏蘆(금초작약계루로). 蜚廉藎菌□菴訖(비렴관균□천타). 白斂白芷□菴蒲(백렴백지□창포). 芒消□莞椒茱萸(망소□완초수유).

등으로 모두 6句가 인용되었다. □는 꺾문 표시이다. 『다경』에 인용된 殘句(잔구)는 모두 약초의 명칭이다. 『다경』은 당나라 陸羽(육우 733년~804년)의 저술이다. 육우에 관한 사적은 『신당서·은일전』에 기록되었다. 『설문해자』의 嘒(방), 蘩(도), 麩(거) 등에서 引用된 全文을 보면

嘒, 詭聲. 嘒喻也. 从口翏聲. 司馬相如說, 淮南宋蔡舞嘒喻也.(방, 가성. 방유야. 종구방성. 사마상여설, 회남송채무방유야.)<sup>16)</sup>

蘩, 禾也. 从禾道聲. 司馬相如曰, 蘩, 一莖六穗.(도, 화야. 종화도성. 사마상여왕, 도, 일경록수.)<sup>17)</sup>

15) 현경(顯慶)은 중국 당(唐) 고종(高宗)의 두 번째 연호이다. 655년 11월에 측천황후 무씨(則天皇后 武氏)를 새로 황후에 책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 개원하였다. 656년에서 661년 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16) 許慎 撰, 『설문해자』, 天津古籍出版社, 2005. 33쪽.

17) 許慎 撰, 『설문해자』, 天津古籍出版社, 2005. 146쪽.

虞, 鬪相戩不解也. 从豕, 虍. 豕虍之鬪, 不解也. 讀若薊葦草之薊. 司馬相如說, 虞, 封豕之屬. 一曰虎兩足舉.(거, 두상극불해야. 종시, 호. 시호지두, 불해야. 독약계나초지계. 사마상여설, 거, 봉시지속. 일왈호랑족거.)<sup>18)</sup>

등이다. 『설문해자』의 인용문 가운데 7언구는 嘒(방)의 인용구뿐이다. 嘒(방)의 全文(전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嘒(방)은 노랫소리이다. 嘒喻(방유)를 말한다. 口(구)를 意符(의부)로 𠂔(방)을 聲符(성부)로 하는 形聲字(형성자)이다. 사마상여가 말하기를 淮水(회수)의 남부와 宋(송)과 蔡(채)의 舞曲(무곡)이 嘒喻(방유)이다.’

𠂔(도)의 全文(전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𠂔(도)는 벼이다. 禾(화)를 意符(의부)로 道(도)를 聲符(성부)로 하는 形聲字(형성자)이다. 사마상여가 말하기를 𠂔(도)는 하나의 줄기에 여섯 개의 이삭이 달린다.’

虞(거)의 全文(전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虞(거)는 싸울 때 서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豕(시)와 虍(호)의 합체자인 會意字(회의자)이다. 豕(시)와 虍(호)가 싸우면서 엉켜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虞(거)의 독음은 薊葦草(계나초)의 薊(계)<sup>19)</sup>와 같다. 司馬相如가 말하기를 虞(거)는 封豕(봉시: 큰 돼지)의 종류이다. 일설에는 호랑이가 양 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이라 한다.’

『설문해자』에 인용된 ‘사마상여설’을 보면 嘒(방)의 說(설)은 提示(제시)구이나 𠂔(도)와 虞(거)의 說(설)은 해설문이다. 그러므로 『범장편』의 殘句(잔구)로 볼 수 있는 것은 嘒(방)의 인용구인 ‘淮南宋蔡舞嘒喻(회남송채무방유)’라 할 수 있다. 이 상과 같은 殘句(잔구)의 인용사례를 볼 때 唐代(당대)까지는 『범장편』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장편』이 중복된 글자가 없었다는 것은 글자학습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로 나타 내는 것이므로 나타내려는 뜻에 따라 글자의 겹침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글자를 학습하는 것은 같은 글자가 중복되어 나올 필요가 없다 이미 숙지된 글자가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지면만 없애는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복된

18) 許慎 撰, 『설문해자』, 天津古籍出版社, 2005. 197쪽.

19) 讀若薊葦草之薊(독약계나초지계)에서 ‘讀若(독약)’은 訓詁用語(훈고용어)이다. 虞(거)를 薊葦草(계나초)의 薊(계)로 읽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虞(거)의 독음을 薊(계)로 읽고 또한 뜻도 薊(계)의 뜻이 들어간다는 말이다. 虞(거)의 字義(자의)를 싸우면서 서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하였는데 薊葦草(계나초)의 열매가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薊葦草(계나초)는 열매가 동물의 털에 붙어서 넓은 지역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동물산포식물이다.

글자가 없다는 것은 곧 글자학습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사마상여는 한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력을 구사한 작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글자학습서를 저술하기에는 더없이 풍부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元尙篇(원상편)』은 『한서·예문지』 육예략 해설의 기록 말고는 별다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저자인 李長(이장)에 대해서도 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將作大匠(장작대장)은 漢代(한대)의 列卿(열경)에 속하는 관직으로 秩二千石(질이천석)의 고위관료이다. 漢代(한대)의 관제는 秦(진)의 관제를 沿用(연용)하여 三公九卿制(삼공구경제)를 실시하였는데 三公(삼공)은 丞相(승상), 太衛(태위), 御史大夫(어사대부)이고, 九卿(구경)은 太常(태상), 光祿勳(광록훈), 衛尉(위위), 太僕(태복), 廷尉(정위), 大鴻臚(대홍려), 宗正(종정), 大司農(대사농), 少府(소부) 등이다. 이 九卿(구경)에 執金吾(집금오), 將作大匠(장작대장), 大長秋(대장추)의 직위를 九卿(구경)반열에 올려 놓아 十二卿(십이경)으로 불렀다. 執金吾(집금오)는 首都(수도)의 치안을 담당하였고, 將作大匠(장작대장)은 건설공사를 담당하였고, 大長秋(대장추)는 황후의 궁을 담당하였다. 漢代(한대) 황후의 거처인 中宮(중궁)의 명칭이 長秋(장추)이다. 李長(이장)이 將作大匠(장작대장)이었다는 기록은 『한서·예문지』 외에는 없다. 『원상편』의 내용도 육예략 해설의 기록으로 보면 『금취편』과 같이 『창힐편』의 상용자를 추려 내어 엮은 것이라 하였으나 『원상편』은 書名(서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訓纂篇(훈찬편)』, 『別字(별자)』, 『蒼頡傳(창힐전)』, 『蒼頡訓纂篇(창힐훈찬)』 등은 揚雄(양웅)의 저서이다. 揚雄(양웅 BC.53년~AD.18년)은 서한말기의 관리이자 학자이다. 사천성 성도 사람이다. 양웅은 관리보다는 문학가로 더 이름이 나있다. 양웅은 漢賦(한부) 四大家(사대가)<sup>20)</sup>의 한 사람이다. 관직은 한성제때에 급사황문랑과 王莽(왕망)의 新(신)나라에서 大夫(대부)를 역임하였다. 사마상여가 문필가로서 소학서를 저술하였으니 양웅 또한 문필가로서 소학서를 저술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양웅은 『훈찬편』, 『별자』, 『창힐전』, 『창힐훈찬편』 등 모두 4권의 소학서를 저술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망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別字(별자)』에 대해서는 清代(청대)의 考證學(고증학)계에서 『方言(방언)』으로 보는 견해

20) 漢賦四大家(한부사대가) 하면 서한의 사마상여, 양웅, 후한의 반고, 장형을 이른다.

가 있다. 만약 『별자』가 『방언』이 맞다면 양옹의 소학서로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서적이 된다. 다만 『방언』을 소학서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언』은 중국대륙 각 지역의 방언을 수집하여 기록한 서적이다. 『방언』은 『輜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유헌사자절대어석별국방언)』을 줄인 간칭이다. 『유헌사자절대어석별국방언』은 書名(서명)에서 보듯이 조정의 관리가 이전시대의 각국의 언어와 지방의 방언을 수집하여 기록한 조정의 문서이다. 輜軒使者(유헌사자)는 輜軒(유헌)을 타고 가는 조정의 관리를 말한다. 유헌은 왕의 使者(사자)가 타는 수레의 명칭이다. 絕代語釋(절대어석)이란 이전시대의 언어를 해석한다는 것이고 別國方言(별국방언)은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한다. 『별자』를 『방언』으로 보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答劉歆書(답유흠서)』에서의 ‘방언’에 대한 언급과 『한서』에서 『방언』이라는 書名(서명)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양옹의 『답유흠서』에서

천하에서 올라오는 孝廉(효렴)들과 都城(도성)의 衛戍(위수)에 징집되어 올라오는 각 지방의 병사들을 만나게 되므로 나는 항상 毛筆(모필)을 들고 흰 광택이 나는 넉바 비단에 그들에게 물었던 지방의 방언들을 적고서 돌아와서는 곧 槧(참)에 차례차례 기록하였는데 지금까지 27년에 이르고 있다.

하였다. 槧(참)은 길이 3척의 나무판자인 書板(서관)을 이른다. 이 글에서 양옹이 27년간 수집한 방언들을 槧(참)에 正書(정서)하여 놓았다 하였는데 정서되었다는 것은 곧 책으로 완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책이 『별자』일 것이라는 것이다. 『방언』은 書名(서명)이다. 『한서』에서 書名(서명)인 『방언』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은 『한서』에서의 양옹을 대하는 태도에서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한서』의 열전은 모두 70권이다. 인물전이 아닌 「홍노전」, 「서남이양월조선전」, 「서역전」, 「서전」 등 4권을 제외하고 개인열전이 66권이고 수록자는 301명이다. 1권당 약 4.5명이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상하 두 권으로 기록된 열전이 「사마상여전」과 「양웅전」이다. 本紀(본기)도 「고제기」만이 두 권에 기록되었을 뿐이다. 사마상여와 양웅이 『한서』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웅전」이나 「예문지」에나 『방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방언』이 典籍(전적)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풍속통의』이다. 『풍속통의』 서문에

周나라와 秦나라에서는 매년 8월이 되면 유헌사자를 파견하여 각 지방의 前代의 方言을 수집하고 이를 기록하여 상주한 후에 秘府(비부)에 藏書(장서)하였다. 秦나라가 패망할 때에 秘府의 藏書들도 흩어지게 되었는데 書庫(서고)에 있던 方言수집문서도 유실되어 본 사람이 없었다. 후일 蜀(촉) 땅 사람 엄군평이 천 여 개의 方言을 알고 있었고 입여옹유가 목록정도를 알았는데 양웅이 이에 관심을 기울여 도성으로 들어오는 천하의 효렴들과 위졸들을 두루 만나서 그들에게 묻고 들으면서 수집하여 오기를 27년에 이르렀다. 이를 정리한 것이 모두 구천자가 되었다. 그 밝혀놓은 바가 爾雅(이아)의 크고 장려함에는 미치지 못하나 장승은 이 서적이야 말로 不朽(불후)의 명작이라 하였다. 나는 아둔한 자라 이에 대하여 명백히 논하지 못하거니와 감히 그 뛰어난 바를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말할 수 없고 다만 저작의 수고로움과 그 빛나는 업적을 생각하며 몇 자 적을 뿐이다.<sup>21)</sup>

하였다. 『풍속통의』는 후한 桓帝(환제 재위 147년~167년)때에 사예교위를 역임한 應劭(응소 153년~196년)의 저작이다. 『유헌사자절대어석별국방언』이라는 書名은 양웅이 붙인 書名이 아님은 분명하다. 유헌사자는 周代(주대)와 秦代(진대)에서 방언수집정책을 수행한 관원이다. 양웅이 각지의 방언을 수집한 방법은 도성으로 올라오는 각 지역의 孝廉(효렴)과 衛卒(위졸)들에게 물어보고 들어서 수집한 것이다. 漢代(한대)에는 郡國(군국)에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孝廉(효렴)이 郡國(군국)에서 추천되는 인재였다. 孝廉(효렴)에 뽑히면 郡國(군국)의 上計官(상계관)과 함께 도성으로 올라가게 된다. 上計(상계)는 1년간의 회계장부와 업무처리문서를 조정에 제출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衛卒(위졸)은 1년간 도성의 衛戍(위수)에 징집되었던 각 郡國(군국)에서 올라오는 兵役(병역)살이었다. 양웅이 말한 효렴과 위졸은 바로 이렇게 도성으로 올라오는 각 군국의 효렴과 병역을 사는 군졸 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周代(주대)와 秦代(진대)의 관직인 ‘유헌사자’라는 관명은 양웅이 쓸 수 있는 관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웅이 『유헌사자절대어석별국방언』을 저술하였다는 것은 『풍속통의』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헌사자절대어석별국방언』이라는 書名이 나오기 이전에는 『별자』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다. 다만 「예문지」 소학가 총설에서 『별자』에 관한 해설이 없다는 점이 『별자』가 『방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21) 應劭 撰, 『風俗通義』: 「周秦常以歲八月遣輪軒之使, 求異代方言, 還奏籍之, 藏於秘室. 及嬴氏之亡, 遺脫漏棄, 無見之者. 蜀人嚴君平有千餘言, 林閭翁孺才有梗概之法, 揚雄好之, 天下孝廉衛卒交會, 周章質問, 以次注續, 二十七年, 爾乃治正, 凡九千字, 其所發明, 猶未若爾雅之閎麗也, 張竦以爲懸諸日月不刊之書, 予實頑闇, 無能述演, 豈敢比隆於斯人哉, 願惟述作之功, 故聊光啟之耳.」 中華書局, 2010. 32쪽.

『蒼頡訓纂(창힐훈찬)』과 『蒼頡故(창힐고)』는 杜林(두림)이 지었다. 두림은 후한 초기의 관리이자 학자이다. 두림이 생년은 미상이다. 사서에서 逝世(서세)연도만 AD. 47년으로 나온다. 두림은 후한을 세운 광무제때에 大司空(대사공)을 역임하였다. 후한은 최고위 관직인 三公(삼공)을 太衛(태위), 司徒(사도), 司空(사공)으로 불렀다. 두림은 광무제 22년(AD. 46년)에 대사공을 사임하고 이듬해인 광무제 23년(AD. 47년)에 별세하였다. 두림은 관리로서보다는 학자로 특히 소학의 宗祖(종조)로 추앙받고 있다. 『서계총어』에

두림의 아들 립이 古文에 뛰어난 학식이 있었다. 광무제때에 열경을 거쳐 대사공에 이르렀다. 두림이 문자에 정통한 것이 두림을 능가하였다. 그러므로 소학하는 자들이 두림을 소학의 종주로 삼고 있다.<sup>22)</sup>

하였다. 『서계총어』는 南宋(남송)의 사학자 姚寬(요관 1105년~1162년)의 저서이다. 서계는 요관의 호이다. 요관은 『전국책』의 주석으로 이름이 나있다. 현행 『전국책』 주석에서 姚本(요본)이라 하는 것이 요관의 주석을 이르는 것이다. 두림은 고문 학자로 후한의 『고문상서』 학의 개창자이기도하다. 『후한서·두림전』에

두림이 서주로 피란을 하였을 때 漆書古文尙書(칠서고문상서) 한 권을 얻었다. 두림이 항상 손에 들고 보물같이 애지중지하였다. 비록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도 손으로 감싸 안고 몸에서 떨어뜨리는 법이 없었다. 훗날 위굉 등이 말하기를 ‘두림이 병란으로 유랑할 때에도 늘 근심하였던 것은 이 경전이 끊어질 것을 근심하였다. 어찌 우리가 다시 이 경전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두림이 길을 가는 도중에도 결코 경전을 떨어뜨린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문이 비록 현재에 시급한 학문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학문하는 제생들이 배워서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위굉과 서순이 더욱 이를 중히 하였으니 오늘날 고문이 행해지게 된 것이다.<sup>23)</sup>

하였다. 古文尙書(고문상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孔子(공자)의 古宅(고택) 壁中書(벽중서)이고 하나는 두림의 漆書(칠서)이다. 공자의 고택 벽중서는 공자의 후손인 공안국이 주석을 붙였다 하였으나 공안국 이후의 傳書(전서)과정에 대한 기록

22) 姚寬 撰, 『西溪叢語』: 「鄴子林好古有雅才, 建武中歷位列卿至大司空, 其正文字過於鄴, 故言小學者宗於杜林。」 中華書局, 1993. 79쪽.

23)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林前於西州得漆書古文尙書一卷, 常寶愛之, 雖遭難困, 握持不離身. 出示宏等曰, 林流離兵亂, 常恐斯經將絕. 何意東海衛子, 濟南徐生復能傳之, 是道竟不墜於地也. 古文雖不合時務, 然願諸生無悔所學。」 宏, 巡益重之, 於是古文遂行。」 中華書局, 1965. 1590쪽.

이 없다. 다만 당대에 와서 공영달이 『상서정의·서』에서 공안국의 벽중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두림의 칠서는 그 전서과정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두림에게서 직접 師事(사사)받은 衛宏(위굉)은 『고문상서훈지』를 저술하여 고문상서학의 흥기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賈逵(가규)는 『고문상서훈』을 저술하였으며, 馬融(마용)은 『고문상서전』을 지었고, 鄭玄(정현)은 『고문상서주해』를 저술하였다. 漆書(칠서)는 蝌蚪文字(과두문자)로 쓰인 典籍(전적)을 이른다. 漆(칠)은 옷칠이다. 붓이 나오기 전에는 나뭇가지나 대나무를 쪼개어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옷칠을 문혀서 簡牘(간독)에 書寫(서사)하였는데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옷칠이 많이 흘러서 머리 부분이 뭉툭하게 되고 나중에는 옷칠이 없어지게 되어 글자의 획이 가늘어지게 된다. 그 모양이 마치 올챙이를 닮았다 하여 과두문자라 하였다. 蝌蚪(과두)는 올챙이를 말한다. 두림이 과두문자로 쓰인 『고문상서』를 얻은 곳은 西州(서주 지금의 감숙성 무위시)이다. 두림이 서주에서 피난생활을 한 것은 왕망의 신나라가 실정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중원이 병란에 휩싸이게 되자 두림이 중원에서 서주로 피란을 하였던 것이다. 두림이 광무제 6년에 중원으로 돌아오자 그의 학문에 감복한 위굉이 서순과 함께 두림의 문하에 들게 되었다. 위굉과 서순에게 전수된 『고문상서』는 후한시기 今古文(금고문)논쟁을 유발한 중심적인 고문경서가 되었고 古文(고문)經學(경학)의 原典(원전)이 되었다.

『고문상서훈지』를 저술한 衛宏(위굉 생물연대미상)은 광무제때에 의랑(질600석의 간관)을 지냈다. 위굉은 『고문상서훈지』 외에 『모시서』의 저자로도 이름이 나 있다.

『고문상서훈』을 저술한 賈逵(가규 30년~101년)는 『설문해자』의 저자인 허신의 스승이다. 가규는 당시 고문학의 중심인물이었다. 후한 제3대 황제인 章帝(장제 재위 75년~88년)4년에 미양궁 백호관에서 황제의 주재 하에 유가경전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今文經(금문경)과 古文經(고문경)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가규의 고문경 변론으로 고문경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회의를 백호관회의라 하며 이 때 토론한 내용을 班固(반고)가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 『백호통의』이다. 반고는 『한서』의 저자이다. 가규의 관직은 후한 제4대 황제인 和帝(화제 재위 88년~106년)때에 侍中(시중)을 역임하였다. 가규의 사적은 『후한서·가규전』에 상술되었다.

『고문상서전』을 지은 馬融(마용 79년~166년)은 후한 제 11대 황제인 桓帝(환

제 재위 146년~167년)때에 남군태수와 의랑을 역임한 유학자이다. 정현의 스승으로 후한 후기 고문경학의 通儒(통유)로 추앙되고 있다. 通儒란 經學(경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當代(당대) 학문의 泰斗(태두)를 이르는 경칭이다. 마응의 사적은 『후한서·마응전』에 상술되었다.

『고문상서주해』를 저술한 鄭玄(정현 127년~200년)은 訓詁學(훈고학)의 鼻祖(비조)로 추앙되는 후한말의 대학자이다. 字가 康成(강성)으로 한문전적에서는 鄭康成(정강성)으로 많이 등장한다. 정현은 후한시기의 고문경을 집대성하여 고문경학을 창시하였다. 이후 정현의 고문경학은 하나의 학파로 鄭學(정학)이라 하였다. 정현은 훈고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만큼 儒家(유가)의 經典(경전) 전반에 걸쳐 주석서를 내었다. 『주역』, 『상서』, 『모시』, 『주례』, 『의례』, 『예기』, 『논어』, 『효경』 등을 주석하였는데 그 중 현존하는 것은 『모시전』과 『주례』, 『의례』, 『예기』의 주석서가 있고, 나머지는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관직은 맡은 바가 없고 오직 학문에 정진한 것으로 사서에 기록되었다. 정현의 사적은 『후한서·정현전』에 상술되었다.

두림이 고문에 정통한 것은 張敞(장창)으로부터 傳授(전수)된 바이다. 장창은 서한 선제때에 태중대부와 기주자사를 역임한 강직한 성품의 관리로 사서에 기록되었다. 장창은 선제의 명으로 제나라 사람으로부터 『창힐편』에 쓰인 고문자의 독해를 전수 받았다. 장창은 그의 손자인 張竦(장송)에게 傳授(전수)하였고, 장송은 두림에게 傳授(전수)하였다. 장송은 『방언』을 불후의 명저라 하였던 사람이다. 두림은 장창의 외손자이다. 그의 모친이 장창의 딸이다.

두림이 『창힐훈찬』과 『창힐고』를 지은 것은 장송으로부터 『창힐편』에 쓰인 고문자의 독해를 전수받아서이다. 그런데 『창힐훈찬』은 양웅과 두림이 각각 저술하고 있다. 두림의 『창힐훈찬』과 『창힐고』는 『창힐편』의 훈고서이다. 그렇다면 양웅의 『창힐훈찬』도 서명으로 보아 『창힐편』의 훈고서라 할 수 있다. 訓纂(훈찬)이란 훈고를 붙여 편찬하였다는 말이다. 양웅의 『창힐훈찬』과 두림의 『창힐훈찬』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육예략의 해설이 없기 때문에 분간할 수 없다. 육예략에서는 두림의 『창힐훈찬』과 『창힐고』는 두림이 장창으로부터 고문의 독해를 전수 받았으므로 『창힐편』에 훈고를 하였다고 해설하여 두림의 『창힐훈찬』과 『창힐고』는 『창힐편』의 훈고서임을 명백히 하였다. 訓詁(훈고)는 고대의 낱말을 현재의 낱말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서·양웅전』에



양옹은 어렸을 적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章句(장구)는 하지 않고 훈고를 하였는데 읽지 않은 서적이 없었다.<sup>24)</sup>

하여 양옹이 고문에 훈고를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章句(장구)는 ‘離章辨句(이장변구)’의 간칭이다. 경서를 章(장)과 句(구)로 나누어 해석하는 서한시기의 讀解(독해) 방식을 말한다. 『한서·예문지』에 『역경』은 시씨, 맹씨, 양구씨의 『역경장구』가 있고, 『상서』에는 『구양장구』, 『대소하후장구』가 있고, 『춘추』에는 『공양장구』, 『곡량장구』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대의 유가들이 경서의 해석을 章句(장구)로 분석하여 해석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章句之學(장구지학)이라 하여 서한시기 훈고학을 이르게 되었다. ‘양옹이 章句를 하지 않았다’하는 것은 경서를 章句로 분석하여 해설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낱말을 註解(주해)하여 문자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경서를 독해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양옹과 두림 이전의 소학서가 글자학습서라면 양옹의 『창힐훈찬』과 두림의 『창힐훈찬』, 『창힐고』는 소학에 훈고가 접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서·예문지』의 소학을 정리해보면, 상고시대에 글자를 만들어 사용해 오면서 周代(주대)에 이르러 그때까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글자가 집대성되어 『사주편』이 편찬되었고, 秦代(진대)에 이르러 『창힐편』에서 글자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기틀위에서 漢代(한대)에서 소학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소학가 10가 45편 가운데 『급취편』을 제외하고 모두 망실되어 전하지는 않으나 『설문해자』에서 『사주편』의 籀文(주문)과 『창힐편』의 篆文(전문)을 접할 수 있고, 훈찬편의 字解(자해)는 『설문해자』의 字解(자해)형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1) 한대의 소학서

소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소학과 교재로서의 소학서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교육기관은 가르치는 제도적 장치이고 소학서는 가르치는 내용이다. 周代(주

24) 班固 撰, 『漢書』: 「雄少而好學,不爲章句,訓詁通而已,博覽無所不見。」中華書局, 2007. 943쪽.

대)에는 소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육예와 육의라고 『주례』에 기록되었다. 秦代(진대)와 漢代(한대)에는 소학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주례』와 같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漢代(한대)에 소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이 『四民月令(사민월령)』에 있다. 그 기록에

정월에는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成童(성동)으로 하여금 대학에 입학하여 五經(오경)을 배우도록 한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스승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을 구비하도록 하고 전하여야 할 성현의 글이 아니면 읽지 말도록 한다. 벼루의 먹물이 풀리면 幼童(유동)으로 하여금 소학에 입학하여 篇章(편장)의 글을 배우도록 한다. 女兒(여아)에게는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느질과 방직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8월이 되어 더위가 물러가면 幼童(유동)으로 하여금 소학에 입학하여 정월과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한다. 10월이 되어 농사를 마치면 成童(성동)으로 하여금 대학에 입학하여 정월과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한다. 11월이 되어 벼루의 먹물이 얼게 되면 幼童(유동)으로 하여금 효경, 논어, 편장, 소학을 읽도록 한다.<sup>25)</sup>

하였다. 成童(성동)은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을 이르고 幼童(유동)은 8세부터 14세까지 소년을 이른다. 소학의 입학연령은 周代(주대)의 학제와 같다. 대학의 학습이 五經(오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한무제 이후 儒學(유학)이 國學(국학)이 되면서 오경박사제도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학의 학습 교과목은 篇章(편장)의 글을 학습한다고 하였다. 篇章(편장)은 六甲(육갑), 九九(구구), 急就(급취), 三蒼(삼창)을 이른다고 주석되었다.

六甲(육갑)은 六十甲子(육십갑자)의 준말이다. 六十甲子란 天干(천간)과 地支(지)를 조합하여 나타내었던 年 月 日 時 표기방법이다. 天干은 甲(갑) 乙(을) 丙(병) 丁(정) 戊(무) 己(기) 庚(경) 辛(신) 壬(임) 癸(계) 등 十干(십간)을 말하고 지지는 子(자) 丑(축) 寅(인) 卯(묘) 辰(진) 巳(사) 午(오) 未(미) 申(신) 酉(유) 戌(술) 亥(해) 등 十二支(십이지)를 이른다. 이 十干과 十二支를 차례로 조합하면 甲子(갑자) 乙丑(을축) 丙寅(병인) 丁卯(정묘) 戊辰(무진) 己巳(기사) 庚午(경오) 辛未(신미) 壬申(임신) 癸酉(계유) 甲戌(갑술) 乙亥(을해) 등이 된다. 地支가 12支이므로 10干이 甲과 乙이 12支와 조합하기 위하여 甲子와 甲戌, 乙丑과 乙亥로 두 번 조합되고 있는 것

25) 崔寔 撰, 『四民月令』: 「農事未起, 命成童以上入大學, 學五經, 師法求備, 勿讀書傳, 硯凍釋, 命幼童入小學, 學書篇章. 命女紅趣織布. 八月暑小退, 命幼童入小學, 如正月焉. 十月農事畢, 命成童以上入大學, 如正月焉. 十一月硯水凍, 命幼童讀孝經, 論語, 篇章, 小學.」 <http://zh.wikisource.org> 2012年.

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조합해 나가서 60회의 조합을 마치면 다시 甲子로 돌아온다. 이 60회의 조합에 甲이 들어가는 횟수가 6회로 甲子(갑자) 甲戌(갑술) 甲申(갑신) 甲午(갑오) 甲辰(갑진) 甲寅(갑인)이다. 이를 六甲이라 이르는 것이다. 六十甲子를 年에 표기하는 것을 太歲(태세)라 하고, 月에 표기하는 것을 月建(월건)이라 하고, 날짜에 표기하는 것을 日辰(일진)이라 하며, 시간에 표기하는 것을 時辰(시진)이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28일 10시를 干支로 표기하면 丙申年 壬辰月 己酉日 巳時로 표기된다. 六甲은 曆法(역법)의 표기방법으로 천체의 운행과 節氣(절기)를 나타내므로 六甲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年 月 日 時의 표기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운행과 節氣를 아울러 배우게 되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節氣는 농사철을 말하는 것이므로 六甲을 배운다는 것은 농경사회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九九(구구)는 九九法(구구법)을 말한다. 九九法은 곱하기 나누기 평방근의 기본적인 산식이다. 九九法은 중국에서 처음 창안되어 쓰이기 시작하였다. 九九에 관한 기록으로 『한시외전』의 기록을 들 수 있는데 그 기록에

齊(제)나라 환공이 궁전 뜰에 햇불을 밝혀놓고 유능한 현사들이 찾아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이 선비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 때 동쪽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九九를 할 수 있노라 하며 찾아왔다. 환공이 조롱하듯 말하였다 ‘九九를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만나는데 충분하다고 여기는가?’ 그러자 시골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듣기로 임금님께서 궁궐 뜰에 햇불을 밝히고 선비들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일 년이 지나도록 한사람의 선비도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무릇 선비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임금님께서 천하의 현군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의 선비들이 모두 임금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九九는 능력이라고 할 것도 없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저를 예우하신다면 겨우 九九를 하는 저보다 황차 유능한 현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를 들은 환공이 ‘옳도다!’ 하고 그 시골사람을 예우하였다. 그러자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사망에서 현사들이 서로 인도하며 환공에게로 모여 들었다.<sup>26)</sup>

라고 하였다. 九九法이 春秋時代(춘추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말은 이 제나라 환공의 庭燎求賢(정료구현) 故事(고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제나라 桓

26) 韓嬰 撰, 『韓詩外傳』: 「齊桓公設庭燎,爲使人欲造見者. 暮年而士不至. 於是東野有以九九見者. 桓公使戲之曰,九九足以見乎. 鄙人曰,臣聞君設庭燎以待士,暮年而士不至. 夫士之所以不至者,君天下之賢君也,四方之士皆自以不及君,故不至也. 夫九九薄能耳,而君猶禮之,況賢於九九者乎. 桓公曰善. 乃固禮之. 暮月. 四方之士相導而至矣.」 中華書局, 1980. 109쪽.

公(환공 재위 BC.685년~BC.643년)은 春秋(춘추) 五霸(오패) 중 첫 霸者(패자)인 제 나라 君主(군주)이다. 漢代(한대)의 수학은 구구법, 산표, 산수서 등의 셈본과 『주비산경』, 『구장산술』 등의 수학서가 있었다. 소학에서는 구구법과 산표의 이용방법, 산가지계산법 등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주비산경』은 천문학의 계산식을 다룬 것이므로 소학의 수준에서는 어려운 학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장산술』은 수학 기간만 4년이 소요되는 전공분야의 교재이므로 소학에서는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산표는 구구법을 확대한 간이계산표이다. 그 구성을 보면 1/2,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등의 19개의 숫자를 가로와 세로에 각각 19개의 칸을 만들어 배속하면 361개의 칸을 갖는 네모진 計算板이 생긴다. 이 361개의 칸에 가로와 세로의 숫자의 승수수치가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1/2 \times 80$ 의 계산수치를 알아보려면 2/1의 자리와 80의 자리가 만나는 칸을 보면 40이라는 계산된 수치가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1/2에서 90까지의 곱셈수치를 칸만 찾아가면 계산된 수치를 볼 수 있게 된다. 산표는 전국시기에 만들어져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중국의 청화대학에 전국시기의 竹簡(죽간) 2,338매가 기증되었는데 그 가운데 21매가 산표였다. 이로써 산표가 전국시기에 사용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구구법이 춘추시기에 사용되었으니 전국시기에 이르러 구구법 사용이 한걸음 더 나간 형태인 산표로 만들어 진 것임을 볼 수 있다. 『사민월령』에서 소학에서 배우는 것이 九九라 하였으니 구구법과 산가지계산법 및 산표 보는 법이 학습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수준을 높인다면 산수서를 학습하게 되었을 것이다. 산수서는 정수와 분수의 산식, 기하급수산식, 이차계산식, 세율계산식, 기하계산식, 태환계산식, 산량계산식, 평방근계산식 등을 다루고 있는 수학책이다. 周代(주대)의 소학에서 九數(구수)를 학습하였다고 하였으니 漢代(한대)에도 소학에서 산수서를 학습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三蒼(삼창)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창힐편』, 『원력편』, 『박학편』 등 3편을 합칭 하여 부르는 별칭이고, 하나는 서한초기에 『창힐편』, 『원력편』, 『박학편』 3편을 합쳐서 만들어진 『창힐편』과 양웅의 『훈찬편』, 賈魴(가방)의 『방희편』을 합하여 만들어진 三蒼이다. 『사민월령』의 주석에 ‘急就(급취), 三蒼(삼창)’의 순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삼창』이 『급취편』보다는 나중에 나온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므로 『사민월령』에서 말하고 있는 『삼창』은 賈魴(가방)이 편찬한 『삼창』을

말하는 것이다. 『서단·예서』 편에

和帝때에 가방이 방희편을 짓고, 창힐편을 상편으로 하고 훈찬편을 중편으로 하고 방희를 하편으로 하여 세편을 함께 엮었다. 이른바 삼창이라 이르는 것이다. 모두 예서로 썼는데 예서의 서법이 이로부터 널리 퍼지게 되었다.<sup>27)</sup>

하였다. 『서단』은 당나라 張懷瓘(장희관 생졸연대미상)이 쓴 서론서이다. 장희관은 唐代(당대)의 서법가로 開元(개원)<sup>28)</sup>연간에 한림공봉과 우술부병조참군을 역임한 인물이다. 예서는 秦代(진대)에 쓰이기 시작하여 후한 때에는 국가의 공식서체가 되었다. 『서단』에서 예서의 서법가로 지명되는 사람이 賈鮪(가방) 한 사람이다. 『서단·예서』의 문구로 볼 때 『삼창』은 賈鮪(가방)이 편집한 것이다. 즉 『창힐편』과 『훈찬편』에 자신의 저작한 『방희편』을 붙여 당시 공식서체인 예서로 정서한 것이다. 다만 『삼창』이라는 書名을 賈鮪(가방)이 붙였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賈鮪(가방)에 대한 기록은 『수서·경적지』와 『서단』의 기록만 있을 뿐이어서 賈鮪(가방)의 생몰연대나 사적에 관하여는 알 길이 없다. 『수서·경적지』에

후한 낭중 가방이 방희편을 지었다.<sup>29)</sup>

라는 기록으로 賈鮪(가방)이 郎中(낭중)벼슬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후한의 관제에서 낭중은 질300석의 비교적 낮은 품계의 관직이다. 『삼창』에 관한 正史(정사)의 기록은 『수서·경적지』의 기록이 전부이다. 그 기록에

삼창 삼권에 광박이 주석을 달았다. 진나라 승상 이사가 지은 창힐편과 한나라 양웅이 지은 훈찬편과 후한때 낭중이었던 가방이 지은 방희편을 옛적에 삼창이라 일렀다. 지금은 망실되어 없다.<sup>30)</sup>

라고 하였다. 『삼창』은 단순한 한자학습서라기 보다는 글씨본으로 중시되었을 것이다. 후한의 공식서체가 예서였고 예서의 서법가인 賈鮪(가방)이 예서로 正書(정서)해 놓은 것이 『삼창』이기 때문이다. 한자학습서로 『금취편』이 같이 수록되고

27) 張懷瓘 著, 『書斷』: 「至和帝時, 賈鮪撰滂喜篇, 以蒼頡爲上篇, 訓纂爲中篇, 滂喜爲下篇, 所謂三蒼也, 皆用隸字寫之, 隸法由茲而廣。」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2. 27쪽.

28) 開元(개원)은 당현종의 연호로 713년부터 741년까지 사용되었다.

29) 魏徵 撰, 『隋書』: 「后漢郎中賈鮪作滂喜篇。」 台灣商務出版社, 2010. 442쪽.

30) 魏徵 撰, 『隋書』: 「三蒼三卷郭璞注. 秦相李斯作蒼頡篇, 漢揚雄作訓纂篇, 後漢郎中賈鮪作滂喜篇, 故曰三蒼。」 台灣商務出版社, 2010. 442쪽.

있는 점이 『삼창』이 글씨본이었음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사민월령』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소학에서글자를 익히는 것과 동시에 『효경』과 『논어』를 읽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민월령』에 나타난 연중 교육시기와 교과목을 볼 때 소학은 기후에 따른 학제를 볼 수 있고, 대학은 농사철에 따른 학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농사철에는 수업이 없었고 농사철이 지나면 수업이 이루어졌다. 소학은 기후에 따라 글자쓰기와 독서를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즉 먹물이 얼지 않는 봄과 가을에는 글자쓰기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먹물이 얼어붙어 글자를 쓸 수 없는 겨울이 되면 책을 읽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책을 읽으려면 글자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봄과 가을에 익혔던 글자는 편장의 글자들이므로 편장은 읽을 수 있었을 것이나 그 외의 전적은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교사가 먼저 낭독하고 학생들이 그 낭독한 것을 그대로 따라 낭독하는 방식이면 독서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먼저 읽어주고 따라서 읽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글을 읽는다면 먼저 글자를 알아야 할 것이므로 소학의 교재로 채택되어 있는 서적들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한자학습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경』과 『논어』에 쓰인 글자가 학생들이 익힌 글자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독자적인 읽기는 할 수 없게 된다. 즉 『효경』과 『논어』에 쓰인 글자를 모두 알 수 있을 때까지 『효경』과 『논어』는 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학생들은 小學에 입학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에 한자공부를 하면 『효경』과 『논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왕응린은 『급취편·발문』에서

유란은 소학에 들어가 『급취편』을 썼다. 이현은 구세에 소학에 들어가서 『급취편』을 썼다. 한 달 남짓하면 곧 써대었다. 이회는 6세에 역시 『급취장』을 썼다.

하였다. 물론 개인적 학습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이면 『급취편』을 썼다고 하였으니 『급취편』의 글자를 익히는 것은 길어야 한 첩이면 익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급취편』은 총 자수가 2,144자이고 사용자는 1,719자이다. 1,719자를 한 달이면 읽고 쓰고 하였다면 3개월이면 5,157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습결과는 보통을 뛰어넘는 총명한 학생들의 학습결과로 보고, 보통의 지적능력을 갖는 학생들은 총명한 학생들의 절반정도의 학습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두 계절이면 5,157字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봄 3개월과 가을 3개월에 한자 익히기를 중점으로 교육하였다면 6개월이면 5,157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5,157자는 육예략에 등재된 經書(경서)의 약 84%를 읽을 수 있는 글자 수이다. 양웅이 『창힐편』과 『훈찬편』에서 중복된 자를 걸러내어 89장 5,340자로 『창힐훈찬편』을 만들었는데 이 『창힐훈찬편』에 반고가 13장 780자를 덧붙여 102장 6,120자의 소학서를 만들었다. 6,120자는 육예략에 등재된 서적에 쓰인 使用字(사용자)의 숫자이다. 즉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춘추』, 『논어』, 『효경』 및 소학서에 쓰인 사용자의 총수이다. 6,120자만 익히면 육예의 서적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금취편』을 익혔을 때 『논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가를 보면 『논어』는 총 자수가 15,991자이며 사용자는 1,361자이다. 『금취편』은 총 자수가 2,144자이고 사용자는 1,719자이다. 이 1,719자에서 『논어』에 사용된 자는 697자이다. 『논어』 사용자 1,361자의 약 52%이다. 한편 『효경』은 총 자수가 1,941자이고 사용자가 390자이다. 『금취편』 사용자에서 『효경』에 사용된 자는 273자이다. 『효경』 사용자 390자의 약 70%이다. 즉 『금취편』만 익혀도 『논어』의 52%정도를 읽을 수 있고 『효경』은 70%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논어』와 『효경』의 글자 수치는 필자가 직접 계산한 수치이다.

『효경』은 儒家(유가)의 十三經(십삼경) 중에서 書名에 經(경)이 붙은 최초의 經典(경전)이라 한다. 孝(효)는 유가사상의 기틀이다. 그러므로 孝를 주제로 하는 서적인 『효경』은 儒學(유학)의 기본서라 할 수 있다. 『논어』는 孔子(공자)의 어록을 기록한 책이다. 孔子는 儒學(유학)의 宗師(종사)이다. 즉 『논어』는 儒學宗師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다. 『효경』이 유학사상의 기본서라면 『논어』는 유학교육의 기본서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儒教(유교)에서 『효경』과 『논어』는 필독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儒教(유교)의 필독서를 소학에서 읽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봄과 가을에는 글자를 쓰면서 익히고 먹물이 얼어붙어 글씨연습을 못하게 되는 겨울에는 서책을 읽도록 하였던 것이다. 『사민월령』은 崔寔(최식 103년~170년)의 저서이다. 최식은 후한 제11대 황제인 桓帝(환제 재위 146년~167년) 때에 의랑에 제수된 후 오원태수와 요동태수를 거쳐 尙書臺(상서대)의 尙書(상서)를 역임한 인물이다. 상서대는 후한의 독특한 관제로 황궁에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상서대를 설치하고 황제의 조칙과 조정의 上奏(상주)를 처리하였다. 사실상 삼공의 위

에서 정무를 처리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 최식이 사적은 『후한서·최식전』에 기록되었다. 최식의 원본 『사민월령』은 망실되어 없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齊民要術(제민요술)』의 輯本(집본)이다. 『제민요술』은 북위 賈思勰(가사협 생졸 연대미상)의 저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농업전문서적이다. 가사협은 高陽郡(고양군 지금의 산둥성 치박시 림치구일대)태수를 지내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에 관한 史書(사서)의 기록이 없어 자세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 漢代(한대)에 소학에서 학동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가에 관한 기록은 『사민월령』의 기록이 유일하다. 『사민월령』의 기록으로 漢代의 小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 2) 18세기 우리나라의 소학서

18세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소학서는 『천자문』과 『십팔사략』 및 『통감절요』이다. 李德懋(이덕무 1741년~1793년)는 그의 『청장관전서』에서

우리나라는 몽학에서 반드시 먼저 通鑑과 史略을 가르친다.<sup>31)</sup>

하였다. 이덕무의 말에서 18세기 우리나라 소학의 교재가 『십팔사략』과 『통감절요』인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다산은 당시 소학의 교재인 『천자문』과 『십팔사략』 및 『통감절요』에 대하여 소학서로 부적합하므로 소학의 교재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다산시문집』은 정약용(1762년~1836년)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의 제1집으로 다산의 시문과 서평 등의 실려 있다. 『다산시문집』에서 정약용은 소학에서 학동들의 교재로 쓰고 있는 『천자문』과 『십팔사략』 및 『통감절요』에 대하여 소학에서 교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특히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류합』을 가르치는 것이 학동들의 식자학습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하였고, 『십팔사략』과 『통감절요』를 읽게 하지 말고 經書(경서)와 九家(구가)의 諸書(제서)를 읽도록 하는 것이 학동들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 바른 길이라 하였다. 다산은 『다산시문집·잡평·천문평』에서 천자문에 대하여 다음

31) 李德懋 撰, 『靑莊館全書』: 「我國蒙學必先授通史.」 <http://db.itkc.or.kr>



과 같이 평하고 있다.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만물의 속성에 따라 고안된 것이다. 어떤 글자는 사물의 모양을 그려낸 것이 있고 어떤 글자는 그 뜻을 나타낸 것이 있고 어떤 글자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 있다. 그러므로 문자는 그 부류에 따라 같은 부류와 다른 부류를 구별하고 난후에야 그 문자의 뜻을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문자는 그 중심적인 이치를 알아야 문자를 정확히 사용하는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적에는 소학에서 먼저 육서를 가르쳤다. 육서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한 것인데 어미글자에서 자식글자가 나오는 과정과 편방이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소이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서 육서를 배우면 문자의 근원과 사용되는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아, 설문, 금취장, 옥편 등이 육서의 원리가 남아있는 서적들이다. 사실 한자는 깊고 오묘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알기가 어려운 글자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용서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접하면서 익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같은 부류의 글자를 익히고 나면 다른 부류의 글자를 익혀나가는 방법으로 글자를 깨우쳐 나가게 하는 것이 한자학습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홍사가지은 천자문을 가져다가 어린학동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천자문은 소학가의 저서가 아니다. 天地(천지)라는 문자를 배우게 되면 이어서 日月(일월)星辰(성신)과 山川(산천)丘陵(구릉)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럴지 않고 天地(천지)에 속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五色(오색)에 관하여 배워야 한다고 玄黃(현황)이라는 글자를 배우게 한다. 玄黃(현황)이라는 五色(오색)의 글자를 배운다면 이어서 靑(청) 赤(적) 黑(흑) 白(백) 紅(홍) 紫(자) 緇(치) 綠(록) 등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나 이 글자들은 잠시 접어두고 宇宙(우주)를 배우라고 한다. 이것이 대체 무슨 한자 학습방법이란 말인가? 또한 雲雨(운우) 사이에 騰致(등치)를 끼워놓았는데 雲雨(운우)가 같은 의미의 글자인데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하고 있는가? 霜露(상로) 사이에는 結爲(결위)로 가로막아 놓았는데 霜(상)과 露(로)의 다름을 능히 알 수 있겠는가? 이와 같으니 어린 학동들이 배우면서도 헛갈려서 글자의 참다운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글자의 뜻도 玄(현)자는 ‘감을 현’으로 읽어 ‘끈 같은 것으로 감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 黃(황)자는 ‘누를 황’으로 읽어 ‘압력을 넣어 누른다.’는 뜻으로 곡해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 학동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같은 부류의 글자라면 의미가 연계되어서 터무니없는 뜻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류가 전혀 다른 글자를 붙여 놓으니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게 되어 玄(현)자와 黃(황)자의 새김이 ‘감고’, ‘누른다’는 뜻으로 새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盈(영)의 반대는 虛(허)이고, 仄(측)의 반대는 平(평)이다. 그런데 盈(영)이 반대로 仄(측)을 붙여 놓았다. 이것은 세로를 말하면서 가로를 깨우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歲(세)의 族(족)은 時(시)이고 陽(양)의 짝은 陰(음)이다. 그런데 歲(세)여 陽(양)이여 하고 있으니 홀로 다니고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다. 대체로 글자를 배울 때는 淸(청)으로 濁(탁)을, 近(근)으로 遠(원)을, 輕(경)으로 重(중)을, 淺(천)으로 深(심)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즉 두 개의 상이한 의미를 가진 글자를 대비시켜 두 글자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淸濁(청탁)에서 淸(청)자와 濁(탁)자를 한 글자씩 따로 배우면 그 한 글자에 치우치게 되므로 두 가지의 뜻이 다 막히게 된다. 그러니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능히 이를 깨우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사물의 유형적인 실체와 무형적인 속성과 動靜(동정)의 상태는 서로 다른 의미부류이다. 즉 江河(강하) 土石(토석)은 유형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淸濁(청탁) 輕重(경중)은 사물의 무형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渟流(정류) 隕突(운돌)은 사물의 動靜(동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글자는 쓰임에 따른 부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류에 따른 분류가 되지 않으므로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어 볼뿐으로 옆의 글자가 어떤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천자문을 읽었다 하여도 한 자도 분명히 아는 자가 없는 것이다. 천자문이 쓰일 곳은 전답을 표시하거나 試券(시권)의 표시에나 쓸 정도이다. 그러한데 어떻게 소학의 교재로 쓸 수 있겠는가? 爾雅(이아)와 說文(설문)을 가르치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면 서거정의 類合(류합)을 교재로 하는 것이 爾雅(이아)와 說文(설문)을 가르치던 때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류합』은 『급취편』의 체례를 모방하여 지은 한자학습서이다. 수록자는 1,520자이며 4언구 380구이다. 같은 부류의 글자를 모아 종류별로 수록하였다. 책의 첫머리는 숫자부터 시작되었다.

壹貳參肆(일이삼사) 伍陸柒捌(오륙칠팔) 玖拾佰仟(구십백천) 萬億能察(만억능찰) 字劃初知(자획초지) 算數可達(산수가달) 天覆地載(천복지재) 乾坤分位(건곤분위) 東西南北(동서남북) 上下中外(상하중외) 左右前後(좌우전후) 邊隅裏內(변우리내)

이상은 첫 구에서 제12구까지의 原文(원문)이다 이 원문을 보면 어떤 체례로 수록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다산이 『천자문』이 식자학습서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은 『천자문』이 소학서로 저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자문』은 4언구의 문장이다. 문장은 글자를 익히고 난 다음단계의 학습영역이다. 다산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산이 소학서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의미집단의 글자를 모아 의미적 연계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지닌 글자들을 대비시켜

32) 丁若鏞 撰, 『茶山詩文集』: 「文字之興所以類萬物也或以其形或以其情或以其事必觸類而旁通之竭其族別其異而後其情理粲然而文心慧竇於是乎開發故古者小學必先之以六書之教即子母相生之法偏旁離合之制是講是明以達其源委若爾雅說文急就章玉篇之類皆其遺也是諸文字皆古奧難雖然其在當時不以幼小而恕之皆所以觸類旁通竭其族別其異以啓其文心慧竇也我邦之人得所謂周興嗣千文以授童幼而千文非小學家流也學天地字乃日月星辰山川丘陵未竭其族而遽舍之曰姑舍汝所學而學五色學玄黃字乃青赤黑白紅紫緋綠未別其異而遽舍之曰姑舍汝所學而學宇宙斯何法也雲雨之間騰致介之能竭其族乎霜露之間結爲梗之能別其異乎夫如是也故童幼眩瞶不辨旨義解玄爲纏釋黃爲壓非是兒之不才由不能觸類而旁通也盈之反虛也仄之反平也以盈對仄豎說而衡喻非其類也歲之族時也陽之耦陰也曰歲曰陽孤行而寡居非其類也大凡文字之學淸以喻濁近以喻遠輕以喻重淺以喻深雙舉以胥發之則兩義俱通單說而偏言之則兩義俱塞自非上慧能有喻乎又凡有形之物與無形之情其類不同無爲之情與有爲之事其類不同江河土石形之名也淸濁輕重其情也渟流隕突於斯爲事也不以類而觸之不能旁通如是也故讀千文已猶一字不知也千文有用處以之標田以之標試卷焉可也於小學何與苟爾雅說文不可復徐居正之類合猶其近者也。」 <http://db.itkc.or.kr>

글자의 뜻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구성한 소학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학동들이 배우는 『천자문』 보다는 『류합』을 가르치는 것이 글자를 익히는데 효과적이라 한 것이다. 다산은 『십팔사략』과 『통감절요』에 대해서도 소학서로서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였다. 다산은 『십팔사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어린 학동들을 깨우치는 방법은 분별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계발시켜주는 것이다. 분별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키워지면 一字(일자)一句(일구)에서도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는 식견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비록 다섯 수레에 넘치는 만권의 책을 독파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아무것도 읽지 않은 것과 같게 된다. 나는 이른바 천황씨를 알지 못한다. 임금인지 목동인지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나무에 무슨 덕이 있어서 이 천황씨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攝提(섭제)가 무슨 물건이어서 한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며, 化(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이며 化(화)한 것은 무슨 물건이란 말인가? 형제라는 것은 한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황씨에게 부모가 있을 것이나 부모의 이름이 없이 천황씨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다. 천황씨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형제가 12명이라 하였는데 맏형이 천황이면 동생은 천황이 아니다. 만약 형제가 차서대로 이어서 천황이 되었다하여도 어떻게 재위 연수가 모두 다 일만 팔천 년으로 같다는 말인가? 元會運世(원회운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묘망한 말이어서 결코 어린 학동들이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한데 어째서 그것을 가르치려드는가? 어린 학동들이 입학하여 처음 공부할 때에 玄黃(현황)이라는 글자를 배우고, 鳥獸(조수)라는 글자를 배우고, 또 飛走(비주)라는 글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黃鳥于飛(황조우비)’라는 문구를 가르치면 학동들이 그 문구의 뜻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글자를 엮어서 문장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글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서 스스로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문자를 대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고, 학습에 취미를 붙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공부는 그렇지 못하다. 草木(초목)이라는 글자를 배우고, 德行(덕행)이라는 글자를 배우고 또한 帝王(제왕)이라는 글자를 배웠는데 ‘木德王(목덕왕)’이라는 문구를 가르치면 어린학동들이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앞서서 이르기를 草木(초목)과 帝王(제왕)이 하나의 문장법이라 하고 지금은 ‘木德王(목덕왕)’이 또한 하나의 문장법이다 하니 저것을 들어 여기에 안배하는 것을 일찍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글을 깨우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제들은 어릴 적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 『예기』에 이르기를 ‘어린 자식은 항상 부모를 보기 때문에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 말은 어린 학동들은 보고 듣고 하며 배우는 것이므로 사소한 언행이라도 삼가고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은 글을 처음 배우는 학동들에게 괴상하고 황당하며 헛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학동들이 능히 학문의 길을 깨우쳐 나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옛적에 서적은 3세에 『효경』을 읽었다 하고, 소대환은 4세에 『효경』과 『논어』를 읽었다 하며, 마추는 6세에 『효경』과 『논어』를 읽었다 하고, 임방은 4세에 『모시』를 읽었다 하며, 유고는 6세에 『모시』와 『논어』를 읽었다 하고, 소명태자 소룡은 5세

에 오경을 읽었다 하며, 고야왕은 7세에 오경을 읽었다 하고, 장패는 7세에 『춘추』를 읽었다 하며, 가규는 10세에 육경을 읽었다 하고, 황정전은 8세에 오경 및 『논어』와 『맹자』를 읽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시습이 5세에 『증용』과 『대학』을 읽었고, 유형원이 8세에 『서경·우공』을 읽었다고 하였다. 비록 총명한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보다 일찍 깨우치는 바가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그들이 능력이 탁월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린학동을 가르치는 학습방법이 먼저 가르칠 것과 나중에 가르칠 것을 선별하여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朱子(주자)의 교육방법도 여덟 살에 입학하면 곡례, 소의, 내칙, 제자직 등 여러 편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황씨가 들어 있는 문장은 단 한 장도 거론조차하지 않았다.<sup>33)</sup>

『십팔사략』은 중국의 정사인 『사기』에서부터 『송사』까지 18대의 史書(사서)에서 읽을 만한 것을 간추려 놓은 것이라 한다. 저자는 증선지라 하는데 증선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것이 없다. 앞서 언급된 이덕무의 ‘우리나라는 몽학에서 반드시 먼저 통감과 사략을 가르친다.’는 말과 같이 『십팔사략』은 『통감절요』와 함께 조선에서 소학의 필독서였다. 다산이 『십팔사략』을 폄하하여 비판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내용에 대한 것이다. 『십팔사략』의 첫머리가 천황씨로부터 시작된다. 그 문장을 보면

天皇氏以木德王歲起攝提無爲而化兄弟十二人各一萬八千世(천황씨이목덕왕세기섭제무위  
이화형제십이인각일만팔천세)

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천황씨는 목덕으로 왕이 되었다. 한 해는 섭제에서 시작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다 되었다. 형제가 12명인데 각각 일만 팔천세를 살았다.’는 말이다. 다산은 이 문장을 이치에 닿지 않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 비판한 것이다. 천황씨는 전설속의 가공인물이니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산이 천황씨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33) 丁若鏞 撰, 『茶山詩文集』: 「牖蒙之法在乎啓發其知識知識之所及卽一字一句皆足以爲文心慧竇之鑰知識之所不及雖傾五車而破萬卷猶無讀也吾不知所謂天皇氏者君乎牧乎鬼神乎人類乎木有何德令此氏王攝提何物歲由此起化之云何所化者何物若云兄弟是本同胞卽此天皇厥有父母不名首出若云首出云何兄弟至於十二兄爲天皇弟卽非是若云殷及何年祚之短長若是相同元會運世本既眇芒斷斷非初學童幼所能曉者何爲教之童幼入學之初學玄黃字學鳥獸字又學飛走字於是乎授一句曰黃鳥于飛此兒知屬文之法本當如此文心慧竇暗自開發津津然樂於文字今也不然學草木字學德行字又學帝王字於是乎授一句曰木德王字此兒其喻乎將謂曩也草木帝王自一法今也木德王又自一法舉彼措斯曾莫之或知文心慧竇其有啓乎且教訓子弟罔不在厥初生禮曰幼子常視毋誑以謹微也今發軔之初則授之以虛荒怪誕無理之說望其能認得乎昔徐積三歲讀孝經蕭大圜四歲讀孝經論語馬樞六歲讀孝經論語任昉四歲讀毛詩劉敞六歲讀毛詩論語昭明太子蕭統五歲讀五經顧野王七歲讀五經張霸七歲讀春秋賈逵十歲讀六經黃庭堅八歲讀五經論孟卽至我邦金時習五歲讀中庸大學柳馨遠八歲讀禹貢雖其聰慧夙悟非夫人之所能當時訓蒙之法所先所後有可知也卽朱子教人之法亦八歲入學授之以曲禮少儀內則弟子職諸篇于天皇氏一章議未到也。」 <http://db.itkc.or.kr>

위 문장에서 ‘以木德王(이목덕왕)’은 五行相勝說(오행상승설)의 논리이다. 오행상승설은 추연<sup>34)</sup>의 학설이다. 오행상승설은 오행인 土(토) 木(목) 金(금) 火(화) 水(수)의 기운이 순환과정 이론이다. 즉 土의 기운을 木이 눌러 世運(세운)을 木이 차지하고, 木의 기운을 金이 눌러 世運을 金이 차지하며, 金의 기운은 火가 눌러 火가 世運을 차지하고, 火의 기운은 水가 눌러 水가 世運을 차지하게 되고, 水의 기운은 土가 눌러 土가 다시 世運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오행상승순환이론이다. 이러한 오행상승론에 의거하여 소위 천황씨가 木德(목덕) 즉 木이 土를 눌러 木의 世運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산은 이 문구를 허황된 말이라 하는 것이다. 천황씨는 전설상의 이야기이다. 木德(목덕)은 역사시대 그것도 전국시기 말엽 陰陽家(음양가)의 이론이다. 전국시기 말기의 이론을 전설에 갖다 붙여놓고 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위 문장에서 ‘攝提(섭제)’는 이십팔수의 성좌로 동방칠수 가운데 두 번째 성좌인 항수에 속한 별자리이다. 섭제는 사시와 절기를 관장하는 성좌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歲時(세시)가 섭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다산은 ‘歲起攝提(세기섭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라 매도하고 있다. 다산이 살던 시대는 실학사상이 풍미하던 시대로 실사구시의 학문적 풍토가 일던 시기이다. 그러한 시기에 별자리가 세시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문장에서 ‘無爲而化(무위이화)’는 道家(도가)의 무위사상을 이르는 것이다. 道家(도가)의 무위사상은 儒家(유가)의 有爲思想(유위사상)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념이다. ‘無爲而化(무위이화)’는 『노자』의

我無爲而民自化(아무위이민자화)

를 줄인 문구이다. 다산이 ‘無爲而化(무위이화)’가 『노자』의 ‘我無爲而民自化(아무위이민자화)’를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化(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이며 化(화)한 것은 무슨 물건이란 말인가?’하고 일갈한 것은 아닐 것이다. ‘無爲而化(무위이화)’는 학동들이 읽어서 이해하거나 교훈이 되거나 하는 문구가 아니다.

34) 鄒衍은 중국의 九家학파의 하나인 陰陽家의 시조로 알려진 인물이다. 생물연대는 미상이나 燕나라의 昭王(재위 BC.311년~BC.279년)이 鄒衍을 스승으로 섬겼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惠王(재위 BC.278년~BC.272년)때에 참소로 투옥되는 곤욕을 치렀다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戰國시기 末期의 학자로 보인다. 鄒衍에 관한 기록은 『史記·孟子荀卿列傳』에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문장구성에서도 ‘無爲(무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접속사인 而(이)를 이어 化(화)라고만 적어 놓으면 무엇을 化(화)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산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장구성상의 문제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문장에서 ‘兄弟十二人各一萬八千世(형제십이인각일만팔천세)’에 대해서는 사실 논평할 필요조차 없는 말이다.

위 문장 중 ‘元會運世(원회운세)’는 邵雍(소옹 1011년~1077년)의 천지개벽주기가론이다. 소옹은 첫 번째 천지개벽에서부터 다음의 천지개벽까지의 기간을 129,600년이라 하고 129,600년을 一元(일원)이라 하였다. 즉 천지개벽은 129,600년을 주기로 순환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元會運世(원회운세)는 우주의 시간 표기이다. 지구의 시간이 時日月年으로 표기되는 것과 같이 우주의 시간을 世(세) 運(운) 會(회) 元(원)으로 표기하였다. 소옹이 있던 당시의 시간은 하루가 12시간이다. 한 달은 30일이다. 일 년은 12달이다. 즉 12시간 30일 12개월이 1년의 시간단위이다. 이 1년의 시간단위를 우주시간에 대입시켜 우주의 시간을 世(세)라하고 30년을 1世로 하였다. 또한 우주의 하루를 運(운)이라 하고, 우주의 한 달을 會(회)라 하고, 우주의 1년을 元(원)이라 하였다. 따라서 우주의 1년인 129,600년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1世인 30년 × 하루12시간 = 360년으로 運이고, 360년인 運 × 한 달 30일 = 10,800년인 會이고, 10,800년인 會 × 1년 12개월 = 129,600년으로 元이다. 이렇게 우주의 1년이 元이므로 1년의 주기에 따라 元이라는 시간에 이르면 다시 다음 元會運世(원회운세)가 시작된다. 이 새로운 元會運世(원회운세)가 시작되는 것이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주는 元會運世(원회운세)의 순환주기에 따라 천지개벽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茶山은 ‘元會運世(원회운세)’라는 것이 황당무계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이를 가르쳐도 학동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헛된 소리를 가지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동들을 가르치는 교재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모시』, 『서경』, 『춘추』, 『효경』, 『논어』, 『중용』, 『대학』, 『맹자』 등 經典(경전)과 四書(사서)이다. 다산이 제시하는 것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자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가르치는 노력이면 이미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經典(경전)이나 四書(사서)를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교육방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통감절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어린학동들이 글을 읽는 것은 대개 9년이 된다. 즉 8세에서 16세까지가 글을 읽는 기간이다. 그러나 8세에서 11세까지는 지식수준이 낮으므로 글을 읽어도 그 참의미를 모른다. 그런데 15세나 16세에는 陰陽(음양)을 알게 되고 즐기는 놀이와 외물욕이 생겨서 마음이 산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간은 12세에서 14세까지 3년간이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에도 여름에는 더위로 글을 읽기가 괴롭고, 봄과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 소년학동들이 놀기에 좋은 계절이 된다. 그러니 실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간은 9월에서 2월까지 180일 정도가 되는 것인데 글을 읽는 삼년을 통계하면 540일이 된다. 이 540일 가운데에는 세시에 따른 휴일이 있고 질병이나 기타 우환으로 책을 들지 못하는 날이 있으므로 기실 글을 읽는데 전념할 수 있는 날수는 대략 300일이다. 그러니 이 300일은 하루하루가 진주알 같고 금옥과 같은 날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학동들은 모두가 소미선생의 『통감절요』 15책 한 질을 읽는데 이 300일을 모두 채우고 있다. 즉 평생 읽은 글이 이 『통감절요』 한 질로 마감 되는 것이다. 『통감절요』를 읽는 중간에 째짤이 비록 다른 서적을 읽었다 하여도 온전히 집중하여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글을 읽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소미선생이란 사람은 도학문장으로 명성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너 집이 모여 사는 촌락에서 서당훈장입네 하고 都都平丈(도도평장)하는 사람이다. 『통감절요』는 조선에서 200년을 이어오며 마치 六經(육경)과 같이 받들어지고 五典(오전)과 같이 높임을 받았는데 도대체 『통감절요』에 무슨 대단한 뜻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일찍이 박차수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연경에 가게 되었는데 입경하자 서점을 두루 돌아다니며 증선지의 『십팔사략』과 강씨의 『통감절요』를 구하였는데 이 두 책은 볼 수가 없었다. 홍유석사로 해내에 명성이 높은 학자들도 이 책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그 책이 서점에 있어본 적이 없는듯하다. 그러니 그 책이 어느 시대에 나온 책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책이 우연히 동쪽 땅에 떨어져서는 어린학동들에게서 六經(육경)으로 받들어지고 百家(백가)는 티끌이나 쪽정이 같이 취급되어 마침내 동쪽 땅의 사람들은 종신토록 허망한 글속을 헤매며 몽매한 평생을 보내게 되고 마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통감절요』는 사마공의 『자치통감』을 원본으로 하면서 범례는 주자의 강목을 쓰고 있다. 삼국시대의 정통을 축한으로 하면서 기사는 조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주객이 바뀌고 王賊(왕적)이 도치되는 등 책의 내용이 맞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용이 이와 같으니 중국에서 어떻게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내용이 틀린 것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연월일도 틀리게 되어서 모두 사실과 괴리되니 사실 논할 여지조차 없는 책이다. 사람들이 낳은 자식의 신체가 온전하고 총명하면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서 문장도 될 수 있고 도학의 대유도 될 수 있다. 아이가 십 이삼세가 되었을 때 바라보면 마치 난새가 멈추어 선 듯하고 고니가 우뚝 선듯하다. 이러한 존재들을 아무 쓸모없는 책속에 빠뜨려야 되겠는가? 대저 사람의 본성은 옛것은 싫어하고 새것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배를 먹다가 굴을 먹으면 그 맛이 새롭고, 푸른색을 보다가 붉은 색을 보면 그 색상이 분명해 보인다. 연가가 비록 듣기 좋은 곡이나 자꾸 부르면 싫증이 난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것도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좌전』, 『국어』, 『한서』, 『사기』, 『논어』, 『맹자』 등과 같은 유가의 정통적인 서적과 『장자』, 『이소』와 같은 초학(기서)를 달마다 번갈아

가며 읽거나 시간에 따라 바꾸어 가며 읽게 하면서 봄이 다하였으면 가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면 마치 산 너머에 또 다른 경치의 산이 있고 물 건너에 또 다른 맑은 물이 있음 같으며 버들이 우거진 그늘을 지나서 화사한 꽃이 만발한 마을을 가는 듯 할 것이니 높고 먼 길을 섭렵하며 나아가도 그 피로를 모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글을 읽는 것이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금년에도 소미의 통감을 읽고 내년에도 소미의 통감을 읽을 것이며 내후년에도 소미의 통감을 읽을 것이니 천리장정에 동반자 하나 없이 홀로 가는 것과 같고 내를 하나 건너니 또 그 내가 나오는 것과 같고 고개를 하나 넘으니 또 그 고개를 만나는 것과 같으니 걸음마다 하찮이요 갈수록 나른하고 맥이 풀리기만 하는 것이다. 비록 소계자와 같은 입지를 가지고 사마상여와 같은 독서를 즐기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엄증 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자는 일찍이 없었다. 진실로 세상의 慈父(자부)라면 六經(육경)을 가르치고 四書(사서)를 가르치며 부수적으로 九家百家(구가백가)도 섭렵하게 하여 그 300일 동안에 本領(본령)이 서면 비로소 사마광의 『자치통감』과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을 읽으면서 글의 지닌 깊은 뜻을 상세히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혹 자신의 뜻한 바가 있으면 비교적 기록이 분명한 사실을 발췌하여 별도로 年表(연표)를 작성하고 사실과 기년을 정리하면 고금의 역사적 治亂(치란)의 근원이 무엇인지 꿰뚫어 알게 될 것이므로 상하에 미칠 득실의 근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데 어찌 저들에게 줄음에 겨워 책장을 덮고 잠들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통감』 한 권만 읽으면 학동들의 문리가 트인다고 미혹하는 소리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통감』 한 권을 읽는 노력이면 六經(육경)과 九家(구가)의 제서를 다 읽을 수 있는 것이다. 六經(육경)과 九家(구가)의 제서를 다 읽은 학동들과 『통감』 한 권만 읽은 학동들의 깨우친 문리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소를 탄 사람이 하루 종일 채찍질 하여 겨우 들판을 지나면서 호탕하게 웃으며 이르기를 땅을 다니는 것은 소만한 것이 없다 하고 큰소리를 치고 있을 때 준마를 타거나 騷駟(늑이)<sup>35)</sup>에 멩에를 하였다면 이미 蒼梧<sup>36)</sup>(창오)를 지나 玄圃<sup>37)</sup>(현포)에 닿았을 것이다. 몰라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sup>38)</sup>

- 35) 騷駟(늑이)는 주(周) 목왕(穆王)의 팔준마(八駿馬) 중 하나로 하루에 천리를 달려간다고 한다.
- 36) 蒼梧(창오)는 중국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의 동남쪽에 있는 지방으로 순(舜) 임금의 남방을 순행하다가 붕어(崩御)하였다는 곳이라 한다.
- 37) 玄圃(현포)는 중국(中國) 곤륜산 선인(仙人)이 산다는 곳으로 전설(傳說)상의 땅이다.
- 38) 丁若鏞 撰, 『茶山詩文集』: 「童穉讀書概用九年自八歲至十六歲是也然八歲至十一歲知識大抵蒙駟讀書不知味十五十六已有陰陽嗜好諸物愆分心其實二十三十四此三年爲讀書日月然此三年之中夏苦熱春秋多佳日童穉好嬉游皆不能讀書唯自九月至二月一百八十日爲讀書日字通計三年爲五百四十日又除歲時娛樂及疾病憂患之害其實幸而讀書者大約三百日也此三百日顆顆珍珠箇箇金玉而朝鮮之童皆以少微先生通鑑節要十五冊充此三百日之糧即平生讀書止此一帙其餘雖讀他書皆汗漫不能專不足數也少微先生不以道學文章稱不過三家村裏都都平丈也二百年來奉之如六經尊之如五典何意哉曾聞朴次修之言曰入燕京徧行書肆問求兒曾先之史略江氏通鑑節要不可見即鴻儒碩士名噪海內者皆茫然不知爲何書蓋中國絕種久矣不知何代此書偶落東土使弁髦六經塵批百家遂以幽莽終身哉其書以司馬公資治通鑑爲藍本乃其義例反用朱夫子綱目其在三國正統予蜀漢記事主曹魏主客互換王賊倒置於義無所當著書如此尙可以傳之後乎其他年月之訛舛事實之乖繆指不勝僂可無論已人家生兒子眉目端秀聰慧絕羣教之如法可以爲文章可以爲道學年方十二三望之若鶩停鵠峙可令此兒沈淪於此書乎大凡人性莫不厭久而喜新檀黎橙橘易之則齒津黛綠朱履易之則眸明燕歌雖好累唱則有欠伸者矣故詩書易禮左國班馬論孟之正莊騷之奇月易而時更春終而秋始譬如山重水複柳暗花明窮源者不知其勞陟遐者不知其疲如之何其不于文耽嗜也今也不然今年少微通鑑明年少微通鑑又明年少微通鑑譬如千里長程無伴獨往涉一川仍是一川越一嶺又遭一嶺步步欠伸去去萎茶雖以蘇季子之立志司馬相如之好讀未有不厭然自廢者誠使世之慈父授之以六經教之以四書副之以尤流百家使其三百日之內本領既立始取涑水通鑑紫陽綱目玩繹詳味或另以己意采其英華或別作年表整其綱紀則于達



『통감절요』는 송나라 徽宗(휘종 재위 1100년~1125년) 때에 江贄(강지)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을 간추려 엮은 책이다. 『자치통감』은 司馬光(사마광 1019년~1086년)이 편찬한 중국 16대 왕조의 편년체 역사서이다. 周(주)나라 威烈王(위열왕 재위 BC.425년~BC.402년)23년에 晉(진)나라가 韓(한), 魏(위), 趙(조) 三國으로 분할되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三家分晉(삼가분진)이라 하며, 이때부터 戰國時期(전국시기)가 된다. 이때가 BC. 403년이다. 이로부터 五代十國(오대십국)시기의 後周(후주)가 멸망한 960년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편찬한 것이 『자치통감』이다. 『자치통감』은 「주기」 5권, 「진기」 3권, 「한기」 60권, 「위기」 10권, 「진기」 40권, 「송기」 16권, 「제기」 10권, 「양기」 22권, 「진기」 10권, 「수기」 8권, 「당기」 81권, 「후량기」 6권, 「후당기」 8권, 「후진기」 6권, 「후한기」 4권, 「후주기」 5권 등 294권으로 구성되었다. 『통감절요』는 『자치통감』의 294권을 50권으로 줄여 놓은 것이다. 다산은 『통감절요』가 소학의 필독서로서 가치가 없을뿐더러 작자에 대해서도 매우 폄하하고 있다. ‘都都平丈(도도평장)’은 학문도 없는 자가 훈장으로 학동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비난하는 말이다. 이 말은 『요재지이』에 나오는 말이다. 『요재지이·장공사』에

詩云子曰(시운자왈)을 모두 휴강한 것은 都都平丈(도도평장)하는데 불과하였기 때문이다.<sup>39)</sup>

라고 하였다. 위 문장의 ‘詩云子曰(시운자왈)’이라는 것은 ‘詩云’은 『詩經』을 말하며 ‘子曰’은 『論語』를 말한다. ‘都都平丈(도도평장)’은 『논어·팔일』의 문구인 ‘郁郁乎文哉(옥옥호문재)’를 ‘都都平丈我(도도평장아)’로 읽었다는 말이다. 즉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훈장이 되어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는 세대를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郁郁乎文哉(옥옥호문재)’는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자왈 주감어이대 옥옥호문재 오종주) 공자가 이 르기를 ‘주나라는 하대와 은대의 문화를 거울삼았으니 주나라의 문화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나는 주나라의 문화를 따르려한다.’

는 문구 중 일부이다. ‘都都平丈(도도평장)’하는 자로부터 일어나는 폐해가 어떠한가

古今治亂之源求上下得失之本豈若彼睡中塞課哉有一夫爲之說以惑之曰讀了通鑑一部兒輩必得文理嗟乎誠以讀了此一部之力讀六經諸書與之相等其文理又可勝言哉騎牛者終日而箠之董翬適莽蒼且輾然自賀曰行地莫如牛不知乘快驥而駕駉駉已蒼梧玄圃矣何其愚哉。」 <http://db.itkc.or.kr>

39) 蒲松齡 撰, 『聊齋誌異』: 「詩云子曰都休講,不過是都都平丈。」上海古籍出版社, 2011. 1175쪽.

를 풍자하고 있는 기사가 중화독서보에 게재되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 서당 훈장이 논어를 가르쳤는데 ‘郁郁乎文哉(옥옥호문재)’를 ‘都都平丈我(도도평장아)’로 읽었다. 후일 새로운 선생이 오게 되었는데 그 선생은 ‘郁郁乎文哉(옥옥호문재)’를 바르게 읽었다. 그러자 서당에 있던 학동들이 부산스럽게 모두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조롱하였다. ‘都都平丈我(도도평장아)로 읽었을 때에는 서당에 학동들이 가득하였는데, 郁郁乎文哉(옥옥호문재)로 읽었더니 서당에 학동들이 하나도 없이 텅 비었구나!’ 하였다. 지금은 자신의 아이들이 경서와 시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실력을 갖춘 선생이 있을 것인가?<sup>40)</sup>

이 기사는 어린 학동시절의 교육의 중요성과 참다운 실력을 갖춘 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산이 『통감절요』의 저자인 강지를 ‘都都平丈(도도평장)’하는 자라 한 것은 『통감절요』의 내용이 학문이 있는 자의 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뿐더러 ‘都都平丈(도도평장)’하는 자가 끼치는 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학문수준은 ‘都都平丈(도도평장)’하는 자가 쓴 『통감절요』를 珍書(진서)인양 취급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다산은 『통감절요』를 읽을 시간에 『詩經』, 『書經』, 『易經』, 『禮記』, 『左傳』, 『國語』, 『漢書』, 『史記』, 『論語』, 『孟子』, 『莊子』, 『離騷』 등을 읽도록 할 것을 중용하면서 六經(육경)과 九家(구가)의 제서를 다 읽은 학동들과 『통감』 한 권만 읽은 학동들의 깨우친 문리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文理(문리)란 글속에 있는 이치를 말한다. 따라서 문리가 트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장을 읽을 지라도 그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러한 능력은 많은 종류의 문장을 탐독하였을 때 얻어지는 능력이다. 특히 한문은 문맥에 의하여 사용된 한자의 뜻이 결정된다. 문맥이란 글의 맥락을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맥을 짚어내지 못하면 한문의 문장은 讀解(독해)할 수 없게 된다. 문리가 트인다는 것은 문장의 맥락을 짚어내는 식견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하다. 학문의 기초는 글을 아는 것이고 글을 알아 독서를 하게 되면 문리가 트이게 된다.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탐구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문리가 트이게 된다는 것은 글을 읽어서 그

40) 光明网『中華讀書報』: 「有塾师授论语郁郁乎文哉念成了都都平丈我后来新塾师念郁郁乎文哉学生都駭散时人为诗嘲曰都都平丈我学生满堂坐郁郁乎文哉学生都不来今天越来越多的家长要让孩子多诵古诗文然而谁才是够格的老师」 <https://www.guoxue.com>

글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으로 사물의 내재적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습시켜야 할 것은 문리가 트이도록 하는 학습이다. 문리가 트일 수 있도록 하려면 九家(구가)의 제서를 다양하게 읽도록 하는 것이다. 다산이 제기하고 있는 소학에서의 교재개선 주장은 지극히 온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 III. 『금취편』의 전서

『금취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기의 소학서이다. 서한 元帝(원제 재위 BC.49년~BC.33년)때에 황문령 사유의 저서이다. 현행 『금취편』은 안사고의 주석과 왕응린의 보주가 있는 가필본 『금취편』이다. 『금취편』이 현재까지 전해져 온 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갈래로 전해져 온 것이 드러난다. 그 하나는 注解書(주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法書本(법서본)이다. 주해서는 『금취편』의 字句(자구)에 대한 주석서이고, 법서본은 書法家(서법가)<sup>41)</sup>들의 墨蹟(묵적)을 서첩으로 만든 것을 이른다. 주해서와 법서본이 전해져 오면서 판각이 이루어졌는데 이 판각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인쇄본 『금취편』이 나온 것이다. 『금취편』이 저술된 서한 이후 현재까지의 전해진 과정을 史書(사서)의 기록과 기타 典籍(전적)의 기록에 따라 주해서와 법서본으로 나누어 그 傳書(전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금취편』 주해서

『금취편』은 서한 元帝(원제 재위 BC.49~BC.33)때에 황문령 사유의 저작이므로 成書(성서)시기가 서한 중후반에 해당한다. 왕망이 찬위로 서한이 멸망한 해가 AD. 8년이고,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AD. 9년에서 AD. 23년까지 15년간 존재하였다. 경시제가 AD. 23년에서 AD. 25년까지 3년간 잠시 제위를 이었고, AD. 25년에 광무제가 후한을 열었다. 이 후한에 들어서 첫 번째 『금취편』 주해서가 曹壽(조수)의 저술로 등장하고 있다. 『금취편』 주해서의 저작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후한시기

41) 서법은 서예를 이른다. 한국에서는 붓글씨를 서예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서법이라 한다. 따라서 법첩이라는 것은 서첩을 이르는 것이다.

후한시기의 주해서는 조수 『급취장』 1권이다.

### (1) 조수 『급취장』 1권

본서는 『구당서·경적지』에 수록되었다.

『急就章』一卷 史游撰. 曹壽注解.(『급취장』 일권 사유찬. 조수주해.)<sup>42)</sup>

저자인 조수에 관한 기록은 사서에는 기록이 없다. 조수가 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음의 『고금문자지목』에 고금 소학 37가 147인이 기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진나라, 한나라, 오나라 사람 59인이 명단이 열거되었고 조수가 崔瑗(최원 77년~142년)과 崔寔(최식 約103년~170년)사이에<sup>43)</sup> 기록이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수는 후한 중기 때의 사람이다. 조수의 『급취장』 주해서는 『구당서·경적지』의 기록에만 남아 있다.

## 2) 남북조시기

남북조시기에는 최호, 유방, 두로씨의 주해서가 있다.

### (1) 최호 『급취장』 2권

본서는 『수서·경적지』에 수록되었다.

『急就章』二卷. 崔浩撰述.(『급취장』 이권. 최호 찬술.)<sup>44)</sup>

저자인 崔浩(최호 381년~450년)는 北魏(북위) 초기의 정치가이다. 『위서·최호열

42) 劉昫 等撰, 『舊唐書』: 「急就章一卷 史游撰 曹壽解.」 中華書局, 1975. 754쪽.

43) 王愔 撰, 『古今文字志目』: 「古今小學三十七家, 一百四十七人, 書勢五家. 中卷 秦·漢·吳 五十九人. 李斯, 程邈, 胡毋敬, 趙高, 司馬相如, 張敞, 嚴延年, 漢元帝, 史游, 劉向, 孔光, 爰禮, 揚雄, 陳尊, 杜林, 劉睦, 衛宏, 劉党, 曹喜, 杜度, 王次仲, 班固, 徐幹, 賈逵, 賈鮪, 左姬, 許慎, 崔瑗, 唐縱, 曹壽, 崔寔, 尹珍, 羅暉, 趙襲, 張超, 皇甫規妻, 李巡, 蔡邕, 張芝, 蘇班, 劉德升, 師宜官, 姜詡, 梁宣, 張昶, 梁鵠, 張紘, 毛弘, 左伯, 魏武帝, 邯鄲淳, 魏颯, 鍾繇, 張昭, 蘇林, 張揖, 胡昭, 杜恕, 諸葛融.」 <http://baike.baidu.com/view/971831.htm>

44) 魏徵 撰, 『隋書』: 「急就章 二卷 崔浩撰」 台灣商務出版社, 2010. 401쪽.

전』에 따르면 젊어서 학문을 좋아했고, 경사백가에 두루 통달했으며, 천문과 역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도무제가 글에 능하다 하여 항상 곁에 두었으며 관위는 시중을 거쳐 사도를 역임하였으며 당시 軍國(군국)의 중요한 안건은 모두 그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시행되었다고 하여 그의 정치적 영향이 매우 컸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금취장』에 관한 기록으로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하나는 『금취장』의 주해에 관한 기록과 다른 하나는 『금취장』을 필사한 기록이다. 『금취장』의 주해에 관한 기록은

최호가 표문을 올려 태종 즉위 원년에 칙명으로 『금취장』, 『효경』, 『논어』, 『시경』, 『상서』, 『춘추』, 『예기』, 『주역』을 주해하도록 하였으므로 3년에 걸쳐 주해를 마쳤습니다.<sup>45)</sup>

라고 하였고, 『금취장』을 필사한 기록으로는

최호는 서법에 능했다. 많은 사람들이 『금취장』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부탁을 하였는데 필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써주기 시작한 것이 백 수편에 이르렀다. 필사본에는 반드시 ‘馮代強(풍대강)’이라 써서 감히 犯國(범국)하는 일이 없도록 교시하였으니 최호의 신중함이 이와 같았다.<sup>46)</sup>

하였다. 이 기록 중 ‘반드시 ‘馮代強(풍대강)’이라 썼다’는 문구는 성명장 원문번호 제018번 馮漢強(풍한강)을 ‘馮代強(풍대강)’으로 썼다는 것이다. ‘漢強(한강)’에 대한 안사고의 주석이 ‘本朝(본조)에 충성하다’이다. 즉 ‘馮漢強(풍한강)’은 漢朝(한조)에 충성한다는 말이고, ‘馮代強(풍대강)’은 魏朝(위조)에 충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代(대)는 北魏(북위)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던 代國(대국)을 말한다. 代國은 척발기르가 晉朝(진조)로부터 封地(봉지)로 받은 땅이다. 탁발기르가 代國의 王으로 봉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선비족의 한 부족인 탁발부가 세력을 불리게 되었고, 그 후손인 탁발규가 稱帝(칭제)하면서 국호를 魏(위)라 하였다. 그러므로 ‘代強(대강)’은 곧 ‘魏強(위강)’이 되는 것이다. 『위서·최호열전』은 다른 史書(사서)에 비해 『금취장』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45) 魏收 撰, 『魏書』: 「表曰 太宗即位元年 敕臣解急就章 孝經 論語 詩 尚書 春秋 禮記 周易 三年成訖」 中華書局, 2011. 341쪽.

46) 魏收 撰, 『魏書』: 「浩既工書 人多託寫急就章 從少至老 初不憚勞 所書蓋以百數 必稱 馮代強 以示不敢犯國 其謹也如此」 中華書局, 2011. 342쪽.

## (2) 유방 『금취편속주음의증』 3권

본서는 『위서·유방열전』에 수록되어 있다. 劉芳(유방 452년~513년)은 북위 제8대 황제 宣武帝(선무제 재위 499년~515년)때에 청주자사와 태상경을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經義(경의)에 정통했고, 音訓(음훈)에 뛰어나 經典(경전)의 音訓에 관한 저술이 많다. 『위서·유방열전』에

유방이 정현 주 『주관의례음』, 간보 주 『주관음』, 왕숙 주 『상서음』, 하휴 주 『공양음』, 범녕 주 『곡량음』, 위소 주 『국어음』, 범엽 『후한서음』 각 1권 『변류』 3권, 『서주인지록』 40권, 『금취편속주음의증』 3권, 『모시전음의증』 10권, 『예기의증』 10권, 『주관의증』 5권, 『의례의증』 5권 등을 저술하였다. 최광이 표를 올려 증서감에서 유방의 저서를 얻고자 하였으나, 세종이 불허하였다. 연창 2년에 추하니, 61세였다. 황제가 조서로 비단 400필을 내리고, 진동장군과 서주자사를 추증하였다. 시호는 문정이다.<sup>47)</sup>

하였다. 최광은 당시 시중이었던 인물이다. 시중인 최광이 유방의 저서를 빌리는데도 선무제가 불허하였을 정도로 유방의 저서들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두로씨 『금취장』 3권

본서는 『수서·경적지』에 수록되어 있다.

『急就章』 三卷 豆盧氏 撰述.(『금취장』 삼권 두로씨 찬술.)<sup>48)</sup>

이라 기록되었다. 저자인 두로씨는 미상이다. 두로씨에 대하여 『북사·두로녕전』에

그 선조의 본성은 모용씨이다. 연나라 북지왕 정의 후손이다. 고조가 연나라를 파하자 皇始(황시)<sup>49)</sup>초에 魏(위)에 귀순하였다. 장락군수에 제수되었고 사성으로 두로씨를 받았다. 혹이 이르기를 北人(북인)들이 귀순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豆盧(두로)이므로 이를 씨로 삼은 것이다 하였고, 또한 이르기를 난을 피하여 성을 고친 것이라 하기도 하니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다.<sup>50)</sup>

47) 魏收 撰, 『魏書』: 「芳撰鄭玄所注周官儀禮音 干寶所注周官音 王肅所注尚書音 何休所注公羊音 范寧所注穀梁音 韋昭所注國語音 范曄後漢書音各一卷 辨類三卷 徐州人地錄四十卷 急就篇續注音義證三卷 毛詩箋音義證十卷 禮記義證十卷 周官 儀禮義證各五卷. 崔光表求以中書監讓芳 世宗不許. 延昌二年卒年六十一. 詔賜帛四百匹 贈鎮東將軍 徐州刺史 諡文貞.」 中華書局, 2011. 502쪽.

48) 魏徵 撰, 『隋書』: 「急就章 三卷 豆盧氏撰.」 台灣商務出版社. 2010. 401쪽.

49) 皇始(황시)는 북위 도무제의 연호로 396년부터 398년까지 사용되었다.

하였다. 『수서·경적지』에 저자를 두로씨로만 기록한 것으로 보아 文名(문명)을 날리거나 한 인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史書(사서)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두로씨의 『금취장』 3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수당시기

隋唐(수당)시기에는 안지추, 석지건의 주해서가 있다.

#### (1) 안지추 『금취장주』 1권

본서는 『구당서·경적지』에 수록되었다.

『急就章注』一卷 顏之推 撰述.(『금취장주』 일권 안지추 찬술.)<sup>51)</sup>

저자인 顏之推(안지추 531년~591년)는 『안씨가훈』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본고의 저본인 『금취편』 주석자인 안사고는 그의 손자이다. 안지추의 학문과 식견은 南朝(남조)의 梁(양)나라, 北朝(북조)의 北齊(북제), 北周(북주), 隋(수)나라 등 네 왕조의 관료를 거치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어 체험이 풍부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안지추에 대한 史書(사서)의 기록은 『북제서』와 『수서』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석지건 『금취장음의』 1권

본서는 『고일총서』 제35책 『일본국건재서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국건재서목록』은 일본 학자 등원좌세가 889년부터 897년까지 일본국왕의 칙명에 의해 편찬한 서목으로 중국의 唐代(당대)와 唐(당) 이전의 古籍(고적) 1,568부 17,209권의 목록이 정리되었다. 그 체례는 『수서·경적지』의 분류방식을 모방하였다. 『일본국건재서목록』은 清代(청대)의 여서창의 『고일총서』에 실리면서 그 존재가 알려지게

50) 李延壽 撰, 『北史』: 「豆盧寧字永安昌黎徙何人 其先本姓慕容氏 燕北地王精之後也 高祖勝以燕 皇始初歸魏 授長樂郡守 賜姓豆盧氏 或云北人謂歸義爲豆盧因氏焉 又云避難改焉 未詳孰是。」 中華書局, 1974. 771쪽.

51) 劉昫 等撰, 『舊唐書』: 「急就章注 一卷 顏之推撰。」 中華書局, 1975. 754쪽.



되었다. 석지건 『금취장음의』 1권에 대하여 『일본국건재서목록』에

小學家目錄五百九十八卷 急就章音義一卷 釋智騫 撰述.(소학가목록오백구십팔권 금취  
장음의일권 석지건 찬술.)<sup>52)</sup>

이라 기록되었다. 『금취장음의』의 저자인 석지건은 『속고승전』에 소개되어 있다.  
『속고승전』은 당나라 초기의 남산률종조인 도선(596~667)의 저술이다. 도선의  
『속고승전·잡과·성덕편·수동도혜일도장석지과전』에

혜일 도량의 승려 지건은 강표 사람이다. 글자가 만들어진 근원과 통속자를 두루 깨  
뚫고 있었다. 불도를 닦는 도량에 들어서도 문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조정 비  
서의 글자를 바르게 교정하거나 저작을 하는 사람들이 글자의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모두가 지건에게 물어서 해결하였다. 古字(고자)와 今字(금자)의 판정이나 세  
간에서 쓰는 異體(이체)자에 대한 해설은 마치 얼굴을 대하듯 명료하였다. 지건이 가  
끔 말하기를 ‘내가 字學(자학)에 대하여 자못 두루 섭렵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래  
도 모르는 글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해소시켜줄 사람이 없어  
서 이것이 한이었다.’ 고 했다. 지건은 『중경음』, 『창아자원』을 지었는데 字源(자  
원)이 광대하게 서술되었고 그 내용이 다방면에 걸쳐 풍부하여 학자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집안에 『중경음』, 『창아자원』 한 권이 있으면 이를 보배로 여겼다.<sup>53)</sup>

하였다. 『고일총서』는 청나라 주일공사 여서창이 중국에서는 산일되었으나 일본에  
남아 있던 수·당대의 寫本(사본)과 송·원대의 刻本(각본) 26부 200권 49책을 수집하  
여 1884년 간행한 叢書(총서)이다.

#### 4) 송원시기

宋元(송원)시기에는 대표원의 『금취편주석보유』 1권이 있다.

##### (1) 대표원 『금취편주석보유』 1권

52) 藤原佐世 撰, 『日本國見在書目錄』: 「小學家目錄五百九十八卷急就章音義一卷釋智騫撰。」新文豐出  
版社, 1984. 4쪽.

53) 編輯部, 『續高僧傳』: 「時慧日沙門智騫者 江表人也 偏洞字源精閑通俗 晚以所學追入道場 自祕書正字  
讎校著作 言義不通皆諮騫決 卽爲定其今古出其人世 變體詰訓明若面焉 每曰余字學頗周 而不識字者多  
矣 無人通決以爲恨耳 造衆經音及蒼雅字苑 宏敘周贍達者高之 家藏一本以爲珍璧。」東國譯經院, 2003.

본서는 『섬원대선생문집』에 수록되었다. 『섬원대선생문집』은 宋末(송말) 元初(원초)의 문학가인 戴表元(대표원 1244年~1310年)의 문집이다. 『섬원대선생문집』 권7에 『금취편주석보유자서』가 수록되었는데 『금취편주석보유자서』에서 『금취편주석보유』를 저술하게 된 까닭을 밝혔다.

집안에 서적이 드물었는데 『금취편』 한 권이 있었다. 한나라 황문령 사유가 撰(찬)하고, 당나라 홍문관학사 안사고가 주석하였고, 또한 신안 주선생 증회의 교정을 거친 것이었다. 그러나 책의 본문 글자에 대한 字音(자음)과 字義(자의)가 하나도 없고, 그 주석에 이르러서는 의심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에 내 분수가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힘을 다하여 本文(본문)의 글자가 빠진 곳으로 보이는 것이나 주석에서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곳을 보완하면서 같거나 다른 점을 원편에 부기하였다. 대저 옛 사람들이 著書(저서)를 한 동기는 깨우쳐 경계할 바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금취편』이 취하는 바는 그 글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함과 학동들이 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고,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과 세상에서 사용하는 온갖 제도나 기구의 마땅한 쓰임 등 두루두루 탐구되지 않은 것이 없다. 秦(진)나라 사람들은 법관을 스승으로 삼아 公的(공적)과 私的(사적)으로 벼슬과 학문이 세습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아전들에 의하여 문장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선비들이 漢學(한학)을 구하고자 하면 오직 齊(제)와 魯(노)의 儒生(유생)들의 訓(훈)과 注(주)가 있을 뿐이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것이다.<sup>54)</sup>

하였다. ‘신안 주선생 증회’는 송나라 朱子(주자)를 말한다. 朱子는 新案(안휘성) 사람으로 이름이 熹(희), 字(자)가 仲晦(중회)이다.

## 5) 명청시기

明清(명청)시기에는 이본, 만광대의 주해서가 있다.

### (1) 이본 『금취장주』

본서는 『천경당서목』에 수록되었다. 『천경당서목』은 黃虞稷(황우직 1629~1691)이 저서로 明代(명대)의 저작 및 宋(송)·遼(요)·金(금)·元(원) 시대의 저작물을 經史

54) 戴表元 撰, 『剡源戴先生文集』: 「家罕書籍 有急就篇一卷 漢黃門令史游所撰 唐弘文館學士顏師古所注 又經新安朱先生仲晦所校 自謂名本 然而篇中正文 絕無音訓 注之所及 疑義尙多 窮不自量 爲之補其遺闕 兼有異同之說 載于左方 又惟古人著書 動緣教戒而作 此書本取急速成就其辭 以便于童習 而四民之業 百用之宜 靡不周究 秦人以法吏爲師 公私宦學 傳相授襲 故以吏文終焉 儒者欲求漢學 惟齊魯諸生訓注 猶近古哉。」 <http://ctext.org/wiki>.

子集(경사자집)의 배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書目(서목)록이다. 千頃堂(천경당)은 황우직의 부친인 황거증이 남경에서 관리로 재직할 때 그 곳에 지은 서재의 당호이다. 황우직은 천경당의 장서를 바탕으로 『천경당서목』을 저술하였다. 『명사·예문지』는 『천경당서목』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라 한다. 『천경당서목』에

『금취장주』 이본 찬. 이본 자는 효겸이다. 명나라 초기 은현사람이다.<sup>55)</sup>

하였다. 저자인 李本(이본)에 대하여는 鄞縣(은현) 사람인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은현은 지금의 절강성 영파시 은주구 이다.

## (2) 만광태 『금취편보주』

본서는 사계곤의 『소학교』에 기록되었다. 저자인 萬光泰(만광태)에 대한 기록으로는 항세준의 『사과장록』에 기록이 있다.

만광태 자는 순초이다. 수수사람으로, 립생이었다. 절강총독 채정공의 천거로 박학홍사가 되었다. 건륭 병진에 입경하여, 경조에서 치르는 추시에 합격하였다. 순초가 소년시절부터 재질이 뛰어나 시골이 빼어나고 밝았는데 평소 하는 말이나 문장이 온화하고 아름다워 마치 주·진시대의 문장과 같았다. 몸은 약하여 입은 옷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문장의 기백만큼은 만 사람을 압도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천진의 사씨 가문의 문객이 되었는데, 『전주서언』 2권 『한음존정』 2권 『수화당류음변』 1권을 지었다.<sup>56)</sup>

하였다. 『소학교』는 주이존의 『경의고』에서 빠진 形聲訓詁書(형성훈고서)의 서목을 집성한 것으로 50권 1,180종이 수록되었다. 『소학교』의 저자인 謝啓昆(사계곤 1737년~1802년)은 청나라 건륭 26년(1761년) 진사가 되었고, 수찬을 거쳐 가경 때 광서순무를 역임한 인물이다.

## 2. 『금취편』 범서본

55) 黃虞稷 撰, 『千頃堂書目』: 「李本急就章注字孝謙, 明初鄞縣人.」 上海古籍出版社, 2001. 178쪽.

56) 謝啓昆 撰, 『小學考』: 「狀世駿詞科掌錄日萬光泰字循初秀木人國生闔江總督上蔡程公薦舉博學宏詞乾圍丙屢入京華京兆秋試循初少年有高才詩骨秀期小詞圖圍周秦置國不勝衣而文章氣奪葛夫頤後客津門查氏著轉注牆言一卷漢音存正一恭遂和堂類音鹽一器.」 廣文書局有限公司, 1969. 541쪽.

한자 서체는 甲骨文(갑골문), 金文(금문), 大篆(대전), 小篆(소전), 隸書(예서), 草書(초서), 楷書(해서), 行書(행서) 등으로 구분한다. 秦(진)나라에서 쓰기 시작했던 隸書(예서)는 漢代(한대)에 들어서 조정의 공식 서체가 되었다. 이 隸書(예서)를 빠르게 흘려 쓴 것이 草書(초서)인데 서한시기에 쓰인 草書(초서)를 章草(장초)라 하였다. 이 章草(장초)의 창시자가 史游(사유)이고 章草(장초)로 쓴 저서가 『급취편』이다. 『급취편』은 識字(식자)서 측면에서 이전의 識字(식자) 敎材(교재)라 할 수 있는 『창힐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과 구성으로 저작되었는데 쓴 서체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서체인 章草(장초)로 썼다. 『급취편』이 왕조와 시대를 달리하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며 그 생명력을 생생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서의 내용과 구성의 창조성뿐만 아니라 서법상 획기적인 서체의 창시성에도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역대 중국의 유명 서법가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급취편』을 書寫(서사)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1) 후한시기

後漢(후한)시기의 법서본은 최원, 장지의 법서본이 있다.

### (1) 최원 임서 『급취장』

최원의 臨書(임서)한 『급취장』은 명나라 장축의 저술한 『청하서화방』에 수록되었다.

崔瑗(최원 78년~143년)은 후한 順帝(순제 재위 125년~144년) 때에 제북국의 재상을 역임한 정치가이다. 그런데 최원은 정치가로서보다는 문필가로 더 이름이 나있다. 그의 『좌우명』이 『소명문선』에 실리면서 후대에 文名이 나게 되었다. 특히 草書(초서)에서 이름이 났는데 草書(초서)에 관한 書論(서론)서인 『초서세』를 저술하였다. 『후한서·최원열전』에 최원의 문장에 대한 기록이 있다.

최원은 문장이 탁월하였는데 특히 書(서)·記(기)·箴(잠)·銘(명)에 뛰어났다. 賦(부)·碑(비)·銘(명)·箴(잠)·頌(송)·七蘇(칠소)·南陽文學官志(남양문학관지)·歎辭(탄사)·移社文(이사문)·悔祈(회기)·草書勢(초서세)·七言(칠언) 등 57편의 저서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남양문학관지에 대해서는 문장에 능한 자들이라도 스스로는 미

치지 못할 글이라 칭찬하였다.<sup>57)</sup>

라고 하여 문장가로서 빼어난 才士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원의 臨書(임서)한 『급취장』을 수록하고 있는 『청하서화방』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사도는 서화에 관심을 기울여 집안에 천여 권의 명저를 소장하고 있었다. 그는 宣和(선화 1119년~1125년)와 紹興(소흥 1131년~1162년)연간에 秘府(비부)의 고문서나 골동품들을 달라고 청하여 가져가곤 하였다. 지금 이 유명한 명작들은 제외되어 『열생고적기』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등재되지 않고 숨겨진 명작들은 가사도의 『열생당수초』에 편명들을 기록해 두었다. 법서로는 최원이 임서한 사유 급취장이 있다.<sup>58)</sup>

張丑(장축 1577년~1643년)은 명나라 말기의 서화수장가로 서화의 감식에 능하였고 집안이 4대에 이르는 장서가 집안이라 한다. 최원이 임서한 사유 『급취장』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賈似道(가사도 1213~1275)는 남송의 제5대 황제인 理宗(리종 재위 1225년~1264년)의 귀비인 賈(가)귀비의 동생이다. 蔭補(음보)로 태사에까지 오른 권신이다. 고서화를 수집하였는데 그 목록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명작들을 소장하였으며 소장품에는 悅生(열생)이나 秋壑圖書(추학도서) 등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한다. 悅生(열생), 秋壑(추학)은 가사도의 호이다. 『송사·간신열전·가사도전』에 가사도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 (2) 장지 장초 『급취장』

張芝(장지 미상~192년)는 후한 말의 서법가이다. 후한 靈帝(영제 재위 168년~189년)때 태상을 역임한 장환의 장자이다. 『후한서·황보장단렬전』에

장환의 장자 芝(지)는 자가 백영이다.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동생은 이름이 昶(창)이고 자가 문서이다. 芝(지)와 동생인 昶(창) 두 사람 모두 草書(초서)를 잘 썼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명성이 일컬어지고 있다.<sup>59)</sup>

57)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瑗高於文辭尤善爲書·記·箴·銘·所著賦·碑·銘·箴·頌·七·蘇·南陽文學官志·歎辭·移社文·悔祈·草書勢·七言·凡五十七篇 其南陽文學官志稱於後世 諸能爲文者皆自以弗及。」 中華書局, 1965. 1335쪽.

58) 張丑 『清河書畫舫』 「似道留心書畫 家藏名蹟多至千卷 其宣和紹興秘府故物往往乞請得之 今徐烜赫名蹟載悅生古蹟記者不錄第錄其稍隱者著于篇法書崔瑗臨史游急就章」 <https://archive.org/details/06068102.cn>

59)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長子芝字伯英最知名 芝及弟昶字文舒並善草書 至今稱傳之。」 中華書局, 1965. 1555쪽.

하고 짤막하게 기록되었다. 장지는 중국에서 草聖(초성)이라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장지 초서 『급취장』은 『서단』에 기록된 것이다.

장지는 자가 백영이다. 성품이 書道(서도)를 좋아하여 집안에 있는 옷이건 천이건 간에 모두 글씨를 써서 나중에 세탁하여 먹물을 씻어내곤 하였다. 특히 章草(장초)를 잘 썼으며 隸書(예서)도 잘 썼다. 위중장이 그를 일러 草聖(초성)이라 하며 ‘최원은 살이요 장지는 뼈이다.’ 하였다. 그의 장초 『급취장』은 글자가 모두 일필로 쓴 것이다. 백영의 草書(초서)는 神(신)에 들며 隸書(예서)는 妙(묘)에 든다.<sup>60)</sup>

하였다. 가히 서법가로서의 장지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법에 정진하는 것을 ‘臨池(임지)의 技(기)’라 하는데 이 말 또한 장지가 연못가 돌 위에 붓글씨를 쓰면서 까지 書道(서도)에 정진한 것에서 나온 말이다. 『후한서·황보장단열전』이현의 주석에 왕음의 『문지』를 인용하여

못가에서 붓글씨를 학습하니 연못의 물이 온통 검어졌네.<sup>61)</sup>

라고 하였다. 이는 장지가 연못가의 돌 위에서 붓글씨를 연습하면서 붓을 씻은 연못의 물이 먹물로 검어졌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臨池의 技’는 여기서 나온 말이다. 『서단』은 당나라 玄宗(현종 재위 712년~756년)때에 한림원공봉이었던 張懷瓘(장회관 생물연대미상)이 지은 書論書(서론서)이다. 『서단』의 내용은 古文(고문), 大篆(대전), 籀文(주문), 小篆(소전), 八分(팔분), 隸書(예서), 章草(장초), 行書(행서), 飛白(비백), 草書(초서) 등의 각 서체의 기원과 연혁을 서술하고, 周代(주대)의 史籀(사주)에서 당나라 중종 때 황문시랑인 盧藏用(노장용 미상~710년)까지 유명 서법가들을 神(신), 妙(묘), 能(능)의 삼품으로 분류하여 傳記(전기)를 실었다. 장지를 草聖(초성)이라 극찬한 위중장은 삼국시기 魏(위)의 서법가 韋誕(위탄 179년~253년)이다. 중장은 그의 字이다. 魏(위)나라 文帝(문제) 때에 시중을 역임하였다. 다른 한편 北宋(북송) 때 서법가인 黃伯思(황백사 1079년~1118년)가 쓴 『동관여론』에도 장지의 장초 『급취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동관여론·발장초급취보망후』에

60) 張懷瓘 著, 『書斷』: 「張芝字伯英性好書 凡家之衣帛皆書而後練 尤善章草又善隸書 韋仲將謂之草聖 又云崔氏之肉張氏之骨 其章草急就章 字皆一筆而成 伯英草行入神 隸書入妙。」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2. 172쪽.

61)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臨池學書 池水盡黑。」 中華書局, 1965. 1555쪽.

지금 전하는 것은 오직 張芝(장지)·索靖(삭정) 二家(이가)의 것만이 진품이다, 모두 章草(장초)로 쓴 것이다, 그러나 백영본에만 ‘鳳爵鴻鵠(봉작홍곡)’ 등 여러 行(행)이 있다.<sup>62)</sup>

하였다. ‘鳳爵鴻鵠(봉작홍곡)’은 통행본 『급취편』 제4장의 首句(수구)로 본고의 원문 번호 제270번 ‘鳳爵鴻鵠鴈鷺雉(봉작홍곡안목치)’의 문구를 이르는 것이다. ‘鳳爵鴻鵠鴈鷺雉(봉작홍곡안목치)’는 禽獸(금수)의 종류를 나열한 章(장)의 첫 번째 句(구)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장지의 장초 『급취장』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宋代(송대)까지는 실존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2) 위진남북조시기

위진남북조시기의 법서본은 중요, 삭정, 위부인, 왕희지, 소자운, 최호 등의 법서본이 있다.

### (1) 중요 『급취편』

鍾繇(중요 151년~230년)는 후한 말부터 삼국시기 魏(위)에서 활약한 정치가이다. 관위는 태부에 까지 올랐고 작위를 받아 정릉후에 봉해졌다. 중요한 사적에 관해서는 정사인 『삼국지·위서·중요화흠왕랑전』에 기록되어 있다. 중요는 서법가로서도 일가를 이루어 楷書(해서)의 창시자로 추앙 받고 있으며 왕희지와 더불어 ‘鍾王(중왕)’으로 合稱(합칭)되기도 한다. 『서단』에 중요에 대한 서법가로서의 평가를 보면

중요는 글씨를 잘 썼다. 조희, 채옹, 류덕승 등에게 사사받았다. 眞書(진서)는 세상에 비견할 자가 없이 빼어났는데 그의 眞書(진서)에는 강직함과 온유함이 함께 갖추어지고 일획일점에 색다른 정취가 풍성하여 그 깊고 오묘한 경지는 가히 넘을 수가 없다. 예스러우며 우아한 筆致(필치)는 秦漢(진한)이래 이 한 사람뿐이다. 비록 옛적의 선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은덕을 잊지 못함이 있다하나 그의 덕을 숭상함에는 미치지 못함이 있다. 그의 行書(행서)는 왕희지와 왕헌지의 버금이고 草書(초서)는 위관과 삭정의 아래이나 八分(팔분)으로 쓴 魏(위)의 受禪碑(수선비)는 최고라는 칭송을

62) 黃伯思 著, 『東觀餘論』: 「今所傳惟張芝索靖二家爲眞皆章草書 而伯英本只有鳳爵鴻鵠等數行。」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0.

받고 있다. 太和(태화)<sup>63)</sup>4년에 薨(홍)하니 향년 80세였다. 원상의 隸書(예서)와 行書(행서)는 神(신)에 들고 草書(초서)와 八分(팔분)은 妙(묘)에 든다. 종요의 글씨가 12종이 있는데 그 교묘하고 기이함이 비길 데가 없다.<sup>64)</sup>

하였다. 원상은 종요의 字(자)이다. 종요 『금취편』은 안사고의 『금취편·주서』에 기록이 있다.

예전에 황상, 종요, 위부인, 왕희지 등의 서사한 『금취편』을 얻게 되었다.<sup>65)</sup>

라고 기록하였다. 한편 왕응린의 『옥해』본 『금취편보주』에 종요의 『금취장』이 소개되고 있다. 왕응린은 『금취편보주』 첫머리에 『송태종실록』을 인용하여 종요의 『금취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전에 조서를 내려 선현들의 목적을 구하라 하였는데 그 때 종요의 『금취장』이 현상되었으나 글자들이 뒤죽박죽되어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하였다. 안사고는 『금취편·주서』에서 황상, 종요, 위부인, 왕희지 등의 서사한 『금취편』이 온전하여 각 본들을 상세히 비교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왕응린의 인용한 『송태종실록』에서는 종요의 『금취장』이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왕응린의 인용문으로 볼 때 송태종에게 바쳐진 종요의 『금취장』은 종요가 서사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모사한 것을 종요본으로 알고 현상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삭정 장초 『금취편』

索靖(삭정 239년~303년)은 西晉(서진) 武帝(무제 재위 265~290)때에 상서랑을 거쳐 惠帝(혜제 290년~306년)때에 관내후의 작위를 받았고 산기상시를 역임한 西晉(서진)의 정치가이다. 삭정은 정치가로서도 이름이 나있으나 서법가로서 더욱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삭정의 사적에 대해서는 정사인 『진서·삭정전』에 기록되었다.

63) 太和(태화)는 삼국시기 魏(위)의 제2대 황제 명제의 두 번째 연호로 227년부터 233년까지 사용되었다.

64) 張懷瓘 著, 『書斷』: 「繇善書師曹喜蔡邕劉德升真書絕世剛柔備焉. 點畫之間多有異趣謂幽深無際古雅有餘秦漢以來 一人而已. 雖古之善政遺愛結於人心未足多也. 尚德哉若其行書則羲之獻之之亞, 草書則衛索之下, 八分則有魏受禪碑稱此爲最也. 太和四年薨迨八十矣. 元常隸行入神草八分入妙鐘書有十二種意外巧妙絕倫多奇.」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2. 69쪽.

65) 史游 撰, 『急就篇』: 「舊得皇象鍾繇衛夫人王羲之等所書篇本.」岳麓書社, 1989. 7쪽.



서법가로서의 삭정에 대한 기록이 『선화서보』에 실렸는데 그 가운데 삭정의 장초 『급취편』이 소개되고 있다.

삭정 자는 유안이다. 돈황사람으로 장지의 누이에 손자이다. 관직은 정남사마에 이르렀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동향인인 범충·장감·삭개·삭영 등과 함께 태학에 유학하였는데 당시 그들을 ‘敦煌五龍(돈황오룡)’이라 칭했다. 賢良方正(현량방정)에 응시하여 對策(대책)을 묻는 과제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장발이 천거하기를 ‘그의 재능과 기예는 따를 사람이 없다. 마땅히 대각에 있어야 할 인재이다.’ 하였다. 경사를 보면서 틈틈이 글쓰기를 좋아하였는데, 마침내 章草(장초)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배우려는 자들이 그를 존승하고 본받으려 하였다. ... 만약 삭정이 뜻한바 대로 서법가의 길을 갔다면, 그의 필명은 왕희지와 왕헌지의 선후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御府(어부)에 장초본 4권이 소장되어있는데 『급취편』, 『월의』, 『출사송』, 『칠월첩』이다.<sup>66)</sup>

하였다. 『선화서보』 외에도 『동관여론』에서 삭정의 장초 『급취편』에 대하여 언급이 되고 있다.

삭정장군의 장초는 고금의 妙(묘)를 다하고 있다. 『칠월이십육일첩』, 『월의』, 『급취편』 등이 저명한 글들이다. 봄의 난초 가을의 국화 두 꽃은 다르나 그 꽃 나뭇잎 저마다의 향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67)</sup>

하여 삭정의 장초 『급취편』을 비롯한 세편의 법첩이 각각의 필세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동관여론·발장초급취보망후』에도 宋代(송대)에 남아 있는 삭정 장초 『급취편』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 그 기록에

삭정의 글 가운데 3분의 2가 남아 있다. 없어진 것은 ‘母縛(모준)’ 이하 750字이다. 당대 사람들이 모사하면서 없어진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필세가 기품이 있고 고풍이 완연하게 남아 있다. 나도 한 부를 탐본한 적이 있다. 이 탐본하는 것을 도은거는 전곽서라 하였는데 지금 세간에서는 쌍구서라 하고 있다.<sup>68)</sup>

66) 潘運告 撰, 『宣和書譜』: 「索靖字幼安敦煌人張芝之姊孫也. 官至征南司馬, 少有出群之才, 與鄉人汜衷張魁索介索永俱遊太學時稱敦煌五龍. 及舉賢良方正對策高第, 張勃薦之謂靖才藝絕人宜置臺閣經史之暇喜作字遂以章草名動一時學者宗之. ...要是靖自得意處宜其刊名與羲獻相後先也. 今禦府所藏章草四急就章, 月儀, 出師帖, 七月帖.」 湖南美術出版社, 1999. 257쪽.

67) 黃伯思 著, 『東觀餘論』: 「索將軍章草下筆妙古今七月二十六日帖月儀急就篇此著名書也春蘭秋菊各不同而花花自有佳趣.」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0.

68) 黃伯思 著, 『東觀餘論』: 「靖所書乃有三之二其厥者自母縛而下纔七百五十字此本是已蓋唐人摹而弗填者神韻筆勢古風宛然予遂手搦一通陶隱居謂之填郭書近世謂之雙鉤書. .」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0.

하였다. 『동관여론』은 北宋(북송)시대의 書論書(서론서)이다. 북송시대에는 삭정의 장초 『급취편』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대의 법첩과 탐본이 원본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에 치중하여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그대로 베껴놓아서 원본의 필세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填郭書(전곽서)는 원본 글씨를 베낄 때 원본을 밑에 놓고 그 위에 복사지를 얹어서 글씨의 외면 윤곽을 그려내어서 그 속을 채우는 모사의 한 방법을 말한다. 雙鉤法(쌍구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鉤勒填彩法(구륵전채법)이라 하고 있다. 한편 『동관여론』 부록으로 섭몽득의 『발삭정장초급취편』이 수록되었다. 거기에 삭정의 장초 『급취편』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삭정의 장초 『급취편』은 1,450자이다. 759자가 빠져있다. 내가 듣기로 당대 사람이 硬黃(경황)에 臨書(임서)한 것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여 구한바 오래 되었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소흥 甲子(갑자)에 우연히 옛 친구인 비서랑 황장예가 쌍구법으로 모사한 것을 복당현에서 얻게 되었다. 西晉(서진) 이전의 것이라거나 중요, 장지, 위관, 삭정 등의 서첩이라 하여 지금 존재하는 것들에는 진본이 없다. 지금 전하는 서첩들은 모사본들이다. 진본이라고 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점이나 글자의 획 같은 것이 있을 뿐이다. 장예는 옛것을 좋아하고 隸書(예서)와 楷書(해서)를 잘 하였으므로 능히 古人(고인)의 필체를 따를 수 있었는데 그 필세가 古人(고인)의 필체를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벌을 받고 병란이 일어나면서 집안에 소장되었던 문적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다행히 남아 있는 문적들도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 閩(민)에는 좋은 돌이 없다. 그래서 목판에 판각한 것을 燕堂(연당)에 두고 서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였다. 두자미가 말하기를 ‘역산의 비문은 들 불에 불살라지고 대추나무에 새긴 篆刻(전각)은 부식되어 제 모습을 잃었네!’ 하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진본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한스러운 일이다.<sup>69)</sup>

하였다. 硬黃(경황)은 황랍을 칠해 투명하게 만든 습자용 종이를 말한다. 황장예는 『동관여론』의 저자인 황백사이다. 황백사의 字(자)가 장예이다. 閩(민)은 복건성의 옛 명칭이다. 복당현은 지금의 복주이다. ‘閩(민)에는 좋은 돌이 없다’는 말은 섭몽득이 복당현에서 삭정의 장초 『급취편』을 돌에 새기려 하였으나 복건성에는 글을 새길 질 좋은 돌이 없어서 나무에 판각하여 연당에 걸어두고 호사가들이 와서 보도

69) 黃伯思 著, 『東觀餘論』: 「索靖章草急就篇一千四百五十字闕七百五十九字余聞世有此唐人硬黃臨本舊矣不知藏誰氏求之久不獲紹興甲子偶得故祕書郎黃長睿雙鉤所摹于福唐兄商量則鐘張衛索書帖存于今者大抵皆無復真填流傳臆拓既多僅見其點畫銀長睿好古難暴楷能得古人用筆高其氣韻精彩尚可仿佛典刑兵興以來剝剝悵爐夕餘長見奈喜一附錄長皆因阻寬註臂計涇君得以故家名流所藏殆盡幸有遺者不可去傳于世間無姜石乃使以版刻置之燕堂以示好事者杜子美云澤山之碑野火焚棗木蒙刻肥失真古今所恨云。」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0. 102쪽.

록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자미는 당나라의 詩聖(시성) 杜甫(두보)이다. 두보의 字(자)가 자미이다. ‘역산의 비문’은 李斯(이사)가 쓴 소전체 비문으로 진시황의 업적을 찬양한 것이다. ‘대추나무에 새긴 篆刻(전각)’은 역산의 비문을 대추나무에 새겨서 비문을 대신하였던 것을 이른다. 두자미의 이 詩句(시구)는 『이조팔분소전가』의 7행과 8행의 詩句(시구)이다. 詩(시)의 제목인 『李潮八分小篆歌(이조팔분소전가)』의 李潮(이조)는 두보의 생질이고 八分(팔분)과 小篆(소전)은 한자의 서체이다. 두보는 생질인 이조가 八分(팔분)과 小篆(소전)의 붓글씨를 잘 써서 이 詩를 지어 칭찬한 것이라 한다. 葉夢得(섭몽득 1077년~1148년)은 북송과 남송시기를 살았던 인물로 관직은 상서좌승을 역임하였다. 학문이 높았다하며 저서에 『석림춘추어』 30권, 『춘추고』 30권, 『건강집』 『석림사』 1권, 『석림시화』 1권, 『석림언어』 『암하방언』 1권, 『석림주의』 15권 등 30여 편의 저서가 있다. 섭몽득의 사적에 관하여는 정사인 『송사·문원칠전』에 기록되었다.

### (3) 위부인 『급취편』

위부인 『급취편』은 안사고의 『급취편·주서』에 기록된 것인데 그 외의 기록은 찾을 길이 없다. 衛夫人(위부인 272년~349년)은 왕희지의 스승으로 알려진 여류문인이다. 『서단』에 위부인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위부인은 명이 鑠(삭)이고 字(자)가 무의이다. 여음래수 리구의 처이다. 隸書(예서)를 잘 하여 그녀의 隸書(예서)가 후세 모범이 되었다. 종공이 그녀의 글에 대해 말하기를 ‘옥병에서 얼음이 부서져 나오듯, 요대에 휘영청 달이 비추듯,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향기를 뿜듯, 맑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듯.’ 하다 하였다. 왕희지가 소년시절 그녀에게 서법을 배웠다. 永和(영화) 5년 졸하니 향년 78세이다.<sup>70)</sup>

하였다. 永和(영화)는 東晉(동진) 穆帝(목제 재위 344년~361년)의 첫 번째 연호로 345년부터 356년까지 12년간 사용되었다. 永和(영화) 5년은 349년이다. 위부인의 법첩으로 『필진도』, 『명희첩』, 『위씨화남첩』 등이 있다.

### (4) 왕희지 장초 『급취편』

正史(정사)인 『晉書(진서)』 列傳(열전)은 70권이다. 그 70권 가운데 한 사람의 傳

70) 張懷瓘 著, 『書斷』: 「衛夫人名鑠字茂猗,汝陰太守李矩之妻也. 隸書尤善規矩. 鍾公云碎玉壺之冰爛瑤臺之月婉然芳樹穆若清風. 右軍少常師之,永和五年卒年七十八。」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2. 96쪽.

記(전기)가 한 권의 列傳(열전)으로 기록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그 7명 중 한 사람이 왕희지이다. 王羲之(왕희지 307년~365년) 字(자)는 逸少(일소)이다. 右軍將軍(우군장군)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王右軍(왕우군)이라 불린다. 산동성 낭야 사람이나 회계군 산음현에서 일생을 마쳤다. 회계 산음은 지금의 절강성 소흥이다. 왕희지는 중국에서 楷書(해서) · 行書(행서) · 草書(초서)의 서체를 완성시킨 書聖(서성)으로 추앙받는 서법가이다. 楷書(해서)로 쓴 『악의론』 『황정경』, 行書(행서)의 모범으로 회자되는 『蘭亭序』, 草書(초서)로 쓴 『십칠첩』 등의 작품이 특히 이름이 나있는 작품들이다. 왕희지의 사적에 대해서는 『진서·왕희지열전』에 기록되었다. 왕희지 『급취편』은 안사고가 『급취편·주서』에서 집안에 왕희지 『급취편』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 외에 『법서요록』 권2 도은거우계 『악의론』에서 왕희지 『급취편』이 언급되었다. 그 기록에

신이 지난날 마징의 처소에서 『일소정서목』 1권을 보았는데. 징이 이르기를 ‘右軍(우군)의 『권진』 『낙신부』 등 십여 수가 모두 今體(금체)로 써져있는데, 오직 『급취장』 2권만 古體(고체)에 가깝게 쓰였다.’ 하였습니다. 근자에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는데, 이미 사라져 없어지고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sup>71)</sup>

하였다. 도은거는 陶弘景(도홍경 456년~536년)으로 남조 양나라 사람이다. 학문이 높아 양무제와 서법에 관한 논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법서요록』에 수록되었다. 위 인용문은 도은거가 양무제에게 올리는 왕희지의 『악의론』에 대한 논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왕희지의 『급취편』이 古體(고체)로 쓰였다고 하였는데 古體(고체)는 今體(금체)에 대한 상대적 명칭이다. 도은거가 있을 당시의 今體(금체)는 왕희지에 의해서 이미 楷書(해서) · 行書(행서) · 草書(초서)의 서체가 완성된 이후임으로 今體(금체)는 楷書(해서) · 行書(행서) · 草書(초서)를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草書(초서)의 효시는 章草(장초)이다. 왕희지에 의해 서체가 확립되었다는 草書(초서)는 章草(장초)와의 시대적 구분으로 今草(금초)라 하였다. 그러므로 위 인용문에서 古體(고체)라 하는 것은 章草(장초)를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희지가 쓴 『급취편』은 章草(장초)로 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5) 소자운 『급취장』

71) 張彥遠 撰, 『法書要錄』: 「臣昔於馬澄處見逸少正書目錄一卷 澄云右軍 勸進 洛神賦 諸書十餘首 皆作今體 惟 急就篇二卷 古法繁細 近脫憶此語 當是零落 已不復存。」 人民美術出版社, 1984. 51쪽.

蕭子雲(소자운 487년~549년)은 南齊(남제) 초대 황제인 高帝(고제 재위 479년~482년)소도성의 손자이다. 南齊(남제)는 소도성이 건국한지 23년 만에 제7대 황제 和帝(화제 재위 501년~502년)소보용이 소연에게 선양함으로써 멸망하였다. 소연은 국호를 梁(양)이라 하였다. 이가 梁武帝(양무제 재위 502년~549년)이다. 소자운의 사적에 관하여는 정사인 『양서·자운전』에 기록되었는데 南齊(남제)의 초대 황제의 손자가 『양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위진남북조시기의 왕조의 흥망이 그만큼 짧은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소자운의 관직은 양나라에서 영남서주대중정을 역임하였다. 소자운은 정치가보다는 문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로 『晉書(진서)』 110권과 『동궁신기』가 있으며, 草書(초서) · 行書(행서) · 篆書(전서)의 서법에도 능했다. 소자운의 서법에 대하여 『법서요록』에

梁(양)의 소자운은 字(자)가 경교이며 진릉 사람이다. 관직은 시중을 역임하였다. 소년시절부터 草書(초서) · 行書(행서) · 小篆(소전)을 잘 썼고 小篆(소전) 飛白(비백)을 창시하였는데 바람에 흩날리듯 하는 서체에서 그 의지와 취향이 묻어난다. 경교의 隸書(예서)와 飛白(비백)은 妙(묘)에 들고, 小篆(소전)과 行書(행서), 草書(초서)와 章草(장초)는 能(능)에 든다.<sup>72)</sup>

하였다. 飛白(비백)은 붓글씨체의 하나로 마치 비로 쓴 것처럼 붓끝이 잘게 갈라져서 획에 틈이 생겨 바탕의 흰 부분이 그대로 보이고 글씨 끝이 날아가는 듯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소자운 『금취장』은 『청하서화방』에 기록되어 있다.

## (6) 최호 초서 『금취장』

최호 『금취장』은 주해서로 이미 소개되었다. 주해서로 소개될 때는 『위서·최호 열전』에 의거한바 되었다. 법서본으로 소개되고 있는 최호 『금취장』은 계복의 『찰박』 권6의 초서 금취편에 근거한 것이다. 『찰박』에서 계복이 이르기를

세간에 전하는 초서 『금취편』은 署名(서명)된 것이 없다. 상고하건대 아마도 복위 최호의 書(서)인것 같다. 『북사』에 ‘최호가 『오인원력』을 바치며 표를 올려 아뢰기를 ‘신이 『금취장』, 『효경』, 『논어』, 『시경』, 『상서』, 『춘추』, 『예기』, 『주역』 등의 주해를 3년만에 마쳤습니다.’ 하였고 또 기록된바 ‘최호는 서법가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취장』을 써 달라 하였는데 소년에서 노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

72) 張彥遠 撰, 『法書要錄』: 「梁蕭子雲字景喬晉陵人 少善草行小篆諸體兼備 而創造小篆飛白意趣飄然. 景喬隸書飛白入妙 小篆行草草入能.」 人民美術出版社, 1984. 139쪽.

었다. 처음 부탁을 하는 자들에게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써 주었는데 써 주다 보니 백여 편이 되었다. 세간에서는 최호의 목적을 보배로 여겨서 나누어져 있는 글자들을 이어 붙여서 법첩을 만들고 서법의 모범을 삼았다.’ 하였고, 또 기록되기를 ‘최굉의 조부인 최열과 범양의 로심은 널리 육예에 정통하다고 나란히 文名(문명)이 났다. 노심은 종요를 본받았고, 최열은 위관을 본받았다. 또한 삭정의 초서를 학습하여 그 신묘함을 다 터득하였다. 노심은 아들인 노언에게 서법을 전했고, 노언은 아들인 노막에게 전했다. 최열은 아들인 최잠에게 서법을 전했고 최잠은 아들인 최굉에게 전하여 대를 이어 그 수업이 쇠하지 않았다.’ 하였다. 내가 이르고자 하는 것은 최호가 세상에 전한 것은 초서이다. 또한 『급취장』을 특히 많이 쓴 것은 당시에 『급취장』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唐宋(당송) 이래 모두 얼마나 많은 최호의 초서 『급취장』이 판각되었으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sup>73)</sup>

하였다. 최굉은 최호의 부친이다. 桂馥(계북 1737년~1805년)은 청나라 건륭시기의 학자이다. 『설문해자의증』의 저자로 단옥재, 주준성, 왕균과 함께 청나라 說文四大家(설문사대가)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건륭 55년(1790년)에 진사가 되어 운남영평 현령을 지냈다. 저서에 『찰박』을 비롯하여 『설문주초』, 『설문해성보고증』, 『모시음』, 『역대석경고략』, 『무전분운』 등이 있다. 『찰박』은 經典(경전)과 소학의 典籍(전적)에 대한 고증과 훈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書名(서명)인 『札朴(찰박)』은 저서의 내용이 자질구레하여 목수가 사용하다 남긴 목재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는 견칭이다. 계북의 사적에 관하여는 『칭사고·유림렬전2』에 기록되었다.

### 3) 수당시기

隋唐(수당)시기의 법서본은 육간지 초서 『급취장』이 있다.

#### (1) 육간지 초서 『급취장』

육간지 초서 『급취장』은 『선화서보』에 기록되었다. 『선화서보』는 北宋(북송) 제

73) 桂馥 撰, 『札朴』: 「世所傳草書急就篇無署名以予考之蓋北魏崔浩書也北史浩上五寅元歷表曰臣解急就章孝經論語詩尚書春秋禮記周易三年成訖又云浩既工書人多託寫急就章自少至老初不憚勞所書蓋以百數世寶其迹多裁割綴連以爲摹楷又云崔宏祖悅與范陽盧諶竝以博藝齊名諶法鍾繇悅法衛瓘而俱習索靖之草皆盡其妙諶傳子偃偃傳子邈悅傳子潛潛傳子宏世不替業馥謂浩世傳草書又寫急就特多見重當時故流傳至今自唐宋以來不知凡幾刻矣」 中華書局, 2006.

8대 황제인 徽宗(휘종 재위 1100~1125)이 수집한 서법작품의 목록과 서체에 대한 개요와 작자의 약력이 기술되었다. 宣和(선화)는 휘종의 연호로 1119년부터 1125년 퇴위 때까지 사용되었다. 書名(서명)인 『선화서보』는 宣和(선화) 2년에 저술되어서 『宣和書譜(선화서보)』라 하였다. 『선화서보』에 육간지의 약력이 실렸다.

육간지는 오군사람이다(오군은 지금의 강소성 소주시이다). 관직은 조산대부와 태자사의랑을 역임하였다. 육간지는 당나라 초기 四大書法家(사대서법가)의 한 사람인 우세남의 생질이다. 소년시절 외숙에게 서법을 배워 行書(행서)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는 스승보다 더 낫다는 평이 났고 마침내는 왕희지와 왕헌지의 명성에 육박하였다. 그의 서법은 온갖 서체를 망라하였는데 글씨가 바람에 날리는 듯 아름답게 꾸미는 풍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마치 털을 고르지 않은 말과 같고 빗질도 하지 않고 묵욕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투박한 글씨를 썼다. 비록 당시의 풍속에서는 천박스럽다 하겠으나 이것은 서법에 달관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필법이다. 평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을 펼친 듯 가지가 뻗어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와 같이 그 가지마다 정력을 다 쏟아낸 필세이다 하였으니 역시 書道(서도)를 아는 자의 말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자기의 분깃이 있기 마련이다. 육간지의 隸書(예서)와 行書(행서)는 妙(묘)에 들고, 章草(장초)와 草書(초서)는 能(능)에 들었다. 이것 역시 현명한 평가인지 아둔하여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은 것인지 따져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의 글로 『두라비』 『급취장』 『용화사액』 『무구동산비』 등의 유명한데 그 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두라비』와 『급취장』 뿐이다. 현재 御府(어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행서작품인 『란약비』 『두라사기』 『란정시』 『천문』 『림왕희지란정서』와 초서작품인 『급취장』이 있다.<sup>74)</sup>

하였다. 육간지가 正史(정사)에 등장하는 것은 『구당서·육원방전』이다.

육원방의 백부인 육간지는 서법가로 이름이 나있고 관직은 태자사의랑이다.<sup>75)</sup>

하여 육원방의 家系(가계)를 말할 때 소개되고 있다. 육원방은 무척천 때에 재상을 역임한 인물이다. 육간지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다만 육원방의 생몰연대가 639년~701년이고 虞世南의 생몰연대가 558년~638년이므로 추측컨대 唐太宗(당태종

74) 潘運告 撰, 『宣和書譜』: 「陸東之吳郡人也官至朝散大夫守太子司議郎 東之虞世南甥也少學舅書多作行字晚擅出藍之譽遂將咄逼羲獻 落筆渾成恥爲飄揚綺靡之習 如馬不齊毛人不櫛沐雖爲時鄙要是通人之達觀 但覽之者未必便能識其佳處 論者以謂如偃蓋之松節節加勁亦知言哉 然人材故自有分限東之書其隸行人妙章草草書入能是亦未免其利鈍也 書頭陀碑 急就章 龍華寺額 武丘東山碑 最聞於時此所存者特頭陀碑 急就章耳 今御府所藏六 行書蘭若碑 頭陀寺記 蘭亭詩 千文 臨王羲之蘭亭敘 草書急就章。」 湖南美術出版社, 1999. 78쪽.

75) 劉昫 等撰, 『舊唐書』: 「伯父東之以工書知名 官至太子司議郎」 <http://zh.wikisource.org/wiki/788>

재위 626년~649년)과 高宗(고종 재위 649년~683년)대에 활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唐代(당대) 초기의 사대 서법가로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설직을 꼽기도 하고 설직 대신 룩간지를 사대가로 칭하기도 한다.

#### 4) 송원시기

宋元(송원)시기의 법서본은 송태종과 조맹부의 법서본이 있다.

##### (1) 송태종 초서 『급취장』

송태종 초서 『급취장』은 『옥해·성문·어서』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에

端拱(단공) 2년 7월 丙戌(병술)에 어서 『급취장』이 비각에 소장되었다. 『급취장』은 서한 때의 황문령 사유의 저작이다. 황제께서 字學(자학)에 관심을 두시고 前代(전대)의 墨蹟(묵적)을 구하라는 조서를 내렸으므로 전대의 묵적이 현상되는 가운데 중요가 쓴 『급취장』이 바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바쳐진 『급취장』의 글이 뒤죽박죽되고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 황제께서 친히 온전치 못한 것을 바로 잡으시고 초서로 『급취장』 한 권을 書寫(서사)하시었다. 이 어서본 『급취장』이 비각에 소장된 것이다. 그리고 소장된 어서본 『급취장』을 石刻(석각)하여 그 탁본을 近臣(근신)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었다.<sup>76)</sup>

하였다. 端拱(단공)은 宋太宗(송태종 재위 976년~997년)의 세 번째 연호로 988년부터 989년까지 2년간 사용되었다. 송태종은 북송의 제2대 황제로 송나라의 文治(문치)를 확립한 황제이다. 그의 文治(문치)업적으로 『태평어람』이 손꼽히기도 한다. 송태종 초서 『급취장』에 대해서는 송의 승려 문영의 『옥호야사』에도 소개되고 있다. 『옥호야사』 권1에

전옥은 충현왕의 장자이다. 그는 기억력이 좋아 읽은 글을 잘 기억하였다. 특히 서간문과 공문서를 잘 썼는데 태종이 전옥의 글을 읽어보고 그를 몹시 총애하여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까지 '전씨 가문의 서간문과 공문서가 많은데 전씨 가문의 글은 절강성의 승려 아서의 글에서 많은 배움이 있어 서체가 흐르듯 유연하여 속세를 잊은듯한

76) 王應麟 撰, 『玉海』: 「端拱二年七月丙戌以御書急就章藏於祕閣急就章者漢黃門令史游之所作也帝留心字學先是下詔求前賢墨跡有以鍾繇書急就章爲獻字多踳駁上親草書一本藏於祕閣仍刻石分賜近臣」 <http://ctext.org/7401&page=1>



데 유독 이 아이만 닳지를 알았다.’ 하시고 어서가 쓰인 금화선과 행초로 『금취장』을 書寫(서사)하여 그에게 하사하시었다.<sup>77)</sup>

하였다. 『옥호야사』는 승려인 문영이 저술하였다. 문영에 대한 개인 약력은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북송 제4대 황제인 仁宗(인종 재위 1022년~1063년) 때부터 제6대 황제인 神宗(신종 재위 1067년~1085년)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서에 『옥호야사』를 비롯하여 『상산야록』, 『상산속록』, 『저궁집』 등이 있다.

## (2) 조맹부 진서 『금취장』

조맹부 진서 『금취장』은 뉴수옥의 『교정황상본금취장』에 나왔다. 그 「자서」에

嘉慶(가경) 辛未(신미)에 광릉에 간 적이 있는데 왕씨 집안에 소장된 조문민이 쓴 소해 『금취장』을 보게 되었다. 내가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황상본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소해 『금취장』을 누차 빌려서 한통을 베껴서 행장에 넣고 나왔다.<sup>78)</sup>

하였다. 嘉慶(가경)은 청나라 仁宗(인종)의 연호로 1796년부터 1820년까지 사용되었다. 가경신미는 가경16년으로 1811년이다. 조맹부는 중국 진서사대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되는 元代(원대)의 서화가이다. 그는 송황실의 황손으로 元(원)나라가 南宋(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자 원나라 조정의 부름을 받아 원나라 조정에서 한림학사승지를 역임하였다. 69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는데 사후에 위국공에 추봉되어 시호가 문민이다. 조맹부는 정치가로서 보다는 서화에서 元代(원대)의 제일인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篆書(전서), 籀文(주문), 八分(팔분), 隸書(예서), 眞書(진서), 行書(행서), 草書(초서) 등 각 서체를 잘 썼고 서법작품으로 『금암전』, 『담파비』, 『란정십삼발』 등이 있다. 그림으로는 元代(원대) 산수화의 전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화추색도권』, 『강촌어낙도』 등이 있고, 문집으로는 『송설재문집』이 있다. 특히 부인인 관도승도 여류서화가로 조맹부와 명성을 나란히 하였다. 조맹부의 사적은 정사인 『원사·조맹부전』<sup>79)</sup>에 기록되었다. 『교정황상본금취장』은 뉴수옥이 元

77) 文瑩撰『玉壺野史』:「錢昱忠獻王宏佐長子也讀書強記尤善翰牘太宗取閱深愛之謂左右曰諸錢筆劄多學浙僧亞棲書體格浮軟其失仍俗獨此兒不類以禦書金花扇及行草寫急就章賜之」<http://ctext.org/7401&page=1>

78) 史游撰『急就篇』鈕樹玉「校定皇象本急就章自序」:「嘉慶辛未薄游廣陵見汪氏家藏趙文敏手書小楷急就章予爲之審定出皇象本亟假錄一通藏諸行篋」岳麓書社, 1989. 387쪽.

79) 宋濂等撰, 『元史』, 中華書局, 1976.

代(원대) 조맹부의 楷書(해서)본과 明代(명대) 송극이 모사한 宋代(송대)의 刻本(각본)이 모두 황상본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이를 참고하고 교정하여 발간하였다.<sup>80)</sup> 鈕樹玉(뉴수옥 1760년~1827년)은 청나라 후기의 說文(설문)학자로 그의 저서 대부분이 『설문해자』에 관한 저서이다. 주요 저서로 『설문고이』, 『설문신부고』, 『속고』, 『단씨설문주정』, 『설문해자교록』, 『비석선생문집』 등이 있다.

### 3. 송강 『급취장』 각비

『급취편』의 주해서와 범서본은 이미 망실되어 지금은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해시 송강구 송강박물관에 『급취편』을 새긴 刻碑(각비)가 보존되어 있어서 옛적 서법대가의 필적을 증언하듯 망실된 옛 典籍(전적)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송강박물관에 존치된 『급취편』 각비는 세칭 송강 『급취장』이라 칭하는 각비이다. 이 각비에 대한 소개가 2010년 제4기 『상해지방지』에 실렸다. 송강 『급취장』이라는 제하로 상해시 송강구 지방사지 판공실에서 기고한 것이다. 다음은 그 일부를 발췌하였다.

송대 서법가 섭몽득이 선화 2년인 1120년에 당대 사람이 모사한 황상서 『급취장』을 안사고 주석본 『급취장』과 비교하여 교정하고 楷書(해서)를 병기하여 穎昌(의창 지금의 하남성 허창시)에서 『급취장』을 판각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섭몽득이 모사본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300여 자가 결자가 되었다. 명대에 길수 사람인 양정이 영창척본을 찾아내고 보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벼슬길을 찾아 남경, 북경, 개봉, 절강, 복건, 호남, 호북, 광둥, 운남 등지를 돌아다녔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명나라 영종 정통4년인 1439년 송강부에 추관(사법관)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양정이 재임시 한림원편수 양정서의 처소에서 송극이 臨書(임서)한 『급취장』을 보게 되었다. 송극이 임서한 『급취장』은 원나라 혜종 至正(지정)<sup>81)</sup>20년인 1360년에 臨書(임서)한 것이다. 송극은 명나라 초기에 楷書(해서)와 章草(장초)에서 이름을 날린 서법가이다. 양정이 추관을 사임하고, 송극의 臨書(임서)본에 의거하여 섭몽득본에서 결자된 부분을 보완하여 비석에 새겼다. 이로써 섭몽득 모사본 『급취장』이 비로소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 각비가 송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松江急就章碑(송강급취장비)라 하는 것이다. 송강급취장비는 높이가 185cm, 넓이가 93cm, 두께가 22.5cm이다.

80) 鈕樹玉 / 孫星衍 著, 『校定皇象本急就章及急就章攷異』, 商務印書館, 1936.

81) 至正(지정)은 원나라 마지막 연호로 1341년부터 1370년까지 30년 간 사용되었다.

비면은 위에서 아래로 6개의 란으로 구분하여 매 란마다 33행이고 한 행에 11자를 새겼는데 章草(장초)와 楷書(해서)가 좌우로 나란히 새겨졌다. 비석의 뒷면 상단에도 앞면을 이어서 두 개의 란에 본문이 새겨졌다. 비석 뒷면 제2란 좌측 모서리에는 세로로 文廟(문묘) 두 자가 楷書(해서)로 새겨져있으며, 제3란에는 섭몽득이 송나라 휘종 선화2년인 1120년에 쓴 題跋(제발)이 새겨졌는데 18행에 매 행 14자로 새겨졌다. 그 아래로 송극의 臨書(임서)본에서 보완한 글자의 숫자와 단락의 시작과 끝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였고, 戊申(무신 1368년)12월 송극의 章草(장초) 題跋(제발) 및 도연명의 詩(시) 한 수가 章草(장초)로 새겨졌다. 끝으로 양정의 題記(제기)가 있고 맨 마지막 한 행에 ‘고사녕, 요덕성 간’ 이라 새겼는데 비석에 글자를 새긴 조각공의 성명이다. 송강급취장비는 500여년 풍우에 시달리며 약간의 글자가 훼손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되었다. 이 각석은 원래 松江府學(송강부학)에 세워졌는데 倭寇(왜구)가 침입하여 府學(부학)을 훼손하였을 때에도 각석은 다행히 온전하였다. 清代(청대)에 들어서 화정현 文廟(문묘)로 옮겨졌다가 신해혁명 후에 신송강사 경내에 정자를 짓고 그 안으로 옮겨 보호하게 하였다. 1962년에는 시급문물보호단위로 공포하였다. 문화대혁명 중에는 이 각석을 보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인사들이 醉白池(취백지) 경내로 옮겨 寶成樓(보성루) 뒤편 담장 내에 숨겨두었다. 1978년에는 縣의 문화재진열실에 진열되었다가 1984년에 신축된 松江博物館(송강박물관)으로 옮겼는데 1989년에 송강 박물관에 특별히 碑閣(비각)을 만들어 그곳에 松江急就章碑(송강급취장비)를 안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sup>82)</sup>

하였다. 송강급취장비에 새겨진 『급취장』은 황상의 書(서)를 唐代(당대) 사람이 모사하였고 그 모사본을 섭몽득이 臨書(임서)하고 섭몽득 임서본의 부족한 부분을 송극의 書(서)에서 채웠기 때문에 삼국시대 誤國(오국)의 皇象(황상)과 宋代(송대)의 葉夢得(섭몽득)과 明代(명대) 宋克(송극)의 書(서)가 함께 들어있게 되었다. 3인이 모두 當世(당세) 不世出(불세출)의 書法大家(서법대가)들이다. 이러한 서법대가들의 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것이 송강 『급취장』 각비이다.

82) 『上海地方志』: 「宋代书法家叶梦得于宣和二年据唐人摹皇象书参校颜师古注本以正书并列中间刻急就章于颖昌可惜叶梦得摹本首尾缺落300余字明代吉水人杨政觅得颖昌拓本决意补全他在宦游南京北京开封以及浙闽湖广滇各地时都十分留意寻访终无收获明正统四年杨政在任松江府推官时在翰林杨廷瑞处得见宋克于元至正二十年所书急就章临本宋克在明初以善楷书章草而名扬天下杨政请任勉之据此临本将原缺漏的300余字补刻于石上至此叶梦得摹本急就章才趋完整因此碑刻于松江故称松江急就章碑该碑高185厘米宽93厘米厚22.5厘米上下分6栏每栏33行每行11字章草楷书释文左右并列碑阴背面上二栏续刻第二栏左边沿处竖刻楷书文庙二字第三栏刻叶梦得宣和二年1120年题跋18行每行14字再下是宋克临本的补字每段末用小楷标明所补字数及起迄段落后刻元代戊申十二月宋克章草题跋及其所书章草陶渊明诗一首末为杨政题记最后一行刻顾士宁姚德诚刊为刻工姓名松江急就章碑历经500多年风雨沧桑除少数数字缺损外大体保存完好此石刻原置松江府学倭寇毁府学碑幸存于清代移于华亭县文庙辛亥革命后又移入新松江社内建亭予以保护1962年公布为市级文物保护单位文化大革命中为保护这一文物有心人将其移至醉白池内藏匿于宝成楼后的夹墙内1978年陈列于县文物陈列室1984年移至新建的松江博物馆1989年在松江博物馆特建一碑亭置放该碑。」上海市地方志办公室, 2010年第四期, <http://www.shtong.gov.cn>

## IV. 『금취편』의 체례

『금취편』의 체례는 序文章(서문장), 姓名章(성명장), 諸物章(제물장), 五官章(오관장), 加筆章(가필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144자가 수록되었다. 각 장의 章(장)이라는 명칭은 原文(원문)의 문구인 ‘請道其章(청도기장)’에 따라 命名(명명)되었다. 현행 『금취편』은 1章(장)의 글자 수가 63자이다. 文句(문구)의 형식은 3언구, 4언구, 7언구의 韻文(운문)형식으로 3언구와 4언구는 2구 押韻(압운)이고 7언구는 매 구에 押韻(압운)되었다.

### 1. 서문장

서문장은 原書(원서)의 序文(서문)과 안사고의 注序(주서)와 왕응린의 後序(후서) 및 사고전서총목제요의 『금취편』 提要(제요)를 함께 실었다.

#### 1) 『금취편』 서문

서문장은 『금취편』의 저자인 사유의 서문으로 『금취편』을 집필한 의도가 피력되었다. 원문번호 제001번에서 제005번까지 7언구 5구 35자로 이루어졌다. 『금취편』 서문의 주석에서 안사고는

매 章(장)의 첫머리에 章(장)의 수를 표기하고 일정하게 字數(자수)를 끊어 章(장)을 구성한 것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동들이 簡牘(간독)에 쓰기 편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앞의 章(장)과 뒤의 章(장)은 앞 章(장)의 마지막 구와 뒤 章(장)의 첫 구가 서로 관계를 가진다. 사유는 한나라 원제때 사람이다. 『한서·예문지』에 보인다. 황 문령은 소부에 속해있다.

하였다. 한편 왕응린은 補注(보주)에서

急(급)은 빠르다. 就(취)는 이루다. 篇(편)은 책이다. 『예문지』에서 이르기를 모두 『창힐편』에 있는 正字(정자)라 하였다. 시골의 글 선생들이 『창힐편』 『원력편』 『박학편』 3편을 합하여 60자를 1장으로 『창힐편』을 만들었다 하였는데 이 『급취편』도 分章(분장)된 것이 그리하여 모두 32장이다. 조공무의 『군재독서지』에서도 성명, 여러 가지 물건, 오관 등의 글자로 학동들을 가르쳤다 하였다. 急就篇(급취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글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니 빠르게도 되고 늦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 탐구하라는 것이다. 『설문해자』의 서문에 한나라 율령에 학동이 17세가 되면 시험을 치렀는데 籀文(주문) 구천 자를 외우면 史(사)가 되었다. 또한 史(사)가 된 자에게 八體(팔체)를 시험하여 통과된 자는 郡(군)으로 옮겨 太史(태사)의 시험을 거쳐 최우수자는 尚書史(상서사)가 되었다. 글이 혹 빠르지 않으면 즉시 탄핵을 당하였다. 『후한서·환자열전·서』에 史游(사유)는 黃門令(황문령)이다. 마음이 충성스럽고 근면성실 하며 이롭게 한바가 있다하였고, 그 注(주)에 궁궐의 문을 黃闥(황달)이라 하고 환관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안사고의 주석에서 ‘每標章首(매표장수)’라 하였는데 이것은 매 章(장)마다 제1장 제2장이라는 장의 번호가 표제로 쓰였다는 말이다. 한문전적에서 文(문언문)은 章(장)의 구분이나 구두점이 없다. 만약 章(장)의 구분되고 구두점이 있는 문언문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그런데 『급취편』은 章(장)의 번호를 표제로 하여 매 章(장)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나의 章(장)이 독립된 문서이면 章(장)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연결된 문장에 일정한 글자의 수를 기준으로 章(장)이 구분되었다면 이것은 문언문에서 없었던 편집형식이다. 안사고는 이러한 편집방식은 오로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한 편집이라 하였고 그 편의란 簡牘(간독)에 쓰기 편리하도록 한 것이라 하였다. 簡牘(간독)은 당시의 書寫(서사)도구로 지금의 종이 구실을 하였다. 書寫(서사)도구에서 종이는 蔡倫(채륜 61년~121년)이 발명하였다. 채륜은 후한 和帝(화제)때에 중상시로 재임 중 尙方令(상방령 궁중의 공작소 관장)이 되어 105년 궁중의 공작소에서 종이를 발명하였다. 『후한서·환자열전』에

옛적부터 글씨를 쓰는 데에는 죽간을 많이 사용하였고 더러 비단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글을 쓰는데 사용된 비단을 紙(지)라 하였다. 비단은 귀하고 죽간은 무거워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였다. 채륜이 나무껍질, 삼실, 낡은 면포, 폐그물을 이용하여 종이를 만들었다. 元興(원흥)<sup>83)</sup>원년에 황제에게 채륜이 만든 종이를 올리니 황제께서 그 능력을 상찬하시었다. 이때부터 쓰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채륜이 만들었으

83) 後漢 和帝의 두 번째 연호 AD. 105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되었다.

므로 천하가 모두 蔡侯紙(채후지)라 칭했다.<sup>84)</sup>

하였다. 즉 종이 발명된 시기가 AD. 105년이다. 이전에는 簡牘(간독)이 종이 구실을 하고 있었다. 簡(간)은 竹簡(죽간)을 이르고 牘(독)은 木版(목판)을 이른다. 簡(간)자는 竹(죽)과 間(간)의 合體字(합체자)이고, 牘(독)은 片(편)과 賣(매)의 合體字(합체자)이다. 片(편)은 木(목)을 반으로 쪼개어 나눈 오른쪽의 상형자이다. 다른 왼쪽의 자는 冫(장)이다. 字形(자형)에서 나타나듯이 簡(간)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牘(독)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춘추좌전정의·서』에

釋器(석기)에 簡(간)은 畢(필)을 이른다 하였고, 牘(독)은 書板(서판)이라 하였다. 說文(설문)에 簡(간)은 牒(첩)이라 하였고, 牘(독)은 書板(서판)이라 하였다. 채옹의 『독단』에 策(책)이란 簡(간)이다. 그 만들어진 것을 보면 긴 것은 2척이고 짧은 것은 1척인데 하나는 긴 것으로 하나는 짧은 것으로 차례차례 엮어서 위와 아래 양쪽을 끈으로 매었다고 하였다. 정현의 주석한 『中庸』에도 策(책)은 簡(간)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즉 簡(간), 札(찰), 牒(첩), 畢(필)은 같은 물품인데 이름만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손에 잡고 보는 하나의 札(찰)을 簡(간)이라 이르고 여러 개의 簡(간)을 엮어 놓은 것을 策(책)이라 한다. 古文(고문)에는 策(책)을 冊(책)으로도 썼다. 冊(책)자는 대쪽을 엮어 놓은 모양의 象形字(상형자)이다. 簡(간)을 엮어 놓은 것을 策(책)이라 하고 있으니 策(책)을 簡(간)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정현이 주석한 『논어』 서문에 『춘추』는 2척4촌에 書寫(서사)되었고 『효경』은 1척2촌에 書寫(서사)되었다 하였으니 六經(육경)의 策(책)을 2척4촌이라 칭하는 것이 簡(간)의 길이를 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옹이 말한 2척이라는 것은 漢代(한대)에 天子(천자)의 策書(책서)에 사용된 것을 이르는 것이므로 六經(육경)과는 다른 것이다. 簡(간)에는 1행의 글만 쓸 수 있다. 牘(독)은 네모진 版(판)이다. 版(판)은 簡(간)보다 폭이 넓다. 그러므로 여러 행의 글을 쓸 수 있다. 무릇 문서라는 것은 글자의 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1행으로 다 쓸 수 있으면 簡(간)에 기록할 수 있고, 여러 행으로 써야 다 쓸 수 있으면 牘(독)에 기록하고, 牘(독)에 다 쓸 수 없으면 策(책)을 쓰게 된다. 聘禮記(빙례기)에 이르기를 魯(루)의 季康子(기강자)가 魯(루)의 季康子(기강자)에게 魯(루)의 季康子(기강자)의 하달사항을 문서로 작성할 때 100자가 넘으면 策(책)에 기록하고 100자 미만이면 牘(독)에 기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글자가 많으면 策(책)에 기록하고 글자가 적으면 簡(간)에 기록한다는 것이다.<sup>85)</sup>

84)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自古書契多編以竹簡, 其用縑帛者謂之爲紙. 縑貴而簡重, 並不便於人. 倫乃造意, 用樹膚, 麻頭及敝布, 魚網以爲紙. 元興元年奏上之, 帝善其能, 自是莫不從用焉, 故天下咸稱蔡侯紙.」 中華書局, 1965. 3038쪽.

85) 孔穎達 撰, 『春秋左傳正義』: 「釋器云簡謂之畢, 郭璞云今簡札也. 許慎說文曰簡牒也. 牒書版也. 蔡邕獨斷曰策者簡也. 其制長二尺短者半之, 其次一長一短兩編下附. 鄭玄注中庸亦云策簡也. 由此言之, 則簡, 札, 牒, 畢同物而異名. 單執一札謂之爲簡, 連編諸簡乃名爲策, 故於文策或作冊, 象其編簡之形. 以其編簡爲策, 故言策者簡也. 鄭玄注論語序云春秋二尺四寸書之. 孝經一尺二寸書之. 故知六經之策皆稱長二尺四寸. 蔡邕言二尺者, 謂漢世天子策書所用, 故與六經異也. 簡之所容一行字耳. 牒乃方版, 版廣於簡, 可以并容數行. 凡爲書, 字有多有少, 一行可盡者書之於簡. 數行乃盡者書之於方. 方所不容者, 乃書於策. 聘禮記曰,

라고 하였다.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簡(간)은 폭이 좁아서 글자를 쓸 때 1행밖에 쓸 수 없으나 牘(독)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書板(서판)이 폭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손에 쥐어서 볼 수 있는 최대의 크기 이상으로 넓게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居延漢簡(거연한간)<sup>86)</sup>이 출토되었는데 簡(간)은 소량이 출토되었고 대부분 牘(독)이 출토되었다. 簡牘(간독)의 모양은 길이가 23cm 넓이가 1cm이고 서체는 한나라 때의 隸書(예서) 서체였다. 睡虎地秦簡(수호지진간)<sup>87)</sup>도 발굴되었는데 모두 竹簡(죽간)으로 길이가 23cm에서 28cm 넓이가 5mm에서 8mm까지 있었다. 居延漢簡(거연한간)이나 睡虎地秦簡(수호지진간)은 관서의 書寫(서사)전문가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글씨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1cm나 5mm 또는 8mm의 좁은 書板(서판)에 획수가 많은 한자를 쓰기는 어려운 일이다. 漢尺(한척)은 1척이 23cm정도이다. 居延漢簡의 길이가 23cm인 것은 尺牘(척독)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尺牘(척독)은 보통명사로 簡牘(간독)에 書寫(서사)한 문서를 이른다. 종이가 발명되어 종이에 쓴 편지를 이룰 때도 尺牘(척독)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簡牘(간독)은 표준이 1척이었음을 알 수 있다. 1척에 써 넣을 수 있는 글자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글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편에 엮이는 끈 부분을 제외하고 21자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竹簡(죽간)은 1행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장의 글자 수가 63자이면 세 개의 竹簡(죽간)이 1장이 된다. 만약 木牘(목독)을 사용할 경우 3행을 쓸 수 있도록 제작하면 하나의 木牘(목독)에 1장의 글자를 모두 쓸 수 있다. 안사고가 簡牘(간독)에 쓰기 편리하도록 章(장)을 나누었다고 하였으니 木牘(목독)에 3행으로 쓰면서 글씨를 익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현행 『금취편』은 1장의 글자 수가 63자이다.

한편 왕응린의 보주에서 ‘『예문지』에서 이르기를 모두 『창힐편』에 있는 正字(정자)이다.’하였는데 여기서 正字(정자)는 상용자를 말한다. 즉 『창힐편』은 60자를 1장으로 하여 모두 55장으로 3,300字이다. 이 가운데서 상용자를 뽑아서 63자를 1장으로 하여 31장으로 편집한 것이 『금취편』이라는 말이다. 보주는 조공무의 『군재독서지』도 인용하고 있는데 『군재독서지』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私家藏書目錄書(사가장서목록서)이다. 晁公武(조공무 1105년~1180년)가 1151년에 초고를 완

若有故則加書將命,百名以上書於策,不及百名書於方。 是其字少則書簡,字多則書策。」 山東友誼書社, 1993. 30쪽.

86) 1930年 中國 內蒙古 居延地區의 城障、烽燧、關塞遺址에서 發掘한 漢簡 一萬餘枚를 지칭한다.

87) 1975年12月 中國 湖北省 雲夢縣 城關 睡虎地 十一號墓에서 出土된 秦代의 竹簡을 지칭한다.

성하였다. 도서목록을 經史子集(경사자집)<sup>88)</sup>으로 대분류하여 이를 四部(사부)라 하고 그 밑으로 45類(류)로 세분하여 이를 小類(소류)라 하였다. 四部(사부)에는 大序(대서)를 붙였고 小類(소류)에는 小序(소서)를 붙였다. 또한 책마다 解題(해제)를 달았다. 특히 經書(경서)의 序文(서문)에 先秦(선진) 兩漢(양한) 魏晉(위진) 中唐(중당)을 거치면서 經學(경학)의 전해오는 과정에서 변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특기할만한 견해로 평가되고 있다. 조공무는 남송의 학자로 남송 孝宗(효종 재위 1162년~1189년)때에 이부시랑을 역임한 인물이다. 『급취편』은 經部(경부) 小學類(소학류)에 분류되었다. 원서 서문장의 全文(전문)은 다음과 같다.

### 【원서서문】

急就奇觚與衆異. 羅列諸物名姓字. 分別部居不雜廁. 用日約少誠快意. 勉力務之必有喜. 급취기고여중이. 라렬제물명성자. 분별부거부잡측. 용일약소성쾌의. 면력무지필유희.

### 【번역문】

속성으로 글을 익힐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진기한 책으로 여러 종류의 많은 내용의 분류되어 제공된다. 여러 가지의 사물과 성명의 글자들이 열거되었다. 사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같은 부류끼리 묶어 놓아서 다른 종류가 섞여서 혼잡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하루에 약간의 시간을 절약하여 급취편을 학습하면 진실로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급취편 공부에 진력한다면 반드시 기쁨이 있다.

## 2) 안사고의 주서

注序(주서)는 안사고의 서문이다. 안사고가 『급취편』의 주석본을 내면서 그 동기와 취지에 대하여 자신의 심중을 토로하고 있다. 다음은 주서의 全文(전문)이다.

### 【주서원문】

急就篇注序

88) 經은 易經·詩經·書經 등의 경서류이고, 史는 史記·漢書 등의 역사서이며, 子는 老子·孟子·荀子·韓非子 등의 諸子류이고, 集은 詩·賦 등의 문집류를 말한다.



秘書監弘文館學士上護軍琅邪縣開國子顏師古撰

『急就篇』者 其源出於小學家. 昔在周宣 粵有史籀(音冑). 演暢古文 初著大篆. 秦兼天下 罷黜異書. 丞相李斯 又撰『蒼頡』. 中車府令趙高 繼造『爰歷』. 太史令胡毋(音某)敬 又作『博學篇』. 皆所以啓導青衿 垂法錦帶也. 逮至炎漢 司馬相如作『凡將篇』 俾效書寫 多所載述 務適時要. 史游景慕 擬而廣之. 元成之間 列於祕府. 雖復文非清靡 義闕經綸 至於包品類 錯綜古今. 詳其意趣(七句反). 實有可觀者焉. 然而時代遷革 亟經喪亂 傳寫湮訛 避諱改易 漸就蕪舛 莫能釐正. 少者闕而不備 多者妄有增益. 人用己私 流宕(徒浪反). 忘返. 至如蓬門野賤 窮鄉幼學 遞相承稟 猶競習之. 既無良師 祇增僻謬. 若夫縉紳秀彥 膏粱子弟 謂之鄙俚 恥於窺涉. 遂使博聞之說 廢而弗明 備物之方 於茲寢滯. 師古家傳『蒼』 『雅』 廣綜流略 尤精訓故. 待問質疑 事非稽考 不妄談說 必則古昔 信而有徵. 先君(師古父思魯). 常欲予讀『急就』 以貽後學. 雅志未申 昊天不弔. 奉遵遺範 永懷罔極. 舊得皇象鍾繇衛夫人王羲之等所書篇本 備加詳覈 足以審定 凡三十二章. 究其真實 又見崔浩及劉芳所注 (後魏太宗元年敕崔浩解. 劉芳續注音義證三卷). 人心不同 未云善也. 遂因暇日 為之解訓. 皆據經籍遺文 先達舊旨 非率愚管 斐然妄作. 字有難識 隨而音之. 別理兼通 亦即並載. 可以祛發未寤 矯正前失. 振幽翳之學 據制述之意 庶將來君子 裁其衷焉.

### 【번역문】

『급취편』은 소학가에서 나왔다. 옛적 周(주)나라 宣王(선왕)때에 史籀(사주)가 古文(고문)을 기록하였는데 大篆(대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秦(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秦(진)나라의 문자와 다른 문자는 모두 폐기하였다. 秦(진)나라 승상 이사(이사)가 『창힐』을 지었고, 중차부령 조고가 이어서 『원력』을 지었으며, 태사령 호무경이 『박학편』을 지었다. 이것으로 모든 관원과 학도들을 개도하였다. 漢(한)나라가 세워지고 사마상여가 『범장편』을 지었는데 書寫(서사)의 본보기가 되었고 관직에 필요한 문자들이 많이 수록되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다. 사유가 『범장편』을 모방하여 『급취편』을 지었는데 『범장편』보다 내용을 확충시켜 저술하였다. 『급취편』은 元帝(원제)와 成帝(성제)연간에 祕府(비부)에 진열되었다. 비록 겹치는 글자가 있고 청신하고 화려하지는 않으나 대궐에서의 경륜이 담겨있고 諸物(제물)에 이르러서는 古今(고금)의 品類(품류)가 모두 망라되었다. 『급취편』의 내용

을 상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불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傳寫(전사)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빠지거나 틀린 글자가 있게 되었고 避諱(피휘)를 한 다면서 글자 바꾸기를 아무렇게나 해대었으므로 점차 문장이 난잡하고 어그러지게 되어 바르게 정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작은 것은 빠져서 갖추어지지 않았고, 많은 것은 제멋대로 더하여 부풀려지는 등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나 가난하고 궁벽한 시골의 어린 학동들은 이러한 책을 서로 번갈아 물려가면서 학습하였다. 이미 덕망 있는 스승도 없고 책마저 이러하니 더욱 황당무계하고 正理(정리)에 위배되는 것들이 오히려 숭상되는 세태가 되었다. 그런데 관리나 선비나 또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은 이 책이 천박한 자들이나 보는 책이라 하여 대충 훑어보는 것조차도 마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사물에 관한 넓은 지식이 단히고 의례와 기물을 갖추는 방법도 이에 그치게 되었다. 우리 집안에 『창힐편』과 『이아』 등 前代(전대)의 典籍(전적)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 典籍(전적)에 訓詁(훈고)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창힐편』과 『이아』에 더욱 세밀한 訓詁(훈고)를 하였다. 그 두 典籍(전적)에 대한 訓詁(훈고)를 할 때 의문이 생기면 질의하여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으며 사실이 아니면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허망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반드시 옛일을 상고하여 확실하게 하되 반드시 증거가 있게 하였다. 선친께서 항상 『급취편』에 주석을 하여 후학들에게 물려주려 하였는데 그 뜻을 펴지 못하였으니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선친이 남기신 모범을 좇아 받들어야 하나 오래도록 마음에만 품고 있을 뿐이어서 망극하였다. 이전에 황상, 중요, 위부인, 왕희지 등의 書寫(서사)한 『급취편』을 얻은 것이 있었다. 그 네 사람의 書寫(서사)한 『급취편』을 종합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세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모두 32장으로 하였다. 32장으로 분장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 재차 최호와 유방의 주석본을 검토하였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아직 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침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급취편』을 주석하였다. 모두 經籍(경적)의 遺文(유문)에 의거하였고 선현의 옛 취지에 맞추어 어리석은 견해를 멋대로 갖다 붙이거나 하지 않았다. 글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것은 그 음(음)을 따랐고, 특별히 쓰이는 별도의 뜻이 있으면 통용되는 뜻과 함께 나란히 올려놓았다. 다시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잠을 쫓으면서 이전에 잘못된 점을 교정하였다. 침체된 학문을 진작시키려는 뜻에서 기술한 것이니 아무쪼록 장래 군자들께서는 그 충심을 헤아려주실 것을 바라마지않는다.

### 3) 왕응린의 후서

後序(후서)는 왕응린의 跋文(발문)이다. 『금취편』의 위상을 말하고 자신의 補注(보주)를 하게 된 취지를 피력하였다. 다음은 그 全文(전문)이다.

#### 【후서원문】

漢藝文志小學十家. 蒼頡篇見考工記注者, 唯鞞(匹學反)鞞(人兗反)柯櫛(張玉反)四字. 凡將見文選注藝文類聚者, 唯黃潤織美宜制禪, 鐘磬竽笙筑坎侯二句. 訓纂見史記正義者, 唯戶扈鄆三字. 其屢存者, 急就篇而止耳. 隋唐志始謂急就章. 崔浩寫以百數. 劉蘭入小學書之. 李鉉九歲入小學書之. 月餘即通. 李繪六歲亦通此章. 是以其學至唐猶傳. 顏師古祖之推賞爲之注, 淵源有自來矣. 蓋君子耻一物之不知, 倫類不通, 不足謂善學. 嘗觀衆仲對氏族. 師服申繻論名子. 籍談忘司典之後, 景王以爲譏, 衛侯以辟疆爲名, 周人不肯受. 繫之以姓, 著於世本. 字而不名, 貴於春秋. 故始之以姓氏名字. 學詩多識鳥獸草木之名. 論語備錄衣服飲食之制. 陶弘景讀書萬卷, 尤明醫術本草. 韓文公謂禮樂名數方藥之書未有不通. 此而爲大賢. 致知在格物. 觀物以觀我生. 故次之以服器百物. 周書言學古入官. 子產云學而後入政. 董仲舒以春秋斷獄. 雋不疑以經術決事. 若授之以政不達. 宋泉之孝敬. 蘇威之五教. 人到于今羞之. 故終之以文學法理, 器無非道, 學無非事, 其義不可須臾舍也. 鴻生鉅儒, 不敢以小書忽焉. 輯州名, 摭奇字, 悉放其體. 諸經義疏引之者五, 周禮考工記疏引, 分別部居不雜廁. 蒲蒨蘭席. 天官疏引, 司農少府國之淵. 左傳正義引, 蕪萑鹽鼓. 頃町界畝. 後漢書注引之者一. 張敏傳注引, 臯陶造獄法律存. 韻書亦援以言姓氏. 班孟堅之用祿飾. 潘安仁之用乘風. 王禹玉之用奇觚. 宋景文之用鞞鞞. 朱文公之用老復丁. 至於不借, 籛篠, 鳧翁, 無等雙之語. 臨川山谷詩皆采掇之. 博觀而約取. 此難與耳學者言也. 古者保氏教六書, 外史達書名. 漢猶有課試舉劾之灋. 故馬尾之書必謹. 自篆而隸. 自隸而藁. 鍾王之後, 以意行書. 先漢遺文古事, 寢以晦昧. 急就雖存, 而曹壽, 劉芳, 豆盧氏, 安지 주注解, 軼而不傳. 昔以是爲童蒙之學, 今有皓首未覩者. 俗書溢於簡牘, 訛音流於諷誦. 襲浮踵陋視, 名物數度若弁髦, 而大學之基不立. 迺因顏注, 補其遺闕, 擇衆本之善, 訂三寫之差, 以經史諸子探其原, 以爾雅方言本草辯其物. 以詩傳楚辭叶聲韻. 以說文廣韻正音詁. 若閔閣之相混, 得於釋文, 揃滅之所出, 取於莊子. 稽

極之誤，因說文通釋而知。利親勝客之類，因史記漢表而見。簧當作籥，輶當作操，壘當作垒。實事求是，不敢以臆說參焉。疑者闕之，以俟後之君子。李斯作蒼頡篇，後人附益。末章乃有漢兼天下，此篇齊國山陽兩章亦然。略解其義，綴於下方。夫物有本末，理無小大，循序致精，學之始事也。雖然，耄學而爲童習，其能免玩物愛奇之失乎。

浚儀王應麟識。

### 【번역문】

『한서·예문지』에 소학 10家(가)가 있다. 그 10家 가운데 현재 문헌에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장힐편』의 鞞(포), 磬(연), 柯(가), 櫺(축) 등 4자가 『주례·동관고공기』 주석에 보이고 있다. 『범장편』은 『문선』注(주)와 『예문류취』에 보이는데 黃潤織美宜制禪(황윤섬미의제단), 鐘磬竽笙筑坎侯(종경우생축감후). 2구만이 보이고 있다. 『훈찬편』은 『사기정의』에 보이는데 단지 戶(호), 扈(호), 鄠(호) 등 3자만 보이고 있다. 이것이 10家 가운데 겨우 볼 수 있는 잔영이다. 그 10家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금취편』이다. 『금취편』은 『수서·경적지』와 『당서·예문지』에 『금취장』이라하였다. 최호가 『금취장』 백 수편을 書寫(서사)하였다 하고, 유란이 소학에 들어가 『금취편』을 썼다 하며, 이현은 9세에 소학에 들어가 『금취편』을 썼다 하는데 대체로 한 달 남짓하면 곧 쓰게 되었다 한다. 이회 역시 6세에 『금취장』을 썼다하는데 이것은 『금취장』이 唐代(당대)에 학습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사고의 조부인 안지추가 일찍이 『금취편』에 注(주)를 달았는데 이것이 주석의 淵源(연원)이다. 무릇 군자는 一物(일물)에 관한 不知(부지)로도 부끄러운 것인데 사물의 조리에 不通(불통)하다면 배움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일찍이 종종이 씨족에 대한 견해를 밝힌바가 있다. 사복과 신수는 자식의 이름에 대하여 논하였다. 적담이 사관의 후손임을 망각하였다고 경왕이 조롱하였다. 위후가 辟疆(벽강)으로 이름을 삼으니 周(주)나라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姓(성)으로 혈통을 나타낸 것은 『세본』이다. 字(자)를 부르고 名(명)은 부르지 않았다. 名(명)을 귀히 여긴 사례는 『춘추』에 있다. 그러므로 고대부터 姓(성)과 氏(씨), 名(명)과 字(자)가 있었다. 『시경』을 학습하면 鳥(조), 獸(수), 草(초), 木(목) 등의 명칭들을 많이 알 수 있다. 『논어』에는 의복과 음식의 제도에 관하여 두루 갖추어 기록되었다. 도홍경은 만권의 책을 읽었다 하는데 더욱 의술에 밝아 『본초』를 저술하였다.

한문공은 禮樂(예악), 名數(명수), 方藥(방약) 등의 서적에 관하여 불통한 것이 아직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大賢(대현)이다. 知(지)에 이르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 官物(관물)은 나를 관찰하는데서 생긴다. 그러므로 순서가 의복과 器物(기물)과 百物(백물)의 순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경·주서·주관』에 ‘옛것을 배우고 관리가 된다.’하였고 『좌전·양공삼십일년』 조에 ‘자산이 이르기를 배운 뒤에 조정에 든다.’하였다. 동중서는 『춘추』로써 獄事(옥사)를 처리하였고, 준불의는 經義(경의)로써 매사를 처리하였다. 이것은 『논어』의 ‘授之以政不達(수지이정부달)<sup>89)</sup>과 같은 맥락으로 학문을 이룬 후에 정무를 담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송천의 『효경』과 소위의 五教(오교)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배움으로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經書(경서)로써 법리를 삼으니 器(기)에도 道(도)아닌 것이 없고 學(학)에도 事(사)아닌 것이 없다. 소학의 義(의)가 잠시라도 버려질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하니 박학다식한 대학자라도 감히 소학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補注(보주)를함에 州名(주명)을 집록하고 奇字(기자)를 가려내어 모두 그 본체대로 해놓았다. 여러 經典(경전)의 義疏(의소)에서 『급취편』이 인용된 것은 5구이다. 『주례·동관고공기』의 疏(소)에 인용된 것은,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sup>90)</sup>과 ‘蒲蒻藺席(포약인석)<sup>91)</sup>이다. 『주례·천관총재』의 疏(소)에 인용된 것은 ‘司農少府國之淵(사농소부국지연)<sup>92)</sup>이다. 『좌전정의』에서 인용된 것은 ‘蕪荑鹽豉(무이염시)<sup>93)</sup>와 ‘頃町界畝(경정계무)<sup>94)</sup>이다. 『후한서·등장서장호렬전·장민전』 주석에서 인용된 것은 ‘臯陶造獄法律存(고요조옥법률존)<sup>95)</sup>이다. 『운서』에서도 역시 인용되었는데 姓氏(성씨)에 관한 것이다. 반맹견이 襍飾(상식)<sup>96)</sup>을 인용하였다. 반안인이 乘風(승풍)<sup>97)</sup>을 인용하였다. 왕우옥이 奇觚(기고)<sup>98)</sup>를 인용하였다. 송경문이 鞵鞞(색택)<sup>99)</sup>을 인용하였다. 주문공이 老復丁(노복정)<sup>100)</sup>, 不借(부차)<sup>101)</sup>, 籛篠(거저)<sup>102)</sup>, 鳧翁(부

89) 授之以政不達(수지이정부달)은 詩 삼백편을 외웠으나 정사를 맡겼을 때 이를 감당치 못하고 사신으로 나가 혼자서 외교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많이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말이다.

90)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은 『급취편』 원문번호 003번의 서문장 문구이다.

91) 蒲蒻藺席(포약인석)은 『급취편』 원문번호 203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92) 司農少府國之淵(사농소부국지연)은 『급취편』 원문번호 319번의 오관장 문구이다.

93) 蕪荑鹽豉(무이염시)은 『급취편』 원문번호 162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94) 頃町界畝(경정계무)은 『급취편』 원문번호 256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95) 臯陶造獄法律存(고요조옥법률존)은 『급취편』 원문번호 321번의 오관장 문구이다.

96) 襍飾(상식)은 『급취편』 원문번호 208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97) 乘風(승풍)은 『급취편』 원문번호 142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98) 奇觚(기고)은 『급취편』 원문번호 001번의 서문장 문구이다.

99) 鞵鞞(색택)은 『급취편』 원문번호 178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용)103), 無等雙(무등쌍)104)을 인용하였다. 『림천선생문집』의 山谷詩(산곡시)에도 인용되었다. 고대에는 보씨가 六書(육서)를 가르쳤다. 『주례·춘관중백·외사』에 ‘사방의 서적에 쓰인 글자에 통달하여 그 서적들을 관장하였다.’하였고, 漢代(한대)에도 시험을 하여 글자를 잘못 쓰면 규탄하는 법이 있었다. 그러므로 馬尾之書(마미지서)는 반드시 신중히 하였다. 篆書(전서)에서 隸書(예서)로 隸書(예서)에서 草書(초서)가 나타났다. 중요와 왕희지 이후 行書(행서)가 유행하였다. 先漢(전한)시대의 遺文古事(유문고사)는 점차 사실을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애매하게 되었다. 『급취편』은 비록 남았으나 조수, 류방, 두로씨, 안지추의 주해서는 망실되어 전하지 못했다. 옛날에는 이 『급취편』을 童蒙之學(동몽지학)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머리가 희어진 자도 이 『급취편』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 俗書(속서)는 簡牘(간독)에 넘치고 訛音(와음)이 그대로 諷誦(풍송)되고 근거도 없는 비루한 것만 보고 있으니 名物制度(명물제도)가 무용지물 같이 되었다. 그러니 大學(대학)의 基本(기본)이 서지 못하는 것이다. 本注(본주)가 넓은 범위에서 취하였으므로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므로 배우는 자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안사고의 本注(본주)에 근거하여 그 남겨진 부분을 補(보)하였다. 많은 서적에서 그에 알맞은 문구를 선택하였고 書寫(서사)하면서 발생하는 착오나 상이점은 여러 번 교정하였다. 經史諸子(경사제자)에서 그 기원을 탐구하였고, 『이야』, 『방언』, 『본초』를 인용하여 그 사물에 대하여 논변하였다. 『시전』, 『초사』에서 叶韻字(협운자)를 살폈다. 『설문해자』, 『광운』을 들어 正音(정음)을 주해하였다. 闕(굉)과 闕(각)같이 서로 혼동을 일으키는 글자는 『석문』에서 판별하였다. 揃滅(전멸)이 나온 곳은 『장자』에서 취했다. 稽(계)와 極(극)에 대한 誤認(오인)은 『설문통석』을 통하여 바르게 하였다. 利親(이친)과 勝客(승객)같은 종류는 『사기』와 『한서·백관공경표』에 나온 것이다. 箕(황)은 당연히 籩(궤)로 써야한다. 輶(상)은 당연히 操(조)로 써야한다. 壘(루)는 당연히 隤(루)로 써야 한다. 이와 같이 實事求是(실사구시)하여 감히 臆說(억설)을 섞어놓거나 하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것은 꺾로 남겨두어서 훗날의 군자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李斯(이사)가 지은 『창힐편』에 後人(후인)들이 文句(문구)를 덧붙여 놓았는데 마지막 장

100) 老復丁(노복정)은 『급취편』 원문번호 371번의 오관장 문구이다.

101) 不借(부차)은 『급취편』 원문번호 175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102) 籩籥(거저)은 『급취편』 원문번호 188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103) 梟翁(부옹)은 『급취편』 원문번호 144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104) 無等雙(무등쌍)은 『급취편』 원문번호 208번의 제물장 문구이다.

끝에 있는 ‘漢兼天下(한겸천하)’가 그것이다. 이 『금취편』에도 齊國(제국)과 山陽(산양) 두 章(장)을 가필해 놓았는데 역시 후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다. 후인들이 가필한 문구에 대해 그 뜻을 略解(약해)하여 밑에 달아 놓았다. 무릇 사물에는 본말이 있으나 이치에는 대소가 없다. 순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배우는 자가 처음 할 일이다. 비록 耄學(모학)<sup>105)</sup>일지라도 어릴 때부터의 학습에 의한 것이다. 耄學이면 이제 는 노리개를 가지고 놀 때가 지났다 하여도 그가 아끼는 진기한 것이면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준의에서 왕응린 씀.

#### 4) 사고전서총목제요 『금취장』

『사고전서총목제요』는 紀昀(기윤 1724년~1805년)이 지은 것으로 청나라 乾隆帝(건륭제 재위 1736년~1795년)의 칙명에 의해 저술되었다. 사고전서총서의 각 권에 대해 대요를 해설하였다. 사고전서는 건륭제의 칙명으로 先秦(선진)시기부터 건륭제 이전에 저술된 모든 서적을 찬집한 전집이다. 사고전서라는 명칭은 네 개의 서고에 藏書(장서)한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全書(전서)는 經史子集(경사자집)으로 분류되어 3,461종 79,309권이고 서목만 수록된 것이 6,790종에 93,551권이다. 사실상 건륭제 이전의 중국의 도서가 모두 찬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취편』은 사고전서 經部(경부) 소학류에 수록되었는데 소학류는 一類(일류) 訓詁書(훈고서), 二類(이류) 字書(자서), 三類(삼류) 韻書(운서)로 분류되었다. 『금취편』은 字書(자서) 첫 번째로 수록되었고 그 다음에 『설문해자』가 수록되었다. 소학류는 訓詁書(훈고서) 15권, 字書(자서) 45권, 韻書(운서) 41권 등 총101권이 수록되었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금취장』으로 표기되었다. 『금취장』제요의 全文(전문)은 다음과 같다.

#### 【사고전서총목제요원문】

小學二類 急就章四卷 通行本.

急就章四卷 通行本. 漢史游撰. 『漢書·藝文志』註稱游爲元帝時黃門令 蓋宦官也 其始末則不可考矣. 是書 『漢志』但作 『急就』一篇 而小學類末之敍錄則稱史游

105) 耄學(모학)은 나이가 많은 碩學을 칭하는 것이다.

作『急就篇』 故晉夏侯湛抵疑 稱鄉曲之徒 一介之士 曾諷『急就』通甲子. 『北齊書』稱李鉉九歲入學 書『急就篇』. 或有篇字 或無篇字 初無一定. 『隋志』作『急就章』一卷 『魏書·崔浩傳』亦稱人多託寫『急就章』是改篇爲章在魏以後. 然考張懷瓘『書斷』曰 章草者 漢黃門令史游所作也. 王愔云 案此蓋引王愔文字志之語. 漢元帝時 史游作『急就章』解散隸體 漢俗簡惰 漸以行之是也. 然則所謂章草者 正因游作是書 以所變草法書之. 後人以其出於『急就章』遂名章草耳. 今本每節之首俱有章第幾字知『急就章』乃其本名或稱『急就篇』或但稱『急就』乃偶然異文也. 其書自始至終 無一複字 文詞雅奧亦非蒙求諸書所可及. 『玉臺新詠』載梁蕭子顯『烏栖曲』有鬋邊雜佩琥珀龍句. 馮氏校本 改龍爲紅. 今檢此書 有繫臂琅玕虎魄龍句. 乃知子顯實用此語 馮氏不知而誤改之. 則遺文瑣事亦頗賴以有徵 不僅爲童蒙識字之用矣. 舊有曹壽、崔浩、劉芳、顏之推註 今皆不傳 惟顏師古註一卷存. 왕응린又補註之 釐爲四卷. 師古本比皇象碑多六十三字而少齊國山陽兩章 止三十二章. 應麟『藝文志考證』標真定常山至高邑句 以爲此二章起於後漢 最爲精確. 其註亦考證典核 足補師古之闕. 別有黃庭堅本、李燾本、朱子越中本 字句小有異同. 應麟所註 多從顏本 蓋以其考證精深 較他家爲可據焉.

### 【번역문】

『급취편』은 한나라 사유가 지었다. 『한서·예문지』 주석에 사유는 원제 때에 황문령이라 하였다. 환관이다. 사유의 생몰연대나 사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서는 『한지』에 『급취』 1편이라고만 적혀 있고 소학류의 서록에 사유작 『급취편』이라 하였다. 그런데 째(진)나라 하후담이 『저의』에서 ‘시골구석의 보잘것없는 서생이 일찍이 『급취』를 읽고 甲子(갑자)에 통했다’하였고, 『북제서』에 이현이 ‘9세에 입학하여 『급취편』을 썼다’하였다. 이와 같이 『급취편』은 篇(편)자가 붙는 경우가 있고 篇(편)자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지』에 『급취장』 1권이라 하여 『수서·경적지』에는 『급취장』으로 적혀있다. 『위서·최호전』에 많은 사람들이 『급취장』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였는데 『위서·최호전』에서 『급취장』이라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篇(편)이 章(장)으로 개칭된 것은 北魏(북위) 이후부터임을 알 수 있다. 장회관이 『서단』에서 ‘章草(장초)는 한나라 황문령 사유가 지은 것이다.’하였고, 왕음은 ‘한나라 원제 때에 사유가 『급취장』을 지었는데 隸書體(예서체)를 간략히 한 것이



다. 당시 세간에서 획수가 간결한 書體(서체)가 선호되어 점차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章草(장초)이다 하였다.’ 그러한즉 章草(장초)는 바로 사유가 만든 書體(서체)이다. 이후로 草書(초서)로 서법이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草書(초서)가 『급취장』에서 나왔다하여 그 書體(서체)의 명칭을 章草(장초)라 하였던 것이다. 지금 『급취장』을 보면 매 장의 첫 면에 제 몇 장이라는 장수표기가 있는데 이를 보아서 『급취장』이 本名(본명)이고 별칭이 『급취편』 또는 『급취』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급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겹치는 자가 없고 文詞(문사)는 雅輿(아오)하여 여타 다른 몽학서가 미칠 바가 아니다. 『옥대신영』에 梁(양)나라 소자현의 『오서곡』이 실렸는데 거기에 ‘裙邊雜佩琥珀龍(군변잡패호박룡)’이라는 문구가 있다. 풍씨가 이 문구에서 마지막 자인 ‘龍(룡)’을 ‘紅(홍)’으로 교정하였는데 지금 다시 검토해보니 『급취장』에 ‘系臂琅玕虎魄龍(계비랑간호백룡)’구가 있으니 소자현은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典故(전고)로 정확히 인용하였는데 풍씨는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릇된 교정을 하게 된 것이다. 遺文(유문)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엄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몽학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옛적에 조수, 최호, 류방, 안지추 등의 주석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고 오직 안사고의 주석만 현존하고 있다. 이 안사고의 주석에 왕응린이 補注(보주)하여 4권으로 만들었다. 안사고 본은 皇象(황상)의 碑本(비본) 보다 63자가 많고 다른 판본에 있는 ‘齊國(제국)’과 ‘山陽(산양)’ 2장은 없어서 모두 32장으로 되었다. 왕응린이 『예문지고증』에서 ‘眞定常山至高邑(진정상산지고읍)’구를 들어 이 2장은 後漢(후한)시기에 가필되었다 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지적이다. 안사고의 주석도 고증이 명확하고 정확한 주석이나 왕응린이 안사고 주석에서 미처 설명되지 못한 그 나머지를 보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정건 본, 이도 본, 주자월중 본 등이 있는데 자구에 약간의 異同(이동)이 있다. 왕응린의 보주본은 안사고 본을 따르고 있으므로 그 고증이 精深(정심)하여 다른 판본에 비교하여 들어 쓸만하다 할 것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소자현의 『오서곡』에 ‘裙邊雜佩琥珀龍(군변잡패호박룡)’이라는 구에 대하여 풍씨가 이 구에서 마지막 자인 ‘龍(룡)’을 ‘紅(홍)’으로 교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풍씨는 명나라 馮惟訥(풍유눌 1513년~1572년)을 이르는 것이다. 풍유눌이 그의 저서인 『고시기』에서 소자현 『오서곡』의 문구인 ‘裙邊雜佩琥珀龍(군변잡패호박룡)’을 ‘裙邊雜佩琥珀紅(군변잡패호박홍)’으로 교정하여 실었다. 기

윤이 풍유놀이 교정오류를 『금취편』의 문구를 들어 공박하고 있는 것이다. ‘系臂琅玕虎魄龍(계비랑간호백룡)’은 본고의 원문번호 제209번의 문구이다.

## 5) 서문장 분석

서문은 고전에서는 보기 드문 저자의 서문으로 집필의도를 피력하고 있다. 서문장은 7언구 5구 35자가 수록되었다. 서문장은 全文(전문)을 분석하였다.

### 001 急就奇觚與衆異(급취기고여중이)

안사고는 본구의 주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觚(고)는 글자를 학습하는 木簡(목간)이다. 혹은 사실을 기록하는 서판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대체로 죽간 같은 것이다. 孔子(공자)의 歎觚(탄고)가 있는데 곧 여기의 觚(고)가 그것을 이르는 것이다. 觚(고)는 형태가 혹 6면이거나 혹 8면인데 면마다 글자를 쓸 수 있다. 觚(고)는 모서리이다.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 觚(고)라 한 것이다. 학동이 속성으로 글을 깨우치게 된다면 이것이 특별히 좋은 觚(고)이다. 이 觚(고)는 속이 깊고 넓어서 많은 글자가 있으나 글자가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반고의 양도부에 ‘하늘로 치솟은 觚稜(고릉)의 서까래 위에 황금공작이 깃들었다’ 하였다. 지금 세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書簡(서간)을 木觚章(목고장)이라 한다. 아마도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일 것이다.<sup>106)</sup>

한편 왕응린은 아래와 같이 보주하였다.

『논어·응야』에 子曰, 觚不觚, 觚哉觚哉(자왈, 고불고, 고재고재)!라 하였고, 정자가 이르기를 觚가 그 형태를 잃게 된다면 觚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였다. 『사기·혹리열전』에 觚를 깎아 등글게 만들었다 하였고 그 주석에 응소가 이르기를 觚는 팔각의 모서리가 있다 하였다. 『설문통석』에 觚는 팔각목이다. 그 팔각면에 글자를 써서 배웠다 하였고, 『설문해자』에 幡(번)은 서동들의 배우는 글이 적혀있는 觚를 닮는 천이다. 籥(약)은 서동들의 글을 배우는 대쪽이라 하였다. 『주례·동관고공기·축씨』 疏(소)에 옛날 아직 지필이 없을 때 대나무나 판자를 깎아서 글자를 새겼다. 한나라에 이르러 비록 지필이 있었지마는 여전히 글자를 칼로 새긴 것이 있었다고 한다. 『한

106) 「觚者, 學書之牘, 或以記事, 削木為之, 蓋簡屬也. 孔子歎觚, 即此之謂. 補曰『論語』子曰 觚不觚, 觚哉觚哉! 程子曰 觚而失其形制, 則非觚也. 其形或六面, 或八面, 皆可書. 補曰『史記』破觚為圓. 應劭曰 觚, 八稜有隅者. 『說文通釋』觚, 八稜木, 於其上學書. 觚者, 稜也. 稜, 盧登反. 以有稜角, 故謂之觚. 言學僅急當就此奇好之觚, 其中深博, 與眾書有異也.」

서·소하조참전』 주석에 刀(도)는 글자를 새기는 것이다 하였고, 『후한서·반표열전』에 栝稜(고릉)이 있고, 그 주석에 栝稜(고릉)은 殿堂(전당)의 가장 높은 곳이라 하였다. 서개는 『자서』를 인용하여 삼각을 栝라 한다. 栝稜(고릉)은 전각에서 가장 높은 곳의 모서리이다. 栝(고)와 觚(고)는 같다.<sup>107)</sup>

急(급)의 『설문해자』 해설은

急(급)은 도량이 좁고 성급하다 이다. 心(심)을 意符(의부)로 及(급)을 聲符(성부)로 하는 形聲字(형성자)이다.<sup>108)</sup>

하였다. 『사기·진시황본기』에

項羽急擊秦軍，虜王離，邯鄲等遂以兵降諸侯. 항우가 빠르게 진나라 군을 공격하여 왕리를 포로로 잡으니 장강 등이 병사를 이끌고 제후에게 투항했다.<sup>109)</sup>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急(급)의 字義(자의)가 빠르다는 뜻으로 쓰였다. 急의 字義가 빠르다는 뜻은 성미가 급하다는 뜻에서 인신되었다. 就(취)의 『설문해자』 해설은

就(취)는 높다 이다. 京(경)과 尤(우)의 합체인 會意字(회의자)이다. 尤(우)는 평범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sup>110)</sup>

하였다. 『시경·주송·경지』에

日就月將(일취월장)

이라 하였고 그 疏(소)에

日就(일취)는 학문을 함에 있어 그날에 배운 바는 그날에 깨달아 매일 매일 그 배움에 성취가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月將(월장)은 한 달이 되었으면 그 배운 바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sup>111)</sup>

107) 『『설문해자』幡，書兒拭觚布也。籥，書僅竹笛也。『周禮』疏 古者未有紙筆，以削刻字。至漢，雖有紙筆，仍有書刀。『漢書』注 刀，所以削書也。班固『雨都賦』曰上觚稜而棲金爵。補曰『班固傳』栝稜。注『설문해자』曰 栝稜，殿堂上最高之處。徐鍇按『字書』三稜為栝。栝稜，最高轉角處也。栝與觚同。今俗猶呼小兒學書簡為木觚章，蓋古之遺語也。」

108) 許慎 撰，『설문해자』：「急，褊也。从心及聲。居立切」天津古籍出版社，2005. 219쪽.

109) 司馬遷 撰，『史記』，中華書局，2006. 66쪽.

110) 許慎 撰，『설문해자』：「就，高也。从京从尤。尤，異於凡也。就，籀文就。疾儼切」天津古籍出版社，2005. 21쪽.

라고 하여 就(취)의 字義(자의)가 성취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急就(급취)는 先秦(선진)시기의 複音詞(복음사)이다. 詞義(사의)는 ‘速成(속성)’이다. 『사기·이사열전』에

今急而不急就, 諸侯復彊, 相聚約從, 雖有黃帝之賢, 不能并也. 지금 태만하여 속히 이루지 못하면 제후들은 다시 강성해 질 것이고 서로 합종의 맹약을 맺고 뭉치게 되면 비록 황제의 현명함이 있을 지라도 육국을 겸병할 수 없을 것입니다.<sup>112)</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 急就가 速成의 뜻으로 쓰였다. 奇(기)의 『설문해자』 해설은

奇(기)는 특이하다 이다. 또한 숫자의 홀수를 이르기도 한다. 大(대)와 可(가)의 합체인 會意字(회의자)이다.<sup>113)</sup>

하였다. 『순자·비상』에

지금 세속은 亂君(난군)<sup>114)</sup>이나 시골의 경박한 자들이나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 화장을 하고 奇衣(기의)를 입고 여인의 장식을 달며 외모를 꾸미는데 못할 짓이 없이 하고 있다.

하였고, 그 주석에

奇衣(기의) 는 진기한 옷이다<sup>115)</sup>

하였다. 奇(기)의 字義(자의)가 ‘진기하다’는 뜻으로 쓰인 先秦(선진)문헌의 용례이다. 觚(고)의 『설문해자』 해설은

觚(고)는 향음주례에서 사용하는 술잔이다. 일설에는 觴(상)으로 석 되들이를 觚(고)라 한다고 하였다. 角(각)을 意符(의부)로 瓜(과)를 聲符(성부)로 하는 形聲字(형성자)이다.

111) 孔穎達 撰, 『毛詩正義』: 「日就, 謂學之使每日有成就. 月將, 謂至于一月, 則有可行.」 上海古籍出版社, 1990. 763쪽.

112) 司馬遷 撰, 『史記』, 中華書局, 2006. 560쪽.

113) 許慎 撰, 『설문해자』: 「奇, 異也. 一曰不耦. 从大从可. 渠羈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101쪽.

114) 亂君(난군)은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풍속이나 기강을 어지럽히는 군주를 말한다.

115) 楊倞 注, 『荀子』: 「今世俗之亂君, 鄉曲之儂子, 莫不美麗, 姚冶, 奇衣, 婦飾. 楊倞注, 奇衣, 珍異之衣.」 上海古籍出版社, 2014. 62쪽

하였고, 단옥재는 觚(고)의 주석에서

향음주례에는 爵(작)과 觶(치)가 있고 觚(고)는 없다. 연례, 대사례, 교특생에는 모두 觚를 쓴다. 일설에 觴으로 석 되들이를 觚라하여 觚는 석 되들이 술잔이라 하였는데 주례에 있는 말이다. 허신이 오경이의를 저작할 때 주례의 설을 따랐는데 설문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고대의 해설을 보면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즉 韓詩(한시)에서는 觚는 2승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sup>116)</sup>

하였다. 『주례·동관고공기·재인』에서는

梓人(재인)은 음주용 기물을 만든다. 觚는 3승이다.

하였고, 그 注疏(주소)에

觚는 마땅히 觶로 써야 한다. 禮器(예기)제도에 觚는 큰 잔이 2승이고, 觶는 큰 잔이 3승이다. 그러므로 정현이 이를 따라 2승이 觚이고 3승이 觶라 한 것이다.<sup>117)</sup>

라고 하였다. 『설문해자』에서 觚를 3승이 들어가는 술잔이라고 한 것은 『주례·동관고공기·재인』에서 3승이 觚라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 『주례·동관고공기·재인』 注疏(주소)에서는 觚에 대한 3승이 觚라한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라 하고 있다. 『모시정의』에

韓詩(한시)에 1승들이 잔을 爵(작)이라하는데 爵은 盡(진)이다. 술은 한 되를 마셔도 족하다하여 盡이다. 2승들이 잔을 觚(고)라하는데 觚는 寡(과)이다. 술은 마땅히 적게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여 寡이다. 3승들이 잔을 觶(치)라하는데 觶는 適(적)이다. 술은 마땅히 스스로에게 알맞게 마셔야한다 하여 適이다. 4승들이 잔을 角(각)이라하는데 角은 觸(촉)이다. 술은 넉 되를 마시면 스스로 자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觸이다. 5승들이 잔을 散(산)이라하는데 散은 讙(산)이다. 음주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몸놀림으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그래서 讙이다. 술잔을 총칭하는 것이 爵(작)이고 술잔에 술을 채우는 것이 觴(상)이

116) 許慎 撰 段玉裁 注, 『설문해자注』: 「觚, 鄉飲酒之爵也. 一曰觴受三升者謂之觚. 从角瓜聲. 古乎切. 鄉飲酒禮有爵觶無觚也. 燕禮, 大射, 特牲皆用觚. 一曰觴受三升者觚. 觚受三升. 古周禮說也. 言一曰者, 許作五經異義時從古周禮說. 至作說文則疑焉. 故言一曰. 以見古說未必盡是. 則韓詩說觚二升未必非也.」 上海古籍出版社, 2003. 345쪽.

117) 鄭玄 注 賈公彥 疏, 『周禮注疏』: 「梓人為飲器, 觚三升. 觚, 當爲觶. 禮器制度云, 觚大二升. 觶大三升. 故鄭從二升觚, 三升觶也.」 上海古籍出版社, 2005. 1757쪽

다.118)

라고 하였다. 단옥재가 인용한 韓詩(한시)의 문구이다. 觚(고)자에 대한 대표적인 문구는 『논어·옹야』에 있다. 『논어·옹야』에

孔子(공자)가 이르기를 觚(고)는 모난 술잔이니 모가 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觚라 하겠는가! 과연 觚라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대하여 朱子(주자)는

觚는 모서리를 말하는데 혹 酒器(주기)라 하고 혹 木簡(목간)이라 하기도 하나 모두 모가 난 물건이다. 不觚(불고) 즉 모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모가 나지 않은 것으로 빗댄 것이다. 觚哉觚哉(고재고재)는 觚의 모양이 모가 나지 않으면 觚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고, 程子(정자)는 말하기를 ‘觚가 그 모양을 잃게 되면 觚가 아니다. 하나의 器物(기물)을 들어 천하의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주의 도를 잃으면 즉 그 군주는 군주가 아니요 신하가 신하의 직분을 잃으면 그 신하의 직위는 비어 있는 것이다.’ 하였고, 범씨가 이르기를 ‘사람이 不仁(불인)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요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119)

라고 하였다. 이상은 『논어·옹야』 제23장에 대한 『논어집주』의 주석이다. 朱子는 『논어』, 『효경』, 『대학』, 『맹자』를 四書(사서)로 편성한 남송의 대학자이다. 조선시대의 유학이념은 朱子學에 바탕을 두고 있다. 朱子는 『논어집주』를 저술하여 朱子 이전의 『논어』에 대한 제설과 자신의 주해를 상술하였다. 『논어집주』에서 거명되는 程子(정자)는 북송의 유학자 程顥(정호), 程頤(정이) 형제의 존칭이다. 다만 朱子가 따른 것은 程頤의 학설이다 그러므로 朱子의 저서에 나오는 程子는 程頤를 칭하는 것이다. 程頤는 程伊川(정이천)으로 불리는데 程頤가 낙양 伊川(이천) 사람이므로 그의 호를 伊川선생이라 하였다. 범씨는 宋儒范氏(송유범씨)라 불리는 范浚(범준 1102년~1151년)이다. 남송의 유학자로 朱子가 존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18) 孔穎達 撰, 『毛詩正義』: 「韓詩說, 一升曰爵, 爵, 盡也, 足也. 二升曰觚, 觚, 寡也, 飲當寡少. 三升曰觶, 觶, 適也, 飲當自適也. 四升曰角, 角, 觸也, 不能自適, 觸罪過也. 五升曰散. 散, 訕也. 飲不自節. 爲人謗訕. 總名曰爵. 其實曰觶.」 上海古籍出版社, 1990. 25쪽.

119) 朱熹 撰, 『論語集注』: 「子曰, 觚不觚, 觚哉觚哉. 觚, 稜也, 或曰酒器, 或曰木簡, 皆器之有稜者也. 不觚者. 蓋當時失其制而不爲稜也. 觚哉觚哉, 言不得爲觚也. 程子曰, 觚而失其形制, 則非觚也. 舉一器, 而天下之物莫不皆然. 故君而失其君之道, 則爲不君, 臣而失其臣之職, 則爲虛位. 范氏曰, 人而不仁則非人, 國而不治則不國矣.」 齊魯書社, 1992. 61쪽.



詞義가 書板의 명칭으로 쓰인 것은 『급취편』에서 최초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急就奇觚’는 안사고의 주석에 따라 速成으로 글을 익힐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진기한 책이라는 말이 된다. 與(여)의 『설문해자』 해설은

與(여)는 黨與(당여)이다. 昇(여)와 与(여)의 합체인 會意字(회의자)이다.<sup>121)</sup>

하였다. 黨與(당여)는 같은 무리들이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徒黨(도당)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與의 구성자인 昇(여)와 与(여)의 字義(자의)를 『설문해자』에서 보면 昇의 字義는 ‘함께 들다’<sup>122)</sup>이고, 与의 字義는 ‘주다’<sup>123)</sup>이다. 즉 昇과 与가 합체된 의미는 여러 사람이 물건을 들어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이다. 그래서 與에는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설문해자』에서 衆(중)의 字義는 ‘많다’<sup>124)</sup>이고, 異(이)는 ‘분류하다’<sup>125)</sup>이다. 따라서 ‘與衆異’는 여러 종류의 많은 내용이 분류되어 제공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急就奇觚與衆異’를 직역하면 ‘速成으로 글을 익힐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진기한 책으로 여러 종류의 많은 내용의 분류되어 제공된다.’로 직역할 수 있다.

## 002 羅列諸物名姓字(라렬제물명성자)

안사고는 본구의 주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이 말은 여러 장에 걸쳐 만물의 명칭과 사람의 성명자를 열거하였다는 말이다.<sup>126)</sup>

한편 왕응린은 아래와 같이 보주하였다.

羅(라)는 펼치는 것이다. 설문에 物(물)은 만물을 이른다. 소는 큰 동물이다. 천지의 수는 견우에서 시작된다하였다. 성명자는 모두 사람을 이르는 것이다. 자식이 태어나 3개월이 지나면 그 부친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 姓(성)은 사람이 태어난 곳이다. 左傳(좌전)에 증증이 말하기를 天子는 덕이 있는 자를 제후로 세우고, 태어난 곳을

121) 許慎 撰, 『설문해자』: 「與,黨與也. 从昇从与. 余呂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59쪽.

122) 許慎 撰, 『설문해자』: 「昇,共舉也. 从臼从升. 凡昇之屬皆从昇. 讀若余. 以諸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59쪽.

123) 許慎 撰, 『설문해자』: 「与,賜予也. 一与爲与. 此与與同. 余呂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298쪽.

124) 許慎 撰, 『설문해자』: 「衆,多也. 从禾目,衆意. 之仲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169쪽.

125) 許慎 撰, 『설문해자』: 「異,分也. 从升从畀. 畀,予也. 凡異之屬皆从異. 羊吏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59쪽.

126) 「言此眾章, 列敘萬物之名, 及人姓字。」



인연으로 姓을 내리며, 영토를 주고 그 영토를 인하여 氏를 명하고, 제후는 字로써 시호를 삼고, 그로 인하여 族氏(족씨)를 삼으며, 벼슬을 하여 대대로 공로가 있으면 관직으로 族氏(씨)를 삼을 수 있고, 邑(읍)을 봉지로 받은 자도 또한 그와 같다 하였다. 사복은 말하기를 이름은 뜻으로 짓는 것이라 하였고, 신수는 말하기를 作名(작명)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信(신)이 있고, 義(의)가 있고, 象(상)이 있고, 假(가)가 있고, 類(류)가 있는 것이라 하였다. 禮記(예기)에는 남자가 20세가 되면 冠禮(관례)를 올리고 字를 붙인다. 冠禮에서 字를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존중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通志(통지)에 夏(하), 商(상), 周(주) 三代이전에는 姓과 氏가 분류되어 호칭되었다. 남자는 氏로 칭하고, 여자는 姓으로 칭하였다. 氏로써 貴賤(귀천)을 구분하였는데, 귀한 자는 氏가 있고, 천한 자는 이름은 있으나 氏는 없었다. 姓으로 혼인관계를 구별하였는데 同姓(동성), 異姓(이성), 庶姓(서성)으로 구별하였다고 하였다. 女와 宐(성)으로 이루어진 자가 姓(성)자이다. 그러므로 姓은 女를 따르는 자가 많다. 예를 들면 姬(희), 姜(강), 嬴(영), 姒(사), 媯(규), 姁(길), 妘(운), 嫪(주), 始(시), 姪(배), 繆(로) 등의 그것이다.<sup>127)</sup>

物の『설문해자』原文은

物, 萬物也. 牛爲大物, 天地之數, 起於牽牛, 故從牛勿聲, 文弗切.(물 만물야 우위대물 천지수 기어견우 고종우물성 문불절)<sup>128)</sup>

이다. 이를 직역하면 ‘물은 만물이다. 소는 대물이다. 천지의 수는 견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牛(우)가 意符(의부)이며 勿(물)은 聲符이다. 반절은 문불절.’이다.

한자는 실물의 모양을 그린 象形字(상형자)와 개념을 나타내는 指事字(지사자)가 있다. 또한 象形字와 指事字를 合體(합체)하여 다른 의미의 글자를 만들어 내는데 그러한 한자를 合體字(합체자)라 한다. 합체자에는 形聲字와 會意字가 있는데 形聲字는 意符를 담당하는 자와 聲符를 담당하는 자로 구성되며, 會意字는 합체되는 각 글자의 의미로 구성된다. 한자는 어떠한 글자라도 象形字, 指事字, 形聲字, 會意字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된다. 象形字와 指事字는 글자의 字形(자형)에 그 의미가 나타나 있으므로 字形의 설명으로 그 글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形聲字와 會意字는 合體 되는 각 글자의 의미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글

127) 「補曰 羅, 布也. 『설문해자』物, 萬物也. 牛爲大物, 天地之數, 起於牽牛. 名姓字, 皆謂人也. 子生三月, 父名之. 姓, 人所生也. 『左傳』眾仲曰 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諸侯以字爲諡, 因以爲族. 官有世功, 則有官族, 邑亦如之. 師服曰 名以制義. 申繻曰 名有五, 有信, 有義, 有象, 有假, 有類. 『禮記』曰 男子二十冠而字, 冠而字之, 敬其名也. 『通志』曰 三代之前, 姓氏分而爲二. 男子稱氏, 婦人稱姓. 氏所以別貴賤, 貴者有氏, 賤者有名無氏. 姓所以別婚姻, 故有同姓, 異姓, 庶姓之別. 三代之後, 姓氏合而爲一. 於文女生爲姓, 故姓之字多從女, 如姬姜嬴姒媯姁媯始姪繆之類是也.」

128) 許慎 撰, 『설문해자』, 天津古籍出版社, 2005. 30쪽.

자의 뜻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合體字의 설명은 合體된 각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여야만 그 글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字形을 설명하고 合體된 구성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한자의 해설방식은 『설문해자』를 비롯한 한자 사전의 기본적인 해설방식이 된다. 物(물)자에 관한 『설문해자』의 해설도 合體字의 해설방식으로 牛(우)와 勿(물)을 해설하여 物자가 어떠한 글자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物자는 牛가 의미를 담당하고 勿이 字音を 담당하고 있다. 物자에서 聲符인 勿은 단순히 字音(자음)만을 담당하므로 字義(자의)에는 끼치는 영향이 없다. 字義는 오로지 牛가 담당하고 있다. 牛의 의미에서 첫 번째 제시된 것이

牛爲大物(우위대물)이다. 직역하면 ‘소는 큰 물체이다’라는 말이다. 큰 물체를 소로 타나낸 것은 소가 육축 가운데서 가장 몸집이 큰 가축이므로 가없는 우주만물이 한 없이 큰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제시된 것은

天地之數起於牽牛(천지지수기어견우)이다. 이를 직역하면 ‘천지의 수는 견우에서 비롯된다.’이다. 이것은 논리적 의미이다. 天地(천지)의 數(수)는 『역경』의 數이다. 『역경』은 천지만물을 陰(음)과 陽(양) 두개의 근원적 요소의 조화라고 전제하고 천지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陰과 陽의 조합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담은 經書(경서)이다. 『역경』에서 天은 순전히 陽의 요소로만 이루어진 사물이고, 地는 순전히 陰의 요소로만 이루어진 사물이다. 『역경』에서 홀수는 陽의 數이고 짝수는 陰의 數이다. 따라서 天은 陽으로 홀수이고, 地는 陰으로 짝수이다.

天地之數(천지지수)란 天의 홀수와 地의 짝수를 이르는 것으로 1에서 10까지의 홀수와 짝수를 더한 수치인 55를 天地의 數라 한다.

起於牽牛(기어견우)는 五行(오행)의 개념이다. 五行은 『서경·홍범』의 이론이다. 五行은 水, 火, 木, 金, 土로 다섯 가지의 원소를 이른다. 五行은 여러 개념으로 쓰인다. 방위개념으로 水는 북, 火는 남, 木은 동, 金은 서, 土는 중앙이다. 五行에도 역시 五行의 數가 있다. 水는 1, 火는 2, 木은 3, 金은 4, 土는 5이다. 이 數를 生數(생수)라 한다. 각 生數에 土의 數인 5를 더하면 水는 6이 되고, 火는 7이 되며, 木은 8이 되고, 金은 9가 되며, 土는 10이 된다. 이 數值(수치)를 成數(성수)라 한다. 이 生數와 成數를 합산하면 55의 數值가 나온다. 『역경』에서 말하는 天地의 數 55와 같은 數로 55이다. 天地의 數는 牽牛(견우)에서 비롯된다 하였다. 牽牛는 天文的(천문적) 개념이다. 天文의 개념에 12次(차)와 28宿(수)가 있다.

12次는 木星(목성)이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궤적을 1년 단위로 구분해 놓은 天球

(천구)의 구간을 말한다. 木星이 하늘을 선회하는 기간이 약 12年이다. 즉 360°의 天球를 12등분하면 30°씩 등분된 구간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30°씩 등분된 12개의 구간을 12次라 하는 것이다. 12次에는 각 구간마다 구간 명칭이 붙게 되는데 星紀(성기), 玄枵(현효), 娵訾(추자), 降屢(강루), 大梁(대량), 實沈(실침), 鶉首(순수), 鶉火(순화), 鶉尾(순미), 壽星(수성), 大火(대화), 析木(석목)이다. 또한 각 次의 구간을 10°씩 등분하여 初間(초간), 中間(중간), 終間(종간)으로 등분한다. 그러므로 12次는 각 次마다 初·中·終 3개의 구간이 있게 된다. 이 12次를 方位(방위)에 배속시키면 東에는 壽星(수성), 大火(대화), 析木(석목)이 있게 되고, 西에는 降屢(강루), 大梁(대량), 實沈(실침)이 있게 되며, 南에는 鶉首(순수), 鶉火(순화), 鶉尾(순미)가 있게 되고, 北에는 星紀(성기), 玄枵(현효), 娵訾(추자)가 있게 된다.

28宿(수)는 달의 공전주기 일수를 기준으로 하늘에 달이 하루씩 머무는 구간을 설정한 것이다. 宿(수)는 유숙한다는 말이다. 하늘에는 해와 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별들이 반짝인다. 하늘을 28개 구역으로 나눈 곳에도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 이 별들의 별자리를 星宿(성수)라 한다. 달이 머무는 28宿(수)에는 28星宿(성수)도 있게 된다. 이 28星宿가 고대 중국 천문학의 바탕이다. 天文 즉 하늘이 보여주는 상징이 이 28星宿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8星宿는 사방에 7星宿씩 배속되어 각 별자리의 명칭이 붙여졌다.

동방에 角(각)·亢(항)·氐(저)·房(방)·心(심)·尾(미)·箕(기).

서방에 奎(규)·累(루)·胃(위)·昴(묘)·畢(필)·觜(자)·參(삼).

남방에 井(정)·鬼(귀)·柳(유)·星(성)·張(장)·翼(익)·軫(진)

북방에 斗(두)·牛(우)·女(여)·虛(허)·危(위)·室(실)·壁(벽)

등이다. 28星宿에서 찾고자 하는 별자리는 牛宿(우수)이다. 牛宿는 북방의 두 번째 별자리이다. 牛宿는 牽牛星座(견우성좌)를 말한다. 이 牽牛星座가 12次에서 星紀(성기)의 初間 中間 終間 가운데 中間에 위치한다. 이곳에 태양이 이르는 때가 冬至(동지)이다. 冬至는 歲時(세시)의 기산점이다. 冬至로부터 15일 간격으로 24節氣(절기)가 배정 되는데 이것이 歲時이다. 그러므로 한 해는 冬至로부터 출발한다. 즉 牽牛(견우)에서 한 해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한 해는 우주만물의 생성소멸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天地의 數가 牽牛에서 비롯된다는 말에는 바로 12次와 28星宿 및 24節氣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과 동시에 水의 生數인 1을 일컫는 것이다. 즉 天地의 數인 55의 첫 번째 숫자인 1은 水의 生數인 1과 같은 숫자이며, 水의 方位는 北方이

고, 北方은 12次の 星紀의 구간이고, 星紀의 중앙에 28宿의 牽牛星宿(견우성수)가 위치하며, 牽牛星(견우성)은 冬至의 별이고, 冬至는 歲時의 첫 번째 節氣이다. 따라서 牽牛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1이다. 이로써 天地의 數가 견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天地之數起於牽牛. 천지의 수는 견우에서 비롯된다.’이며 牛가 物의 意符로서 物자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해자』에서 姓(성)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姓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옛적에 신성한 여인이 하늘에 감응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天子라 칭한다. 女를 따르고 生을 따랐다. 生은 성부이기도 하다. 춘추전에 ‘天子는 태어난 곳을 인하여 사성하는 것이다.’ 129)

한편 名(명)의 해설은

名은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口(구)를 따르고 夕(석)을 따랐다. 夕이란 날이 저물어 어두워진 것을 말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캄캄하여 서로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여 상대방에게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130)

하였다. 즉 姓은 태어나면 저절로 붙게 되어있는 것이고 名은 그 개인을 부르기 위하여 지어지는 것이다. 왕응린이 보주에서 인용한 신수가 말한 다섯 가지 作名의 방식인 信(신), 義(의), 象(상), 假(가), 類(류)라는 것을 살펴보면,

信(신)은 태어날 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信이라 하고,

義(의)는 지닌 德에 따라 짓는 것을 義라 하고,

象(상)은 생김새를 따라 짓는 것을 象이라 하고,

假(가)는 사물의 이름을 빌어 짓는 것을 假라 하고,

類(류)는 父와 닮은 것을 따라 짓는 것을 類라 하는 것이다.

姓으로 예를 든 姬(희), 姜(강), 嬴(영), 姒(사), 媯(규), 媯(길), 媯(운)은 中國上古八大姓(중국상고팔대성)이다. 그 외의 嫫(주), 始(시), 姪(배), 嫫(로)의 淵源을 보면,

媯姓은 戰國시기 衛나라 襄公(양공 재위 BC.543년~BC.535년)의 寵姬(충희)인 媯始(주압)의 후손이 媯始의 名을 姓으로 삼은 것이다. 媯始은 姓이 始(압)이고 名이

129) 許慎 撰, 『설문해자』: 「姓人所生也. 古之神聖母感天而生子故稱天子. 從女從生亦聲. 春秋傳曰天子因生以賜姓. 息正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258쪽.

130) 許慎 撰, 『설문해자』: 「名自命也. 從口從夕夕者冥也. 冥不相見故以口自名. 武并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31쪽.

媯(주)이다. 名이 姓 앞에 놓이는 것은 여성의 칭호가 대체로 그러하였다. 衛(위)나라 襄公(양공)의 정실은 宣姜(선강)이다. 宣姜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媯姜(잉첩)이었던 媯始에게서 두 아들을 얻게 되었다. 媯姜은 출가하는 신부를 따라 侍妾(시첩)으로 가는 신부의 질녀 또는 동생이다. 媯始의 長子(장자)가 姬孟縶(희맹집)이고 次子(차자)가 姬元(희원)이다. 姬元이 후일 襄公을 이어 國君(국군)이 된 衛靈公(위영공)이다. 姬孟縶의 후손이 媯始의 이름인 媯(주)를 姓으로 삼았다.

始姓(시성)은, 黃帝(황제)의 庶子(서자)인 蒼林(창림)의 아들 始均(시균)이 北狄(북적)의 땅에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始를 姓으로 삼았다고 『로사』에 기록되었다. 『로사』는 남송의 문필가인 羅泌(라필 1131년~1189년)이 저서로 三皇五帝(삼황오제)시대의 전설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路史(로사)』의 뜻은 ‘大史(대사)’라는 뜻이다.

媯姓(배성)에 대해서는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만성통보』에 姓으로 나와 있다. 『만성통보』는 명나라 嘉靖(가정)연간의 관리였던 凌迪知(능적지 1527년~1600년)의 저서이다. 능적지는 明代(명대)의 저명한 문학가인 凌濛初(능몽초)의 부친이기도 하다.

媯姓(노성) 역시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媯姓의 인물로 媯毒(노애)가 『사기·여불위열전』에 나온다. 노애는 진시황제의 생모인 조희의 姦夫(간부)로 알려지는 인물이다.

羅列(나열)은 서한시기의 複音詞(복음사)이다. 詞義(사의)는 ‘열거하다’이다. 諸物(제물)은 ‘여러 가지 사물’을 말한다. 따라서 羅列諸物名姓字(나열제물명성자)는 직역하면 ‘여러 가지의 사물과 성명의 글자들이 열거되었다’로 직역된다.

### 003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

안사고는 본구의 주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이란 차례차례 종류에 따라 구별되어 열거되었으므로 섞이지 않는다는 말이다.<sup>131)</sup>

한편 왕응린은 아래와 같이 보주하였다.

考工記(고공기)의 주석과 설문의 서는 모두 이곳을 인용하였다. 部(부)는 分(분)이다.

131) 「前後之次，以類相從，種別區分，不相間錯也。」

廁(측)은 間(간)이다. 種(종)은 類(류)이다. 실문통석에 部는 屬(속)이다. 部는 簿(부)를 말하고, 분류하여 장부에 등재하는 것이다.<sup>132)</sup>

보주에서 考工記의 주석에 본구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주례·동관고공기·윤인』의 주석에 본구의 문구가 인용되었다는 말이다. 그 원문을 보면

察其蓄蚤不齟，則輪雖敝不匡(찰기치조불우, 칙륜수폐불광). 바퀴의 蓄(치)와 蚤(조)가 어긋맞지 않은가를 살펴야 한다. 그래야 바퀴가 비록 다 닳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하였고 이를 정현이 주석하기를

先鄭云，蓄讀如雜廁之廁者，讀從史游章，分別部居不雜廁義，取不參差義也(선정운, 치독여잡측지측자, 독종사유장, 분별부거부잡측의, 취불참차의야). 선정이 이르기를 ‘蓄(치)의 讀音(독음)은 雜廁(잡측)의 廁(측)과 같다’ 하였는데 이것은 사유의 급취장에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의 뜻을 따른 讀音으로 不雜廁(부잡측)의 뜻인 參差(참차)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輪人(수인)」은 수레바퀴를 만드는 匠人(장인)을 이른다. 수레바퀴는 바퀴통과 바퀴살과 바퀴테로 이루어진다. 즉 바퀴통과 바퀴테에 바퀴살을 심어서 만든다. 이 때 바퀴통에 홈을 내어 바퀴살을 심는다. 이 바퀴통에 바퀴살을 심는 것을 蓄(치)라 한다. 바퀴통에 심은 바퀴살을 다시 바퀴테에 심는다. 바퀴테에 바퀴살을 심는 것을 蚤(조)라 한다. 바퀴는 360°의 원형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온전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퀴살이 바퀴통과 바퀴테에 일정한 길이로 가지런하게 심겨져야 한다. 바퀴살이 들쭉날쭉하게 심겨지면 바퀴는 원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원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바퀴는 구르지 못한다. 參差(참차)는 『시경·국풍·주남·관저』에 나오는 말이다. 「관저」의

參差荇菜 左右流之(참차행채 좌우유지) 들쭉날쭉한 마름이 물결 따라 왼쪽으로 쏠렸다 오른쪽으로 쏠렸다하네.

에서 나온 말이다. 마름은 연못이나 물이 깊지 않은 시내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수생식물이다. 줄기와 여린 잎이 식용으로 채취된다. ‘參差荇菜(참차행채)’는 한 무더

132) 「補曰『考工記』注『說文·敘』皆引此. 部, 分也. 廁, 間也. 種, 類也. 『說文通釋』部, 屬也. 部之言簿也, 分簿之也.」

기의 마름이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서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나무로 사용하려면 일정한 크기로 채취된 것이 사용하는데 좋을 것이니 마름이 키가 일정하면 일정한 크기로 채취하는데 편할 것이다. ‘蓄讀如雜廁之廁(치독여잡측지측)’의 讀如(독여)는 訓詁(훈고)의 용어이다. 訓詁는 古代의 문자를 현재의 문자로 해석한다는 말이다. 訓(훈)은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말이고 詁(고)는 옛말 또는 옛글자라는 말이다. 訓詁는 經書(경서)의 傳(전)에서 출발하여 漢代(한대)의 經學家(경학자)들에 의하여 학문으로 발전되었다. 오늘날은 한자의 삼요소인 字形(자형) 字音(자음) 字義(자의)에 대하여 字形은 文字學(문자학)으로, 字音은 音韻學(음운학)으로, 字義는 訓詁學(훈고학)으로 정립되어 연구되고 있다. 訓詁는 古書(고서)에 쓰인 옛글자와 假借字(가차자)를 현재의 本字(본자)로 바로잡아 올바른 의미를 찾는 것이다. 讀如는 古書에 쓰인 古字나 假借字를 현재의 本字로 읽고 해석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蓄讀如雜廁之廁(치독여잡측지측)’의 蓄(치)는 雜廁(잡측)의 廁(측)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할 것은 蓄(치)를 단순히 廁(측)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雜廁(잡측)의 廁(측)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廁은 『설문해자』 字義가

청결히 하다.<sup>133)</sup>

이다. 그런데 廁이 뒷간의 뜻으로 쓰인 용례가 『좌전·성공십년』 조에 있다.

將食，張，如廁，陷而卒。(장식, 장, 여측, 함이졸.) 경공이 막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배가 부풀어 뒷간으로 갔는데 거기에 빠져서 죽었다.<sup>134)</sup>

이 문구에서 廁(측)이 측간의 뜻으로 쓰였다. 廁자는 广(엄)과 則(칙)의 合體字이다. 广은 집을 이르고 則은 곁을 이른다. 合體된 字義는 집의 곁이다. 즉 집 곁에 뒷간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뜻한다. 『설문해자』의 字義인 ‘청결히 하다’라고 하는 것은 뒷간은 자칫 지저분하게 되는 장소이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廁자에 ‘섞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측간에서 용변을 보고 나면 배설물과 흙을 섞어서 거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引伸(인신)된 의미이다. 한편 雜(잡)의

133) 許慎 撰, 『설문해자』: 「廁, 清也. 从广則聲. 初吏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192쪽.

134) 劉利 譯注, 『左傳』, 中華書局, 2007. 115쪽.

『설문해자』 字義는

오색이 모여 있다.<sup>135)</sup>

이다. 雜(잡)자는 衣(의)와 集(집)의 合體字이다. 옷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색상의 천으로 만들어서 색색이 모여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이다. 따라서 ‘雜廁(잡측)’의 詞義는 ‘여러 가지가 섞이다’가 된다. 즉 「관저」의 ‘參差(참차)’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先鄭(선정)이 말하는 ‘雜廁’이다. 先鄭이란 鄭司農 鄭衆(정사농 정중)을 말한다. 정현과 같은 경학자로 정현보다 1세기 앞선 학자이다. 경학가에서는 鄭司農 鄭衆을 先鄭이라 하고 정현을 後鄭(후정)이라 한다. 설문의 서에서 본구를 인용하였다는 것은 『설문해자·서』의

分別部居不相雜廁也(분별부거부상잡측야).<sup>136)</sup>

를 말하는 것이다. 部首(부수)의 효시는 『설문해자』로 허신이 창안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설이다. 『설문해자』의 문자 수록체계는 9,353자를 540개의 의미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집단의 기본적 의미를 本義(본의)로 하는 글자를 그 의미집단의 머리글자로 삼은 것이 『설문해자』에서의 部首이다. 『설문해자』에서 部首字의 해설에는 반드시 ‘凡某之屬皆從某(범모지속개종모)’라는 문구가 있다. 部首字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部首字를 따른다는 말이다. 즉 部首字의 의미가 그 部首字에 속한 글자의 의미 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部首字를 세우고 한자를 배속시키게 되면 배속된 한자의 뜻이 部首字의 의미범주에 있게 되므로 글자의 뜻을 명백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문해자』에서 部首의 개념이 창안되었다는 것은 『설문해자·서』의 ‘分別部居不相雜廁也(분별부거부상잡측야).’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문구가 본구인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을 인용한 것이라는 말이다. 部(부)에 대한 『설문해자』의 해설은

天水郡 狄部(천수군 적부).<sup>137)</sup>

135) 許慎 撰, 『설문해자』: 「雜,五彩相會. 从衣集聲. 徂合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172쪽.

136) 許慎 撰, 『설문해자』, 天津古籍出版社, 2005. 2쪽.

137) 許慎 撰, 『설문해자』: 「部,天水狄部. 从邑音聲. 蒲口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132쪽.



이다. 天水郡(천수군)은 지금의 감숙성 천수시 일대이다. 狄部(적부)는 未詳(미상)이다. 天水郡은 한무제때에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사기』나 『한서』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狄部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단옥재도 『한서·지리지』에 狄部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狄部는 未詳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部의 字義가 屬(속)으로 해설된 것은 『說文通釋』이다. 屬은 무리 또는 부류의 뜻이다. 屬(속)자는 尾(미)와 蜀(촉)의 合體字이다. 尾는 동물의 꼬리이고 蜀은 산누에나방의 유충이다. 유충이 꼬리를 붙이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자이다. 字形에서 같은 종류의 사물이 한 덩어리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뜻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설문통석』의 部의 字義가 屬인 것은 同音字(동음자)인 簿(부)에서 온 것이다. 簿는 祭器(제기)를 기록하는 장부이다. 祭器를 장부에 기록할 때 종류별로 분류하여 같은 종류끼리 나란히 기록하게 된다. 같은 종류끼리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충이 꼬리를 붙이고 나란히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이것이 部의 字義가 屬으로 된 까닭이다. 居의 『설문해자』 字義는

자리를 잡고 앉다.<sup>138)</sup>

이다. 分別(분별)은 先秦(선진)시기의 複音詞(복음사)이다. 詞義(사의)는 ‘구별하다’이다. 따라서 分別部居(분별부거)는 사물이 같은 종류대로 분류되어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뜻이 된다.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을 직역하면 ‘사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같은 종류끼리 묶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로 직역 된다.

#### 004 用日約少誠快意(용일약소성쾌의)

안사고는 본구의 주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상세하게 빠짐없이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약간의 시간만 들여서 공부하면 심중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快意(쾌의)라 하는 것이다. 예기·학기에 스승이 가르치기는 편하고 공은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sup>139)</sup>

한편 왕응린은 아래와 같이 보주하였다.

138) 許慎 撰, 『설문해자』: 「居, 蹲也. 从尸古者, 居从古. 踞, 俗居从足. 九魚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174쪽.

139) 「以其詳悉, 多所該備, 不費功日, 而心意開了, 故云快意也. 『禮·學記』曰 師逸而功倍.」

藝文志(예문지)에 하루에 조금씩 하여도 많은 덕을 쌓을 수 있다하였다. 광운에 約(약)은 少(소)이다. 快(쾌)는 마음에 흡족한 것이다.<sup>140)</sup>

안사고의 주석에서 인용한 『예기·학기』의 예문은 배우는 자의 자질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배움이 성실하고 총명한 자는 스승이 가르치기가 편하면서도 제자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가 된다. 또한 항상 이르기를 스승께서 특별히 공을 들여 나를 가르쳐 주신다 한다. 그러나 배움을 게을리 하며 우둔한 자는 스승이 가르치기가 힘이 들면서도 제자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사람의 반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항상 이르기 를 스승께서 유독 나에게만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오히려 스승을 원망한다.<sup>141)</sup>

라고 하였다. 보주의 예문지 예문은 『한서·예문지』 육예략의 문구이다. 육예략 총설에서

옛적에는 배우는 자들이 한편으로는 발을 갈고 한편으로는 수양과 학문에 힘을 기울 였다. 그래서 삼년에 한권의 경서를 통독하였는데 그 대의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이 經文(경문)을 반복적으로 숙독하고 체험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하루에 약간의 시간을 들일 수 있을 뿐이어도 이외로 덕행이 쌓이고 품덕이 함양되어 삼십 세가 되면 오경에 통달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42)</sup>

하였다. 30세가 되면 五經에 통달하게 된다는 말은 15세에 태학에 들어가서 五經을 배우게 되는데 經書 한 권을 마치는 기간이 3년이므로 5권을 마칠 때까지 15년이 소요되고 30세가 되면 五經에 통달하게 된다는 말이다. 約(약)의 『설문해자』 字義는

엮어매다.<sup>143)</sup>

이다. 보주는 約의 字義를 『광운』을 들어 ‘절약하다’는 뜻으로 해설하였다. 『광운』은 완본형태로 현존하는 切韻系(절운계) 韻書(운서)이다. 切韻系 韻書란 『절운』,

140) 「補曰『藝文志』用日少而畜德多.『廣韻』約, 少也. 快, 稱心也.」

141)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善學者師逸而功倍, 又從而庸之. 不善學者師勤而功半, 又從而怨之.」 上海古籍出版社, 2008. 1492쪽.

142) 班固 撰, 『漢書』: 「古之學者耕且養, 三年而通一藝, 存其大體, 玩經文而已, 是故用日少而畜德多, 三十而五經立也.」 中華書局, 2007. 396쪽

143) 許慎 撰, 『설문해자』: 「約, 纏束也. 从糸勺聲. 於略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272쪽.

『당운』, 『광운』 등에서 한자의 字音을 反切(반절)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切韻系 韻書라 칭하는 것이다. 『절운』은 수나라 文帝(문제) 仁壽(인수)<sup>144</sup>원년인 601년에 陸法言(육법언 생물연대 미상)이 편찬하였다. 『당운』은 孫愐(손면 생물연대 미상)이 당나라 玄宗(현종) 天寶(천보)<sup>145</sup>10년인 751년에 『절운』을 增訂(증정)하여 편찬하였다. 『당운』의 反切(반절)은 후일 서현이 교정한 대서본 『설문해자』의 反切로 사용되었다. 『광운』의 본서명은 『대송중수광운』이다. 북송 제3대 황제인 眞宗(진종) 재위 997년~1022년 大中祥符(대중상부)<sup>146</sup>원년인 1008년에 진팽년, 구옹 등이 칙명을 받아 『절운』, 『당운』 등의 韻書(운서)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韻書란 한자의 字音을 기준으로 배열한 字典(사전)이다. 한자의 字音을 기준으로 韻書를 편찬하는 것은 詩歌(시가)의 押韻(압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광운』은 한자를 四聲(사성)으로 분류하여 총 5권으로 편성하였다. 5권으로 편성된 것은 平聲(평성)이 자수가 많으므로 上下 두 권으로 나누어 上平聲(상평성)일권, 下平聲(하평성)일권, 上聲(상성)일권, 去聲(거성)일권, 入聲(입성)일권 등 모두 5권으로 편성한 것이다. 수록자는 25,333字이며 수록체제는 206韻目(운목) 3,874小韻(소운)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韻目이란 韻이 같은 글자의 묶음에서 한 글자를 택하여 그 韻의 대표 글자로 삼은 것이다. 小韻이란 韻目的 묶음 안에서 同音字(동음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 그 가운데 한 자를 대표글자로 세운 것이다. 예를 들어 東(동)韻目的 경우 小韻이 東(동), 同(동), 中(중), 蟲(충), 終(종), 仲(충), 崇(숭), 嵩(송), 戎(융), 弓(궁), 融(융), 雄(웅), 瞢(몽), 穹(궁), 窮(궁), 馮(풍), 風(풍), 豐(풍), 充(충), 隆(룽), 空(공), 公(공), 蒙(몽), 籠(룽), 洪(홍), 叢(충), 翁(웅), 忽(충), 通(통), 蓂(중), 蓬(봉), 烘(홍), 幌(양), 櫛(충) 등 34小韻이며 총 자수는 356字이다. 東韻目에는 東(동)자가 韻目자이며 또한 小韻자이기도 하다. 小韻 東에 속한 자는 東, 董(동), 鴦(동), 辣(동), 餽(동), 餽(동), 愴(동), 凍(동), 蝮(동), 凍(동), 鯨(동), 徠(동), 峽(동), 堞(동), 蠱(동), 虺(동) 등으로 모두 17자이다. 이 17자는 反切이 德紅切(덕홍절)로 다 같은 同音字이다. 押韻의 기준은 각 권의 韻目表(운목표)에 同用(동용) 또는 獨用(독용)을 표기하여 押韻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同用은 다른 韻目과 통용되는 것을 말하며, 獨用은 당해 韻目 이내로 한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광운』을 펼치면 차례 첫장에 韻目 次例表(차례표)가 나오고 ‘上平聲卷第一 德紅 東第一 獨用(상평성권제일

144) 仁壽는 수나라 초대황제 문제의 두 번째 연호로 601년부터~604년까지 사용되었다.  
 145) 天寶는 당나라 제6대 황제 현종의 세 번째 연호로 742년부터~756년까지 사용되었다.  
 146) 大中祥符는 진종의 세 번째 연호로 1008년부터~1016년까지 사용되었다.

덕흥 동제일 독용)’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문구를 직역하면 ‘平聲(평성)을 두 권으로 나누는 상편에 반절이 덕흥이고 운목은 동이고 압운의 기준은 독용이다’는 말이다. 즉 東韻目的 押韻 기준은 獨用이므로 東韻目에 속한 자는 東韻目에 속한 356자와만 押韻의 허용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음 차례를 보면 ‘上平聲卷第一 都宗 冬第二 鍾同用(상평성권제일 도종 동제이 종동용)’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문구를 직역하면 ‘平聲을 두 권으로 나누는 상편에 반절이 도종이고 운목은 동이고 압운의 기준은 鍾(중)운목과 동용된다’는 말이다. 즉 冬韻目(동운목)에 속한 小韻은 冬(동), 彤(동), 寘(중), 農(농), 攻(공), 陌(홍), 曷(룽), 宗(중), 鬆(송), 恫(동) 등 10小韻이며 총 자수는 66자이다. 한편 同用 韻目인 鍾韻目(중운목)은 小韻이 鍾(중), 龍(룽), 春(용), 松(송), 衝(둥), 容(용), 封(봉), 胸(홍), 顛(옹), 邕(옹), 醜(농), 重(중), 從(중), 躡(중), 逢(봉), 峯(봉), 縱(중), 茸(용), 蛩(공), 鱗(용), 恭(공), 崧(송), 樅(중), 鏞(공) 등 24小韻이며 총 자수는 234자이다. 따라서 冬韻目에 속한 66자와 鍾韻目에 속한 234자는 押韻에서 통용이 허용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押韻의 기준을 세워놓았다. 수록자의 字義 해설은 『설문해자』을 비롯한 前代(전대)의 字書(자서)와 典籍(전적)을 인용하였다. 字音은 反切로 표시되었는데 小韻字에만 反切이 표시되고 小韻의 所屬字(소속자)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誠(성)의 字義는 부사 ‘진실로’이다. 快意(쾌의)는 先秦(선진)시기의 複音詞이다. 詞義는 ‘마음의 기쁘다’이다. 따라서 用日約少誠快意(용일약소성쾌의)를 직역하면 ‘하루에 약간의 시간을 절약하여 금취편을 학습하면 진실로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로 직역 된다.

#### 005 勉力務之必有喜(면력무지필유희)

안사고는 본구의 주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부지런하게 힘써 학습하면 기예가 닦여 공적을 이루게 되고, 현달할 수 있으니 기쁨이 있게 된다.<sup>147)</sup>

한편 왕응린은 아래와 같이 보주하였다.

배움이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다. 힘써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자는 장래에 그 功을 받

147) 「勉令勤習，以致業藝，則能顯達，可好喜也。」

게 되는 것이다. 喜(희)는 說(열)이다. 學而時習之不易說乎(학이시습지불역열호)의 說(열)이다.<sup>148)</sup>

說(열)에 대한 『설문해자주』의 주석은

說(설)은 釋(석)이다. 言(언)과 兌(태)의 合體字이다. 일설에 談說(담설)이라 하였다. 반절은 失蒸切(실설절)이다. 또한 弋雪切(익설절)도 있다. 說釋(설석)은 悅懌(열역)이다. 說(설)과 悅(열), 釋(석)과 懌(역)은 모두 古今(고금)자이다. 허신의 본서에는 悅(열)과 懌(역) 두 자는 수록되지 않은 자이다. 說釋(설석)이라는 것은 開解(개해: 달래서 마음을 풀어 주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說釋의 뜻을 희열이라 하는 것이다. 采部(변부)의 釋(석)의 자의가 解(해)이다. 儿部(인부)의 兌(태)는 說(설)이다. 그 본의 주역이다. 說(열)은 言(언)과 兌(태)의 合體인 會意字라 하였으나 兌(태)는 또한 聲符(성부)이기도 하다. 兌를 聲符로 하는 반절이 弋雪切(익설절)이다. 일설에 談說(담설)이라 하였는데 허신의 원서에는 ‘一曰談說(일왈담설)’이라는 해설이 없으며 字音도 失蒸切(실설절)과 弋雪切(익설절) 두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후세에 ‘一曰談說(일왈담설)’이라는 녀자를 덧붙여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 ‘一曰談說(일왈담설)’의 說(설)의 별음이 失蒸切(실설절)이다.<sup>149)</sup>

라고 하였다. 단옥재의 주석에 따르면 說(열)은 悅(열), 釋(석)은 懌(역)이다. 悅은 ‘기쁘게 하다’이고, 懌은 ‘기뻐하다’이다. 따라서 說釋(열석)은 ‘기쁘게 하니 기뻐하다’는 뜻이 된다.

‘說과 悅, 釋과 懌은 모두 古今(고금)자이다’하는 것은 說과 悅의 字義가 ‘기쁘게 하다’의 경우 說은 古字(고자)이고 悅은 今字(금자)이다. 마찬가지로 釋은 古字이고 懌은 今字이다. 단옥재의 주석에서 古今字(고금자)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쓰이는 용어이다.

‘儿部(인부)의 兌(태)는 說(열)이다. 그 본의 주역이다. 說은 言과 兌의 合體인 會意字라 하였으나 兌는 또한 聲符이기도 하다. 兌를 聲符로 하는 反切이 弋雪切이다.’하였는데 이것은 『설문해자』 儿部에 있는 兌(태)자는 字義가 說(열)이고, 이 字義는 주역에서 인용된 것이며 字音은 弋雪切(익설절) 즉 ‘열’이라는 말이다. 현재 說(설)자의 讀音(독음)이 字義에 따라 설, 열, 세 등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儿部の 兌는 說이다. 그 본의 주역이다.’는 말은 『설문해자』 儿部에 兌자가 속

148) 「補曰 學在彊勉. 用力多者收功遠. 喜, 說也.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149) 許慎 撰 段玉裁 注, 『설문해자주』: 「說, 釋也. 从言兌. 一曰談說. 失蒸切. 又, 弋雪切. 說釋也. 說釋即悅懌. 說悅釋懌皆古今字. 許書無悅懌二字也. 說釋者開解之意. 故爲喜悅. 采部曰. 釋, 解也. 从言. 兌聲. 儿部曰. 兌, 說也. 本周易. 此從言兌會意. 兌亦聲. 弋雪切. 一曰談說. 此本無二義二音. 疑後增此四字. 別音爲失蒸切」上海古籍出版社, 2003. 184쪽.

해 있는데 兌자에 대한 『설문해자』의 全文이 ‘兌 說也(태 열야)’이다. 이 ‘兌 說也’라는 문구가 『주역·태괘』 象傳(단전)의 문구이다. 象傳은 卦辭(괘사)의 傳(전)으로 孔子가 붙여 놓은 것이다. 兌는 說, 즉 ‘兌卦(태괘)는 기쁘게 하는 괘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점을 쳐서 兌卦를 얻게 되면 점을 친 사안이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占(점)이라는 것은 占을 쳐주는 자가 그저 막연히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주역』을 占書(점서)로 보는 경우 『주역』의 내용도 그저 막연히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주역』은 단순한 占書가 아니다. 五經에서 첫 번째로 불리는 經典이다. 五經은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를 말한다. 五經은 중국 학문의 精髓(정수)로서 동양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토대가 되어온 經典이다. 『주역』은 經典에 관한 학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읽어볼 수조차 없게 되어 있는 매우 차원의 높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典籍이다. 漢文(한문)은 한자로 쓰여진 문장을 이른다. 한자는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글자이다. 따라서 한자로 쓰여진 문장은 한자의 논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된다. 『주역』은 八卦(팔괘)를 기본으로 64卦(괘)를 펼쳐놓은 것이다. 八卦는 고대의 문자이다. 『설문해자·서』에

고대에 복희씨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위로 하늘이 보여주는 상징을 관찰하고 아래로 땅이 수행하는 법도를 관찰하고 새와 짐승의 문양이 지리에 부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가깝게는 몸에서 취하고 멀게는 만물에서 취하여 비로소 易(역)과 八卦(팔괘)를 짓고 그 형상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sup>150)</sup>

라고 하여 문자의 기원을 八卦에 두고 있다. 八卦는 乾(건☰), 坤(곤☷), 坎(감☵), 離(리☲), 震(진☳), 巽(손☴), 艮(간☶), 兌(태☱)이다. 八卦는 문자이므로 그 괘에는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방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乾은 서북, 坤은 서남, 艮은 동북, 巽은 동남, 震은 동, 離는 남, 兌는 서, 坎은 북이다. 방위인 동, 남, 서, 북을 계절로 나타내면 東(동)은 봄, 南(남)은 여름, 西(서)는 가을, 北(북)은 겨울이다. 따라서 兌는 방위로는 西이고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익어 천하가 풍요로워지는 계절이다. 넉넉지 못한 백성들에게 풍요의 계절만큼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 兌가 說(열)이라는 뜻은 이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뜻이다. 說(열)자가 장황하게 설명된 것은 보주의 주석인 ‘喜(희)는 說(열)이다. 學而時習之不易說乎(학이시습

150) 許慎 撰, 『설문해자』: 「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天津古籍出版社, 2005. 314쪽.

지불역열호)의 說(열)이다’의 說(열)을 해설하기 위한 것이다. 『논어』의 첫 구가 ‘學而時習之不亦說乎(학이시습지불역열호)’이다. 『논어』는 孔子와 그 제자들이 대화록이다. 유가의 聖典(성전)으로 취급되며 朱子가 『논어』의 문장을 章(장)과 句(구)로 구분하고 『논어집주』를 펴낸 후 宋代(송대)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의 지식층의 필독서가 되었다. 현대에도 『논어』는 한문고전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교양서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주의 ‘喜(희)는 說(열)이다’라는 주석은 朱子의 『논어집주』의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 朱子는 『논어집주』에서 ‘學而時習之不亦說乎(학이시습지불역열호)’를 주석하면서

說(열)은 喜(희)의 뜻이다. 이미 배운 바 되었으나 다시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배운 것이 익숙하게 되니 마음속에 희열이 있어 배우고 익히는 것을 스스로 그만 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151)</sup>

라고 하였다. ‘學而時習之不易說乎’는 『논어』의 제1편 「학이」의 첫 구이다. 「學而」라는 편명은 바로 ‘學而時習之不易說乎’의 學而(학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논어』는 「學而」를 첫 편으로 「爲政위정」·「八佾팔일」·「里仁리인」·「公冶長공야장」·「雍也옹야」·「述而술이」·「泰伯태백」·「子罕자한」·「鄉黨향당」·「先進선진」·「顏淵안연」·「子路자로」·「憲問헌문」·「衛靈公위령공」·「季氏계씨」·「陽貨양화」·「微子미자」·「子張자장」·「堯曰요왈」 등 20편으로 되어 있다. 朱子는 『논어집주』에서 「學而」편을 주석하면서

이 篇은 『논어』의 머리 篇이다. 기록된 것이 근본을 갖추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도의 길에 들어서려는 문이요 덕을 쌓는 토대이므로 배우는 자들이 먼저 힘써야 할 篇이다.<sup>152)</sup>

하였다. 朱子는 『논어』 20편의 학문적 성과와 그로 인하여 갖추어질 도와 덕의 함양은 「學而」편의 기저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勉力(면력)은 先秦(선진)시기의 複音詞이다. 詞義는 ‘진력하다’이다. 務(무)는 술어 ‘공부하다’이고 之(지)는 代詞(대사)로 ‘급취편’을 이른다. 必(필)은 부사어 ‘반드시’이고 有(유)는 술

151) 朱熹 撰, 『論語集注』: 「說, 喜意也. 既學而又時時習之, 則所學者熟, 而中心喜說, 其進自不能已矣.」 齊魯書社, 1992. 3쪽.  
152) 朱熹 撰, 『論語集注』: 「此爲書之首篇, 故所記多務本之意, 乃入道之門, 積德之基, 學者之先務也.」 齊魯書社, 1992. 3쪽.

어 ‘있다’이며, 喜(희)는 빈어 ‘기쁨’이다. 따라서 勉力務之必有喜(면력무지필유희)를 직역하면 ‘급취편 공부에 진력한다면 반드시 기쁨이 있다’로 직역 된다.

## 006 請道其章(청도기장)

請道其章(청도기장)을 직역하면 ‘성명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이다. 마치 지금의 학습서를 보는 듯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본서의 대강을 말하였으니 성명장부터는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請(청)의 『설문해자』 字義는 謁(알)<sup>153</sup>이다. 謁은 제후가 천자를 알현한다는 뜻이다. 周代(주대)에 봄에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朝(조)라하고 가을에 알현하는 것을 覲(근)이라 하였다. 漢代(한대)에 들어와서 가을의 알현을 請이라 명명했다. 제후가 천자를 알현할 때에는 알현의식을 담당하는 관원의 안내에 따라 천자를 알현하게 된다. 請이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는 가을의 행사 명칭이므로 請에는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는 일체의 과정이 담겨져 있다. 請이 ‘정중히 요청하다’는 경어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알현의식을 담당하는 관원이 제후를 천자 앞으로 인도할 때 정중히 안내하는 것에서 나온 뜻이다. 따라서 請의 字義에서 ‘정중히 청하다’는 뜻은 漢代(한대)부터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請의 字義가 요청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한자의 引伸義(인신의)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道(도)는 金文(금문)에 나타나는 글자이다. 金文의 字形은 衢(도)로 네거리를 나타내는 行(행)과 머리를 나타내는 辵(수)로 이루어졌다. 『설문해자』의 해설은

道(도)는 통행하는 길이다. 辵(착)과 辵(수)의 합체자인 道(도)이다. 한길로 된 길을 道라한다.<sup>1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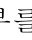
하였다. 辵(수)는 首(수)의 古文이다. 길이 한 줄기로 뻗어있는 길을 道라하고 사거리의 도로는 衢(구: 사거리)라 한다. 이것은 길의 형태에 따라 각각의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道는 한줄기로 뻗어 있는 길의 명칭으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 道의 字義는 사람이나 마차가 다니는 길이

153) 許慎 撰, 『설문해자』: 「請,謁也. 从言青聲. 七井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51쪽.

154) 許慎 撰, 『설문해자』: 「道,所行道也. 从辵从辵. 一達謂之道. 徒皓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42쪽.



다. 그러나 본문에서 道의 字義는 ‘말하다’이다. 사전에 따라서는 道의 ‘말하다’는 字義를 引伸義(인신의)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假借義(가차의)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道의 字義가 ‘말하다’는 뜻으로 쓰인 용례가 『시경』에 있기 때문이다. 『시경』은 사실상 현재 最古(최고)의 한문 서적이다. 『시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시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는 한자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 의미의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같은 글자를 차용하여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다’는 道의 字義는 假借義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引伸義는 本義(본의)와 의미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道의 구성자가 辵(착)과 首(수)로 사람이 길을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字形에서 ‘말하다’는 字義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道(도)의 ‘말하다’는 字義를 引伸義(인신의)라 하는 것은 本義와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스러운 字義 확장이라 할 수 있다. 道가 ‘말하다’의 뜻으로 쓰인 『시경』의 문구는 『시경·국풍·용풍·장유자』의 ‘中冓之言 不可道也(중구지언 불가도야) 집안의 말은 밖으로 말할 수 없다.’이다.

其(기)는 甲骨文(갑골문)에 나타나는 문자이다. 『설문해자』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其의 甲骨文은  (기)이다. 곡물을 까부를 때 쓰는 키를 그린 象形字(상형자)이다. 그러나 其(기)자가 곡물을 까부르는 키로 쓰인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키를 나타내는 글자는 箕(기)이다. 아마도 대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竹(죽)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箕(기)자가 키를 뜻하는 자로 쓰이면서 其는 그 本義(본의)를 상실한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도 其의 古文이 象形字인 其(기)라 하고 있다. 한자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意味代替(의미대체)가 일어나는 글자는 도태되어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其자는 代詞(대사)로서 그 어떤 글자보다도 활용도가 높게 쓰이고 있다. 古文에서 代詞로만 쓰이는 글자는 其자가 거의 유일하다. 古文에서 代詞로 쓰이는 다른 글자들은 本義가 따로 있고 또 그 本義가 쓰이면서 代詞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단지 代詞로서만 쓰이고 있는 글자는 其자가 거의 유일한 글자이다. 또한 代人(대인) 代物(대물) 代事(대사) 등에 두루 쓰이는 代詞는 其자뿐이다. 그렇다면 其자는 假借의 典型이라 할 수 있다. 즉 其의 독음인 소리를 빌어 온전히 소리로만 쓰인 것이다. 본문에서는 특정하여 지칭하는 代詞로 쓰이고 있다. 즉 ‘其章(기장)’은 성명장을 특정하여 지칭 하는 것이다. 특정하여 지칭하는 代詞로 쓰인 용례로는 『사기·골계전』에서 쓰인 용례가 비교적 뚜렷하다. 「골계전」에

鄴三老廷掾常歲賦斂百姓，收取其錢得數百萬，用其二三十萬為河伯娶婦，與祝巫共分其餘錢持婦(업삼로정연상세부렴백성, 수취기전득수백만, 용기이삼십만위하백취부, 여축무공분기여전지귀). 업성의 三老와 아전이 매해에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 거두는 액수가 수백만전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삼십만 전을 河伯에게 처녀를 바치는 비용으로 쓰고 그 나머지는 三老와 아전이 무당들과 나누어 가지고 돌아갑니다.<sup>155)</sup>

라고 하였다. 章(장)의 『설문해자』 해설은

음악 한곡을 마치는 것을 一章이라 한다. 음과 十의 합체인 회의자이다. 十은 數의 끝이다.<sup>156)</sup>

하였다. 章이 문장의 단락이나 문장자체를 나타내는 뜻은 『설문해자』의 本義에서 引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章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한 지칭이다. 『급취편』은 성명, 제물, 오관 등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세분하여 서문, 성명, 제물, 오관, 가필 등으로 모두 5章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서문장은 7언구 5구로 35자가 수록되었다. 35자 가운데 先秦시기 複音詞가 急就, 分別, 快意, 勉力 등이고, 西漢시기의 複音詞로 羅列이 있다. 한자는 一字一義(일자일의)의 單音詞(단음사)가 기본이다. 그러므로 漢文에서 複音詞는 오랜 시간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일반화 된 熟語(숙어)라 할 수 있다. 複音詞는 대체로 그 詞義가 고정되어서 한자의 속성상 一字多義(일자다의)의 의미적 혼란을 불식시키는 구실을 한다. 急就, 分別, 快意, 勉力, 羅列 등은 현재도 複音詞로 쓰이고 있으며, 單音詞인 奇觚與衆異 諸物名姓字部居不雜 廁用日約少 誠務之必有喜 등도 현재 상용자로 쓰이고 있는 글자들이다. 『한서·예문지』에서 『급취편』에 수록된 글자는 西漢초기에 만들어진 『창힐편』에서 상용자를 추려내어 수록한 것이라 하였는데 서문장에서 『한서·예문지』의 해설이 입증되고 있는 듯하다.

155) 司馬遷 撰, 『史記』: 「鄴三老,廷掾常歲賦斂百姓,收取其錢得數百萬,用其二三十萬為河伯娶婦,與祝巫共分其餘錢持婦。」中華書局, 2006. 733쪽.

156) 許慎 撰, 『설문해자』: 「章,樂竟爲一章. 从音从十. 十,數之終也. 諸良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51쪽.

## 2. 성명장

姓은 주어져 내려오는 것이나 名과 字는 짓는 것이다. 따라서 성명장은 姓氏의 起源(기원)과 庶姓(서성)이 발생 및 名과 字의 命名방식에 대하여 기술되었다.

### 1) 성씨의 기원

姓氏의 사전적 의미는 姓의 경칭이다. 즉 氏는 姓을 높여 이르는 접미사이다. 그런데 先秦시기에는 姓과 氏는 별개의 독립된 명사였다.

姓은 혈연관계의 계통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姓이 혈연계통의 표지가 되면서 同姓이면 통혼할 수 없도록 하였다. 同姓不婚(동성불혼)규율은 우생학적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좌전·회공이십삼년』 조에

남녀가 同姓이면 그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sup>157)</sup>

하였고, 『국어·진어』에

동성 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하는 것이다.<sup>158)</sup>

하였다.

氏는 父系社會(부계사회)의 산물이다. 현재의 족보에도 『모씨족보』라 하지 『모성족보』라 하지 않는다. 母系社會(모계사회)가 원시부락공동체적사회라면 父系社會는 신분적계급질서사회이다. 氏는 貴賤(귀천)을 가르는 신분적 표지이다. 귀한 신분은 姓과 氏가 있었으나 천한 신분은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통지·씨족략』에

氏는 귀천을 구별하는 것이다. 귀한 자는 氏가 있고 천한 자는 이름만 있고 氏는 없다. 지금도 남방의 여러 蠻夷(만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남아 있다.<sup>159)</sup>

157) 左丘明 撰, 『春秋左氏傳』: 「男女同姓其生不蕃。」中華書局, 2007. 57쪽.

158) 左丘明 撰, 『國語·晉語』: 「同姓不婚懼不殖也。」齊魯書社, 2005. 74쪽.

하였다. 姓은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리는 것이다. 비단 賜姓(사성)에 의한 姓이라 할 지라도 계통적으로 변동 없이 내려오게 된다. 그러나 氏는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도 氏가 다르게 된다. 『좌전·은공팔년』조에

천자는 덕이 있는 자를 세워 제후로 삼고 그 래어난 곳으로 姓을 내리고 분봉된 땅으로 族氏(족씨)를 명하고 제후의 字로 시호를 내리고 그 자손은 시호로 族氏를 삼으며, 관직을 받아 대대로 공이 있으면 그 官名(관명)으로 族氏를 삼는다. 封邑(봉읍)에도 이와 같다.<sup>160)</sup>

하였다. 이렇듯 氏는 신분에 따라 하사받게 되는 것으로 받는 자에 따라 氏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姓과 氏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늘날과 같이 姓氏로 통칭되게 된 시기는 戰國時期(전국시기)부터이다. 즉 戰國時期에는 서민도 姓을 갖게 되었다. 百姓(백성)이란 국민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國君(국군)의 姓 이외의 일반 국민들의 姓을 말하는 것이다. 『전국책·초책』에 百姓(백성)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왕의 대신과 부형은 현인을 혈뜰는 것에 능숙하여 이를 바탕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제신과 百姓들에게 무겁게 부세를 매겨 거두어들이고 있으니 왕은 국민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충신이 아닙니다.<sup>161)</sup>

라고 하였다. 여기 ‘제신과 百姓들’의 문구에서 보듯이 戰國時期에는 모든 사람이 姓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姓이 있게 되면서 姓과 氏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자 姓과 氏가 하나로 합쳐져 姓氏가되면서 姓과 氏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통지·씨족략』에

秦(진)이 六國(육국)을 멸하자 六國의 자손들이 서민이 되었다. 혹은 國名(국명)을 氏로 삼고 혹은 姓을 氏로 삼고 혹은 氏를 姓으로 삼으니 姓과 氏의 분간이 없어진 것이 이 때부터이다.<sup>162)</sup>

159) 鄭樵 撰, 『通志 氏族略』: 「氏所以別貴賤 貴者有氏賤者有名無氏 今南方諸蠻此道猶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text.org>

160) 左丘明 撰, 『春秋左氏傳』: 「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諸侯以字爲諡 因以爲族 官有世功 則有官族 邑亦如之.」 中華書局, 2007. 7쪽.

161) 劉向 編, 『戰國策』: 「今王之大臣父兄 好傷賢以爲資 厚賦斂諸臣百姓 使王見疾於民 非忠臣也.」 齊魯書社, 2005. 152쪽.

162) 鄭樵 撰, 『通志 氏族略』: 「秦滅六國 子孫皆爲民庶 或以國爲氏 或以姓爲氏 或以氏爲姓 姓氏之失

하였다. 姓氏의 구분이 周(주)왕조의 몰락과 함께 사라짐으로서 姓氏로 표시되던 신분의 구분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 2) 서성의 발생

姓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토템설이고 다른 하나는 地名(지명)설이다. 토템설을 보면 姚姓(요성)의 토템은 복숭아나무, 姜姓(강성)의 토템은 羊(양), 嬴姓(영성)의 토템은 제비라는 점에서 토템설이 제기되고 있다. 地名설은 姬姓(희성) · 媯姓(규성) · 姒姓(사성) 등이 地名을 姓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姓은 母系社會(모계사회)에서 발원된 것으로 본다. 이 논거는 中國上古八大姓(중국상고팔대성)인 姬(희) · 姚(요) · 媯(규) · 姒(사) · 姜(강) · 嬴(영) · 姁(길) · 妘(운) 등의 글자가 모두 ‘女’를 편방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중국의 대다수의 姓氏는 이 上古八大姓(상고팔대성)에서 파생되고 있다.

庶姓(서성)이란 本姓(본성)에서 分枝(분지)되어 파생되는 姓을 말한다. 庶姓은 封建制度(봉건제도)와 그에 수반된 宗法制度(종법제도)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봉건제도는 周代(주대)의 정치제도이다. 封建(봉건)이란 詞語(사어)가 처음 쓰인 것은 『좌전·회공이십사년』 조이다

周公(주공)이 관속과 채속이 龜卜(귀복)하지 않은 것을 애통히 여기고 친척들에게 封建(봉건)토록 하여 周(주)왕실의 藩屏(번병)을 삼았다.<sup>163)</sup>

하였다. 여기서 封建(봉건)이라는 詞語가 처음 보이고 있다. 封(봉)자는 사방주위에 나무를 심어 경계를 삼은 일단의 토지를 나타내는 會意字(회의자)이다. 建(건)자는 廷(정)과 律(률)로 이루어진 글자로 建國立法(건국입법)을 나타내는 會意字이다. 따라서 封建은 경계가 있는 일단의 땅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이른다. 封建된 나라는 爵位(작위)에 따라 나라의 크기가 달랐다. 公(공), 侯(후), 伯(백), 子(자), 男(남) 등으로 다섯 등급으로 나라의 크기가 달랐다. 이 5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封建國

自此始。」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text.org>  
163) 左丘明 撰, 『春秋左氏傳』: 「周公弔二叔之不咸故封建親戚以藩屏周。」中華書局, 2007. 58쪽.

(봉건국)은 附庸國(부용국)이라 하였는데 나라의 면적이 사방 50리 미만의 나라로 國土가 매우 적어서 인접해 있는 큰 封建國(봉건국)에 부속되었다. 『주례·지관사도·대사도』에

公爵(공작)의 封地(봉지)는 사방 500리이고 그 땅 조세의 절반을 취한다. 侯爵(후작)의 封地는 사방 400리이고 그 땅 조세의 삼분의 일을 취한다. 伯爵(백작)의 封地는 사방 300리이고 그 땅 조세의 삼분의 일을 취한다. 子爵(자작)의 封地는 사방 200리이고 그 땅 조세의 사분의 일을 취한다. 男爵(남작)의 封地는 사방 100리이고 그 땅 조세의 사분의 일을 취한다.<sup>164)</sup>

하였다. 이와 같이 封建 된 나라의 國君을 諸侯(제후)라 칭했다. 諸侯는 朝會(조회)에 參禮(참례)하고, 朝貢(조공)을 바치고, 勞役(노역)을 제공하며, 天子의 出征(출정)에 병사를 동원하는 의무가 지워졌다.

周代의 봉건제는 武王(무왕)이 殷(은)나라를 멸한 후 周王室(주왕실)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첫째는 은나라의 遺民(유민)에 대한 按撫(안무)이다. 은나라 마지막 왕인 紂王(주왕)의 아들인 武庚(무경)을 은나라의 都城(도성)에 封한 것은 나라를 잃고 실의에 차있는 遺民들을 慰撫(위무)하는 것이었다. 武庚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처형되었으나 역시 殷나라의 왕족인 微子啓(미자계)를 宋(송)나라에 封하여 殷나라 조상의 祭祀(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이것은 남은 遺民들을 안심시키는 강한 慰撫의 메시지인 것이다.

둘째는 德治(덕치)를 보이는 것이다. 古代의 聖王(성왕)들의 후손들을 焦(초), 祝(축), 薊(계), 陳(진), 杞(기) 땅에 封하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崇德(숭덕)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古代 제왕의 후손들의 민심을 얻는 조치로 시행되었다.

셋째는 國都(국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齊(제), 魯(노), 燕(연) 등의 지역은 周의 王都인 鎬京(호경)의 동방에 위치한 변방이다. 이 지역에 최고의 공신들을 封함으로써 周王室의 藩屏(번병)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변방은 王都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치력이 미치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朝

164) 鄭玄 注 賈公彥 疏, 『周禮注疏』: 「諸公之地封疆方五百里其食者半 諸侯之地封疆方四百里其食者參之一 諸伯之地封疆方三百里其食者參之一 諸子之地封疆方二百里其食者四之一 諸男之地封疆方百里其食者四之一。」 上海古籍出版社, 2005. 397쪽.

廷(조정)에 대한 반란이나 不服(불복)하는 세력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곳에 공신들을 分封(분봉)함으로써 변방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서·지리지』에

河內(하내)는 본래 은나라의 舊都(구도)이다. 周가 殷을 멸한 후 그 畿內(기내)를 三國(삼국)으로 나누었는데, 『시경』의 邶(패), 鄘(용), 衛(위)가 그 三國이다. 邶(패)에는 紂王(주왕)의 아들인 武庚(무경)을 封하였고, 鄘(용)에는 管叔(관숙)을 封하였고, 衛(위)에는 蔡叔(채숙)을 封하여 殷의 백성들을 監視(감시)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일러 三監(삼감)이라 하였다.<sup>165)</sup>

하였고, 그 주석에

殷의 紂王이 都城에서 북쪽을 邶라 이르고, 남쪽을 鄘이라 이르고, 동쪽을 衛라 일컫는다. 武庚은 紂王의 아들 祿父(녹보)이고, 管叔과 蔡叔은 武王의 동생이다.<sup>166)</sup>

하였다. 또한 『사기·주본기』에

武王은 先代(선대)의 聖君(성군)들을 기리어, 神農(신농)의 후손을 焦(초)에 封하고, 黃帝(황제)의 후손을 祝(축)에 封하고, 堯(요)의 후손을 薊(계)에 封하고, 舜(순)의 후손을 陳(진)에 封하고, 禹(우)의 후손을 杞(기)에 封했다. 또한 공신들도 分封하여 師尚父(사상보)를 가장 먼저 營丘(영구)에 封하였는데 그 封國(봉국)을 齊라 하였다. 동생인 周公(주공) 旦(단)을 曲阜(곡부)에 封하였는데 그 封國을 魯(노)라 하였다. 召公奭(소공식)을 燕(연)에 封하고, 동생인 叔鮮(숙선)을 管(관)에 封하고, 동생인 叔度(숙탁)을 蔡(채)에 封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공신들도 차례대로 分封되었다.<sup>167)</sup>

하였다. 이후 武王이 周王朝를 세운지 3년 만에 죽자 어린 成王(성왕)이 즉위하였고 周公(주공) 旦(단)이 攝政(섭정)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三監(삼감)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周公 旦이 이를 진압하고, 殷의 遺民을 洛邑(낙읍)으로 이주시켜 자신이 직접 관할하고, 紂王의 庶兄(서형)인 比干(비간)을 宋에 封하여 殷나라 조상의 祭祀를 받들게 하고, 衛에는 武王의 막내 동생인 康叔(강숙)을 封하였다. 이것이 周代 초에

165) 班固 撰, 『漢書』: 「河內本殷之舊都周既滅殷分其畿內爲三國詩風邶鄘衛國是也都以封紂子武庚庸管叔尹之衛蔡叔尹之以監殷民謂之三監。」 中華書局, 2007. 394쪽.

166) 班固, 『漢書·注』: 「自紂城而北謂之邶南謂之鄘東謂之衛武庚卽祿父也管叔蔡叔皆武王之弟。」 中華書局, 2007. 394쪽.

167) 司馬遷 撰, 『史記』: 「武王追思先聖王乃褒封神農之後於焦黃帝之後於祝帝堯之後於薊帝舜之後於陳大禹之後於杞於是封功臣謀士而師尚父爲首封封尚父於營丘曰齊封弟周公旦於曲阜曰魯封召公奭於燕封弟叔鮮於管弟叔度於蔡餘各以次受封。」 中華書局, 2006. 33쪽.

이루어진 分封이다. 周代 초에 단행된 封建制(봉건제)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 하에 시행된 정책이었다.

周代의 封建制에 수반된 제도가 宗法制度(종법제도)이다. 宗法(종법)은 周代에 성립된 宗族(종족)의 조직체계이다. 宗法은 大宗(대종)과 小宗(소종)으로 이루어진다. 大宗은 宗族의 宗統(종통)을 이르는 것으로 시조 이래 적장자로 이어진 宗家(종가)를 이른다. 小宗은 大宗인 적장자 이외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家系(가계)를 이른다. 宗法에 관한 문헌적 근거는 周代 초기의 시편으로 간주되고 있는 『시경·대아·생민 지삼·판』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 시구가

大邦維屏 大宗維翰.(대방유병 대종유한)

이라는 詩句이다. 이 시구에서 大宗이 처음 나온다. 大宗에 대하여 『모시정의』에서는

왕은 천하의 대종이다. 대종은 왕의 적자이다.<sup>168)</sup>

하였고, 『예기·대전』 주소에서는

百代(백대)가 넘어도 시조의 신주가 사당에서 옮겨지지 않는 家系(가계)를 大宗이라고 하고, 5대가 되면 조상의 신주가 사당에서 옮겨지는 家系를 小宗이라 한다.<sup>169)</sup>

라고 하였다. 緦麻(시마)는 五服(오복)의 제도에서 삼종형제가 입는 服(복)이다. 삼종형제는 高祖(고조)는 같고 曾祖(증조)는 다른 친족관계이다. 따라서 緦麻(시마)를 입는다는 것은 高祖를 같은 조상으로 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즉 친형제는 期(기), 일종형제는 大功(대공), 재종형제는 小功(소공), 삼종형제는 緦麻(시마)이다. 팔촌관계의 친족의 입는 服이 緦麻이다. 이 緦麻를 끝으로 服親(복친)관계가 소멸된다. 삼종형제가 되면 服이 없어지고 袒免(단면)으로 弔意(조의)를 표한다.

168) 孔穎達 撰, 『毛詩正義』: 「王者天下之大宗. 大宗王之同姓之適子也.」 上海古籍出版社, 1990. 634쪽.

169)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有百世不遷之宗者謂大宗也. 有五世則遷之宗者謂小宗也.」 上海古籍出版社, 2008. 1414쪽.



周代の 宗法에 五世(오세)이후는 庶姓이 되었다. 五世는 高祖이하 본인까지의 代數(대수)를 말한다. 庶姓이란 本姓에서 갈라져 나와 택하는 本姓이 아닌 다른 姓을 말한다. 사종형제의 관계가 되면 인원이 많아지고,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며, 친족 관계의 촌수가 멀어져서 각각의 다른 姓으로 일족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本姓에서 다른 姓이 된 것이 많다는 뜻으로 庶姓<sup>170)</sup>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庶姓이 발생은 고조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친족단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기·대전』 주석에

姓이 世代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sup>171)</sup>

하였고, 그 注疏(주소)에

고조가 庶姓(서성)이다.<sup>172)</sup>

하였는데 이 말은 世代가 5대를 내려가면 다른 姓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고조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친족관계가 팔촌관계이다. 팔촌관계가 넘어서면 십촌이 되는데, 십촌관계가 되면 고조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즉 십촌관계에 있는 자들은 팔촌관계에서의 증조가 고조가 된다. 따라서 증조는 여러 사람일 수 있다. 그 증조가 그들에게는 고조가 되고, 그 고조를 공동의 조상으로 하는 服親(복친)관계가 이루어지고 각기 다른 姓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姓을 庶姓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小宗이다. 그러므로 大宗은 시조 이래 姓이 변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는 宗統이고, 小宗은 고조를 宗祖(종조)로 하는 服親(복친)단위로 대대로 내려가면서 宗祖가 변하게 되는 家系이다.

宗法은 적장자와 적장자 이외의 형제들의 위계질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천자는 적장자가 繼位(계위)한다. 諸侯도 적장자로 세습된다. 이 때 적장자 이외의 형제들이 신분처리가 爵位(작위)와 官職(관직)이다. 天子의 아들인 王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爵位이고, 諸侯의 아들인 公子(공자)들에게 수여되는 것이 官職이다. 爵位는 公, 侯, 伯, 子, 男의 五等爵을 이

170) 庶姓(서성)에서 庶(서)자는 많다는 뜻이다. 즉 본성에서 다른 성으로 많이 분포 되었다는 말이다.

171)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高祖爲庶姓.」 上海古籍出版社, 2008. 1409쪽.

172)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姓世所由生.」 上海古籍出版社, 2008. 1409쪽.

르는 것이고, 官職은 卿(경), 大夫(대부), 士(사)를 이른다. 周王朝는 이 宗法制度를 통하여 신분질서를 제도적으로 안정화 시켰던 것이다.

周王室의 姓은 姬姓이다. 姬姓의 大宗은 周의 天子이고 小宗은 諸侯이다. 『여씨춘추·람부·관세』에

周代에 사백여개의 나라가 分封되었고 팔백여개의 邦國(방국)이 복속되었다.<sup>173)</sup>

하였고, 『순자·유효편』에는

周王朝를 세우고 봉건 된 나라가 71개 나라인데 그 가운데 53국이 姬姓이다.<sup>174)</sup>

하였다. 따라서 53國의 姬姓 諸侯는 小宗으로 모두 庶姓이 되었다. 즉 周왕조 초기에 本姓인 姬姓에서 53개의 姓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封建制度和 宗法制度에 의한 서성의 발생이다.

『急就篇』의 姓名章은 132姓을 나열하고 있는데 尙姓(상성)과 樂姓(낙성)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두 姓을 제외하면 130姓이다. 이 130姓 중 122姓은 중국상고 팔대성에 속하는 姬 · 姜 · 姒 · 嬴 · 媯 · 姚 및 子 · 芈(미) · 任(임) · 風(풍) · 祁(기) · 曹(조) 등 12姓을 淵源(연원) 姓으로 하고 있다. 姓을 삼은요인은 國명 · 지명 · 관직 · 祖名(조명) · 시호 · 賜姓(사성) · 작위 · 嫡庶(적서) · 改姓(개성) 등 9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姓을 삼고 있다. 나머지 8姓은 淵源 姓인 12姓에서 파생되지 않고 독자적인 요인으로 성을 삼고 있다.

姬姓은 중국 上古八大姓의 하나로 黃帝의 姓이고 周王朝의 國姓이다. 시조는 華夏(화하)민족의 人文(인문) 창시자로 추앙되고 있는 黃帝軒轅(황제현원)이다. 黃帝가 姬水에서 장성하였기 때문에 姬를 姓으로 삼았다. 姬水는 지금의 渭河(위하) 지류인 漆水河(칠수하)로 섬서성 무공현을 흐르고 있다. 五帝(오제)인 少昊(소호) · 顓頊(전욱) · 帝嚳(제국) · 唐堯(당요) · 虞舜(우순) · 夏禹(하우) · 商族(상족)의 선조 契

173) 呂不韋 撰, 『呂氏春秋』: 「此周之所封四百餘服國八百餘。」 中華書局, 2007. 171쪽.

174) 荀子 撰, 『荀子』: 「兼制天下立七十一國姬姓獨居五十三人。」 山西古籍出版社, 2003. 46쪽.

(계), 周族(주족)의 선조 后稷(후직) 등의 모두 黃帝의 후예이다. 后稷이 姬姓을 계승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周王朝를 세웠다. 현재 『백가성』 504姓의 82%인 411姓이 姬姓에서 分派(분파)된 姓이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姬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73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鄭(정) 衛(위) 周(주) 戴(대) 畢(필) 霍(곽) 管(관) 魯(로) 吳(오) 賈(가) 韓(한) 燕(연) 祝(축) 成(성) 雍(옹) 原(원) 劉(류) 蔡(채) 郭(곽) 耿(경) 焦(초) 邢(형) 등 22姓이다.

地名을 姓으로 삼은 馮(풍) 令狐(영호) 柳(류) 費(비) 樊(번) 聶(섭) 龐(방) 閻(염) 寧(녕) 溫(온) 毛(모) 橋(교) 慈(자) 邵(소) 敦(돈) 解(해) 陶(도) 姚(요) 求(구) 尹(윤) 邴(병) 續(속) 등 22姓이다.

官職을 姓으로 삼은 史(사) 董(동) 烏(오) 曹(조) 陰(음) 冷(령) 褚(저) 龍(룡) 師(사) 司(사) 馬(마) 審(심) 宰(재) 偏(편) 憲(헌) 등 14姓이다.

祖名을 姓으로 삼은 桓(환) 石(석) 許(허) 蘭(란) 孟(맹) 童(동) 公孫(공손) 闕(궐) 榮(영) 등 9姓이다.

諡號를 姓으로 삼은 宣(선) 武(무) 등 2姓이다.

賜姓이 苟(구) 1姓이고, 爵位를 姓으로 삼은 侯(후) 1姓, 嫡庶의 분별로 삼은 庶(서) 1姓, 改姓 滅(멸) 1姓 등이다. 姬姓에 분파된 姓은 이상 9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성을 삼고 있다.

姜姓은 중국 上古八大姓 중의 하나이다. 姜姓의 시조는 炎帝神農氏(염제신농씨)이다. 炎帝가 姜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姜을 姓으로 삼았다. 姜水는 지금의 섬서성 보계시 경내를 흐르는 청강하이다. 姜姓의 인물로는 齊를 건국한 周의 개국공신 姜太公이 있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姜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11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淳于(순우) 1姓, 地名을 姓으로 삼은 路(로) 崔(최) 丘(구) 謝(사) 郝(학) 5姓, 祖名을 姓으로 삼은 高(고) 柴(시) 尙(상) 充(충) 左(좌) 5姓 등이다.

姒姓은 중국 上古八大姓의 하나이다. 始祖는 夏(하)왕조의 개국군주 大禹(대우)이다. 舜帝(순제)때에 禹가 治水에 성공하자 舜帝가 禹에게 姒를 賜姓하였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姒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6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

을 姓으로 삼은 鄧(등) 譚(담) 夏(하) 3姓, 地名을 姓으로 삼은 伊(이) 觀(관) 過(과) 3姓 등이다.

嬴姓은 중국 上古八大姓의 하나이다. 嬴姓의 始祖는 伯益(백익)이다. 伯益이 舜帝의 山林(산림)과 鳥獸(조수)들을 잘 관리하여 번성하였으므로 땅을 하사하고 嬴을 賜姓하였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嬴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6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秦(진) 趙(조) 2姓, 地名을 姓으로 삼은 蕭(소) 馬(마) 葛(갈) 3姓, 祖名을 姓으로 삼은 柏(백) 1姓 등이다.

媯姓은 중국 上古八大姓의 하나이다. 始祖는 舜帝이다. 舜帝가 姚墟(요허)에서 출생여 姚姓이라 하였다. 舜이 堯帝(요제)에게 발탁되어 媯水가에 살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媯를 姓으로 삼았다. 媯水는 지금의 산서성 영제시 남부 역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간다. 『금취편』의 姓名章에서 媯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2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陳(진) 1姓, 祖名을 姓으로 삼은 爰(원) 1姓 등이다.

姚姓은 중국 上古八大姓의 하나이다. 始祖는 舜帝이다. 舜이 姚墟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姚를 姓으로 삼았다. 姚墟는 지금의 절강성 영파시 여요시이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姚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2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으로 姓을 삼은 虞(우) 1姓, 改姓 田(전) 1姓 등이다.

子姓은 商나라 왕족의 姓이다. 商나라의 先祖는 契(계)이다. 契의 모친은 簡狄(간적)이다. 簡狄은 有娥氏(유용씨)의 여인으로 帝嚳(제곡)의 次妃(차비)이다. 三人이 목욕을 하러 가는데 玄鳥(현조)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簡狄이 그 알을 취하여 삼켰는데 그로인하여 잉태하고 낳은 것이 契이다. 契가 장성하여 禹를 도와 치수사업을 완성한 공으로 舜帝로부터 商에 封해지고 賜姓으로 子姓을 받았다. 契가 살았던 시대는 唐堯(당요) · 虞舜(우순) · 大禹(대우)의 치세를 살았는데 그 때에는 백성들을 위한 공업이 두드러져 백성들이 더불어 평안을 누렸던 시기이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子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9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殷(은) 宋(송) 2姓, 地名을 姓으로 삼은 來(래) 扈(안) 2姓,

祖名을 姓으로 삼은 孔(공) 樂(악) 向(향) 代(대) 所(소) 등이다.

芈(미)姓은 楚(초)나라 군주의 姓이다. 顓頊高陽氏(전욱고양씨)의 후손에 陸終(육종)이 있다. 이 陸終에게 아들 여섯이 있었다. 그 여섯 짝 아들 이름이 季連(계련)이고 姓이 芈(미)이다. 이가 芈姓의 始祖이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芈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5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地名을 姓으로 삼은 屈(굴) 苗(묘) 2姓, 祖名을 姓으로 삼은 翠(취) 1姓, 諡號(시호)를 姓으로 삼은 景(경) 昭(소) 등이다.

任姓은 賜姓이다. 黃帝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25명 중 14인에게 12姓이 賜姓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任姓이다. 賜姓된 12姓은 姬(희) · 酉(유) · 祁(기) · 己(기) · 滕(등) · 箴(잠) · 任(임) · 荀(순) · 僖(희) · 姁(길) · 儂(현) · 衣(의) 등이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任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2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薛(설) 1姓, 地名을 姓으로 삼은 奚(해) 1姓 등이다.

風(풍)姓의 시조는 太昊伏羲氏(태호복희씨)이다. 『죽서기년』에

太昊伏羲氏(태호복희씨)는 木德(목덕)으로 王이 되었다. 그래서 風을 姓으로 삼았다.

하였다. 木德(목덕)으로 王이 되었으므로 風을 姓으로 삼았다는 말은 『역경』에 바탕을 둔 것이다. 木은 八卦(팔괘) 가운데 巽卦(손괘)에 속한다. 巽卦는 風(풍) 즉 바람을 상징하는 卦이다. 그러므로 木과 風이 연관되어 姓을 風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風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2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任(임) 1姓, 地名을 姓으로 삼은 程(정) 1姓 등이다.

祁(기)姓의 始祖는 祁奚(기해)이다. 祁奚는 春秋時期(춘추시기)<sup>175)</sup> 晉國(진국)의 大夫(대부)이다. 祁奚는

밖으로는 원수라도 추천하기를 서슴치 않았고, 안으로는 자식이라도 천거하는데 주저

175) 춘추전국시기는 중국 주왕조 때의 역사적 시기를 분류하는 명칭으로 공자가 지었다는 『춘추』와 유향의 지었다는 『전국책』의 책이름을 따서 『춘추』에 기록된 시기를 춘추시대라 하고 『전국책』에 기록된 시기를 전국시대라 한다. 춘추시기는 B.C. 770년부터 B.C. 403년 사이의 시기를 말하며 전국시기는 B.C. 403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B.C. 221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하지 않았다.<sup>176)</sup>

고 하는 공평무사한 관리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祁姓은 黃帝가 賜姓한 12姓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나, 祁奚가 현재 始祖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祁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3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國名을 姓으로 삼은 翟(적) 1姓, 地名을 姓으로 삼은 范(범) 1姓, 祖名을 姓으로 삼은 朱(주) 1姓 등이다.

曹(조)姓의 시조는 曹安(조안)이다. 曹安은 大禹에 의해 曹官(조관)에 임명되어 官職인 曹를 氏로 삼았다. 曹官은 奴隸(노예)를 관리하는 官職이다. 夏代(하대)는 奴隸制 社會이다. 奴隸制 國家에서 奴隸를 관리하는 官職은 중요한 관직이라 할 수 있다. 후손들이 이 官職名을 姓으로 삼았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曹姓을 淵源으로 하는 姓은 1姓이다. 姓으로 삼은 요인은 祖名인 顏(안)을 姓으로 삼았다.

『금취편』의 성명장에서 독자적인 요인에 의하여 姓으로 삼은 姓은 8姓으로, 地名을 姓으로 삼은 柘(자) 竺(축) 2姓이고, 祖名을 姓으로 삼은 由(유) 遺(유) 俠(협) 3姓이고, 기타 痛(통) 液(액) 萬(우) 등이 있다.

### 3) 名과 字의 명명방식

사람의 이름은 姓과 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姓은 혈연적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名은 그 개인을 칭하는 固有名詞(고유명사)이다. 字義(자의) 측면에서 姓의 字義는 引伸義(인신의)이고, 名의 字義는 本義(본의)이다. 姓자에 대하여 『설문해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姓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옛적에 신성한 여인이 하늘에 감응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天子라 칭한다. 女를 따르고 生을 따랐다. 生은 성부이기도 하다. 춘추전에 天子는 태어난 곳을 인하여 사성하는 것이다.<sup>177)</sup>

176) 呂不韋 撰, 『呂氏春秋』: 「外舉不避仇內舉不避親。」 中華書局, 2007. 36쪽.

177) 許慎 撰, 『설문해자』: 「姓人所生也. 古之神聖母感天而生子故稱天子. 從女從生亦聲. 春秋傳曰天子因生以賜姓. 息正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258쪽.

『설문해자』의 해설에서는 성씨로서의 姓으로 해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姓氏의 뜻으로의 姓은 引伸義인 것이다. 한편 名자에 대하여 『설문해자』의 해설은,

名은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口(구)를 따르고 夕(석)을 따랐다. 夕이란 날이 저물어 어두워진 것을 말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캄캄하여 서로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여 상대방에게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다.<sup>178)</sup>

라고 하였다. 名에 대한 『설문해자』의 해설은 名자가 이름을 뜻하는 글자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名의 字義는 本義이다. 姓은 주어지는 것이나, 名은 짓는 것이다. 안사고도 주석에서 ‘姓이란 고래로 있어온 것이다. 결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名은 혹 옛사람이 이미 칭했던 것을 쓰거나 혹은 새롭게 내용과 이치에 맞게 글자를 선택하여 짓는 것이다.’하였다.

周代의 人名은 名과 字를 공식 호칭으로 삼았다. 名은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名이다. 字는 남자는 冠禮(관례)를 행하고 받는 칭호이고 여자는 笄禮(계례)를 치르고 받게 된다.

字는 冠禮를 치른 후부터 그 사람의 대표적 호칭으로 史籍(사적)에도 本名과 나란히 기재된다. 字는 그만큼 중대한 칭호이다. 『예기·곡례』에

남자가 20세가 되면 冠禮를 행하고 字를 부른다. 여자는 15세가 되면 혼기에 이르는 데 약혼을 하면 笄禮를 치르고 字를 부른다.<sup>179)</sup>

하였다. 本名은 사람의 몸에 붙여지는 본질적 명칭이고, 字는 사회의 신분질서에 합류하는 구성원에게 붙여지는 사회적 명칭이다. 字가 단순히 한 개인의 本名 외의 호칭이 아니라는 것은 冠禮의 차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冠禮는 세 차례의 冠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치러진다.

첫 번째는 緇布冠(치포관)을 쓴다. 이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皮弁(피변)을 쓴다. 이것은 군사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178) 許慎 撰, 『설문해자』: 「名自命也. 從口從夕夕者冥也. 冥不相見故以口自名. 武并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31쪽.

179)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男子二十冠而字, 女子許嫁笄而字.」上海古籍出版社, 2008. 85쪽.

이때는 劍(검)을 착용하게 된다.

세 번째는 爵弁(작번)이다. 이것은 제사를 치르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제사는 국가나 가정에서나 최상위에 있는 자가 치르는 의식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天子の 태자는 특별히 冠禮의 나이가 일정치 않았고, 의식도 네 차례로 네 번째는 袞冕(곤면)을 착용하였다. 袞冕은 天子の 服飾(복식)이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賓客(빈객)이 字를 지어 冠禮를 받는 자에게 붙여 준다. 이렇게 冠禮가 끝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字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字는 冠禮의 예식을 집전하는 구성원인 賓客(빈객)에 의해 지어져서 冠禮를 받는 자에게 붙여진다. 그렇다면 賓客이 지어주는 字는 그 賓客의 학문적 덕망에 의해 恣意的(자의적)으로 지어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字는 賓客의 恣意的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字는 名의 해석자이다. 즉 賓客의 학문적 덕망을 존경하여 字를 지어줄 것을 의뢰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名의 해석자가 있어서 그 글자를 賓客이 字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名의 해석자로서의 字는 자전에서 字義를 해석하는 근거로 援用(원용)된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설문해자』의 旡(언)에 관한 字義해설이다. 『설문해자』에

旡(언)은 旌旗(정기)의 기드림이다. 깃대위에 높이 달려서 펄럭인다. 깃봉에서 곡선을 그리며 아래로 늘어져 있다가 바람이 불면 기폭으로 들고나며 나부낀다. 자음은 偃(언)과 같다. 옛 사람의 이름에 旡(언)이 있는데 字가 子游(자유)이다.<sup>180)</sup>

하였고, 단옥재는 그 주석에서

晉(진)에 籍偃(적언)과 荀偃(순언)이 있고, 鄭(정)에 公子偃(공자언)과 駟偃(사언)이 있다. 孔子의 제자에 言偃(언언)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字가 游(유)이다. 지금의 經傳(경전)에서는 모두 旡(언)을 偃(언)으로 쓰고 있다. 偃(언)이 쓰이게 되자 旡(언)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sup>181)</sup>

하였다. 단옥재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偃을 이름으로 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180) 許慎 撰, 『설문해자』: 「旡旌旗之游旡蹇之兒从中曲而下垂旡相出入也讀若偃古人名旡字子游。」天津古籍出版社, 2005. 140쪽.

181) 『漢典』: 「晉有籍偃,荀偃. 鄭有公子偃,駟偃. 孔子弟子有言偃. 皆字游. 今之經傳皆變作偃. 偃行而旡廢矣。」<http://www.zdic.net>



籍偃(적언)은 춘추시기 晉國의 大夫이다. 姓은 籍(적) 名은 偃이며 字는 子游(자유)이다.

荀偃(순언)은 춘추시기 晉國의 正卿(정경)이다. 姓은 姬 荀氏(순씨) 名은 偃이며 字는 伯游(백유)이다.

公子偃(공자언)은 춘추시기 鄭國 七穆(칠목) 중 一人이다. 姓은 姬 名은 偃이며 字는 子游(자유)이다.

駟偃(사언)은 춘추시기 鄭國의 卿(경)이다. 姓은 姬 駟氏(사씨) 名은 偃이며 字는 子游(자유)이다.

言偃(언언)은 孔門十哲(공문십철) 중 一人이다. 姓은 言 名은 偃이며 字는 子游(자유)이다.

游(유) 앞의 子와 伯(백)은 접두어로 子는 남자의 미칭이고, 伯은 형제의 차서를 나타내는 배행자이다. 한편 游에 대한 『설문해자』의 해설은

游(유)는 旌旗(정기)의 流(류)이다. 从(언)을 따르고 汙聲(수성)이다.<sup>182)</sup>

하였고, 단음재는 그 주석에서

정기의 기드림이 마치 물결이 너울거리며 흘러가듯이 기드림도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물결이 너울거리듯 나부끼기 때문에 流(류)라 칭한 것이다.<sup>183)</sup>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설문해자』에서 从(언)의 字義를 游(유)라 하고 그 근거로 사람의 名인 从(언)과 字인 游(유)를 援用(원용)하여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의 字는 姓 앞에 형제의 차서를 나타내는 글자를 붙여 字를 삼았다. 그러므로 따로 字를 지어서 붙인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남자의 字는 名의 해석자로 여자의 字는 형제의 차서를 나타내는 자로 규정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名에는 大名, 小名, 學名(학명)이 있다. 大名은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本名인 大名이다. 大名은 官籍(관적)에 등재되

182) 許慎 撰, 『설문해자』: 「游,旌旗之流也. 从从汙聲.」天津古籍出版社, 2005. 140쪽.

183) 『漢典』: 「旗之游如水之流,故得併流也.」<http://www.zdic.net>

고 族譜(족보)에 오르는 이름으로 죽으면 소위 避諱(피휘)되는 이름이다. 小名은 大名이 명명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지어서 부르는 이름으로 乳名(유명) 또는 兒名(아명)이라 하는 것이다. 兒名은 보편적으로 천하게 지었는데 이는 악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신적 습속의 일환이다. 천한 것은 사람이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악귀도 마찬가지로 그러할 것이라는 인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晉獻公(진헌공)의 兒名은 蠶(채)이다. 蠶는 전갈을 말한다. 사마상여의 兒名은 犬子(견자)이다. 犬子는 개라는 말이다. 王獻之(왕헌지)의 兒名은 官奴(관노)이다. 官奴는 官의 노비를 말한다. 이처럼 동물이나 노비 같은 천한 이름으로 兒名을 지었다. 學名(학명)은 訓名(훈명)이라고도 한다. 訓名은 입학할 때에 스승이나 그 지방에서 名望(명망)이 있는 인사가 지어주는 덕담을 담은 이름이다. 訓名은 학문을 마칠 때까지 스승이 부르는 공식 명칭이기도 하다.

名에 관한 문헌적 최초의 기록은 『좌전·환공육년』 조에 기술되었다. 桓公(환공)이 世子(세자)의 이름을 지으려고 申繻(신수)에게 이름 짓는 것을 묻자 申繻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이름을 짓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信(신)이 있고, 義(의)가 있고, 象(상)이 있고, 假(가)가 있고, 類(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信이라 하고, 지닌 덕에 따라 짓는 것을 義라 하고, 생김새를 따라 짓는 것을 象이라 하고, 사물의 이름을 빌어 짓는 것을 假라 하고, 父(부)와 닮은 것을 따라 짓는 것을 類라 합니다. 또한 이름을 지을 때 피하는 것이 있으니, 本國의 國名을 이름으로 하지 않으며, 本國의 官名을 이름으로 하지 않으며, 本國의 산천명칭을 이름으로 하지 않으며, 상서롭지 못한 것은 이름으로 하지 않으며, 六畜(육축)의 명칭을 이름으로 하지 않으며, 祭器(제기)와 幣帛(폐백)의 명칭을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周王朝는 避諱(피휘)로써 先父(선부)를 공경하는 것이니, 사람이 죽으면 그 名은 바로 避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本國의 國名을 이름으로 지으면 避諱가 되지 않으므로 이름을 없앨 수 밖에 없게 되고, 官名으로 이름을 지으면 官名이 諱(휘)자가 되어 官名을 없앨 수 밖에 없게 되고, 山川의 명칭으로 이름을 지으면 山川의 명칭을 고쳐야 하며, 六畜의 명칭으로 이름을 지으면 六畜을 犧牲(희생)으로 쓸 수 없게 되며, 祭器와 幣帛의 명칭으로 이름을 지으면 禮物(예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晉僖公(진희공)의 名이 司徒(사도)였기 때문에 官名인 司徒를 廢(폐)하였고, 宋武公(송무공)의 名이 司空(사공)이었기 때문에 官名인 司空을 廢하였고, 先君(선군)이신 獻公(헌공)과 武公(무공)의 名이 具(구)와 敖(오)였기 때문에 具山(구산)과 敖山(오산)의 山名을 改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류의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sup>184)</sup>

184) 左丘明 撰, 『春秋左氏傳』: 「名有五有信有義有象有假有類, 以名生爲信以德命爲義以類命爲象取於物爲假取於父爲類, 不以國不以官不以山川不以隱疾不以畜牲不以器幣, 周人以諱事神名終將諱之故以國則廢名以官則廢職以山川則廢主以畜牲則廢祀以器幣則廢禮晉以僖侯廢司徒宋以武公廢司空先君獻武廢二山

하였다. 이것은 周代에 확립된 避諱制度(피휘제도)에 따른 작명방법이라 할 수 있다. 避諱(피휘)란 先王(선왕) 先賢(선현) 先父(선부)를 尊崇(존숭)하는 禮(예)로써 고인의 이름자를 발설하거나 글로 쓰거나 하는 것을 삼가게 하는 법도이다. 周代의 避諱制度에 관한 規例(규례)는 『예기·곡례』에 수록되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卒哭(졸곡) 후 諱(휘)한다. 嫌名(혐명)은 不諱(불휘)한다. 두 자 名은 1자만 諱한다. 부모를 모신 자는 조부모의 名을 諱한다. 부모를 모시지 못한 자는 조부모의 名을 不諱한다. 군주가 있는 곳에서는 私諱(사휘)는 不諱한다. 大夫가 있는 곳에서는 公諱(공휘)를 諱한다. 詩書(시서)는 不諱한다. 臨文(임문)은 不諱한다. 祠堂(사당)에서는 不諱한다. 부인의 諱는 비록 군주의 嬪妃(빈비)라도 신하가 諱하지 않는다. 부녀의 諱는 문밖을 나가지 않는다. 大功(대공)과 小功(소공)은 不諱한다.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는 그 나라의 禁書(금령)을 묻고, 입국하여서는 그 나라의 風俗(풍속)을 묻고, 집안을 방문할 때는 그 집안의 家諱(가휘)를 묻는다.<sup>185)</sup>

‘卒哭후 諱한다.’ 이 말은 卒哭祭(졸곡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고인의 名을 避諱한다는 말로 살아 있는 사람의 名은 避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卒哭祭는 常日로부터 3개월 후의 剛日(강일)<sup>186)</sup>에 치러지는데 卒哭 때까지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간주 되어 음식을 올리고 문안하는 것을 살아 있을 때와 다름없이 행하게 된다. 卒哭이 되면 비로소 사람이 완전히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령은 황천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本名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 실체에 붙게 된다. 諱名은 실체를 특정지우는 표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체가 있으면 名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실체가 없으면 名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현실에서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실체가 없어졌으니 名도 따라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卒哭후 諱한다.’는 뜻이다.

‘嫌名(혐명)은 不諱(불휘)한다.’ 嫌名은 名자 이외의 닮은 글자들 즉 同音字(동음자)나 同義字(동의자)를 避諱(피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諱(휘)는 고인을 존중하여 받든다는 뜻의 禮로서 이름자의 사용을 삼감으로써 禮를 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자만 避諱하면 된다는 것이다. 혹 過恭(과공)하여 同音字나 同義字를 避諱함으로써 문자의 활용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의 規례라 할 수

是以大物不可以命。」中華書局, 2007. 17쪽.

185)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卒哭乃諱禮不諱嫌名二名不偏諱逮事父母則諱王父母不逮事父母則不諱王父母君所無私諱大夫之所有公諱詩書不諱臨文不諱廟中不諱夫人之諱雖質君之前臣不諱也婦諱不出門大功小功不諱入竟而問禁入國而問俗入門而問諱。」上海古籍出版社, 2008. 57면.

186) 剛日(강일)은 干支(간지)에서 甲·丙·戊·庚·壬의 들어 있는 일자를 말한다.

있다.

‘두 자 名은 1자만 諱한다.’ 이것은 두 자로 된 이름은 두 자 중 하나의 글자만 避諱한다는 말이다. 避諱는 名으로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자의 이름자 전부를 避諱하면 사용이 금지되는 글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자의 사용에 크나큰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한 글자가 避諱되는 것과 두 글자가 避諱되는 것은 禮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평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사용면에서나 禮의 형평성 차원에서나 두 자 중 한 자만을 避諱한다는 것은 적절한 규례라 할 수 있다.

‘부모를 모신 자는 조부모의 諱를 避諱한다. 부모를 모시지 못한 자는 조부모의 諱를 不諱한다.’ 이것은 손자가 조부모의 이름자를 避諱하는 경우와 避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鄭玄은 본구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부모를 모신 자는 부모를 통하여 조부모의 諱가 避諱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손자가 조부모의 諱를 避諱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는 부모가 조부모의 諱를 避諱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조부모의 諱를 避諱하지 않아도 된다.<sup>187)</sup>

‘군주가 있는 곳에서는 私諱(사휘)는 不諱한다.’ 이것은 군주가 있는 곳에서는 家諱(가휘)는 避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위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군주 이외에는 높임을 받을 자가 없다. 避諱는 존숭의 표시이다. 따라서 군주 앞에서는 군주보다 높임을 받을 자는 없으므로 사사로운 家諱(가휘)는 避諱하지 않는 것이다.

‘大夫가 있는 곳에서는 公諱(공휘)를 避諱한다.’ 公諱는 국군의 諱를 이른다. 大夫는 군주의 신하이다. 군주는 大夫로부터 높임을 받는 존재이다. 避諱가 높임을 표시하는 禮이므로 大夫 앞에서 군주의 諱를 避諱하는 것은 避諱제도상 당연한 규례라 할 것이다.

‘詩書(시서)는 不諱한다. 臨文(임문)은 不諱한다.’ 詩書는 『시경』과 『서경』을 이른다. 즉 『시경』과 『서경』의 글자는 避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경』과 『서경』은 學文(학문)의 書(서)이다. 學文의 書에서 諱자를 避諱하게 되면 諱자가 있는 문구는 글자가 빠지거나 다른 비슷한 글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본래의 문구의 뜻을

187)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孝子聞名心懼祖是父之所諱則子不敢言孝子若幼少孤不及識父母便得言之故不諱祖父母.」 上海古籍出版社, 2008. 57면.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정확히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게 된다. 이것은 學文에 큰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경』과 『서경』의 글은 避諱하지 않는 것이다. 臨文은 禮를 집행할 때의 집행문서를 이른다. 예식에 쓰이는 문서는 작문할 때에 諱자를 避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諱자가 들어가야 할 문구에 諱자를 避諱하여 꺾자로 두거나 다른 글자로 대체한다면 문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집행할 때에 바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집례의 문서에는 避諱하는 글자가 없도록 규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祠堂에서는 不諱한다.’ 이것은 祠堂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고조의 諱는 避諱하나 증조 이하의 諱는 避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避諱는 존숭의 표시이므로 고조의 諱를 避諱하는 것은 증조 이하의 자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禮이다. 따라서 四代奉祀(사대봉사)의 祠堂에서 고조의 諱만 避諱하고 증조 이하의 諱는 避諱하지 않는다는 것은 避諱제도의 본질상 당연한 규례라 할 수 있다.

‘夫人의 諱는 비록 군주의 면전이라도 신하가 諱하지 않는다. 부녀의 諱는 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여인의 諱를 避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부녀의 諱는 집안에서만 避諱하고 집 밖에서는 避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大功과 小功은 不諱한다.’ 大功은 사촌형제를 말하고, 小功은 육촌형제를 말한다. 이것은 避諱를 하는 친족범위에 대한 규례이다. 즉 부친 이외의 백숙부 등의 부모의 향렬에 있는 자식들은 각기 당자의 부모의 諱만 避諱하면 된다는 것이다. 避諱는 揮자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경을 표시 하는 것이므로 避諱하는 사람이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문자의 사용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과공으로 야기될 폐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규례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避諱에 대한 규례는 의례의 실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칫 과공으로 야기될 허례허식으로 문자의 사용을 저해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특기할만한 규례는 ‘두 자 名은 1자만 諱한다.’는 조항이다. 이 1자 諱에 대한 수칙이 매우 엄중하게 지적된 기록이 『공양전·정공육년』 조에 있다.

季孫斯(계손사)와 仲孫忌(중손기)의 근래가 운 땅을 포위하였다. 仲孫忌는 노국의 仲孫何忌(중손하기)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仲孫何忌를 仲孫忌라 하였는가? 그것은 두 자 名을 비난한 것이다. 두 자 名은 禮가 아니다.<sup>188)</sup>

하였고, 그 주석에

이것은 避諱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한 글자로 이름을 짓는 것은 부르기는 어렵게 하고 避諱는 쉽게 하려는 것이다. 避諱를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므로 한 글자로 이름을 짓는 것은 아랫사람이 避諱를 함에 곤란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춘추』에 定公(정공)과 哀公(애공)의 시대를 일러 ‘그 치세가 어둡고 혼란하였으나 그 실정을 숨기고 왕도정치가 안정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태평성세라 꾸며대었다.’ 하였는데 다른 곳에는 이러한 비난이 없다. 유독 定公과 哀公의 시대만을 이렇게 비난한 것은 두 자로 이름을 지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목하여 비난한 것이다. 두 자로 이름을 짓는 것은 禮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춘추의 필법이다.<sup>189)</sup>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작명은 避諱制度를 근간으로 1자 名이 작명의 준칙으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避諱制度에 의한 작명관행은 周代 이후 漢代에도 이어졌는데 西漢의 황제 15帝 가운데 1자 名이 12帝이고 두 자 名이었다가 즉위 후 1자 名으로 개명한 황제가 2帝이고 제위 중에도 두 자 名을 쓴 황제는 효소황제 유불능 뿐이다. 後漢의 황제는 모두 1자 名이다. 특히 왕망은 『공양전·정공록년』 조의 ‘두 자 名은 禮가 아니다.’는 문구를 들어 詔勅(조칙)으로 1자 名을 쓰도록 하였다. 이렇게 周代에서 後漢까지는 1자 名이 작명의 준칙이 되고 있었다.

#### 4) 성명장 분석 요약

성명장은 3자 1구의 형태로 單姓(단성)은 두 자 名으로 3자구를 만들고 複姓(복성)은 1자 名으로 3자구를 구성하였다. 單姓인 경우 두 자 名은 본서가 저작될 당시의 작명관행을 추정해 볼 때 현실적이지 않는 작명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사마상여나 동중서 같이 두 자 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1자 名을 사용했음이 西漢 15帝의 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다만 名은 1자 名으로 지어도 字는 반드시

188) 公羊子 撰, 『春秋公羊傳』: 「季孫斯仲孫忌帥師圍邶,此仲孫何忌也,曷爲謂之仲孫忌,譏二名二名非禮也。」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text.org>

189) 漢何休 注 / 唐徐彥 疏, 『春秋公羊傳注疏』: 「爲其難諱也. 一字爲名令難言而易諱,所以長臣子之敬不逼下也. 春秋定哀之間文致大平欲見王者治定. 無所複爲譏唯有二名故譏之此春秋之製也。」上海古籍出版社, 2014. 514쪽.

시 두 자로 지었다. 그리고 호칭은 字를 붙였기 때문에 두 字 이름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명장의 3자구는 보통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의 형태를 빌어 글자를 익힘은 물론 두 자를 조합하여 작성하는 문법단위의 문장학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이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문장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단어는 有意味(유의미)의 최소단위이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有意味를 지니는 단어가 된다. 다만 고대한문에서 擬聲語(의성어)와 擬態語(의태어)가 두 자로 표현되어 두 자가 形態素(형태소)를 이루는 것들이 있다. 한어는 고립어로 語順(어순)에 의해 문장성분이 규정된다. 따라서 한어 문장에서의 단어의 품사는 문장에서 그 단어가 놓인 위치에 따라 규정된다. 품사는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즉 한어의 단어는 정해진 품사가 없이 어순에 의한 문장성분이 부여되고 부여된 문장성분이 그 단어의 품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어는 어떤 단어이든지 두 개 이상의 조합으로 문법적 규격을 갖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명장의 두 자 이름은 대표적인 詞造(사조)<sup>190</sup>라 할 수 있다. 이름은 지어주는 부모의 염원을 나타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염원을 나타내는 문장은 ‘무엇이 되기를’ 또는 ‘무엇을 하였으면’의 내용을 가진다. 이를 문장구조로 보면 전자는 述補構造(술보구조)이고 後者는 述目構造(술목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자신이 주어로 ‘주어+술어+보어’ 또는 ‘주어+술어+빈어’라는 문장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명장의 두 자 이름은 문장구성의 實例(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명장은 3자구 134구 402자가 수록되었다. 姓은 單姓 130姓 複姓 4姓이고 名은 2자名 130名 1자名 4名이다. 성명장은 3자 1구의 형태로 單姓은 두 자 名으로 3자구를 만들고 複姓은 1자 名으로 3자구를 구성하였다.

姓은 태어난 곳을 연고로 하므로 地理(지리)와 관계가 있고 氏는 정치적 산물이므로 歷史(역사)와 관계가 있다. 즉 姓氏에는 地理와 歷史가 담겨 있다. 名은 짓는 것이므로 名에는 뜻과 이치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詞造機能(사조기능)이 들어 있다. 따라서 소학서인 『급취편』에서 성명장을 든 것은 성명장에 쓰인 글자를 익히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姓氏에 담겨있는 地理와 歷史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게 하고 이름은 문장이므로 詞造機能도 함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意圖(의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0) 詞造는 遣詞造句의 준말이다. 遣詞造句는 ‘낱말을 고르고 문장을 만들다’는 말이다.

다음은 이름의 사조적 구조를 분류한 것이다.

술목형: 延年 益壽 展世 辟兵 利親 護郡 逢時 廣國 承祿 賀喜 友倉 宗談 愛君 得賜  
輔輻 棄奴 仁他 破胡 尊偃 滅胡 守實 却敵 增紀

술보형: 步昌 漢強 君明 奉德 惠常 嬰齊 回慶 通光 溫舒 政陽 呂張 宜王 容調 勝客  
說長 毋妨 士梁 博好 建羌 貞夫 涉臧 勝箱 若芳 遺羽 則剛 賓上 回池 罷軍  
滿息 脩俠 游威 平定 倚蘇 自於 欣諧 無忌 并訢 諫朝 失餘

수식형: 千秋 萬歲 妙房 交便 猛虎 敢當 稚季 小兒 仲皇 終古 男弟 恭敬 可忘 細兒  
驕叔 次倩 段卿 幼功 初昌 偉房 轆軻 奇能 麗奢 焉于 莫如

주술형: 霸遂 寶陽 義渠 潘扈 扶疏

병렬형: 賢良 文章 財智 忠信 元始 富貴 孝讓 賞贛 歡欣 內黃 直衡 弘敞

의문형: 何傷

부정형: 不侵 未央

단자명: 橫 登 都 褒

인명: 子方 堯舜 禹湯 彭祖 楚莊 干將 安期 夷吾

자: 孺卿 仲郎 伯徐

동물명: 牛羊 鴛鴦 熊羆

지명: 魏唐 桂林

목명: 杜楊 李桑

성씨: 申屠

### 3. 제물장

제물장의 문장형식은 7언구로 매구 押韻(압운)된 韻文(운문)이다. 제물은 품종별로 분류하여 같은 종류의 사물을 모아서 열거하였다. 이러한 수록체계는 동일한 의미 부호를 갖는 部首(부수)의 집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部首는 같은 의미집단의 글자를 대표하는 머리글자이다. 部首는 六書(육서)에서 形聲字(형성자)의 意符(의부)가 된다. 따라서 제물장은 韻文과 部首와 六書가 갖추어진 장이 되고 있다.



## 1) 칠언구 운문

諸物章(제물장)의 문장형식은 7언구의 운문으로 매 구 압운되었다. 운문이란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말이다. 운율은 음악의 개념이다. 운문은 소리의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이 조화롭게 발생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가락을 갖는 문장을 이른다. 따라서 운문은 음악적 요소를 지닌 문장으로 글을 읽는 것이 곧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게 된다. 노래는 부르게 되면 일부러 노랫말을 외우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되어 멜로디만 들으면 가사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무의식적 기억력은 음악이 갖는 특성적 기능이다. 바로 이러한 음악적 기능이 운문에 있으므로 운문으로 된 문장은 암기가 쉽고 또 쉬이 잊어버리지도 않게 된다. 그러므로 암기가 필수적인 한자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문장형태라 할 수 있다.

7언구란 한 구가 7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구의 자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2언의 短句(단구)에서 7언의 長句(장구)로 변모되어 왔다. 『문심조룡·章句(장구)』 편에

『시경』에서 「雅(아)」와 「頌(송)」은 4언구가 正體(정체)이다. 그러나 「소아·기보」와 「주송·유청」에서 「祈父(기보)」와 「肇禋(조인)」은 2언구이다. 2언구는 黃帝시대에 비롯되었다. 『竹彈(죽탄)』의 노래가 그것이다. 3언구는 舜帝시대에 나왔다. 『元首(원수)』의 詩가 그것이다. 4언구는 夏代에 널리 유행하였다. 『洛汭(낙예)』의 노래가 그것이다. 5언구는 周代에 출현하였다. 『行露(행로)』의 章(장)이 그것이다. 6언과 7언은 『시경』과 『이소』에 섞여 나타나는데 6언구와 7언구의 句式(구식)은 西漢 때에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글자 수의 변화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短句에서 長句로 대체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191)</sup>

하였다. 漢代의 운문에서 7언구가 보이는 것은 『교사가』이다. 『교사가』는 郊祭(교제)를 지낼 때에 연주되는 제례악이다. 郊祀는 天子가 드리는 제사로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이다. 郊祭에 제례악이 연주된 것은 漢武帝가 정한 郊祭 의례에 의해서이다. 『한서·예악지』에

漢武帝가 郊祀의 祭禮를 정하고 감천에서 天祭(천제)를 올리고 분음에서 土祭(토제)

191) 劉勰 撰, 『文心雕龍』: 「詩頌大體以四言詩爲正宗唯祈父肇禋以二言爲句尋二言肇于黃世竹彈之謠是也三言興于虞時元首之詩是也四言廣于夏年洛汭之歌是也五言見于周代行露之章是也六言七言雜出詩騷兩體之篇成於西漢情數運周隨時代用矣。」 中州古籍, 2008. 297쪽.

를 행하였다. 이어 樂府(악부)를 설치하여 詩歌를 채집하고 밤에 읊게 하였는데 趙國(조국), 代國(대국), 秦國(진국), 楚國(초국)의 가요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연년을 협률도위로 삼아 사마상여를 비롯한 수십 인을 선발하여 詩賦(시부)를 짓게 하고 그 詩賦의 律呂(율려)를 논하여 八音(팔음)에 조화롭게 작곡하여 19장의 郊祀歌(교사가)를 만들었다.<sup>192)</sup>

하였다. 『郊祀歌』 19장은 3언구가 7장이고, 4언구가 8장이며, 나머지 4장은 3언구, 4언구, 5언구, 6언구, 7언구가 섞여 있다. 그 섞여 있는 총 구의 수가 96구이고, 그 중 3언이 13구, 4언이 33구, 5언이 7구, 6언이 9구, 7언이 34구이다. 순수하게 7언구로만 이루어진 장은 없고 3언구와 4언구와 7언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漢武帝때에 순전히 7언구로만 이루어진 운문은 『백량대시』이다. 『백량대시』는 漢武帝가 장안성 미양궁 북궐 내에 백량대를 짓고 그 준공식 연회에서 신하들과 지은 詩로 7언 26구의 聯句詩(연구시)이다. 聯句詩라는 것은 한사람이 1句를 지으면 다른 한 사람이 그 韻(운)을 이어 1句를 짓는 것을 말한다. 『백량대시』는 漢武帝가 첫 句를 짓고 이어 대신들이 차례로 한 句씩 지으면서 매 句 압운이 되었다. 후일 7언구로 매 구 압운이 되는 문체를 ‘백량체’라 부르게 되었다. 『해여총고』에

漢武帝가 백량대에서 연회를 베풀고 시부를 지었는데 사람마다 각 1句씩 짓고 매 句마다 압운이 되었다. 후대에 사람들이 매 句에 압운이 되는 문장을 백량체라 하였다.<sup>193)</sup>

라는 기록이 있다. 제물장이 7언에 매 구 압운이 되었으므로 이도 백량체라 할 수 있다. 칠언은 그 절주형식이 2-2-3조 또는 4-3조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2-2-3조는 2언 2언이 제시부가 되고 3언이 서술부 형식의 구조를 말한다. 4-3조는 4언이 제시부가 되고 3언이 서술부 형식의 구조이다.

## 2) 사물의 명칭과 육서

192) 班固 撰, 『漢書』: 「武帝定郊祀之禮祠太一於甘泉就乾位也祭后土於汾陰澤中方丘也乃立樂府采詩夜誦有趙代秦楚之謳以李延年为協律都尉多舉司馬相如等數十人造爲詩賦略論律呂以合八音之調作十九章之歌。」中華書局, 2007. 415쪽.

193) 趙翼 撰, 『陔餘叢考』: 「柏梁體漢武宴柏梁臺賦詩人各一句句句皆用韻後人遂以每句用韻者爲柏梁體。」中華書局, 2006. 489쪽.

사물이란 물질세계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를 말한다. 사물은 자연물과 제조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연물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모든 물체와 현상이고 제조물은 사람이 만든 물품이다. 자연물은 사람이 생존하는 터전이고 제조물은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는 물건이다. 사물에는 명칭이 붙여진다. 사물에 붙여지는 명칭은 사물의 형상과 용도 또는 현상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붙여진다. 사물에 명칭이 붙여지는 과정은 자연물과 제조물이 다르다. 자연물의 명칭은 그 형상이나 용도 및 현상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이게 되고 제조물은 자연자원을 재료로 하여 사람이 창조하는 물품이므로 자연의 재료와 연관되는 명칭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형상을 나타내는 명칭도 있다. 명칭은 특정대상을 지칭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은 사물에 따라 다르게 된다. 호칭을 시각화 하는 것이 글자이다. 그러므로 호칭이 다르면 글자도 다르게 된다. 호칭을 글자로 나타내려면 글자를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사물의 명칭을 표기하는 글자는 그 사물을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즉 제물장에 나열된 사물의 명칭은 모두 창제된 文字들이다. 사물의 명칭을 표기하는 글자로서 창제되지 않은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는 假借字(가차자)이다. 假借(가차)는 빌린다는 말이고 字는 글자이므로 假借字는 빌려 쓰는 글자라는 말이다. 한자는 만들어지고 사용되는데 엄격한 원리와 원칙이 있다. 이 원리와 원칙을 六書(육서)라고 한다. 한자는 六書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한자는 뜻글자로 어떤 뜻을 나타내고자 하면 그 뜻에 맞게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한자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된다. AD. 121년에 나온 최초의 한자 字書(자서)인 『설문해자』는 9,353자의 한자를 수록하였다. 543년에 나온 『옥편』은 16,917자의 한자를 수록하였다. 443년 만에 7,564자가 늘어났다. 1994년에 중화서국에서 『중화자해』를 발간하였는데 수록자가 85,000자이다. 이렇게 사회의 변천에 따라 한자의 숫자는 증가되어 왔다. 한자의 증가는 시대적 산물이다. 그러나 한자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원리는 六書의 틀 안에 있다. 한자는 六書라 하는 造字原理(조자원리)와 使用原理(사용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六書란 象形(상형), 指事(지사), 形聲(형성), 會意(회의), 轉注(전주), 假借(가차)를 이른다. 六書는 『주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주례·지관사도·보씨』에

保氏(보씨)는 왕의 과오를 諫(간)하고 國子(국자)들의 훈육을 관장한다. 國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六藝(육예)이다. 六藝의 一은 五禮(오례)이다. 六藝의 二는 六樂(육악)이다. 六藝의 三은 五射(오사)이다. 六藝의 四는 五馭(오어)이다. 六藝의 五는 六

書이다. 六藝의 六은 九數(구수)이다.<sup>194)</sup>

하였고, 그 주석에 鄭玄(정현)이 육서의 명칭을 열거하였다.

六書란 先鄭(선정)이 이르기를 象形(상형), 會意(회의), 轉注(전주), 處事(처사), 假借(가차), 諧聲(해성)이라 하였다.<sup>195)</sup>

六書에 대한 명칭은 『주례·지관사도·보씨』의 주석에서 정현에 의해 소개되었다. 先鄭이란 정사농 鄭衆(정중)을 말한다. 정현과 같은 경학가로 정현보다 1세기 앞선 학자이다. 경학가에서는 정사농 鄭衆을 先鄭이라 하고 鄭玄을 後鄭이라 부른다. 六書에 관하여는 『한서·예문지』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었다.

옛적에 8세가 되면 소학에 든다 하였다. 周代에 保氏라는 관직이 國子(황실의 왕자와 제후국의 세자)들을 훈육하는 것을 담당하여 六書를 가르쳤다. 六書란 象形(상형), 象事(상사), 象意(상의), 上聲(상성), 轉注(전주), 假借(가차)를 이르는 것으로 造字의 본이다.<sup>196)</sup>

하였다. 『전한기』에서는 유희가 六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무릇 書에는 六本이 있는데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 이다.<sup>197)</sup>

하였다. 위 六書에 관한 제전적의 기록은 연대별로 나열한 것이다. 『전한기』는 『한서』보다 후에 저작되었으나 六書에 대한 언급은 유희의 언급으로 『한서』보다 앞서 표방된 것이다. 六書의 명칭을 보면 『한서·예문지』와 『전한기』의 六書명칭은 동일하고, 『주례주소』의 주석에 쓰인 先鄭의 六書명칭은 다르다. 六書명칭 중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會意와 象意, 處事와 象事, 諧聲과 象聲 등이나 그 뜻은 같은 뜻이다. 六書에 관한 위 典籍의 기록은 六書의 명칭만 나와 있을 뿐 정작 六書가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 六書에 대한 定義가 『설문해자』에서 내려졌다. 許慎

194) 鄭玄 注 / 賈公彥 疏, 『周禮注疏』: 「保氏掌諫王惡而養國子以道乃教之六藝一曰五禮二曰六樂三曰五射四曰五馭五曰六書六曰九數。」 上海古籍出版社, 2005. 480쪽.

195) 鄭玄 注 / 賈公彥 疏, 『周禮注疏』: 「六書者先鄭云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諧聲。」 上海古籍出版社, 2005. 480쪽.

196) 班固, 『漢書』: 「古者八歲入小學故周官保氏掌養國子教之六書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造字之本也。」 中華書局, 2007. 415쪽.

197) 荀悅 撰, 『前漢紀』: 「凡書有六本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也。」 吉林出版集團, 2005. 228쪽.

은 『설문해자·서』에서 六書에 대한 定義를 내렸다.

周禮(주례)에 8세가 되면 소학에 들어갔다. 保氏가 國子들을 교육하였는데 먼저 六書를 가르쳤다. 六書의 첫째는 指事이다. 指事란 보아서 알 수 있고 살펴보면 그 뜻이 나타난다. 上(상)과 下(하)가 指事字이다. 六書의 두 번째는 象形이다. 象形이란 물체의 모양을 그려내는 것으로 그 몸체에 따라 들어간 곳은 들어간 대로 나온 곳은 나온 대로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다. 日(일)과 月(월)이 象形字이다. 六書의 세 번째는 形聲이다. 形聲이란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합한 合體字이다. 江(강)과 河(하)가 形聲字이다. 六書의 네 번째는 會意이다. 會意란 두 글자의 뜻을 취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合體字이다. 武(무)와 信(신)이 會意字이다. 六書의 다섯 번째는 轉注이다. 轉注란 부류별로 머리글자를 세워 그 머리글자와 같은 뜻으로 서로 통용하는 것이다. 考(고)와 老(노)가 轉注字이다. 六書의 여섯 번째는 假借이다. 假借란 본래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물을 나타낼 때 그 사물을 일컫는 聲音과 동일한 字音의 글자를 빌어 사용하는 것이다. 欸(경)과 長(장)이 假借字이다.<sup>198)</sup>

하였다. 六書에서 指事 象形 形聲 會意는 造字原理이고 轉注 假借는 使用原理이다. 한자는 字形 字音 字義 세 부분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글자가 성립되지 않는다. 字形 字音 字義의 설정은 원리가 있어야 하고 그 원리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한자의 원형은 象形字이다.

象形字는 물체의 형상을 그려낸 그림글자이다. 그림글자를 보면 그 글자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指事字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글자이다. 사람들의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관념에서 유추될 수 있는 개념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象形字는 실체를 나타내고 指事字는 개념을 나타낸다.

形聲字는 뜻을 나타내는 意符(의부)와音を 나타내는 聲符(성부)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된다.

會意字는 두 자이상의 개별 글자의 뜻을 합쳐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造字原理이다.

한자는 뜻글자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떤 뜻을 나타내고자 하면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엄정한 造字原理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198) 許慎 撰, 『설문해자』: 「周禮八歲入小學保氏教國子先以六書一曰指事指事者視而可識察而見意上下是也二曰象形象形者畫成其物隨體詰詘日月是也三曰形聲形聲者以事爲名取譬相成江河是也四曰會意會意者比類合誼以見指攝武信是也五曰轉注轉注者建類一首同意相受考老是也六曰假借假借者本無其事依聲託事令長是也。」天津古籍出版社, 2005. 2쪽.

있다고 하여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러한 造字(조자)의 제약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 활용방안이 轉注와 假借이다.

轉注는 互訓(호훈)되는 글자들을 통용하는 것이다. 考(고)와 老(노)는 互訓되는 글자이다. 『설문해자』에 ‘考’의 訓이 ‘老’이고<sup>199)</sup>, ‘老’의 訓이 ‘考’이다<sup>200)</sup>. 따라서 考자를 써야할 곳에 老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아·석고』는 轉注의 典型(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아·석고』에

初(초) 哉(재) 首(수) 基(기) 肇(조) 祖(조) 元(원) 胎(태) 俶(숙) 落(락) 權輿(권여)는 始(시)이다.<sup>201)</sup>

하였는데 『설문해자』의 轉注에 대한 定義가 바로 『이아·석고』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설문해자』의 轉注에 대한 定義가 ‘建類一首(건류일수)同意相受(동의상수)’이다. 『이아·석고』의 ‘初·哉·首·基·肇·祖·元·胎·俶·落·權輿’가 建類一首(건류일수)의 ‘類’이고, 始가 ‘一首’이다. ‘建’은 술어인 동사 ‘세우다’이다. 즉 ‘初·哉·首·基·肇·祖·元·胎·俶·落·權輿’라는 무리에 始라는 머리를 세웠다는 말이다. ‘同意相受(동의상수)’는 ‘初·哉·首·基·肇·祖·元·胎·俶·落·權輿’는 始의 뜻을 받아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始의 뜻이 쓰일 곳에 ‘初·哉·首·基·肇·祖·元·胎·俶·落·權輿’ 가운데 어느 글자라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假借는 音의 같은 글자를 빌려서 쓰는 것이다. 字義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字音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假借는 本無其字(본무기자: 본래 만들어지지 않은 글자)의 假借와 本有其字(본유기자: 본래 만들어져서 이미 있는 글자)의 假借로 나뉜다. 本無其字의 假借는 본래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내려는 바의 聲音(성음)과 동일한 字音의 글자를 대용하는 것이다. 本有其字의 假借는 글자가 만들어져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는 글자가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글자를 쓰지 않고 단지 字音만 동일한 글자를 쓴 것을 말한다. 이러한 本有其字의 假借를 通假(통가)라 한다. 通假의 발생에 대해서는 글을 쓰다가 갑자기 그 뜻의 글자가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에 字音이 같은 글자를 대용

199) 許愼 撰, 『설문해자』: 「考老也从老省丂聲苦浩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173쪽.

200) 許愼 撰, 『설문해자』: 「老考也七十曰老从人毛匕言須髮變白也凡老之屬皆从老盧皓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173쪽.

201) 郭璞 注解, 『爾雅』, 浙江古籍出版社, 2011. 3쪽.

한 것이라고 하는 소견이 있으나<sup>202)</sup> 필자의 견해로는 구술되는 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字音과 字義가 합당한 글자가 정확하게 쓰이지 못하고 字音만 같은 글자가 쓰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필자의 이와 같은 견해는 『서경』의 전서과정을 보면서 유추된 견해이다. 『서경』은 西漢 文帝때에 秦나라의 박사관 博士였던 伏生(복생)이 구십 여세에 구술하는 것을 기록하여 전수되었다.<sup>203)</sup>하였다. 漢代 이전의 諸子百家(제자백가)의 서적들은 秦나라의 挾書律(협서율)<sup>204)</sup>로 민간의 소장한 책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 挾書律은 漢나라가 세워지고도 계속 시행되다가 제2대 황제인 惠帝(혜제) 4년(BC.191년)에야 폐지되었다. 挾書律은 秦代와 漢代 초까지 23년간 시행되었으므로 漢代 초기 이전의 서적들은 사실상 기록물로는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挾書律이 폐지 된 이후에 나온 先秦시기의 서적들은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 사람들이 구술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008년 중화서국에서 발간한 『고문자통가사전』의 「범례」에서 通假字(통가자) 수록범위를 殷代(은대)에서 漢代 초까지의 서적에서 5,443자의 通假字 例證(예증)을 수록한다고 하였다.<sup>205)</sup> 이와 같은 通假字辭典(통가자사전) 편찬사례에서도 漢代 초기 이전의 서적은 구술에 의해 기록되면서 다수의 通假字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六書는 한자의 造字原理와 使用原理임으로 六書의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자의 識字(식자)와 漢文의 讀解(독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한자의 造字原理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자의 形·音·義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 한자의 使用原理를 이해하지 못하면 漢文의 정확한 讀解는 이루어질 수 없다. 漢文의 문장에 쓰인 글자가 通假字인 것을 모르고 그 글자의 本義대로 讀解가 이루어진다면 그 문장은 본래 나타내려한 의도와는 다르게 讀解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문장은 讀解되지 않느니만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이 큰 經書인 경우는 그 폐해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六書의 이해는 한자의 識字면에서만 아니라 漢文의 讀解면에서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 李敦柱 著, 『한자學總論』: 「본유기자의 가차란 언어를 기록할 때 문득 본자가 생각나지 아니하여 다른 동음의 자로써 이를 대체함으로써 생겨난 가차를 말한다.」 博英社, 2004. 500쪽.

203) 孔穎達 撰, 『尚書正義』: 「濟南伏生年過九十失其本經口以傳授裁二十餘篇以其上古之書謂之尚書.」 上海古籍出版社, 1990. 8쪽

204) 挾書律은 BC. 213년에 秦始皇이 시행한 민간인 藏書禁止法이다. 秦代에 農書와 醫書, 卜書를 제외한 일체의 典籍에 대하여 官府 이외의 민간의 所藏을 금지하였다.

205) 王輝 編著, 『古文字通假字典』: 「本書收錄殷商至漢初的甲骨文、金文、貨幣、璽印、陶文、石刻、盟書、帛書、竹木簡牘等古文字資料中的通假例證5443字」 中華書局, 2008. 17쪽.

### 3) 부류별 집록과 부수

제물장은 자연자원과 인간의 제조물 및 행해지는 의례와 민속신앙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회생활의 제반 사항들이 열거되었다. 그 내용을 분류해보면 비단, 마포, 의복, 제화, 규방, 농사, 작물, 원포, 인체, 질병, 의약, 철기, 죽기, 목기, 와기, 무기, 마차, 건물, 목재, 육축, 조류, 동물, 어류, 시장, 도량형, 음악, 연회, 요리, 민속, 장례, 귀화, 사회조직 등 32개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별 분류는 이를 수록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部首別(부수별) 집합을 이루게 되었다.

部首는 한자의 의미부호이다. 의미부호란 한자의 字形 字音 字義 3요소 중에서 字義의 요소를 말한다. 한자는 반드시 어느 의미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 의미집단의 모체로 세워진 것이 部首자이다. 部首자의 本義는 그 의미집단의 바탕적인 뜻이 된다. 현재의 部首의 개념은 한자사전에서 한자의 검색편의로 쓰는 한자의 편방이다. 편방은 한자의 좌측이나 우측에 놓여있는 해당 한자의 의미부호이다. 현재 사전의 部首는 반드시 글자의 좌측이나 우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이나 아래쪽 또는 둘레를 에워싸거나 에워싸고 있는 둘레 안쪽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편방은 部首가 놓이는 형태를 총칭하는 명칭이 되고 있다. 지금은 사전의 검색방법이 部首뿐만 아니라 글자의 총획수 글자의 字音 글자의 字形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部首에 대한 개념이다.

部首의 효시는 『설문해자』에서 허신이 창안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說이다. 『설문해자』의 수록체계는 9,353字를 540개의 의미갈래로 구분하고 각 글자를 그 의미에 따라 하나의 의미집단으로 묶어서 그 의미집단의 기본적 의미를 本義로 하는 글자를 그 의미집단의 머리글자로 삼은 것이 『설문해자』에서의 部首이다. 『설문해자』에서 部首자의 해설에는 반드시 ‘凡某之屬皆從某(범모지속개종모)’라는 문구가 있다. 部首자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部首자를 따른다는 말이다. 즉 部首자의 의미가 그 部首자에 속한 글자의 의미 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部首자를 세우고 한자를 배속시키면 배속된 한자의 뜻이 어떤 의미바탕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해져서 그 한자의 뜻을 명백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문해자』의 部首別 수록체계는 『급취편』 제물장의 수록체계를 응용한 것이다. 『설문해자』에서 部首의 개념이 창안되었다하는 것은 『설문해자』 서문의



分別部居不相雜廁也(분별부거부상잡측야).<sup>206)</sup>

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문구는 『급취편』 서문의 제3구인 ‘分別部居不雜廁(분별부거부잡측)’을 인용한 것이다. 이를 직역하면 ‘부류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는 말이다. 『급취편』 제물장의 수록체제는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열거되었기 때문에 의당히 같은 의미의 글자가 집단화 되었다. 의미가 같은 글자는 같은 의미부호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열거된 집단에는 동일한 의미부호가 들어 있게 된다. 이러한 『급취편』 제물장의 수록체제를 그대로 응용한 것이 『설문해자』의 部首別 수록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록체제는 현재까지 字典의 편집방식이 되고 있다.

#### 4) 제물장 분석 요약

제물장은 7언구 160구 1,120자가 수록되었다. 사유의 원본 『급취편』 1,953字的 57%로 『급취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으로 한자의 部首別 집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다. 제물장은 비단 10구 70자, 마포 2구 14자, 의복 4구 28자, 제화 5구 35자, 규방 13구 91자, 농사 5구 35자, 작물 6구 42자, 원포 4구 28자, 인체 10구 70자, 질병 8구 56자, 의약 10구 70자, 鐵器(철기) 5구 35자, 竹器(죽기) 3구 21자, 木器(목기) 5구 35자, 瓦器(와기) 2구 14자, 兵器(병기) 4구 28자, 마차 8구 56자, 건물 7구 49자, 목재 2구 14자, 육축 8구 56자, 鳥類(조류) 4구 28자, 동물 3구 21자, 어류 2구 14자, 市場(시장) 3구 21자, 度量衡(도량형) 2구 14자, 음악 3구 21자, 연회 3구 21자, 요리 6구 42자, 민속 4구 28자, 장례 3구 21자, 歸化(귀화) 3구 21자, 組織(조직) 3구 21자 등 160구 1,120자가 수록되었고 그 가운데 984자가 사물의 명칭이고 136자가 서술어이다. 部首는 師父(사부), 衣部(의부), 革部(혁부), 玉部(옥부), 田部(전부), 禾部(화부), 食部(식부), 艸部(초부), 頁部(혈부), 手部(수부), 月部(월부), 足部(족부), 疒部(녁부), 金部(금부), 竹部(죽부), 木部(목부), 瓦部(와부), 車部(차부), 广部(엄부), 土部(토부), 石部(석부), 馬部(마부), 羊部(양부), 豕部(시부), 牛部(우부), 鳥

206) 許愼 撰, 『설문해자』, 天津古籍出版社, 2005. 2쪽.

部(조부), 犬部(견부), 豸部(치부), 鹿部(록부), 魚部(어부), 貝部(패부), 人部(인부), 酉部(유부), 示部(시부) 등 34部이다. 제물장은 사물을 같은 종류로 분류하였으므로 글자의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부류별로 집성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부류별 집성은 훗날 『설문해자』의 부수별 편집의 모태가 되었다. 그래서 『설문해자』의 서문에서 『급취편』 서문의 문구인 ‘分別部居(분별부거)’를 원문 그대로 가져다 썼던 것이다. 部首는 한자의 의미부호이다. 지금은 자전의 검색자로 쓰이고 있으나 한자가 뜻글자이므로 部首는 한자의 의미를 가름하는 표지가 된다. 따라서 부수별 집록은 곧 한자의 의미별 집합을 말한다. 한자의 의미별 집합이 한자학습에 어떤 장점을 가지는가는 六書의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제물장의 部首別 집록이 六書의 이해를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部首別 집록과 六書의 이해를 제물장의 예시에서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衣(의)자는 象形字이다. 소매와 옷깃을 여민 모양을 象形하였다. 『설문해자』에서 衣는 윗옷이고 裳(상)은 아래옷이라고 해설하였으나 裳자는 形聲字로 衣자를 意符로 하고 常(상)자를 聲符로 하고 있다. 따라서 衣자가 쓰이고 난 후에 아래옷을 나타낼 필요에 의해서 造字된 것이다. 따라서 옷에 관한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裳자와 같이 衣자를 意符로 하여 造字되었다. 象形字와 形聲字의 생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象形字는 글자로서 처음 나타나는 그림글자이다. 衣는 象形字이다. 옷은 자연물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제조품이다. 사람이 만든 물건을 그림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설문해자』에서 象形字로 분류된 것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은 衣類(의류) 3종, 農器具類(농기구류) 7종, 什器類(잡기류) 11종, 祭器類(제기류) 10종, 建築物(건축물) 7종, 交通手段(교통수단) 3종, 兵器類(병기류) 6종 등 총47종에 이른다. 그런데 ‘신발’에 대한 象形字는 없다. ‘신발’에 대한 象形字가 없는 것은 象形字가 만들어질 당시 ‘신발’을 기록할만한 사유가 없었거나 ‘신발’의 모양이 定型化(정형화)된 것이 없어서 ‘신발’을 특정 지을 수 있는 형상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발’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글자는 履部(리부)에 속한 자와 革部(혁부)에 속한 자이다. 履(리)는 『역경』 제10괘의 명칭이다. 履의 象辭(단사)가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나 밟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 형통하다.”이다. 『역경』은 중국 최초의 文籍(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역경』에 쓰인 글자의 字義는 최소한 그 글자의 本義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履자의 本義는 ‘밟다’이다. 『시경』

에서도 履자가 여섯 번 쓰였는데 『국풍·규목』에는 履의 字義가 ‘녹봉’으로 쓰였고 『소아·소민』, 『소아·대동』, 『소아·백화』, 『대아·생민』, 『대아·행위』에서는 履의 字義가 모두 ‘밟다’의 뜻으로 쓰였다. 이로 미루어 履자가 ‘신발’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引伸義라 할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 履자의 字義를 ‘발이 의지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해설은 당시 履자가 신발의 뜻으로 引伸되어 쓰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形聲字는 意符와 聲符의 合體字이다. 形聲字의 구성에서 意符가 象形字인 革部의 경우와 形聲字이면서 사실상의 의미는 象形인 韋部(위부)의 경우는 形聲字의 구성에서 상형적인 측면이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 『설문해자』에서 革자는 象形字이다.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벗겨내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字義는 ‘털을 제거한 짐승의 가죽’이다. 革자는 털이 제거된 생가죽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이므로 革部에 속한 글자는 질기고 견고한 제품을 나타내는 글자들이다. 그 제품의 종류를 보면 신발류가 10종, 마구류가 30종, 甲冑(갑주)류가 10종, 기타제품이 12종이다. 한편 韋자는 『설문해자』에서 形聲字이다. 字義는 ‘서로 등을 지다’이다. 그러나 韋자가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서 부드럽게 만든 가죽이라는 ‘다름가죽’이라는 字義를 가지고 가죽옷을 타나내는 글자의 部首자가 되고 있다.

韋자의 ‘다름가죽’이라는 字義는 韋자가 象形字로서 나타내는 字義이다. 그렇다면 形聲字인 韋자가 어떻게 象形字가 되는가? 韋자가 象形字가 되는 것은 다름가죽을 만드는 공정에서 가죽이 놓이는 형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면 가죽이 안쪽으로 말리게 된다. 가죽을 평평하게 펴려면 가죽 안쪽의 반대쪽인 가죽이 겹면 쪽으로 가죽을 두 장씩 맞붙여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주어야 한다. 이 때 두 장씩 붙여놓은 가죽형태가 서로 등을 지고 있는 형상이 된다. 이렇게 다름가죽을 만드는 공정에서 나타나는 가죽의 형상이 韋자의 本義인 ‘등을 지다’와 같으므로 韋자를 빌어 다름가죽의 象形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韋자가 다름가죽을 意符로 하는 文字의 部首자로 쓰이고 있는 까닭이다. 形聲字가 象形字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물장에서 인체에 관한 것은 원문번호 226에서 235까지 7언구 10구로 모두 70자이다. 그 70자를 六書로 구분하면 象形字가 13자, 形聲字가 53자, 會意字가 4자이다. 이 구분은 『설문해자』의 해설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인체 구에는 六書가 모두 들어 있다. 인체 구에서 象形字는 眉(미), 目(목), 耳(이), 口(구), 舌(설), 牙(아), 爪

(조), 手(수), 心(심), 呂(려), 齊(제), 主(주), 爲(위) 등이다. 齊, 主, 爲 3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체기관의 모양을 그린 象形字이다. 齊는 본 구에서 ‘배꼽’을 일컫는 자이다. 그런데 齊는 배꼽을 그린 자가 아니라 벼이삭이 나란히 패어있는 모양을 그린 象形字이다. 그러므로 ‘배꼽’을 이르는 齊는 假借字 임을 알 수 있다. 훗날 배꼽을 나타내는 자로 臍(제)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설문해자』에는 臍(제)자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漢代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언제부터 만들어 쓰이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主는 불이 켜져 있는 등잔을 그린 象形字이고, 爲는 원숭이를 그린 象形字이다. 인체와는 상관이 없는 글자이므로 술어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形聲字는 육달月을 意符로 하는 자가 脣(순), 臂(비), 肘(주), 肱(신), 臑(유), 胸(흉), 脇(협), 腸(장), 腹(복), 肝(간), 肺(폐), 脾(비), 腎(신), 臏(비), 脊(척), 膂(려), 腰(요), 背(배), 股(고), 脚(각), 膝(슬), 臏(빈), 脛(경), 膊(전) 등으로 24자, 頁을 意符로 하는 자가 頭(두), 額(액), 頰(알), 頤(졸), 頰(협), 頤(이), 頸(경), 項(항) 등으로 8자, 手를 意符로 하는 자가 捲(권), 挽(완), 拇(무), 指(지) 등으로 4자, 足을 意符로 하는 자가 蹠(과), 跟(근), 踵(중) 등으로 3자, 口를 意符로 하는 자가 喉(후), 咽(인) 등으로 2자, 骨(골)을 意符로 하는 자가 髕(우), 髕(관) 등으로 2자, 단자가 鼻(비), 齒(치), 斷(은), 尻(고), 節(절), 藏(장), 柱(주), 近(근), 聚(취) 등 9자이다.

인체는 뼈에 살이 입혀지고 그 속에 臟器(장기)가 배치되어 있다. 뼈를 나타내는 자는 骨(골)이다. 骨자는 두개골을 형상화한 冎(과)와 살을 형상화한 肉(육)의 合體字인 會意字이다. 骨자에서 뼈를 나타내는 것은 冎이다. 동물의 뼈는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각 종류마다 형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뼈라고 그려서 알아 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실물의 그림인 象形字가 없는 것이다. 冎는 두개골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뼈로서 다른 동물의 뼈와 구별되는 뼈는 두개골이다. 사람의 두개골과 동물의 두개골은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사람의 뼈를 나타내는 자로 두개골의 象形字인 冎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본란에서는 月部(월부)의 月(월)을 肉달月로 지칭하였다. 肉달月이란 肉部(육부)와 月部(월부)의 部首자가 月 하나로 통합되어 쓰이고 있으므로 달月과의 구분 필요성에 따라 肉달月이라 하는 것이다.

肉의 篆文(전문)은 𠂔(肉)이다. 고깃덩이를 그린 象形字이다. 月의 金文(금문)은 𠂔(月)이다. 달이 이지러지는 형상이다. 그런데 月이 篆文(전문)에는 𠂔(月)로 되었다. 肉의 篆文인 𠂔(肉)과 月의 篆文인 𠂔(月)이 구별이 분명치 않다. 필자는 月의

甲骨文(갑골문) 字形의 𠄎(월), 金文의 𠄎(월), 篆文의 𠄎(월)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肉의 甲骨文 字形의 𠄎(육), 金文의 𠄎(육), 篆文의 𠄎(육)으로 변모되는 과정과 비교했을 때 月의 金文인 𠄎(월)과 篆文인 𠄎(월)로 변모된 字形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자는 字形에 字音과 字義가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字形에는 字音과 字義가 내포되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六書의 분류에서 象形字로 분류되는 한자는 字形의 형태가 더욱 실물의 형체에 근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月의 篆文 字形은 月의 상형적인 면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楷書(해서)에서는 肉과 月의 편방으로 月이 쓰이고 있으므로 肉을 강조하려할 때 𠄎이 肉달月이라는 첨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部首인 肉달月은 인체에서 살 즉 근육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자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체의 특정부위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部首자로 頁, 口, 手, 足이 있다. 頁은 머리 부분을 口는 입 부분을 手는 손 부분을 足은 발 부분을 나타낸다. 部首자로 쓰이는 頁은 會意字이다. 頁(首의 本字)과 儿(人)의 合體字이다. 갑골문의 𠄎(頁)은 머리를 장식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머리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口, 手, 足은 모두 象形字이다. 다만 『설문해자』에서 足을 口와 止(지)의 合體字인 會意字로 해설하였으나 서개는 『설문통석』에서 足자의 口는 다리를 그린 것이라 하고 足을 象形字로 보고 있다. 필자도 서개의 의견에 동의한다. 甲骨文의 𠄎(足)은 무릎에서 발까지를 그리고 있다. 金文 𠄎(足)에서 篆文 𠄎(足)으로 이어지는 字形의 변모가 口와 止의 合體字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口는 楷書(해서) 字形에서도 그림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手의 金文은 𠄎(手)로 다섯 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양을 그렸다. 會意字는 肩(견), 胃(위), 乳(유), 相(상) 등이다. 肩의 篆文은 𠄎(肩)이고 『설문해자』의 해설은 𠄎(肉)과 戶(호)의 合體字로 戶(戶)는 어깨의 그림이라고 하였다. 즉 肉과 그림이 합체이다. 會意字는 글자와 글자의 합체로 이루어지는 문자이다. 단순히 그림을 덧붙여서 會意字로 보는 것은 會意字의 定義에 어긋난다. 한자는 두루 몽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글자가 아니다. 造字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글자는 글자의 구실을 할 수 없다. 戶(호)와 月(육)의 합체로 보아 會意字라 한다면 어깨의 뜻은 없어지게 된다. 肩에서 어깨를 나타내는 것은 戶이다. 그러므로 戶에서 어깨의 뜻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肩자는 會意字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指事字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𠄎(肉)은 몸통을 나타내고 戶

(戶)는 어깨를 그린 것이므로 몸통의 위쪽에 어깨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문해자』에서 指事字로 지명된 글자는 上 下(上下) 두 자이다. —가로선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세로선을 그어서 위아래를 나타내고 있다. 肩자에서 月(肉)이 上下의 —가로선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胃(위)자도 肩과 같이 月(肉)과 밥통을 그린 田(田)을 합친 글자이다. 따라서 胃자도 指事字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乳(유)의 『설문해자』 해설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새가 알을 낳는 것을 乳라 하고,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을 產이라 한다. 乳자는 孚(부)와 乙(을)의 합체인 會意字이다. 乙은 제비를 말하는 것이다. 明堂月令(명당월령)에 ‘제비가 오는 날 사당에서 禘祭(매제)를 올려 자식을 접지해 줄 것을 빌었다.’ 그러므로 乳자가 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접지해 줄 것 빌 때는 반드시 제비가 오는 날을 택하여 제를 올렸는데 제비는 春分(춘분)에 와서 秋分(추분)에 떠나간다. 생산의 개시를 알리는 철새이다. 少昊(소호)때에 제비가 春分(춘분)과 秋分(추분)을 관장하는 관리였다.<sup>207)</sup>

하였다. 禘祭(매제)는 天子가 자식을 얻으려고 아이를 접지하는 신에게 드리는 祭祀이다. 春分이 드는 仲春(중춘)에 교외에서 드렸다. 仲春은 음력 2月の 異名(이명)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모두 3개월씩 배분되었다. 1月 2月 3月은 봄으로 1月은 孟春(맹춘), 2月은 仲春(중춘), 3月은 季春(계춘)이라 한다. 『설문해자』 해설은 乳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로 해설하였다. 아이를 낳으면 어미가 젖을 먹여 키운다. 따라서 乳자의 명사인 ‘유방’은 引伸義라 할 수 있다. 引伸義는 本義에서 유추되는 의미의 확장을 말한다. 象形字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누구나 한눈에 무엇을 그렸는지 분별할 수 있는 형상이 그려진다. 그 특정된 모양이 일반화 된 것이 아니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象形字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造字(조자)원리의 엄격성이다. 인체의 기관을 나타내는 글자에서 指事字는 肩 胃 2자이다. 會意字는 乳자 1자이다. 假借字는 齊 1자이다. 나머지 49자는 形聲字이다. 形聲字는 字음을 이용하여 通用(통용)으로 허다하게 사용된다. 通用은 六書에서 轉注(전주)이다. 轉注에 속하는 자는 대부분 形聲字이다. 따라서 인체 구에는 六書가 모두 들어 있어서 六書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병기종류는 모두 28자가 수록되었다. 28자를 六書로 분류하면 象形字가 矛(모), 盾(순), 刀

207) 許慎 撰, 『설문해자』: 「乳, 人及鳥生子曰乳. 獸曰產, 从孚从乚. 乚者, 玄鳥也. 明堂月令, 玄鳥至之日, 祠于高禘, 以請子. 故乳从乚. 請子必以乚至之日者, 乚, 春分來, 秋分去, 開生之候鳥, 帝少昊司分之官也.」天津古籍出版社, 2005. 246쪽.

(도), 弓(궁), 矢(시) 등 5자이며, 指事字가 刃(인) 1자, 形聲字가 鋌(연), 鑲(양), 鉤(구), 鋌(삽), 鉞(피), 鎔(용), 鐔(담), 鍔(후), 鎧(개), 鋒(모), 鐵(철), 錘(추), 槌(과), 杖(장), 梲(탈), 秘(비), 杙(수), 劒(검), 弩(로), 箭(전) 등 20자, 會意字가 兜(두), 戟(극) 등 2자이다. 象形, 指事, 形聲, 會意가 모두 들어 있어서 六書의 造字(조자)원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열하고 있다. 특히 刀部(도부)에 속한 자인 刀(도), 刃(인), 劒(검) 3자를 제시하여 象形字, 指事字, 形聲字의 造字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해자』에서 刀, 刃, 劒의 해설을 보면 刀는

병기이다. 상형이다. 刀에 속한 글자는 모두 刀의 뜻을 따른다.<sup>208)</sup>

하여 무기의 모양을 그려낸 象形字라 하였고, 刃은

刀의 날이다. 刀에 날이 섰음을 나타내고 있다. 刃에 속한 자는 모두 刃의 뜻을 따른다.<sup>209)</sup>

하여 刀에 丶(점)으로 날을 표시하고 있는 指事字라 하였으며, 劒은

사람들이 허리에 차는 무기이다. 刃이 意符이고 劒의 聲符이다.<sup>210)</sup>

하여 뜻과 소리를 합체하여 만든 形聲字라 하였다. 刀, 刃, 劒 세 글자는 모두 刀자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六書의 象形 指事 形聲의 造字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六書에서 轉注와 假借는 글자의 사용원리이다. 轉注를 통용자의 활용으로 보았을 때 제물장에서 통용자의 용례를 보이는 자로 爵(작)과 翳(예)가 예시되었다. 『설문해자』에서 爵의 해설은

爵(작)은 祭器이다. 모양이 공작새의 형상이다. 篆文인 𣎵(작)에서 𣎵(창)은 울창주가 따라져 있는 것이고, 𣎵(수)는 술잔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음주에 쓰이는 술잔이다. 술잔 모양이 공작새의 형상인 것은 그 울음소리가 節節足足(절제하고 절제할 것이니 그만하면 죽하고도 죽하도다)하여 그 소리를 취하기 위함이다. 象形字이다.<sup>211)</sup>

208) 許愼 撰, 『설문해자』: 「刀, 兵也. 象形. 凡刀之屬皆从刀. 都牢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91쪽.

209) 許愼 撰, 『설문해자』: 「刃, 刀堅也. 象刀有刃之形. 凡刃之屬皆从刃. 而振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93쪽.

210) 許愼 撰, 『설문해자』: 「劒, 人所帶兵也. 从刀劒聲. 居欠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93쪽.

하였고, 翳의 해설은

翳(예)는 깃으로 장식된 어가 위를 덮는 일산이다. 翳가 의부이고 毳(예)가 성부인 형성자이다.<sup>212)</sup>

하였다. 爵은 雀(작)과 통용되는 자이고, 翳(예)는 鷺(예)와 통용되는 자이다. 爵과 雀, 翳와 鷺는 字音이 同音인 것뿐만 아니라 字義에서도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爵은 술잔으로 술이 나오는 곳이 새의 부리 모양이다. 술잔의 모양이 공작새 모양이다. 술잔의 모양이 공작새 모양인 것은 공작새가 중용의 덕을 갖춘 새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翳는 임금이 타는 수레에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수레 위에 설치하는 큰 양산이다. 鷺는 『산해경』에서

북해의 해안에五色의 깃털을 가진 새가 있다. 날게 되면 그 날개가 한 고을을 덮어 가린다. 그래서 명칭이 翳鳥이다. 봉황과 같은 종류이다.<sup>213)</sup>

하여 神鳥(신조)로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翳의 ‘햇빛을 가리다’는 뜻은 神鳥인 鷺가 날개를 펼쳐 날면 한 고을이 鷺의 날개에 덮여 가린다는 뜻과 상통하고 있다. 爵과 雀, 翳와 鷺의 통용은 통용자의 용례가 어떠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통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假借는 本無其字(본무기자)의 假借와 本有其字(본유기자)의 假借가 있다. 本無其字의 假借는 만들어진 글자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다른 글자를 빌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假借이다. 그러나 本有其字의 假借는 글자가 있으므로 그 글자를 쓰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이다. 이러한 本有其字의 假借를 엄밀한 의미의 假借의 범주에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本有其字의 假借를 通假(통가)라 하였는데 什器(집기)의 수록자 가운데 闕(하)자가 예시되어 通假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闕에 대한 『설문해자』의 해설은

闕(하)는 크게 열려 있다는 뜻이다. 意符가 門(문)이고 聲符가 可(가)이다. 큰 잔을 또한 闕라한다. 반절은 화하절이다.<sup>214)</sup>

211) 許慎 撰, 『설문해자』: 「爵, 禮器也. 象爵之形, 中有鬯酒, 又持之也. 所以飲. 器象爵者, 取其鳴節節足足也. 闕, 古文爵, 象形. 即畧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106쪽.

212) 許慎 撰, 『설문해자』: 「翳, 華蓋也. 从羽毳聲. 於計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75쪽.

213) 郭璞 傳, 『山海經』: 「北海之內有五采之鳥. 飛蔽一鄉, 名曰翳鳥. 註, 鳳屬也.」 廣陵書社, 2003. 54쪽.

214)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大開也. 从門可聲. 大杯亦爲闕. 火下切」 上海古籍出版



하였고, 단옥재는 그 주석에서

큰 잔 또한 罍라한다는 것은 후대 사람이 덧붙여 놓은 것이다.<sup>215)</sup>

하였다. 罍의 反切(반절)이 火下切(화하절)이므로 字音を ‘하’로 발음하고 있다. 聲符가 ‘可(가)’이면 ‘가’로 발음되는 것이 온당하다. 反切 그대로 ‘하’라 발음 되려면 ‘河生聲(하생성: 하자에서 삼수변이 생략되었음)’이라 해설되어야 한다. 따라서 罍자의 字音은 ‘可(가)’로 발음되는 것이 마땅하다. 『강희자전』에서 『정자통』의 罍자 해설을 실었는데

罍의 字音은 罍(가)이다. 여섯 되들이의 큰 잔이다.<sup>216)</sup>

하였다. 罍(가)의 『설문해자』 해설은

옥잔.<sup>217)</sup>

으로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정자통』의 해설은 罍(하)를 罍(가)의 假借로 간주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도 『정자통』의 해설과 같은 입장이다. 罍자는 門과 可의 合體字이다. 門자나 可자에는 술잔의 字義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罍의 ‘큰 잔’이라는 字義는 罍의 假借義이다.

엄밀한 의미의 假借로는 수레덮개의 기둥인 俾倪(비예)를 통하여 假借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해자』에 ‘俦는 益이다’하였는데 益은 ‘풍요롭다’이다. 倪는 ‘俦이다’하였고 수록된 배열도 ‘俦’자 다음에 연이어 수록되었다. 즉 俦(비)와 倪(예)는 同義字로 『설문해자』 이전에 이미 複音詞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물장에서 俦倪는 ‘수레덮개의 기둥’을 이른다 하였다. 수레의 덮개는 비나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수레 위쪽에 설치하는 지붕 같은 것이다. 집에서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듯 수레덮개를 받치는 기둥을 俦倪라 한다 하였다. 덮개를 받치는 기둥이라면 木材(목재)이거나 鐵材(철재)이거나 할 것이다. 그렇다면 俦倪는 木部이거나

社, 2003. 1029쪽.

215)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大栝亦爲罍. 五字蓋後人所增.」上海古籍出版社, 2003. 1029쪽.

216) 許慎 撰, 『설문해자』: 「罍, 玉爵也. 夏曰琖, 殷曰罍, 周曰爵. 从叩从斗, 斗象形. 與爵同意. 或說罍受六斗. 古雅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300쪽.

217)

金部에 속한 글자여야 한다. 한자는 뜻글자이므로 반드시 글자 속에 뜻이 들어 있어야 한다. 俾와 倪의 字形에는 덮개의 기둥을 나타내는 요소가 없다. 俾는 人(인)과 卑(비)의 合體字이고 倪는 人과 兒(아)의 合體字이다. 모두 人部에 속하는 글자이다. 단옥재는 『설문해자』 俾의 주석에서

經傳(경전)에서 俾는 모두 ‘하여금’의 뜻으로 쓰였다. 다른 해석은 없다.<sup>218)</sup>

하였다. 따라서 수레덮개 기둥의 명칭인 ‘俾倪’는 假借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假借는 빌린다는 말로 字音を 빌려 쓴다는 것이다. 俾倪는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物品名으로 假借의 用例를 보여주고 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一字一義(일자일의)의 單音詞이다. 그러나 假借義와 引伸義가 쓰이면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 一字多義(일자다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자다의 현상은 어떤 경우 의미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적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複音詞이다. 複音詞는 일자다의 현상에서 하나의 독립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藥材(약재)는 모두 複音詞이다. 질병의 치료는 그 藥材가 지니고 있는 효능에 따라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맞게 처방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藥材에 하나의 명칭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한자의 일자다의 현상으로 오는 의미전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複音詞로 固有名詞(고유명사)를 만드는 방법이다. 즉 複音詞로 藥材마다 고유명사를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藥材는 複音詞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다. 제물장에서 약재는 원문번호 286부터 294까지 9구 63자가 수록되었는데 문구가 7언구의 운문이기 때문에 두 자로 된 약재 가운데 어느 하나는 하나의 글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 자로 된 약재를 제외하고 모두 두 자로 된 약재가 수록되었다. 두 자로 된 약재의 명칭을 보면 黃芩(황령) 茯苓(복령) 芫花(자호) 牡蒙(모몽) 甘草(감초) 藜蘆(여로) 烏喙(오훼) 附子(부자) 芫華(원화) 半夏(반하) 阜菝(조협) 橐吾(탁오) 芎藭(궁궁) 厚朴(후박) 栝樓(괄루) 款東(관동) 貝母(패모) 狼牙(낭아) 遠志(원지) 續斷(속단) 土瓜(토과) 亭歷(정력) 桔梗(길경) 龜骨(귀골) 雷矢(뢰시) 藿菌(관균) 兎廬(토로) 등이다. 약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이다. 한자는 뜻글자이므로 글자에 그 뜻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218)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經傳之俾皆訓使也.無異解.」 上海古籍出版社, 2003. 668쪽.

藥(약)자에는 병을 치료하는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藥자에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어떻게 들어있는 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 『설문해자』의 藥의 해설을 보도록 하자,

藥은 병을 치료하는 草이다. 艸를 意符로 樂을 聲符로 하는 形聲字이다.<sup>219)</sup>

하였다. 『설문해자』의 해설을 보면 藥자는 艸와 樂의 合體字이다. 艸(초)는 초본식물의 보통명사이다. 그러나 藥의 意符인 艸는 초본식물 가운데 약초라는 특정된 풀을 지칭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聲符는 樂이다. 聲符는 形聲字의 字音を 담당하는 것이니 樂은 단순히 字音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樂은 약초의 효능이 발휘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병을 고치려면 藥의 효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즉 藥자에서 효능이 발휘되는 의미를 樂의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樂에 대한 『설문해자』의 해설은

樂은 五聲(오성)과 八音(팔음)의 통칭이다. 큰북과 작은북을 북들에 달아 놓은 모양을 나타낸 象形字이다.<sup>220)</sup>

하였다. 五聲(오성)은 宮(궁), 商(상), 角(각), 徵(치), 羽(우)로 音階(음계)이고, 八音(팔음)은 土(토), 匏(포), 革(혁), 竹(죽), 絲(사), 石(석), 金(금), 木(목)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土는 埴(훈), 匏는 笙(생), 革은 鼓(고), 竹은 管(관), 絲는 絃(현), 石은 磬(경), 金은 鐘(종), 木은 柷(축)<sup>221)</sup>을 이른다. 五聲을 八音에 담아 연주하는 것이 樂이다. 『예기·악기』에

음을 질서에 따라 연주하는 것과 창과 방패를 들고 추는 武班(무반)의 춤이나, 깃으로 장식한 깃발을 들고 추는 文班(문반)의 춤이 추워질 때 연주되는 것을 樂이라 이른다.<sup>222)</sup>

하였다. 그러므로 聲은 소리이고, 音은 그 소리를 내는 악기이고, 樂은 악기를 연주

219) 許愼 撰, 『설문해자』: 「藥, 治病艸. 从艸樂聲. 以勺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24쪽.

220) 許愼 撰, 『설문해자』: 「樂, 五聲八音總名. 象鼓鞀. 木, 虞也. 玉角切」天津古籍出版社, 2005. 124쪽.

221) 應劭 撰, 『風俗通義』: 「音者, 土曰埴, 匏曰笙, 革曰鼓, 竹曰管, 絲曰弦, 石曰磬, 金曰鐘, 木曰柷」中華書局, 2010. 383쪽.

222)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比音而樂之, 及于戚羽旄, 謂之樂」上海古籍出版社, 2008. 1318쪽

하여 소리를 내어 듣게 하고 춤추게 하는 것이다. 즉 聲과 音의 본원적속성이 樂을 통하여 표출 되는 것이다. 樂자는 藥자의 聲符이다. 藥자를 통하여 形聲字의 聲符가 단순히 字音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藥자가 艸와 樂의 合體字로서 艸는 屬性을 나타내고 樂은 艸의 屬性을 발현시키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약리작용을 하는 艸의 효능을 樂으로 발현시켜 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다.

한약의 조제는 君臣佐使(군신좌사)의 논리를 적용하여 조제된다. 君臣佐使란 국가를 통치하는 관리제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君(군)은 통치의 주체이고, 臣(신)은 君을 보좌하고, 佐(좌)는 臣을 보좌하며, 使(사)는 佐를 보좌한다. 이러한 통치조직의 원리를 약제에 응용하여 君藥(군약), 臣藥(신약), 佐藥(좌약), 使藥(사약)으로 그 효능을 분류하여 藥을 조제하게 된다. 君藥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主藥(주약)이고, 臣藥은 君藥을 보필하여 主病(주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佐藥은 主病에 부수하여 생기는 다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고, 使藥은 君藥, 臣藥, 佐藥의 약제에서 발생되는 역작용을 해소시키고 약제가 환부에 도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약이다. 이렇듯 한약은 고유한 약효를 갖는 약재들을 효능에 따라 적절히 조제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약재라는 특수한 물품을 들어 일자 一義의 한자가 두 자 一義의 複音詞로 쓰이는 특수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약재의 명칭이 複音詞로 命名되는 것이 약재마다 독립적으로 고유명사화 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적인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複音詞도 있다.

市場(시장)의 구에서 그 용례가 예시되었다. 시장에 관한 구는 본고의 원문번호 153번에서 158번까지 7언구 6구 49자가 수록되었다. 그 가운데 貫貸(세대) 賣買(매매) 取受(취수) (付予)부여가 複音詞이다.

周代에 시장은 세 차례로 나누어 열렸는데 朝市(조시)와 大市(대시)와 夕市(석시)로 나누어 열렸다. 朝市는 오전시장으로 도매업자들이 물건을 팔려고 온 사람들로 부터 물건을 사들이는 시장이다. 이때는 다른 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大市는 오후에 열리는 시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는 장마당이다. 夕市는 저녁시장으로 도매업자들이 아침에 사들인 물건들을 이문을 붙여 시장에 내어 놓는 것이다. 이때는 도매업자들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였다.

貫貸(세대)에서 貫(세)는 빌리는 입장에 있는 것을 말하고, 貸(대)는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빌리는 사람이 있어야 빌려주는 사람도 있다. 賣買(매

매)에서 賣(매)는 파는 입장이고, 買(매)는 사는 입장이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있게 된다. 貫貸는 西漢시기에 複音詞로 쓰였고 賣買는 先秦시기의 複音詞이다. 複音詞가 어떠한 의미연계로 이루어지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取受(취수)와 (付予)부여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複音詞이다. 시장에서 상품의 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상인에게 지불하여 물건을 사고, 상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고객에게 내어준다. 즉 주고받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受(수)라하고, 주고받는 행위의 결과로 서로 얻게 되는 돈과 물건의 취득을 取(취)라 한다. 또한 고객이 돈을 주면 상인은 물건을 내어 준다. 이 과정에서 돈을 주는 것을 予(여)라하고, 돈을 받아서 물건을 내어주는 것을 付(부)라 한다. 受取(수취)와 予付(여부)는 시장에서 상품거래를 통하여 만들어진 複音詞이다. 複音詞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물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字族(자족)의 예시이다. 字族이란 形聲字에서 聲符가 같은 자는 기본적 의미가 동류의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다. 臘(랍)은 넓게 百神(백신)을 접대한다는 뜻에서 드리는 제사이다. 이 백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풍속통의』에서

夏(하)에서는 嘉平(가평)이라 하고, 殷(은)에서는 淸祀(청사)라 하고, 周에서는 大蜡(대사)라 하고, 秦漢(진한)에서 臘(랍)이라 한다.<sup>223)</sup>

라고 하였다. 국가에서 사계절에 제사를 행하였는데 봄의 제사를 祠(사)라하고, 여름의 제사를 禘(약)이라 하고, 가을의 제사를 嘗(상)이라 하고, 겨울의 제사를 烝(증)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해를 마치며 총결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臘(랍)이라 하는 것이다. 대개 제사의 희생으로는 국가에서 牧夫(목부)를 두어 목장에서 六畜을 길러 제사의 희생으로 썼다. 그러나 臘祭(납제)에는 들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여 제사의 희생으로 썼다. 臘자는 肉을 意符로 獵(렵)을 聲符로 하는 形聲字로 ‘사냥한 고기’를 나타내는 자이다. 臘은 獵(렵)과 字族의 관계에 있는 자이다. 臘과 獵은 獵(렵)을 聲符로 하는 形聲字이다. 獵의 字義가 ‘사냥’이고, 臘의 字義가 ‘납제’이다. 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禽獸를 사냥하여 희생으로 쓰는 제사이므로 그래서 그 제사의 명칭이 臘이다. 臘月(납월)은 12월의 異稱이다. 臘祭는 冬至(동지) 후

223) 應劭 撰, 『風俗通義』: 「夏曰嘉平,殷曰淸祀,周曰大蜡,秦漢曰臘。」 中華書局, 2010. 526쪽.

세 번째 戌日(술일)에 거행한다. 이 날에 臘祭를 드리므로 이 날을 臘日(납일)이라 한다. 臘日은 12월 하순에 있게 된다. 12월을 臘月이라 하는 것도 이 臘祭 때문에 붙은 異稱이다. 字族을 이해할 수 있도록 例示되었다.

제물장은 사물의 명칭을 빌어 글자도 익히고 사물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물의 명칭을 학습자로 삼은 소학서는 『급취편』이 거의 유일하다.

## 4. 오관장

五官(오관)은 고대의 관제로 중국관제의 효시이다. 五官제도로부터 발전되어 성문법전인 『주례』가 나오게 되었다. 성문법전은 치국의 기반이며, 치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가 관제이다. 따라서 오관장은 五官의 기원과 관제의 정립 및 성문관제가 기술되었다.

### 1) 오관의 기원

국가의 성립요건은 국토, 국민, 주권이다. 국가성립의 삼요소 중 국토와 국민은 자연물로 스스로 형태를 갖추고 존재한다. 그러나 주권은 무형의 권리인식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인위적으로 형체를 만들어서 존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대내외적인 국가주권의 실체적 형태가 정부이다. 정부는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의 권한에는 책무가 동반된다. 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업무이다. 국가의 업무는 방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업무를 전문성으로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정부기관이 五官이다.

五官은 五行(오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五行은 지구의 원소로서 水, 火, 木, 金, 土를 이르며, 방위로서 東, 西, 南, 北, 中央을 이르고, 색상으로서 靑, 赤, 白, 黑, 黃을 이르며, 계절로서 春, 夏, 秋, 冬, 季間(계간)을 이른다. 五行은 고대중국사상의 基底(기저)이다.

五官은 모든 관직을 총괄하는 명칭이다. 五官에 관한 先秦(선진)문헌의 기록은 『좌전』, 『국어』, 『상군서』, 『예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좌전』에서는 「소공십칠년」 조와 「소공이십구년」 조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에 의하면 五官이 五行의 개념 위에서 조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공십칠년」 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黃帝(황제)는 官名에 雲(운)자를 썼다. 炎帝(염제)는 官名에 火(화)자를 썼다. 共工(공공)은 官名에 水(수)자를 썼다. 大皞(대호)는 官名에 龍(룡)자를 썼다. 少皞(소호)는 官名에 五鳥(오조) 五鳩(오구) 五雉(오치)를 써서 새의 이름으로 官名을 삼았다.<sup>224)</sup>

黃帝는 官名에 雲(운)자를 썼다. 春官(춘관)을 靑雲(청운)이라 하고, 夏官(하관)을 緡雲(진운)이라 하고, 秋官(추관)을 白雲(백운)이라 하고, 冬官(동관)을 黑雲(흑운)이라 하고, 中官(중관)을 黃雲(황운)이라 하였다. 이것은 五行의 색상을 사용한 官名이다.

炎帝는 官名에 火(화)자를 썼다. 春官(춘관)을 大火(대화)라 하고, 夏官(하관)을 鶉火(순화)라 하고, 秋官(추관)을 西火(서화)라 하고, 冬官(동관)을 北火(북화)라 하고, 中官(중관)을 中火(중화)라 하였다. 이것은 五行의 방위를 사용한 官名이다. 大火는 28수의 卯方(묘방)으로 正東(정동)을 가리킨다. 鶉火는 12次の 별자리로 正南(정남)을 가리킨다. 西와 北은 방위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共工은 官名에 水(수)자를 썼다. 春官(춘관)을 東水(동수)라 하고, 夏官(하관)을 南水(남수)라 하고, 秋官(추관)을 西水(서수)라 하고, 冬官(동관)을 北水(북수)라 하고, 中官(중관)을 中水(중수)라 하였다. 이것 또한 五行의 방위를 사용한 官名이다.

大皞는 官名에 龍(룡)자를 썼다. 春官(춘관)을 靑龍(청룡)이라 하고, 夏官(하관)을 赤龍(적룡)이라 하고, 秋官(추관)을 白龍(백룡)이라 하고, 冬官(동관)을 黑龍(흑룡)이라 하고, 中官(중관)을 黃龍(황룡)이라 하였다. 이것 역시 五行의 색상을 사용한 官名이다.

少皞는 官名에 五鳥 五鳩 五雉를 써서 새의 이름으로 官名을 삼았다.

五鳥는 曆正(역정)<sup>225)</sup>을 鳳鳥氏(봉조씨)라 하였고, 春分과 秋分을 관장하는 官職을 玄鳥氏(현조씨)라 하였고, 夏至와 冬至를 관장하는 官職을 白鳥氏(백조씨)라 하였고, 立春에서立夏까지를 관장하는 官職을 靑鳥氏(청조씨)라 하였고, 立秋에서 立冬까지를 관장하는 官職을 丹鳥氏(단조씨)라 하였다. 이것이 五鳥이다.

224) 劉利 譯注, 『左傳』: 「昔者黃帝氏以雲紀,故爲雲師而雲名,炎帝氏以火紀,故爲火師而火名,共工氏以水紀,故爲水師而水名,大皞氏以龍紀,故爲龍師而龍名,我高祖少皞摯之立也,鳳鳥適至,故紀於鳥,爲鳥師而鳥名。」 中華書局, 2007. 216쪽.

225) 曆正(역정)은 년 월 일 시 세시 등을 관장하는 관직을 말한다.

五鳩는 司徒(사도)를 祝鳩氏(축구씨)라 하고, 司馬(사마)를 睢鳩氏(저구씨)라 하고, 司空(사공)을 鳩鳩氏(시구씨)라 하고, 司寇(사구)를 爽鳩氏(상구씨)라 하고, 司事(사사)<sup>226)</sup>를 鵠鳩氏(골구씨)라 하였다. 이것이 五鳩이다.

五雉는 木工(목공)을 鷦雉(준치)라 하고, 陶工(도공)을 鷦雉(치치)라 하고, 鐵工(철공)을 翟雉(적치)라 하고, 革工(혁공)을 鷦雉(희치)라 하고, 染色工(염색공)을 翟雉(휘치)라 하였다. 이것이 五雉이다.

「소공이십구년」 조의 기록에는

모든 사물에는 담당관이 있는데 이를 五行官이라 한다. 五行官은 木正, 火正, 金正, 水正, 土正이다. 木正을 句芒(구망)이라 하고, 火正을 祝融(축융)이라 하고, 金正을 蓐收(옥수)라 하고, 水正을 玄冥(현명)이라 하고, 土正을 后土(후토)라 하였다. 少皞氏(호소씨)에게 아들 4형제가 있었는데 맏이인 重(중)을 句芒으로 삼았고, 둘째인 該(해)를 蓐收로 삼았고, 셋째인 修(수)와 넷째인 熙(희)를 玄冥으로 삼았다. 그리고 顓頊氏(전옥씨)의 아들인 黎(려)를 祝融으로 삼았고, 龔工氏(공공씨)의 아들인 句龍(구룡)을 后土로 삼았다.<sup>227)</sup>

하였다. 木, 火, 金, 水, 土는 五行이고, 正은 官府(관부)의 長(장)을 이른다. 五官에 관한 기록을 더 살펴보면 『국어·초어』에

하늘과 땅과 神(신)과 백성과 萬物(만물)의 부류에 따른 관직을 두었는데 이를 五官이라 한다. 五官은 각기 맡은바 서열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였으므로 政務(정무)에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sup>228)</sup>

하였고, 『상군서·군신』에는

고대에 君臣(군신)上下가 없던 시기에는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이 없었다. 이에 聖人(성인)이 貴賤(귀천)을 구별하고 爵位(작위)제도를 수립하여 각 名號(명호)를 세워 君臣上下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땅이 광대하고 인구가 많고 만물이 증다하였으므로 五官의 관제로 政務를 분담하여 담당케 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sup>229)</sup>

226) 司事(사사)는 농업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227) 劉利 譯注, 『左傳』: 「五行之官,是謂五官,木正曰句芒,火正曰祝融,金正曰蓐收,水正曰玄冥,土正曰后土,少皞氏有四叔,曰重,曰該,曰修,曰熙,實能金,木及水,使重爲句芒,該爲蓐收,修及熙爲玄冥,世不失職,遂濟窮桑,此其三祀也,顓頊氏有子曰黎,爲祝融,共工氏有子曰句龍,爲后土。」 中華書局, 2007. 237쪽.

228) 左丘明 撰, 『國語』: 「於是乎有天地神民類物之官,是謂五官,各司其序,不相亂也。」 齊魯書社, 2005. 105쪽.

229) 石磊 譯注, 『商君書』: 「古者未有君臣上下之時,民亂而不治,是以聖人別貴賤,制爵位,立名號,以別君臣



하였으며, 『예기·곡례』에서는

天子の 五官은 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이며 五官의 長은 소관부처의 업무와 속관들을 관장한다. ‘司徒는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司馬는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司空은 극도와 민사를 담당한다. 司士는 관료의 爵祿(작록)과 직무감찰을 담당한다. 司寇는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하였고, 그 주석에 이 五官은 殷代(은대)의 五官이다.<sup>230)</sup>

하였다. 五官의 기록 중 『좌전』의 기록인 黃帝, 炎帝, 共工, 大皞, 少皞의 기록들은 모두 先史時代(선사시대)의 일이다. 『사기』가 正史로서 黃帝를 「五帝本紀(오제본기)」에서 다루고 있으나 사실상 「五帝本紀」는 전설적 기록이다. 실제 歷史時代(역사시대)는 殷代이다. 갑골문이 발견으로 殷代가 歷史時代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설문해자』에서 司(사)자의 해설을 보면

신하가 임금의 명에 의하여 四方에서 공무에 진력하는 것이다.<sup>231)</sup>

하였다. 司자는 后(후)자를 반대로 돌려놓은 글자이다. 『설문해자』의 后자 해설은

后는 임금이다.<sup>232)</sup>

하였다. 임금인 后를 향하여 마주대하고 있는 司로 신하를 나타내고 있다. 司는 동사인 경우는 ‘관장하다’이고, 명사인 경우는 ‘관부’ 또는 ‘관리’이다. 따라서 殷代의 五官인 司徒(사도), 司馬(사마), 司空(사공), 師事(사사), 司寇(사구)에 모두 司가 있는 것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어대사전』에서 司의 詞義(사의)는 ‘관리, 주관, 承擔(승담: 담당하다), 직책, 관서’등이다. 이에서 보듯이 司자는 관직이 생기면서 그 관직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하여 관장하는 부서 명칭에 司자를 사용한 殷代에 비로소 국가의 틀이 잡힌 王朝(왕조)가 수립되고 국가의 관리는 五官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上下之義, 地廣, 民衆, 萬物多, 故分五官而守之。」 中華書局, 2009. 190쪽.

230) 呂友仁 整理, 『禮記正義』: 「五官, 曰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 典司五衆, 司徒主教, 教其徒衆, 司馬主征伐, 馬是征伐所用, 司空主土居民, 司士主公卿以下版藉爵祿之等, 司寇主除賊寇。」 上海古籍出版社, 2008. 190쪽.

231) 許慎 撰, 『설문해자』: 「司, 臣司事於外者. 从反后. 凡司之屬皆从司. 息茲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186쪽.

232) 孔穎達 撰, 『毛詩正義』: 「后, 君也。」 上海古籍出版社, 1990. 596쪽.

## 2) 관제의 정립

周官(주관)은 周王朝(주왕조)의 관제를 이르는 말이며 『서경·주서』의 篇名(편명)이기도 하다. 『서경·주서』의 「周官」에 周王朝가 三公六卿(삼공육경)제의 관제를 채택하게 되는 동기와 그 직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을 보면

周成王이 殷의 잔존세력을 四方으로 흩어지게 한 후 淮夷(회이)를 멸하고 豊(풍)으로 귀환하여 周官을 작성하였다. 周王이 만방을 위무하기 위하여 侯甸(후전)을 순방하고 入朝(입조) 하지 않은 四方의 제후들을 정벌하여 만민을 安頓(안돈)케 하였다. 이에 六服(육복)의 제후들이 王의 訓導(훈도)를 받아 周왕실에 歸附(귀부)하였으므로 朝廷의 官制를 정비하게 되었다. 王이 誥(고)하기를 '지난날 大道(대도)가 행해졌을 때에는 變亂(변란)이 있기 전에 미리 治亂(치란)의 방도를 세웠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방비하여 위기가 닥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唐虞(당우)의 일을 상고해 보건데 唐虞의 官은 百官이었다. 朝廷에는 百揆(백규)와 四嶽(사악)을 두고, 邦國(방국)에는 州牧(주목)과 侯伯(후백)을 두어 政事(정사)를 펴니 百官이 다스려지고 萬國의 두루 평안하였다. 夏代와 商代에는 官이 두 배가 되었는데 역시 유능한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政事를 무난히 펼 수 있었다. 통찰력이 있는 王은 官을 세울 때 設官(설관)보다는 인재의 등용을 중시하였다. 지금 나 작은 자가 善政(선정)을 펴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고 있음은 聖世(성세)의 太平聖代(태평성대)를 앙모함이다. 이제 前代의 官制를 거울삼아 我朝(아조)의 官制를 制定(제정)코자 하는 도다.

太師(태사)와 太傅(태부)와 太保(태보)를 세워 三公으로 삼고 政策(정책)을 立案(입안)하고 邦國을 관리하며 陰陽(음양)을 조화롭게 살피도록 할 것이다. 善政은 벼슬을 두는데 있지 아니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함에 있음이다.

少師(소사)와 少傅와 少保(소보)를 세워 三孤(삼고)라 하고 三公에 이은 次官(차관)으로서 백성의 教化(교화)를 관장하고 天地를 공경히 받들며 나를 보필할 것이로다.

冢宰(총재)는 나라의 政事를 관장하고 百官을 통솔하고 四海(사해)를 관리할 것이로다.

司徒(사도)는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고 五典(오전)을 널리 펴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것이로다.

宗伯(종백)은 나라의 儀禮(의례)를 관장하고 神鬼(신귀)와 祖上의 祭典(제전)을 받들고 上下 貴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로다.

司馬(사마)는 나라의 軍政(군정)을 관장하고 六軍(육군)을 통솔하고 邦國을 평화롭게

할 것이로다.

司寇(사구)는 나라의 刑法(형법)을 관장하고 간특한 자들과 난폭한 자들을 형벌로 다스려 나라의 치안을 유지할 것이로다.

司空(사공)은 나라의 토지를 관장하고 백성들의 주거와 토지 소산물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로다.

이를 六卿(육경)이 분담하여 각 예하의 속관들을 통솔하고 九州의 장관들을 嚮導(창도)하여 億兆蒼生(억조창생)의 안녕과 洪福(홍복)을 누리게 할지로다.

6년에 五服(오복)이 한번 入朝하고 다음 6년은 포이 巡狩(순수)하여 四嶽에서 朝廷의 制度(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을 살피고 諸侯들은 그 封國(봉국)이 속한 方嶽(방악)에서 朝會(조회)에 入朝하여 公務(공무)를 결산하고 그 治績(치적)에 따라 賞罰(상벌)이 처결되리로다.<sup>233)</sup>

하였다. 三公六卿制의 大綱(대강)이 기술되었다. 이 『서경·주관』에 대한 주석적 성격의 문헌으로 『예기·왕제』가 있다. 『예기·왕제』는 정부의 조직과 직제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담아내고 있다. 법령으로 정부의 조직과 직제를 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王制」는 성문법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성문법전의 법령조항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현재에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 3) 성문법전 『주례』

『周禮』는 三禮의 하나로 儒家의 經典이다. 저작의 연대나 작가에 대한 구구한 異說들이 많은 저서이나 周代의 成文法典으로 法典史上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周王朝이래 역대왕조법전의 典範(전범)이 되어왔다. 현행 『周禮』의 成書과정과 傳書에 관한 내역이 『周禮注疏·序』에 언급되어있다.

『周禮』의 原書名은 『周官』이다. 秦始皇이 挾書律을 시행하였을 때 『周官』을 특

233) 蔡沈 注, 『書經』: 「成王既黜殷命滅淮夷還歸在豐作周官.惟周王撫萬邦巡侯甸四征弗庭綏厥兆民.六服群辟罔不承德歸於宗周董正治官.王曰若昔大猷制治於未亂保邦於未危曰唐虞稽古建官惟百內有百揆四嶽外有州牧侯伯庶政惟和萬國咸寧.夏商官倍亦克用乂.明王立政不惟其官惟其人.今予小子祇勤於德夙夜不逮仰惟前代時若訓迪厥官立.太師太傅太保茲惟三公論道經邦燮理陰陽官不必備惟其人.少師少傅少保曰三孤貳公弘化寅亮天地弼予一人.冢宰掌邦治統百官均四海.司徒掌邦教敷五典擾兆民.宗伯掌邦禮治神人和上下.司馬掌邦政統六師平邦國.司寇掌邦禁詰姦慝刑暴亂.司空掌邦土居四民時地利.六卿分職各率其屬以倡九牧阜成兆民.六年五服一朝又六年王乃時巡考制度於四嶽諸侯各朝於方嶽大明黜陟.」上海古籍出版社, 1987. 104쪽.

별히 싫어하여 全國에 있는 『周官』이 수거되어 한 권도 남김없이 불태워졌다. 『周官』을 秦始皇이 특별히 나쁘게 여긴 것은 法認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秦나라는 孝公이래 商鞅(상앙)의 變法(변법)을 사용하였다. 商鞅의 變法은 엄격한 法治主義였기 때문에 그 정치가 엄혹하였다. 『周官』의 仁義적인 法精神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秦始皇이 挾書律을 시행할 때에 특히 『周官』을 싫어하여 한 권도 남김없이 없애라 하였기 때문에 秦나라의 秘府(비부: 황궁도서관)에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이후 挾書律이 폐지된 漢惠帝 이후에도 『周官』은 나타나지 않았다가 漢武帝 때에 나타났으나 秘府에 소장된 채 전해지지 않았다. 挾書律이 폐지되어 산간의 암굴이나 집안의 벽속에 숨겨졌던 典籍들이 獻書(헌서)의 命에 따라 秘府에 헌납되었는데 다시 秘府에 所藏(소장)된 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졌던 전적들은 다시 세간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다. 漢成帝 때에 劉向과 그의 아들인 劉欽이 秘府의 藏書들을 校勘(교감)하고 書目別로 目錄을 정리하여 目錄書를 작성하였는데 劉向이 작성한 목록서가 『別錄(별록)』이고 이를 토대로 劉欽이 다시 종류별로 세분하여 작성한 目錄書가 『七略(칠략)』이다. 『한서·예문지』에

漢成帝 때에 秘府의 서적이 흩어져 없어진 것이 많았다. 謁者(알자)와 陳農(진농)을 시켜 천하에 남아 있는 서적들을 모아들이게 하여 光祿大夫 劉向에게 모아들이는 서적에서 經典과 諸子 및 詩賦를 교열하게 하였다. 劉向이 편목을 분류하고 그 總目과 篇目的 대강을 기술한 것을 상주하였으나 다 마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漢哀帝가 그 아들인 劉欽에게 부친인 劉向의 遺業을 이어 완성하도록 하였다. 劉欽이 秘府의 모든 典籍들을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七略』이라 이름하고 상주하였다. 『七略』은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術數略」, 「方技略」이다.

하였다. 이때 『周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견 당시 「冬官司空」篇은 이미 망실되어 없었다. 그래서 『考工記』로 「冬官司空」篇을 보충하였다. 그 때에 많은 儒學者들이 이를 배척하였으나, 劉欽이 書名을 『周禮』로 改稱하고 學館(학관)의 교재로 삼았다. 그러나 西漢 末에 이르러 천하가 병란에 휩싸이고 질역이 창궐하며 흉년으로 기근이 들어 劉欽의 제자들도 하나 둘 죽음을 당하였다. 그런 가운데 河南 緱氏(후씨) 사람인 杜子春(두자춘)이 간신히 살아남았다. 집이 南山에 있었는데 永平<sup>234)</sup>초에 나이가 九十이었다. 나이가 많았으나 典籍를 낭송하고 지식을 전할 수

234) 後漢 明帝의 연호 58년에서 75년까지 사용되었다.

는 있었다. 鄭衆(정중)과 賈逵(가규)가 杜子春에게 『周禮』를 전수받게 되었다. 鄭衆과 賈逵는 재덕을 겸비한 학자로 經書의 傳에 注解를 붙였는데 『周禮』에 대해서도 주해서를 내었다. 그런데 賈逵의 注解는 세간에서 통용되었으나 鄭衆의 注解는 그렇지 못하였다. 鄭衆과 賈逵의 注解를 겸용하면 결손된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당시 鄭衆의 注解가 經書의 실체에 가깝게 해설되었으나 그의 注解에

成王이 殷의 반란을 진압하고 虢으로 귀환하여 『周官』을 지었다. 이것이 『周禮』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鄭衆의 注解는 통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賈逵 또한 六鄉大夫에 대한 注解에서 六鄉大夫는 天官冢宰 예하의 六遂와 15만 가구와 千里의 땅을 관장한다고 하는 매우 잘못된 주해를 하였다. 六鄉과 六遂는 관할지역이 다르고 六鄉大夫는 地官司徒 예하이며 鄉의 가구 수는 75,000가구로 각 鄉마다 鄉大夫를 두었고 특히 千里의 땅은 京畿지역으로 天子가 관장하는 지역이다. 京畿지역 이외에는 千里의 땅을 관할하는 지역이 있을 수 없다. 千里의 땅은 오로지 天子만이 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지역이다. 그러므로 賈逵의 六鄉大夫 주해는 매우 잘못된 주해인 것이다. 이 외에도 잘못된 주해가 있으므로 鄭衆과 賈逵의 注解를 겸용하면 잘못 된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게 된다. 馬融(마융)도 『周禮』의 注解書を 내었는데 그 序에서

馬融이 60세에 武都郡의 郡守가 되었을 때에 작은 郡이었기 때문에 업무도 적었다. 그래서 평소 뜻한 바대로 『역경』, 『상서』, 『시경』, 『예기』의 傳을 저술하였으나 『周官』은 생각만 하고 있다가 66세가 되어 눈이 어둡고 몸이 지친 뒤에야 『周官』 傳을 마쳤다.

고 하였다. 鄭玄의 『주례주소·서』에

世祖이래 학문에 달통한 사람인 大中大夫 鄭少贛(정소공)과 그 아들인 大司農 鄭仲師(정중사)와 故議郎(고의랑) 衛次仲(위차중)과 侍中 賈君景伯(가군경백)과 南郡太守 馬季長(마계장) 등이 모두 『주례해고』를 지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가 두서너 사람의 글을 보았는데 史書에서 엉뚱한 말을 살펴서 올바르게 고쳐 놓으니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는 듯 뚜렷하였고, 闕文이 된 곳은 적정하게 보완하였으니 문장이 정연하여 거듭 분석하여도 本義에 부합하였다. 이야말로 널리 보고 깊게 연구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결여된 곳이 있고 같은 일이 서로 다르게 된 곳이 있으니 原文 文字의 聲紐(성뉴)와 訓詁를 고찰하고 숨겨지고 흩어져있는 것들을 모아 온전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二鄭(이정: 鄭興·鄭衆)은父子지간의 大儒로 典籍에 밝아 『周官』의 뜻을 대강 알 수 있게는 하였으나 문장이 古字로 작성되어 바르게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되었고 또한 자세히 풀어 쓸수록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장을 공연히 즐기고 간략히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장이 판별되고 그 家門이 이루어 놓은 학문적 업적이 많으며 세상에 끼친 교훈이 큼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周禮』는 文王과 武王이 천하에 군림하게 되면서 周公이 法制를 제정하여 周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였던 법전이다. 과연 『周禮』는 龍鳳(용봉)의 瑞氣(서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였다. 鄭玄은 『周禮』가 周公이 천하를 태평성세로 이끈 治績의 要諦(요체)라 하고 『周禮』는 大典으로 담기지 않은 條目이 없고 모든 大家의 學說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周禮』에 의하여 政治의 大義를 얻고 法制에 달통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서경·주관』에

唐虞가 옛일을 상고하여 百官을 세우고 百揆와 四嶽을 두었다.

하였다. 堯임금은 처음 百官의 長을 稷이라 하였다. 堯임금이 舜을 발탁하여 시험할 때에 舜을 稷에 임명하고 그 官名을 百揆(백규)라 하였다. 舜이 섭정에서 帝位에 오르게 되자 禹를 百揆에 임명 하였는데 그 때 百揆를 天官이라 하였다. 『상서대전』에

元祀에 四嶽과 八伯을 순수하였다.

하였고, 그 주석에

堯임금이 처음 羲氏(희씨)와 和氏에게 六卿을 명하여 春夏秋冬을 관장하게 하고 아울러 方嶽(방약)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四嶽이다. 이 四嶽이 세운 것이 伯이다. 이후 羲氏와 和氏가 죽으니 驩兜(환두)와 共工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때에 八伯을 두었다.

하였다. 元祀(원사)란 堯임금의 喪을 마치고 舜임금이 즉위한 元年을 말한다. 九州에 八伯이라 하는 것은 京畿지역 외 八州를 말하는 것이다. 鄭玄이 말하기를

京畿지역에는 伯을 두지 않았다. 鄉과 遂의 관리를 위하여 伯을 두었다.

하였다. 『예기·명당위』에

有虞氏는 官이 五十이었고, 夏后氏는 官이 一百이었으며, 殷代에는 二百이었고, 周代에는 三百이었다.

하였는데, 鄭玄은 그 주석에서

有虞氏의 官은 六十이고, 夏代는 百二十이고, 殷代는 二百四十이고, 周代는 三百六十大이다.

하였다. 高陽 이전의 官名은 개략적으로 만 나왔는데 帝嚳(제곡)의 官號도 高陽과 같이 개략적으로 기록되어서 자세한 官名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唐虞의 官名은 四嶽, 百揆, 六卿이라는 구체적인 官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경·요전』에 典樂, 納言의 官職이 있으나 나머지 官職은 官名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夏代의 官職은 百二十이다. 公, 卿, 大夫, 元士 등이 열거되었다. 殷代의 官職은 二百四十으로 官職이 구체적으로 열거 되어 있지는 않으나 『예기·곡례』에 六大, 五官, 六府, 六工 등이 기록되었고, 鄭衆과 鄭玄은 이를 殷代의 官制라 하였다. 그러나 屬官에 대해서는 역시 언급된 것이 없다. 『예기·혼의』에

천자는三公, 九卿, 二十七大夫, 八十一元士를 둔다.

하였다. 「昏儀(혼의)」에서三公 九卿이라 하는 것은 六卿에 三孤를 합쳐서 九卿이라 한 것이다.三公은 또한 六卿을 겸하였다. 그러므로 『서전』에

司徒公, 司馬公, 司空公이 각 二卿을 겸하였다.

한 것이다. 『서경·고명』에

太保를 冢宰로, 畢公(필공)을 司馬로, 毛公을 司空으로 삼고, 또한 芮伯(예백)을 司徒로 삼고, 彤伯(동백)을 宗伯으로 삼고, 衛侯(위후)를 司寇로 삼았다.

하였으니 周代에는 三公이 각 一卿을 兼職(겸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周代에는 夏代와 殷代를 거울삼았으므로 『周禮』의 官名은 堯舜을 거쳐 夏代와 殷代를 거치면서 周代에 이르러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周官』이 劉歆(유흠)에 의해 書名이 『周禮』로 改稱되어 三禮의 하나가 되었고 鄭玄이 注를 붙이면서 儒家의 經典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儒學思想이 중국王朝의 정치이념이 되면서 『周禮』의 官制는 中國歷代王朝 官制의 기본 틀이 되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王朝는 隋朝와 唐朝로 隋朝의 六部制는 『周禮』의 六官制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隋朝의 六部는 吏部(이부), 民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 등이다. 唐朝에 들어서도 六部制가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다만 唐太宗 李世民的 民자를 避諱하여 民部를 戶部(호부)로 改稱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즉 吏部の 職務는 天官冢宰의 職務와 같고, 民部는 地官司徒와 禮部는 春官宗伯과 兵部는 夏官司馬와 刑部는 秋官司寇와 工部는 冬官司空과 그 職務가 같다. 『周禮』의 六官制는 清朝가 멸망할 때까지 중국王朝의 官制가 되었다.

『周禮』의 體例는 綱領, 官職, 職位, 人員, 職務規定으로 되어있다. 官職은 天官, 地官, 春官, 夏官, 秋官, 冬官 등 六官으로 그 隸下에 所屬 官署(관서)를 두고 있다.

#### 4) 오관장 분석 요약

五官章은 7연구 57구와 4연구 14구로 모두 455자가 수록되었다. 固有名詞가 65자이고, 詞語가 390자이다. 詞語 390자는 單音詞 134자, 複音詞 128詞 256자이다. 複音詞 128詞 가운데 先秦시기의 複音詞가 70詞, 西漢시기의 複音詞 35詞, 後漢이후의 複音詞가 23詞이다. 五官章은 7연구나 4연구의 구성에 複音詞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複音詞는 관용어이거나 어떤 특정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문장이 관용어가 된 경우이다.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口語(구어)이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詞語를 文言文(문언문)에서 複音詞로 사용하는 것은 文言文에서 口語



를 빌어서 쓰는 것이 되고, 어떤 특정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文言文의 문구가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는 文言文의 문구가 口語化 된 것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의사소통은 전하려는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분명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달하려는 뜻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뜻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한마디 말에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디 말로 자세하게 풀이되어야 특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전달되는 것이 언어적 방법이다. 따라서 複音詞는 어떤 특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文言文은 여러 마디의 말로 자세히 풀이되어 표현되는 언어적 표현을 가능한 한마디로 간추려서 함축된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複音詞는 文言文의 취지에 어긋나는 언어적 표현이다. 複音詞는 일상적 대화에서 사용되는 관용어이다. 그러므로 한자교습에서 複音詞의 학습은 複音詞가 일상의 용어이므로 讀音이나 뜻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단지 글자만 익히는 학습이 된다. 五官章의 내용은 관직과 그 관직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서 직접 접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五官章의 文句는 글자나 文句에 어떤 微言大義(미언대의) 같은 숨은 뜻이 있거나 철학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그 뜻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官章은 한자교습에 임하는 학습자들에게 字音과 字義는 認知된 가운데서 字形만 익히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짜여진 장이 되고 있다.

荀子(순자)가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것이 반드시 벼슬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러나 벼슬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한다.’하였다. 벼슬을 하고자 배우는 자는 小學에서 『효경』과 『논어』를 배웠고 大學에서 『시경』과 『상서』와 『춘추』를 연구하였다. 『효경』은 孔子가 제자인 曾參(중삼)에게 說한 것이다. 『논어』는 孔子와 제자 및 여러 인사들과 나눈 대화록이다. 『시경』과 『상서』는 孔子가 編修(편수)한 것이다. 『춘추』는 孔子가 저술한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로 중국에서 經典으로 높임을 받는 고전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자가 밝혀져 있는 典籍이다. 南宋때에 『역경』, 『서경』, 『시경』, 『주례』, 『의례』, 『예기』,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양전』, 『논어』, 『효경』, 『이아』, 『맹자』 등을 十三經이라 하고 중국의 經典으로 삼았다.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양전』은 『춘추』의 傳(전: 주석서)이다. 중국의 經典을 十三經으로 정하면서 『춘추』의 傳을 한

권도 아니고 三傳 전부를 채택한 것은 『춘추』의 위상이 중국에서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춘추』의 위력은 책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漢武帝가 董仲舒(동중서)의 獻策(헌책)을 받아들여 儒學을 國學으로 삼았는데 이 일이 『춘추』에서 비롯된 것이다. 董仲舒는 西漢 景帝(경제) 때에 『춘추』 박사가 되었고 漢武帝 때에 漢나라의 정치이념을 黃老學(황노학)<sup>235)</sup>에서 儒學으로 바꾸어 놓은 인물이다. 漢武帝 建元(건원)<sup>236)</sup> 원년에 조칙으로 賢良方正科(현량방정과)<sup>237)</sup>를 실시하였다. 그 때에 董仲舒가 올린 對策이 『舉賢良對策(거현량대책)』이다. 그 對策에

春秋는 大一統(대일통)의 원리를 제창하였습니다. 大一統이란 천하 만물은 하나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천지간의 영원불변의 법칙이며 고금을 관통하는 이치입니다. 지금은 제자백가의 학설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안을 의결하려 할 때에도 학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통일된 결론을 찾을 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기승을 부려 합당하고 온전한 법령제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때그때 득세하는 학파에 따라 정령이 조변석개하는 불안정한 정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관리와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의 불안정은 정치이념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이념을 하나로 확립하여야 국정의 안정과 극태민안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朝廷은 黃老學을 중심으로 백가쟁명의 시대가 되어있으나 儒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儒學은 孔子의 학설을 추종하는 학파로 역경, 서경, 시경, 예경, 악경, 춘추를 학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횡행하는 학설들과는 다른 이론과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小臣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儒學을 國學으로 삼아 일체의 다른 학설은 폐기하여 국가의 학문을 통일시키고 太學을 설치하여 儒學을 장려하고 儒生들을 관리로 등용하고 법령과 제도를 儒學의 이념에 맞게 정비하면 朝廷의三公에서부터 郡國(군국)의 胥吏(서리)에 이르기 까지 국정이 일관되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정부의 시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정부의 시책을 이해하게 되면 국민들은 기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漢武帝는 董仲舒의 獻策을 받아들여 建元 5년(BC.136년)에 儒學을 國學으로

235) 黃老學(황노학)은 無爲를 주장하는 道家학파로 서한 초기에 국가의 지도이념이 되고 있었다. 황노학을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삼은 것은 진나라의 법치주의가 엄혹하여 백성들이 원성을 샀으므로 국가가 되도록 국민의 생활에 법으로 강제하는 일을 줄이고 되도록 방임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므로 서한 제6대 황제 경제 때까지 무위사상의 학파인 황노학을 신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黃老學에서 黃은 黃帝를 이르고 老는 老子를 이른다.

236) 建元(건원)은 漢武帝의 연호로 중국최초의 연호이다. 이후 모든 왕조가 연호를 사용하였다. 建元은 漢武帝가 황제로 등극한 원년인 BC.140년부터 漢武帝 5년인 BC.136년까지 사용되었다.

237) 賢良方正科(현량방정과)는 漢나라 때에 실시된 관리 등용 방법이다. 전국의 각 郡國으로부터 선량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이들에게 策問을 시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였다.

삼고 다른 학과의 학문은 모두 폐기하였다. 漢武帝 이후 淸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儒學思想은 중국역대왕조의 政治理念이 되었으며 사실상 현재까지도 동아시아 제민족의 사상적 기틀이 되고 있다.

『상서』는 본래 『書』라 하였다. 문서라는 말이다. 宋代에 와서 『서경』이라 하였는데 현재는 『상서』와 『서경』이 혼용되고 있다. 『상서』는 진위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고문서이다. 다만 漢武帝가 儒學을 國學으로 삼으면서 五經博士(오경박사)를 두었고 그 五經에 『상서』가 포함되었으므로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의 經典으로 존중되어 왔다. 『상서』는 隸書(예서)로 쓰인 책을 今文尙書(금문상서)라 하고 古文中으로 쓰인 책을 古文尙書(고문상서)라 하여 今古文論爭(금고문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태사공은 ‘『춘추』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였으므로 사람을 다스리는데 장점이 있고, 『상서』는 先王의 사적들을 기록하였으므로 政治를 하는데 장점이 있다’하였다.

『춘추』와 『상서』는 재판에서 명문화 된 법률이 없는 경우 법률을 대신하여 판결의 준거로 삼았다. 이를 經議決獄(경의결옥)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經議決獄은 漢武帝 때부터 唐나라까지 이어지다가 唐高宗 永徽3년(652년)에 唐律(당률)이 반포됨으로서 經議決獄은 종식되었다.

西漢 官制에서 品階(품계)의 호칭을 石이라 하였다. 石은 용량단위로 10斗를 말한다. 고대에서부터 관리의 봉급이 곡식으로 지급되었고 돈으로 지급되어도 곡식의 값을 환산하여 지급되었다. 관리가 받는 봉급이 品階에 따라 차등이 있었고 그 차등이 몇 石으로 나타났으므로 品階의 호칭이 곡식의 용량단위인 石(석)으로 불리게 되었다. 三公을 萬石이라 하였는데 萬石은 최고위의 品階이다. 萬石의 月俸(월봉)은 350斛(곡)의 곡식을 받았다. 萬石 이하의 品階는 中二千石으로부터 一百石까지이다. 中二千石의 月俸은 180斛이다. 眞二千石은 150斛이다. 二千石은 120斛이다. 比二千石은 100斛이다. 千石은 90斛, 比千石은 80斛, 八百石은 90斛, 比八百石은 80斛으로 祿俸이 千石, 比千石과 동일하다. 六百石은 70斛, 比六百石은 60斛, 四百石은 50斛, 比四百石은 45斛, 三百石은 40斛, 比三百石은 37斛, 二百石은 30斛, 比二百石은 27斛, 一百石은 16斛이다. 一百石 이하는 下級吏(하급리)로 品階에 들지 않는다. 下級吏로 斗食(두식)과 左史(좌사)가 있고 이들에게도 매월 봉급이 지급되었는데 斗食은 11斛이고, 左史는 8斛이다. 斛은 10斗로 石과 같은 용량단위이다. 또한 比二百石이

상은 品階에 따라 官印(관인)을 받았는데 도장과 도장을 매는 끈이 주어졌다. 이를 印綬(인수)라 하는데 萬石은 金印(금인)에 紫綬(자수)이고, 比二千石 以上은 銀印(은인)에 青綬(청수)이고, 比六百石 以上은 銅印(동인)에 黑綬(흑수)이고, 比二百石 以上은 銅印(동인)에 黃綬(황수)이다.

漢代의 爵位는 秦나라의 제도를 沿用(연용)하여 20등급이었다. 秦의 20등급 爵位는 商鞅이 變法으로 제도화 시켰다. 그 等級과 爵名은 一級 公士, 二級 上造, 三級 簪裹(잠노), 四級 不更(불경), 五級 大夫, 六級 官大夫, 七級 公大夫, 八級 公乘(공승), 九級 五大夫, 十級 左庶長(좌서장), 十一級 右庶長(우서장), 十二級 左更(좌경), 十三級 中更, 十四級 右更, 十五級 少上造, 十六級 大上造, 十七級 駟車庶長(사거서장), 十八級 大庶長(대서장), 十九級 關內侯(관내후), 二十級 徹侯(철후)이다. 漢代에는 徹侯의 徹자가 漢武帝 劉徹(유철)의 이름자여서 避諱하여 通侯(통후) 또는 列侯(열후)라 하였는데 이후 列侯는 諸侯를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徹侯가 되어 공이 큰 자는 縣(현)을 食邑으로 받았고 공이 작은 자는 鄉이나 亭(정)을 食邑으로 받았다. 食邑을 받은 자는 家臣을 두어 食邑의 백성들을 치리하게 하였다. 漢나라의 20等級 爵位제도는 秦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沿用하였으나 爵位를 수여하는 내용이 달랐다. 秦나라는 商鞅이 變法으로 당시 귀족에게만 수여되던 5等爵의 爵位를 20等級의 爵位로 等級을 조정하고 모든 백성에게 軍功(군공)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爵位를 내렸다. 다만 평민이 받을 수 있는 爵位는 八級인 公乘(공승)까지만 수여되었다. 漢나라는 高祖가 황제에 등극한 초기에 一級에서 四級까지는 모든 士卒에게 수여되었고, 五級에서 九級까지는 그 처우가 大夫와 비견되었는데 軍吏(군리)에게 수여되었다. 평민은 秦나라와 같이 八級인 公乘까지만 수여되었다. 다만 八級을 넘어서는 공적이 있으면 초과된 공적부분 만큼 가족이나 친족에게 수여되었다. 十級에서 十八級까지는 그 처우가 九卿에 비견되었는데 軍將(군장)들에게 수여되었다. 十九級과 二十級은 列侯에 封해졌다. 漢武帝때에 이르러 漢나라 朝廷은 對匈奴和親政策(대흉노화친정책)을 파기하고 匈奴征伐政策(흉노정벌정책)으로 國策을 전환시켰다. 漢武帝는 匈奴征伐(흉노정벌)을 위해 대대적인 군비확충에 들어갔다.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朝廷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賣爵(매작)에 들어갔다. 평민이 양곡 600석을 내면 上造의 爵位를 주었고, 4,000석을 군영까지 운송하면 大夫의 爵位를 주었으며, 12,000석을 운송해오면 大庶長의 爵位

를 수여하였다. 심지어 羊(양)을 바쳐서 관리가 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벌전쟁으로 군비가 계속 불어나게 되었고 이에 漢武帝는 賞官制(상관제)를 실시하여 武功爵(무공작) 11等級의 爵位를 신설하고 賣爵하였다. 等級別 爵位名은 一級(일급) 造士(조사), 二級(이급) 閑輿衛(한여위), 三級(삼급) 良士(량사), 四級(사급) 元戎士(원용사), 五級(오급) 官首(관수), 六級(육급) 秉鐸(병탁), 七級(칠급) 千夫(천부), 八級(팔급) 樂卿(악경), 九級(구급) 執戎(집융), 十級(십급) 左庶長(좌서장), 十一級 軍衛(군위) 등이다. 20등급제와 비교하여 武功爵 七級 千夫는 20등급의 9급인 大夫와 같은 처우를 받게 하였는데 大夫는 요역이 면제되었다. 이로부터 볼 때 武功爵 1級은 20등급의 2級에 해당하고 있다. 즉 20등급을 11등급으로 등급을 축소하여서 賣爵用 爵位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武功爵 1級의 가격은 17萬錢(만전)이었고 武功爵을 팔아 조성할 총액은 180萬金(만금)으로 책정되었다. 1金은 1萬錢이다. 武功爵 五級 官首를 사면 吏에 임명하였다. 一級 造士를 사면 刑量(형량)에서 2等を 減刑(감형)하였고, 현직의 郎官(낭관)이 사면 官品을 올려주었다. 이러한 賣爵은 爵位의 품위와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어 점차 爵位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고 사회적 위계질서와 기강만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漢代에 실시한 정책가운데서 특기할만한 정책으로 들 수 있는 것이 平準均輸(평준균수)정책이다. 元封元年(漢武帝 31년)에 桑弘羊(상홍양)은 治粟都尉(치속도위)가 되어 大農(대농)을 통솔하고 천하의 소금과 철을 관리하게 되었다. 桑弘羊은 각지에서 납부된 조세가 京都(경도)로 수송되면서 그 조세가 운반되는 운송비용에도 모자라는 것을 보고, 大農部丞(대농부승) 수십 명을 선발하여 郡國에 배치하고, 각 縣에는 均輸官(균수관)과 鹽鐵官(염철관)을 두도록 하고, 또한 각지의 賦稅(부세)는 그 지방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賦稅로 거둔 물품은 인근지역에서 유통시키게 하였다. 또한 京都에 平準官(평준관)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운송되어 오는 賦稅물품을 전담케 하고, 工官에서 수레와 운송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비케 하고 그 비용은 大農에서 지급하며, 大農은 모든 貨物(화물)을 관장하여 값이 오르는 물건은 내다 팔고 값이 내리는 물건은 사들여서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각지의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매점매석으로 물품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며 이윤을 극대화 하던 富商이나 大商人들이 더 이상 謀利輩(모리배)노릇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농업생산인구를 늘리게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이를 平準(평준)이라 하

였다. 漢武帝가 이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平準은 물가를 적정가격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이르는 것이고, 均輸(균수)는 賦稅(부세)를 京都와의 거리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고르게 징수한다는 것이다.

平準은 國家에서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다. 물가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물가는 오르고 반대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물가는 내려간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물가를 시장가격이라 하고 시장가격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시장기능이라 한다. 이러한 시장기능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상인들에 의해 조작된다. 즉 매점매석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대상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매점매석에 대응하여 정부가 물가가 오르면 국고에서 물품을 시장에 풀어 공급을 늘려 수요에 맞추어 가격을 내리게 하고, 반대로 물가가 내려 공급자에게 손해가 클 경우 물품을 사들여 시장에 공급을 줄여서 수요에 맞추어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정부의 시장개입인 平準이다.

均輸는 徵稅(징세)방법이다.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부과된 세금을 국고의 주무부처인 大農(대농)<sup>238</sup>으로 운송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京都에서 거리가 먼 지방의 국세는 납부되는 세금의 액수보다 京都로 운반되는 운송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의 납부 중 가장 어려운 것이 京都까지 국세를 운반하는 것이었다. 均輸는 이러한 징세방식을 폐지하고 각 지역의 국세를 그 지역의 특산물로 징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인근지역으로 수송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京都에서 먼 거리의 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운송비가 들지 않은 만큼의 값어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특산물은 다른 지방에서는 품귀하므로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어서 세금이 불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국세가 징수되어 오면 京都에 도착하였을 때는 공식적으로 부과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거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이 均輸이다. 平準과 均輸제도는 漢武帝의 對匈奴征伐政策(대흉노정벌정책)의 군비확장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된 정책이었다.

周代의 행정단위는 五家를 기본단위로 하였다. 五家の 호칭이 京畿(경기)지역과

238) 大農(대농)은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秦의 재정담당 관직인 治粟內史를 漢景帝 14년에 大農令으로 改稱하였고, 漢武帝 37년에 大司農으로 改稱하였다. 平準均輸제도가 시행된 것은 漢武帝 31년이므로 그때까지는 재정담당부처가 大農이었다.

野外(야외)지역이 다르게 호칭되었다. 京畿지역은 五家を 比(비)라 하였고 野外지역은 五家を 鄰(린)이라 하였다. 周代의 군대편제단위는 병사 5인을 伍라 하였다. 伍는 군대편제의 기본단위였다. 五家を 伍라한 것은 秦나라의 제도이다. 伍는 秦나라의 호적제도이다. 秦獻公(진헌공) 10년(BC. 375년)년에 처음 다섯 집을 단위로 하는 伍라는 호적법을 만들었다. 公孫鞅(공손양)은 秦나라를 다스릴 때에 連坐罪(연좌제)를 법제화하였는데 五戶의 戶籍制(호적제)를 十戶인 什의 戶籍制로 확대 개편하여 한집이 범죄를 하면 열 집을 연좌시켜 같이 죄를 받게 하였다. 民家에는 什과 伍가 있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고하게 하였다. 什은 열 집을 주관하고, 伍는 다섯 집을 주관하였다. 이 什과 伍의 제도는 漢代에도 沿用되었다. 秦漢代의 鄉은 행정의 기본단위이다. 鄉에는 里가 있고 里에는 里正과 伍長과 什長이 있었으나 里는 행정단위라기 보다는 취락구역단위이다. 里의 사무를 처리하는 里正은 임명되는 관리가 아니라 里民에 의해 선출되어서 鄉에서 인준하였다. 伍長과 什長 또한 연장자가 맡았다. 鄉의 관리부터 郡에서 임명되었는데 鄉에는 三老(삼로), 有秩(유질), 嗇夫(색부), 游徼(유요)가 있었다. 有秩은 郡에서 임명되었고 嗇夫와 游徼는 縣에서 임명되었다. 三老是 秩祿(질록)이 없는 명예직으로 지방의 원로에게 鄉의 敎化를 위촉하였다. 有秩은 鄉의 행정관으로 鄉의 행정을 관장하였다. 嗇夫는 訟事(송사)와 賦稅의 징수를 담당하였다. 嗇夫는 향민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따라 노역의 선후를 정하였고, 또한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알고 있으므로 부세도 가난한 집은 적게 징세하고 부잣집은 많이 징세하여 실정에 맞게 징세업무를 처리하였다. 游徼는 鄉내를 순찰하면서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縣은 사방 百里가 기준이 되었는데 거주민이 조밀하면 거주민이 희소한 지역으로 주민을 이주시켰다. 鄉과 亭(정)역시 그렇게 하였다. 鄉이 행정조직이라면 亭은 치안조직이었다. 鄉에는 十里마다 亭을 두었는데 亭에는 높은 누대를 세워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嗇夫가 亭을 관리하였는데 游徼도 嗇夫가 통할했다. 대체로 十里에 一亭이 있었다. 亭에는 亭長을 두었다. 十里에 一亭이 있었다는 것은 취락지역인 10개의 里에 1亭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리단위인 里를 말하는 것이다. 漢代에 1里는 300步이고, 1步는 6尺(약138cm)이었다. 따라서 十里면 3000步이고 18,000尺으로 미터로 환산하면 24.84km가 된다. 대략 25km의 거리마다 亭이 있어서 사방 10리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亭에는 망루와 旅舍(여사)가 있어 遊客(유객)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旅館(여관)과 驛站(역참)역할도 하였다. 漢高祖 劉邦(유방)이 泗水亭長(사수정장)이었다. 泗水亭은

지금의 강소성 패현성구의 사수정공원이다.

置對(치대)는 西漢시기의 複音詞이다. 置對의 詞義는 ‘심문을 받다’이다. 曹(조)는 소송사건의 審理(심리)를 담당한 기관이다. 『설문해자』의 해설을 보면

曹은 옥사를 심리하는 두 관서이다. 심문하는 장소가 조정의 政廳(정청)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棘(조)를 따르는 것이고, 법관이 구두로 심문하는 것이므로 曰(왈)을 따르는 것이다.<sup>239)</sup>

하였다. 曹의 篆文(전문)은 曹(조)이다. 棘(조)와 曰(왈)의 合體字이다. 棘(조)는 東(동)자가 나란히 붙어있는 자이다. 『설문해자』는 棘(조)가 政廳의 동편에 있었던 두 곳의 심문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置對曹(치대조)는 曹에서 審問을 받았다는 말이다. 대체로 曹은 사법기관을 이른다. 형사행정의 기초단위가 閭里(여리)이다. 閭里는 鄉에서 관할하고 鄉은 縣에서 관할한다. 형사사건이 閭里에서 발생하면 縣에 이르는 과정이 3단계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곳에서 지체되면 사건의 처결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우리들은 가급적 사건을 질질 끌어서 수감된 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려 든다. 뇌물을 바치면 옥중에서의 고충이 그만큼 덜어지게 된다. 수감상태가 길어지면 우리에게 바쳐지는 뇌물도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獄事의 처결이 미적거리고 지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獄事는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감옥에 수감된 자 중에는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한 사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선량한 사람이 무고를 당하여 원통하게 구금을 당한 자가 있을 수 있고,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도 있게 된다. 朋(붕)자는 『설문해자』에 등재되지 않은 한자이다. 다만 鳳(붕)자의 해설에서 朋자가 언급되었다. 그 해설에

朋(붕)은 古文의 鳳(붕)자이다. 봉새를 그린 象形字이다. 鳳이 날면 많은 새들이 鳳을 따라 나는데 만여 마리가 날아오른다. 그러므로 朋黨(붕당) 자자로 쓰이는 것이다.<sup>240)</sup>

하였다. 黨(당)자는 『설문해자』의 字義가

239) 許慎 撰, 『說文解字』: 「曹, 獄之兩曹也. 在廷東. 从棘, 治事者, 从曰. 昨牢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100쪽.

240) 許慎 撰, 『說文解字』: 「朋, 古文鳳. 象形. 鳳飛, 羣鳥從以萬數, 故以爲朋黨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79쪽.



선명하지 않다.<sup>241)</sup>

이다. 그러나 黨(당)자가 ‘선명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 예문은 찾을 수가 없다. 다만 複音詞인 朋黨(붕당)의 뜻이 ‘질이 좋지 못한 패거리’의 뜻으로 쓰일 때 朋黨(붕당)의 구성자로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서 ‘선명하지 않다’는 뜻을 찾아볼 수 있다. 朋黨은 先秦시기에 쓰인 複音詞이다. 패거리를 이루어 무엇인가를 꾸미는 무리들을 지칭한다. 朋黨을 만들고 꾸미는 일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인 경우 관아에서는 이들을 검거하여야 하는데 朋黨의 패거리들을 모두 알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 중에 하나를 검거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朋黨의 패거리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朋黨을 결성하여 꾸미는 짓이 불량하고 범법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정적을 탄압하기 위하여 없는 朋黨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후한서·한량렬전』에

한 사람을 고문하면 열 사람이 연루되고 열 사람을 고문하면 백 사람이 연루되었다.<sup>242)</sup>

라고 하였다. 이 예문은 後漢 明帝의 이복형인 楚王(초왕) 劉英(유영)이 역모를 꾀한다는 무고를 당해 獄事가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守侍御史(수시어사) 寒朗(한량)이 獄事を 담당하였는데 寒朗은 獄事に 연루된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明帝에게 상주하여 일천여명의 무고한 연루자를 구하였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楚獄(초옥)이라 하는데 楚에서 일어난 獄事라는 말이다. 또한 『한서·가추매로전』에

무릇 사람이란 즐거움이 있으면 살기를 생각하고 고통이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몽둥이질과 고문을 당하고 어디에도 구원이 손길이 없게 되면 수인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自暴自棄(자포자기)한 채 옥리가 하라는 대로 심문조서에 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법령을 적용하여 심문조서를 꾸미는 데는 숙련이 되어서 심문조서를 상신하면 설사 咎繇(구요)<sup>243)</sup>라 할지라도 그 조서를 보면 사형에 처해도 남을만하게 꾸며놓게 됩니다.<sup>244)</sup>

241) 許慎 撰, 『說文解字』: 「黨, 不鮮也. 从黑尚聲. 多朗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211쪽.

242) 范曄 撰, 李賢 注, 『後漢書』: 「考一連十, 十連百。」 中華書局, 1965. 2051쪽.

243) 咎繇(구요)는 舜임금 때 형법을 관장한 賢臣이다. 보통 臯陶(고요)로 많이 나온다. 구요의 字가 臯陶이다.

244) 班固 撰, 『漢書』: 「夫人情安則樂生, 痛則思死. 極楚之下, 何求而不得, 故囚人不勝痛, 則飾辭以視之, 吏治者利其然則指道以明之, 上奏畏卻, 則鍛練而周內之. 蓋奏當之成. 雖咎繇聽之. 猶以爲死有餘

하였다. 刑律(형률)에 幼弱(유약), 老旄(노모), 蠢愚(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幼弱은 8세 이하를 말하고, 老旄는 80세 이상을 말하며, 蠢愚는 태어날 때부터 천치인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나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나이를 기재할 때 피고에게 나이를 묻고 피고가 답한 나이를 기록하게 되는데 피고가 자신의 나이를 바르게 말하였는지 본적지의 호적부를 송부 받아 검증하였다.

盜(도)자는 次(침 흘릴 연)과 皿(그릇 명)의 合體字이다. 次(연)은 군침을 흘리는 것을 나타낸 자이고 皿(명)은 그릇을 그린 상형자이다. 盜는 그릇을 보고 군침을 흘리면서 그릇을 훔쳐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賊(적)자는 貝(조개 껍)와 戎(병기 용)이 合體字이다. 貝(조개 껍)는 재물을 나타내는 자이고 戎(병기 용)은 무기를 나타내는 자이다. 賊은 흉기를 써서 재화를 강탈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盜는 물건을 훔치기는 하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賊은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면서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다. 盜賊(도적)은 複音詞로 先秦시기부터 쓰였다. 도둑질하는 것을 도적이라 하였다. 도적질한 자는 笞刑(태형)으로 다스렸다. 西漢시기에 시행된 五刑(오형)은 死刑(사형), 宮刑(궁형), 劓刑(월형), 墨刑(묵형), 笞刑(태형)이다. 五刑 가운데 笞刑이 가장 가벼운 형벌이나 笞刑을 당한 사람들은 장독(杖毒)으로 죽거나 살아도 몸을 쓸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 이러한 笞刑을 개선하기 위하여 漢景帝 때에 笞刑을 당하여도 몸이 온전할 수 있도록 매질하는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箠(추령)이라 하였다. 笞刑을 받는 자는 사형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요행이 맞아서 죽지 않았더라도 불구가 되어 사람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笞刑의 刑律을 개정하여 笞(태)5백대는 3백대로, 笞(태)3백대는 2백대로 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笞刑을 당한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했다. 景帝 中六年에 다시 笞刑의 刑律을 개정하였다. 笞3백대는 2백대로 줄이고, 笞2백대는 1백대로 줄이고, 笞刑에 사용하는 채찍을 대나무로 만들되 길이를 5尺으로 하고 밑동의 넓이는 1寸이 되게 하고 그 끝자락은 半寸(반촌)이 되게 하며 대나무의 마디를 깎아서 밋밋하게 만들고 이제까지는 등을 쳤으나 이후로는 볼기를 치도록 하고 채찍을 치는 형리를 바꾸어 가며 채찍질 하던 것을 금지하여 형리 한 사람이 한 죄인을 담당하여 그 한 형리에게서 채찍질이 끝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笞刑을 받은 자들이 몸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辜.』 中華書局, 2007. 603쪽.

鬼薪(귀신)은 남자노역형의 명칭이다. 종묘에 땀나무와 솥을 만들어 공급한다. 형기는 3년이다.

白粲(백찬)은 여자노역형의 명칭이다. 종묘에서 제수용 쌀을 정미하는 노역을 담당한다. 형기는 3년이다.

鉗(검)은 목에 씌우는 칼이고, 鈇(체)는 발에 채우는 족쇄이다. 족쇄는 왼쪽 발에 채우는데 여섯斤 무게의 쇠몽치가 달려 있다.

髡(곤)은 두발을 깎는 형벌이다. 곤형은 네 가지가 있다. 가장 무거운 곤형은 목에 칼을 씌우고 머리를 삭발하고 5년간 유형을 시킨다. 다음은 4년간 삭발시킨다. 다음은 3년간 삭발시킨다. 다음은 2년간 삭발시킨다. 삭발을 당하면 집밖을 나다니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지 않은 것뿐이지 집안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과 같게 된다.

徒刑(도형)은 강제노역형이다. 起居(기거)는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것과 휴식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이르는 것이다. 노역을 감독하는 자는 籬(고)와 대나무통소를 붙여서 起居를 절도 있게 한다. 또한 矯正(교정)의 과정에서 술선하는 자는 벌을 면하게 하고 피를 부려 뒤쳐지는 자는 징벌한다. 지금의 재주를 부리는 광대들이 서로 기합소리를 지르면서 연기를 하는데 이것은 호각을 붙여서 박자를 맞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행동은 籬를 붙여서 起居를 절도 있게 하였던 것에서 유래 하는 것이다. 노역장에 유치된 죄인들은 教導(교도)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생활이 우선적으로 시행 되는 과업이다.

斬伐(참벌)은 先秦시기의 複音詞이다. 斬伐의 詞義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징벌하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참수하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를 베다’는 뜻이다. ‘나무를 베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徒刑을 이르는 것이다. 斬伐은 徒刑에서 산림에서 벌목을 하는 노역형을 말한다. 徒刑은 기한이 있는 강제노역형으로 6개월에서 5년까지의 형기가 있으며 일정한 장소로 유배시킨 후에 강제 노역을 시켰다. 徒刑은 노역을 시키는 刑이었으므로 인부를 사서 대신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다. 이때 내는 돈을 贖錢(속전)이라 하였는데 당시 贖錢은 한 달에 300錢을 납부하였다.

諷諫(풍간)은 남의 허물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諫(간)에는 五諫(오간)이 있다. 첫째는 正諫(정간)으로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여 간언하는 것이다. 둘째는 降諫(강간)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은 낮추며 겸손하게 간언하는 것이다. 셋째는 忠諫(충간)으로 충성심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간언하는 것이다. 넷째는 戇諫(당간)으로 우직하게

직설적으로 간언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諷諫(풍간)으로 풍자와 비유를 들어 간언하는 것이다. 무릇 간언하지 않으면 군주가 위태롭고 간언을 하면 자신이 위험해 지는 경우 군주를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태롭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위태로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간언을 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간언이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군주의 심사를 잘 헤아려 시의적절 하게 임기응변으로 군주에게 간언할 바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로는 감히 군주가 위태롭지 않고 아래로는 자신도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諷諫은 典籍을 통하여 비유를 들어 부드럽게 諫하여 듣는 자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孔子는 諷諫을 택할 것이라 하였다.

省察(성찰)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관리가 된 자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청렴하게 공직에 임해야 한다. 貪(탐)자는 今(금: 숨(머금을 함)의 생략형)과 貝(재물)의 合體字이다. 숨(함)은 다람쥐 같은 설치류들이 먹이를 양 볼이 불룩하도록 머금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貪은 설치류들이 양 볼이 불룩하도록 먹이를 물고 있는 것 같이 재물을 그러모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이다. 『설문해자』의 貪의 字義도

재물을 욕심내다.<sup>245)</sup>

이다. 者(자)는 代詞(대사)이다. 사람을 지칭한다. 者가 지칭하는 사람은 대체로 격이 낮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者의 訓音이 ‘놈 자’이다. 貪者(탐자)는 재물에 욕심을 내어 바르지 못하게 처신하는 자들을 말한다. 依(의)자는 人과 衣의 合體字이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입고 있는 옷만큼 가까이 있는 것은 없다. 『설문해자』의 本義도 ‘의지하여 가까이하다’이다. 溷(혼)자는 水(수)와 囟(환)의 合體字이다. 囟은 豕(돼지 시)와 冂(둘레 위)의 合體字이다. 돼지우리에 돼지가 들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돼지를 키우는 곳은 담이나 목책으로 둘레를 막은 우리이다. 돼지우리의 바닥은 돼지의 배설물과 흙이 섞여서 질퍽거린다. 이러한 불결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가 溷(혼)자이다. 依溷(의혼)은 돼지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질퍽거리는 돼지우리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관리가 재물을 탐하면 마치 돼지우리에 들어

245) 許慎 撰, 『說文解字』: 「貪, 欲物也. 从貝今聲. 他含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131쪽.

가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辱(욕)자의 『설문해자』 해설은

辱(욕)은 恥(치)이다. 寸(촌)이 辰(진) 아래에 놓여있다. 寸과 辰의 合體字이다. 농사 때를 놓치면 封疆(봉강)위에서 그 밭의 농부를 죽인다. 辰은 농사 때이다. 그러므로 房星(방성)을 辰이라 한다. 농사철이다.<sup>246)</sup>

하였다. 辱(욕)과 恥(치)는 互訓(호훈)<sup>247)</sup>관계이다. 『설문해자』의 恥의 字義가 “恥는 辱이다”이다. 辰(진)은 3월을 말하고 寸(촌)은 법을 말하는 것이다. 3월은 봄 농사를 하는 때이다. 3월을 辰月(진월)이라 한다. 3월 春分(춘분)이 되면 房星(방성)이 하늘에 뜬다. 房星은 봄의 별자리이다. 그래서 房星은 辰星(진성)으로도 불린다. 封疆(봉강)이란 밭의 경계에 흙을 쌓아 둔덕을 만든 것을 이른다. 상앙이 秦나라에서 變法을 시행하면서 농지정리를 하였는데 남북으로 농로를 개설하고 그 농로를 阡(천)이라 하였고 동서로 개설된 농로는 陌(맥)이라 하였다. 이 阡陌(천맥)을 따라 농지정리를 하였는데 變法 이전의 농지의 면적단위는 丁田制(정전제)하에서 사방 6尺이 1步이고 100步를 1畝라 하였다. 그런데 阡陌制(천맥제)에서는 사방 6尺이 1步인 것은 井田制와 같으나 240步를 1畝라 하였다. 1畝의 단위가 井田制의 두 배 반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封疆이란 240步를 1畝로 하는 농지 100畝의 둘레를 흙을 쌓아 둔덕을 만들고 그 둔덕을 밭의 경계로 삼았는데 이를 封疆(봉강)이라 한 것이다. 이 封疆(봉강)을 한 가구에 배당하고 그 소출에서 10분의 1을 농지세로 납부하게 하였다. 만약 해태하여 농사철을 놓쳐 한해의 농사를 그르치게 되면 伍什制의 連坐制가 있어서 한 가구가 잘못되면 五家 또는 十家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농사철을 실기한 농부는 자기 밭의 경계인 封疆에서 동네사람들에게 갖은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辱(욕)자에서 ‘수욕을 당하다’는 뜻은 寸에 있다. 寸이 법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농기를 실기하였을 때 법도로 일정한 처벌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앙이 變法을 시행하면서 농사와 누에치기를 게을리 하여 할 바를 다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자는 사찰하여 그 가족명부를 접수하고 그의 처자를 몰수하여 관노비로 삼았다. 여기서 辱자의 寸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할 바를 다하지 못하면 사람들로 부터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246) 許慎 撰, 『說文解字』: 「辱, 恥也. 从寸在辰下. 失耕時, 於封疆上戮之也. 辰者, 農之時也. 故房星爲辰, 田候也. 而蜀切」 天津古籍出版社, 2005. 311쪽.

247) 互訓(호훈)은 같은 뜻을 갖는 글자라는 말이다. 辱 恥也. 恥 辱也. 호훈은 서로 훈이 된다는 말이다. 훈은 글자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염철론·수한』에

周公이 섭정할 때에는 천하가 태평하였다. 나라에 전염병이 없었고 해마다 흉년이 없었다. 이때에는 비가 내려도 흙덩이를 부수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를 울리지 않았다. 열흘마다 비가 왔는데 그것도 밤에만 비가 내렸다.<sup>248)</sup>

하였다. 周公은 周武王의 親弟이다. 周武王이 周王朝를 세우고 3년 만에 서거하자 뒤를 이은 成王이 12세에 즉위하게 되었다. 成王이 나이가 어렸으므로 周公이 섭정이 되어 7년간 周王朝의 기틀을 다졌다. 周公은 聖賢으로 받들어지는 인물이다. 聖賢이 執政(집정)하면 하늘도 도움을 베푼다는 것을 ‘이때에는 비가 내려도 흙덩이를 부수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를 울리지 않았다. 열흘마다 비가 왔는데 그것도 밤에만 비가 내렸다.’는 문구로 잘 표현하고 있다. 風雨時節莫不滋榮(풍우시절 막불자영)은 직역하면 기후가 좋은 시절에는 모든 생명체의 생육과 번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好時節이 오려면 군주와 관리와 백성이 그 본연의 덕을 잃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五官章이 제시하는 학습의 大要이다.

## 5. 가필장

가필장은 『금취편』 원서에 後漢 사람에 의하여 덧붙여진 장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가필장은 본고의 저본인 안사고 注 왕응린 補注 『금취편』 第33章과 第34章을 이른다. 본고의 저본인 안사고 注 왕응린 補注 『금취편』은 通行本(통행본)으로도 불린다. 通行本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여러 판본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간행되어 보급되는 책을 이른다. 본래 안사고가 주석한 『금취편』은 32章으로 편집되었다. 通行本 『금취편』의 33章과 34章은 왕응린이 안사고가 주석한 『금취편』에 붙여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通行本 『금취편』의 33章과 34章에는 안사고의 주석이 없고 왕응린이 주석만 있다. 왕응린은 33章과 34章을 주석하면서 말미에 ‘齊

248) 桓寬撰, 『鹽鐵論』: 「周公載紀而天下太平,國無夭傷,歲無荒年.當此之時,雨不破塊,風不鳴條,旬而一雨,雨必以夜.」 華夏出版社, 2000. 205쪽.

國(제국)과 山陽(산양) 2章은 後漢 사람들이 붙여 놓은 것이다. 御書(어서)에는 있으나 안사고의 주석서에는 없다. 지금 그 뜻을 주석하여 篇末(편말)에 붙인다.’하여 본인이 첨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齊國은 33章의 첫머리이고, 山陽은 34章의 첫머리이다. 御書는 송태종의 초서본 『금취편』을 이른다. 왕응린이 가필장은 後漢 사람에 의해 加筆된 것이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왕국유도 後漢 사람이 加筆이라 하고 있다. 왕국유는 그의 『교송강본금취편』에서

宋太宗本은 원본 출처가 불분명하나 왕응린이 인용한 『태종실록』에 ‘端拱二年<sup>249</sup>에 조서를 내려 先賢의 목적을 구하도록 하였는데 중요서 『금취장』이 있어서 이를 헌상하였다. 그러나 많은 글자가 이지러져 있어서 황제께서 친히 草書一本을 書하여 이를 돌에 새겨 拓本하여 근신들에게 하사하시었다.’ 하였다. 이것은 宋太宗의 草書本이 중요본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宋太宗이 書한 것은 다만 이지러진 글자만 교정하였을 뿐이고 다른 부분을 손질한 것은 아니다. 宋太宗本은 皇象(황상)本에 비해 第7章, 第33章, 第34章 등 3章이 많다. 第33章과 第34章 2章은 王深寧(심녕은 왕응린의 호이다)이 後漢人의 쓴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검토해보면 ‘馬飲漳鄴及清河(마음장업금청하)’와 ‘遼東濱西上平岡(요동빈서상평강)’ 2句는 魏(위)무제가 冀州(기주)에서 오환을 격파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건안십이년의 일이다. 또한 ‘漢土興隆中國康(한토흥륭중국강)’은 魏의 曹丕(조비)가 後漢의 獻帝(헌제)로부터 양위 받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第33章과 第34章은 鍾繇書 『急就章』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되고 있으니 宋太宗本 『急就篇』은 鍾繇本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왕국유가 가필장이 後漢 사람에 의해 加筆된 증거라고 제시한 문구인 ‘馬飲漳鄴及清河(마음장업금청하)’와 ‘遼東濱西上平岡(요동빈서상평강)’ 및 ‘漢土興隆中國康(한토흥륭중국강)’은 본고의 원문번호 383번과 386번 그리고 원문 마지막 句인 390번이다. ‘馬飲漳鄴及清河’와 ‘遼東濱西上平岡’은 建安 12年の 일이라 하였다. 建安은 後漢의 마지막 황제인 獻帝의 年號이다. 建安은 196년 2월부터 220년 4월까지 사용되었다. 建安 12年은 208년이다. 이 당시는 曹操(조조)가 後漢의 丞相으로 정권을 농단하던 때이다. 曹操는 중국의 동남부인 吳나라를 정벌하려 하였다. 吳나라를 정벌하려면 동남부의 후방이라 할 수 있는 동북부를 평정하여 후방의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동북지방은 冀州(기주)를 중심으로 요동과 오환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이른다. 漳(장)은 漳河를 이르고 鄴(업)은 漳河 북안의 古都인 鄴城이다. 漳河는 冀州를 흐르는 江이다. 冀州는 동북지방 군벌 袁紹(원소)의 본거지이다. 袁紹는 관도대전에서 曹操에게 패한 뒤에 병사하였고 그의 아들인 원상이 冀州를 지키다가

249) 端拱은 宋太宗의 세 번째 연호로 988년부터~989년간 사용되었다. 端拱二年은 989년이다.

建安 11年 曹操에게 점령당했다. 이 때 오환도 점령되었고, 요동까지 점령되어 동북 일대가 완전히 평정되었다. 建安 12年은 동북지역의 정벌여세를 몰아 동남의 뿡을 정벌한 해이다. 이해 12월에 일어난 양자강 적벽의 전투가 역사에 회자되는 적벽대전이다. 후일 鄴는 鄴都로 曹操의 魏나라 都城이 되었다. 오환은 내몽고 동쪽에 응거하였던 유목민 부족연맹이었다. 曹操에 의해 부족연맹이 해체되고 난후 한족과 융화 되었다. ‘馬飲漳鄴及清河’와 ‘遼東濱西上平岡’은 曹操가 중국의 동북부를 평정하였던 사실에서 나온 문구이다. 그리고 『금취편』의 여러 판본에서 鍾繇本(중요본)에서 만 이 加筆章이 나오고 있다. 鍾繇는 曹操의 重臣으로 曹操가 魏王이 되었을 때 魏國의 相國이었고 曹丕의 魏朝에서는 太衛가 되었다. 鍾繇는 정치가로서도 이름이 있으나 더욱 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書法界이다. 鍾繇는 楷書를 창안한 사람으로 후일 鍾王하면 鍾繇와 王羲之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필자는 鍾繇가 曹操의 重臣이고 王羲之와 명성을 같이 하는 書法家인 점에서 加筆章의 加筆者는 鍾繇로 단정 짓고 있다. 필자가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皇象本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확신이다. 皇象은 吳나라에서 侍中과 청주자사를 역임한 정치가이면서 書法家이다. 章草의 大家로 張芝, 索靖과 함께 書法界에서 현재까지도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吳나라는 魏나라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魏를 이어받는 司馬氏의 晉(진)나라에 멸망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吳나라의 皇象本 『금취편』에는 加筆章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曹操의 행적에 대한 찬사를 써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 『금취편』은 書法家들에 의해서 傳書되었다. 따라서 書法家에 의해 字句가 변동될 수 있다. 특히 原書에 加筆을 한다는 경우에는 보통의 실력의 書法家로서는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書法的 명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原書의 저자를 압도할 정도의 大家가 아니면 선부르게 原書에 덧칠하는 것은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鍾繇의 政治的 書法的 명망과 歷史的 情狀상으로 鍾繇의 加筆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 1) 가필장 분석 요약

加筆章은 7言句 16句 112字 4言句 4句 16字가 수록되었다. 加筆章은 地名과 述語 및 虛詞가 수록되었다. 加筆章은 원문번호 365번부터 383번까지 7言句 16句와 4言



句 2句 및 8言句 1句로 모두 19句 128字로 구성되었다.

加筆章에서 주시되는 것은 접속사인 而(이)의 제시이다. 원문번호 370 乘而嘉籠升進立(승이가총승진립)에서 而자가 접속사로 제시되었다. 而자는 수염을 그린 象形字이다. 而자가 수염의 뜻으로 쓰인 문장은 『주례·동관고공기·재인』에서 쓰였다. 그 원문은

凡攫網援噬之類必深其爪出其目作其鱗之而(범확살원서지류필심기조출기목작기린지이).  
무릇 금수 가운데 먹이를 움켜쥐고 살점을 찢어내어서 먹는 종류는 반드시 그 발톱은 깊숙이 감추고 눈은 돌출되며 비늘과 얼굴의 털은 뺏뺏이 일어서 있다.

하였고, 그 주석에

鱗之而, 謂動頰頰, 此皆可畏之貌(린지이, 謂動頰頰, 차개가외지모). ‘鱗之而린지이’는 얼굴에 돌출된 뼈가 움직이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대해 戴震(대진)은 ‘鱗之而린지이’를 補注하면서

頰側上出者曰之, 下垂者曰而, 鬚鬣屬也.(협측상출자왈지, 하수자왈이, 수렴속야.) 얼굴의 양측 위쪽에 난 것을 ‘之’ 라하고, 아래쪽에 난 것을 ‘而’ 라 한다. 수염이나 갈기의 종류이다.

하였다. 그러나 王引之(왕인지)는 『경의술문·주관하』에서 ‘鱗之而린지이’에 대하여

而, 頰毛也. 之, 猶與也. 作其鱗之而, 謂起其鱗與頰毛也.(이, 협모야. 지, 유여야. 작기린지이, 위기기린여협모야.) 而는 얼굴의 털이다. 之는 접속사인 ‘와 또는 과’와 같다. 그러므로 ‘作其鱗之而작기린지이’는 그 비늘과 얼굴의 털이 뺏뺏이 일어난 모양을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예문인 『주례·동관고공기·재인』의 문장은 簠虞(순거)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簠虞는 石磬(석경)이나 編鐘(편종)을 매다는 틀이다. 簠(순)은 가로대이고 虞(거)는 가로대를 받치는 양쪽의 기둥이다. 예문은 虞를 설명하는 문구이다. 虞는 사슴머리와 용의 몸통을 지닌 神獸(신수)이다. 머리에는 털이 있고 몸에는 비늘이 있다. ‘作其鱗之而작기린지이’는 용의 몸통에 난 비늘과 사슴머리의 얼굴에 난 털이 뺏뺏이

곧추선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예문에 대한 필자의 번역은 王引之의 注解를 지지하는 번역이다. 악기를 매다는 틀의 기둥의 명칭이 虞인 것은 기둥에 神獸인 虞의 형상을 조각하기 때문에 기둥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而자가 얼굴의 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 문장은 위의 「梓人」의 예문이 유일한 문장으로 보인다. 다른典籍에서 쓰인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본 구에서 而자가 제시된 것은 낱말의 나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자학습서의 짜임에서 문장형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而자는 文言文 문장의 대표적인 접속사이다. 접속사는 앞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문장성분이다. 漢文에서 접속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漢文에서 문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접속사의 경우어나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법은 문장의 구성방법 및 품사의 운용상 규칙이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나타내려는 바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접속사이다. 접속사는 문장구성상 필요한 문장성분이므로 문법에 의해서 그 성분이 부여된다. 따라서 而자의 품사인 접속사는 문법적 소산물인 것이다. 而자가 접속하는 것은 문장이다. 즉 而자에는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 문법적 방법과 규칙이 부여되어 있다. 규칙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율이다. 따라서 漢文에서 而자가 들어간 문장은 반드시 문장과 문장의 접속으로 讀解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인 乘而嘉寵升進立(승이가총승진립)에서 而자는 단순히 乘(승)과 嘉(가)를 이어주는 품사가 아니다. ‘乘’이라는 문장과 而 이하 ‘嘉寵升進立’을 잇는 문법적으로 부여되는 문장접속성분이다. 그러므로 ‘乘’이 하나의 뚜렷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왕응린은 ‘乘’을 ‘乘時(승시)’로 주석하였다. ‘乘時’는 시류를 탄다는 말이다. 시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정세에 따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천하의 정세는 天子가 행하는 정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선정을 펴면 시류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악정을 펴면 시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른다. 기후가 좋으면 풍년이 들고 기후가 나쁘면 흉년이 든다. 풍년이 들면 시류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흉년이 들면 시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시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현상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류에 휩쓸리며 살게 된다. 이것이 ‘乘時’이다. 그러므로 ‘乘時’에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 현상이 함축적으로 설명되는 문장이다. 따라서 乘而嘉寵升進立의 해석을 前文과 後文으로 나누어 보면 前文인 乘은 당시의 시류를 말하는 것이므로 後文과 연계하여 乘의 해석은 ‘호시절을 맞아 사회가 안정되니 많은 선비들이 출사하게 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後文은 漢代의 複音詞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대로 해석하면 되는 일이다. 後文을 해석하면 ‘천자의 상찬과 총애를 받는 자들은 승진하여 조정에 서게 되었다.’로 해석이 된다. 嘉寵(가총)은 西漢시기의 複音詞로 詞義는 ‘임금의 상찬과 총애를 받다’이다. 升進(승진)은 後漢시기의 複音詞이다. 詞義는 ‘관품이 오르다’이다.

가필장은 중요한 가필로 조조의 위나라를 찬양하는 글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는 소학서이므로 그 역사적 평가가 어떠한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가필에 대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急就篇』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小學書로 BC. 48년 西漢 元帝초기에 시중에 보급되어 宋代까지 일천여년 세월동안 小學書로 활용되었다. 『漢書·藝文志』의 小學을 정리해보면, 上古時代에 글자를 만들어 사용해 오면서 周代에 이르러 그때까지만 들어지고 사용되었던 글자가 集大成되어 『史籀篇』이 편찬되었고, 秦代에 이르러 『蒼頡篇』에서 문자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기틀 위에서 漢代에 小學書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小學家 10家 45篇 가운데 『急就篇』을 제외하고 모두 망실되었다.

본 논문은 『急就篇』의 구성과 특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이다. 『急就篇』의 體例는 序文章, 姓名章, 諸物章, 五官章, 加筆章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序文章은 古典에서는 보기 드문 著者の 序文으로 저서의 내용과 구성에 관하여 설명되었다.

姓名章은 三字 一句의 형태로 單姓은 二字 名으로 三字句를 만들고 複姓은 一字 名으로 三字句를 구성하였다. 姓名章의 三字句는 보통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의 형태를 빌어 글자를 익힘은 물론 두 자를 조합하여 작성하는 문법단위의 문장학습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文章이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文章은 單語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單語는 有意味의 최소단위이다. 漢字는 하나의 글자가 有意味를 지니는 單語이다. 다만 古代漢文에서 擬聲語와 擬態語가 두 자로 표현되어 두 자가 形態素를 이루는 것들이 있다. 漢語는 語順에 의해 文章成分이 규정된다. 따라서 漢語 文章에서의 單語의 品詞는 文章에서 그 單語가 놓인 위치에 따라 규정된다. 品詞는 單語를 意味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즉 漢語의 單語는 정해진 品詞가 없이 語順에 의한 文章成分이 부여되고 부여된 文章成分이 그 單語의 品詞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漢語는 어떤 單語이든지 두 개 이상의 組合으로 文法的 規格을 갖춘 文章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姓名章의 두 자 이름은 대표적인 詞造라 할 수 있다. 이름은 지어주는 부모의 念願을 나타낸 文章이라 할 수 있다. 念願을 나타내는 文章은 ‘무엇이 되기를’ 또는 ‘무엇을 하였으면’의 내용을 가진다. 이를 文章構造로 보면 前者는 ‘述補構造’이고 後者는 ‘述目構造’이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자신이 주어인 ‘主+述+補’

또는 ‘主+述+目’의 기본적 文章構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姓名章의 두 자 이름은 文章構成의 實例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姓名章의 3字句 문장은 후일 三字經으로 일컬어지는 小學書의 모태가 되었다.

諸物章은 7言句 160句 1,120字가 수록되었다. 史游의 원본 『急就篇』 1,953字의 57%로 『急就篇』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章으로 漢字의 部首別 集録이 이루어지고 있는 章이다. 諸物章의 分別部居는 사물을 같은 종류로 분류하였으므로 글자의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部類別로 集成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部類別 集成은 훗날 『說文解字』의 部首別編輯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諸物章은 다른 章과 달리 7言句로만 이루어져서 韻文에서 한 句의 글자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章이다. 따라서 제물장에 들어 있는 韻文的요소와 사물의 명칭에서 드러나는 六書와 部類別 集성으로 나타나는 部首에 대하여 분석되었다. 六書는 漢字의 造字原理와 使用原理임으로 六書의 概念에 대한 이해 없이는 漢字의 識字와 漢文의 讀解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漢字의 造字原理를 이해하지 못하면 漢字의 形·音·義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 漢字의 使用原理를 이해하지 못하면 漢文의 精確한 讀解는 이루어질 수 없다. 漢文의 문장에 쓰인 글자가 通假字인 것을 모르고 그 글자의 本義대로 讀解가 이루어진다면 그 문장은 본래 나타내려한 의도와는 다르게 讀解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문장은 讀解되지 않느니만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이 큰 經書인 경우는 그 폐해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六書의 理解는 漢字의 識字면에서뿐만 아니라 漢文의 讀解면에서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諸物章의 수록체제는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열거되었기 때문에 의당히 같은 意味字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의미가 같은 글자는 같은 意味符號를 지니게 되므로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열거된 집단에는 동일한 意味符號가 들어 있게 된다. 部首는 漢字의 意味符號이다. 意味符號란 漢字의 字形 字音 字義 3要素 중에서 字義의 要素를 말한다. 漢字는 반드시 어느 意味集團에 속하게 된다. 그 意味集團의 母體로 세워진 것이 部首字이다. 部首字의 本義는 그 意味集團의 바탕적인 뜻이 된다. 현재의 部首의 개념은 漢字字典에서 漢字의 檢索편의로 쓰는 漢字의 偏旁이다. 지금은 字典의 檢索방법이 部首뿐만 아니라 글자의 總劃數 글자의 字音 글자의 字形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部首에 대한 개념이다. 部首의 효시는 『說文解字』에서 許慎이 창안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인 說이다. 『說文解字』의 收錄體系는 9,353字를 540개의 의미갈래로 구분하고 각 글자를 그 의미에 따라 하나의 意味集團으로 묶어서 그 意味集團의 기본적인 의미를 本義로 하는 글자를 그 意味集團의 머리글자로 삼은 것이 『說文解字』에서의 部首이다. 『說文解字』에서 部首字의 해설에는 반드시 ‘凡某之屬皆從某’라는 문구가 있다. 部首字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部首字를 따른다는 말이다. 즉 部首字의 의미가 그 部首字에 속한 글자의 의미 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部首字를 세우고 漢字를 배속시키면 배속된 漢字의 뜻이 어떤 의미바탕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해져서 그 漢字의 뜻을 명백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說文解字』의 部首別 收錄體系는 『急就篇』 諸物章의 수록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諸物章분석을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五官章은 관제와 관직에 관한 章이다. 국가의 최고 기관인 조정의 관제와 직제에서부터 향리의 아전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관제와 직제가 기술되었다. 국가의 성립은 국토, 국민, 주권을 갖추면 성립된다. 국가성립의 삼요소인 국토와 국민은 자연물로 스스로 형태를 갖추고 존재한다. 그러나 주권은 무형의 권리인식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인위적으로 형체를 만들어서 존재하게 하여야한다. 이때 대내외적으로 선포되는 주권의 실체적 형태가 정부이다. 정부는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의 권한에는 책무가 동반된다. 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업무이다. 국가의 업무는 방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업무를 전문성으로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정부기관이 五官이다. 五官에 관한 내용은 여타 小學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急就篇』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急就篇』이 小學書로 쓰일 당시 정치적 사회적으로 요구되어 배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루는 것이었다. 荀子는 학문을 하는 것이 꼭 벼슬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벼슬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학문을 하여야한다고 하였다. 五官章의 분석을 통하여 小學書에 五官章을 둔 『急就篇』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고 있다.

漢字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말은 뜻이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된다. 특히 학문적으로는 漢字語가 아니면 서술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漢字 교육은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漢字는 어려운 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고 잘 배우려 들지 않게 된다. 그러나 漢字는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글자이므로 배우게 하여야 한다. 『急就篇』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小學書이다. 『急就篇』은 識字書 측면에서 『急就篇』 이전의 識字教材라 할 수 있는 『蒼頡篇』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과 구성으로 저작되었다. 『急就篇』이 王朝와 時代를 달리하며 그 생명력을 생생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서의 내용과 구성의 획기적인 創作性에 起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急就篇』의 教材的 특성은 실생활과 글자의 접속이다. 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常用字를 學習字로 삼아 글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면서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지식을 아울러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漢字學習教材도 『急就篇』의 체례와 같이 姓名, 諸物, 五官의 체례로 구성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용어에서 漢字語를 선별하여 학습자로 삼으면 그 漢字語의 語音과 語義는 체득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漢字의 字形만 익히면 되는 것이 된다. 그러면 『急就篇』에서 의도되고 있는 急就 즉 쉽고 빠른 학습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자학습교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急就篇』은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연구가 미미하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으로는 본고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本稿는 『急就篇』 전체에 대해 연구 되었다. 그러나 『急就篇』에 관한 연구가 한국에서 일천한 만큼 본고의 연구수준도 흠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急就篇』을 전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후일 『急就篇』을 연구하려는 후학재현들에게 본고가 작은 단초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史游 撰,『急就篇』,岳麓書社,1989.  
高二適 撰,『新定急就章及考證』,上海古籍出版社,1982.  
王海明 著,『明拓松江本急就章』,浙江西泠印社,2004.  
王應麟 撰,『急就篇補注』,國家圖書館出版社,2006.  
管振邦 注釋,『顏注急就篇譯釋』,南京大學出版社,2009.

### 【經書類】

- 孔丘 編訂,『詩經』,北京出版社,2006.  
孔穎達 主編,『毛詩正義』,上海古籍出版社,1990.  
韓嬰 撰,『韓詩外傳』,中華書局,1980.  
蔡沈 注,『書經』,上海古籍出版社,1987.  
孔穎達 疏,『尚書正義』,上海古籍出版社,1990.  
孫星衍 註疏,『尚書今古文注疏』,廣文書局,1980.  
陳壽祺 輯校,『尚書大傳』,商務印書館,1937.  
于春海 譯評,『易經』,吉林文史出版社,2006.  
郭彧 譯注,『周易』,中華書局,2006.  
孔穎達 撰,『周易正義』,九州出版社,2004.  
原著 朱子,白殷基 譯註,『譯註周易本義』,여강출판사,1999.  
朱熹 撰,『周易本義』,九州出版社,2004.  
左丘明 撰,『春秋左傳』,北京出版社,2006.  
劉利 譯注,『左傳』,中華書局,2007.  
公羊子 撰,『春秋公羊傳』,遼寧教育出版社,1997.  
范寧 注,『春秋穀梁傳注疏』,吉林出版集團,2005.  
漢何休 注 唐徐彥 疏,『春秋公羊傳注疏』,上海古籍出版社,2014.  
顧棟高 撰,『春秋大事表』,中華書局,1993.  
崔高維 編,『禮記』,遼寧教育出版社,1997.  
司馬遷 撰,『史記』,中華書局,2006.  
班固 撰,『漢書』,中華書局,2007.  
范曄 撰 李賢 注,『後漢書』,中華書局,1965.  
沈約 撰,『宋書』,中華書局,2003.



### 【論文類】

- 黃愷音, 「史游《急就篇》析論及其在教育上的意義」, 『市北教育學刊』, 2014.
- 趙平, 「《識字、寫字教學基本字表》收字屬性分析」, 『聊城大學報』, 2014.
- 劉旭, 「常用漢字字量、字種研究」, 河北大學報, 2011.
- 劉偉杰, 「《急就篇》的夏字問題」, 『濰坊學院學報』, 2010 (05).
- 王智群, 「《急就篇》顏注引方俗語研究」, 『長江大學學報』, 2008 (05).
- 陳海波, 「《急就篇》姓名初探」, 『華僑大學學報』, 2000 (02).
- 황자윤, 『《주역》의 생명사상 연구』, 원광대 대학원, 2009.
- 정병석, 『哲學研究』 「周易의 象 模型을 통해본 세계와 인간」, 대학철학회, 2008.
- 이유희,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주역》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2007.
- 서근식, 『조선후기실학파의『주역』해석방법론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6.
- 琴章泰, 『周易淺見錄』과 陽村 權近의 도학적 易해석, 퇴계학연구원, 2005.
- 李敦柱 著,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4.
- 黎靖德 編, 허탁·이요성 역주, 『朱子語類』, 청계출판사, 1999.
- 李世東, 『朱子《周易本義》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辭典類】

- 許慎 撰, 『說文解字』, 天津古籍出版社, 2005.
- 徐鍇 撰, 『說文解字繫傳』, 中華書局, 1987.
-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2003.
- 郭璞 注解, 『爾雅』, 浙江古籍出版社, 2011.
- 陳彭年 撰, 『廣韻』, 江蘇教育出版社, 2008.
- 劉熙 撰 王先謙 補, 『釋名疏證補』, 中華書局, 2008.
- 王輝 編著, 『古文字通假字典』, 中華書局, 2008.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編纂,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8.
- 高樹藩 編纂,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2008.
- 王朝忠 編著, 『漢字形義演釋字典』, 四川辭書出版社, 2006.
- 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實用字典』, 上海大學出版社, 2008.
- 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10.
- 張玉書 編纂, 『康熙字典』, 上海古籍出版社, 1996.
- 維基文庫自由的圖書館 <http://zh.wikisource.org>
-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 中文百科在線 <http://www.zwbk.org>

# A Study on Ji Jiu Pian(急就篇)

Seong-Ewi Yang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 【ABSTRACT】

Hangul is the character to express the sound. It is the most excellent character of the world's characters. However, Hangul is the character to write the sound, it does not express the meaning of the sound but only expresses the sound. Chinese character can only express the meaning of the sound. So, Hangul is what is to write the sound as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Not knowing the Chinese character, it is meaningless to write the sound as Hangul.

Most of vocabularies that we use in our daily lives is the Chinese character.

From the point of view in the field of study, we use the Chinese character except a postpositional word in the described sentence.

In fact, the academic description is impossible without the Chinese character.

That's why we necessarily need to be educated on the Chinese character in Korea,

If we surely ought to educate people about the Chinese character, the following problem is how to write the learning material about the Chinese character.

In ancient China, "JIJIUPIAN" was supplied by the public in the early of the Dynasty West Han of Emperor Yuan, B.C.48, it was used as a primary grade learning textbook until the Song Dynasty for thousand years.

What “JIJIUPIAN” had a tenacious hold on life as a primary grade learning textbook during various dynasties and eras was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learning material as the perceive Chinese character learning material.

The characteristic of learning material of “JIJIUPIAN” is to access real-life and letter.

In other words, making letters for learning as characters in common use, it enabled people to master letters easily, and especially presenting the six categories of Chinese character and Radical expressed “Various Goods Chapter”, it enabled them to master the basic principle of Chinese character.

We can make the Chinese learning textbook applied the case of “JIJIUPIAN” in Korea. We can make the contents including choosing letter for learning as Chinese character used in real life and mastering the basic principle of Chinese character. If we do so, we’ll be able to expect more efficient learning than now.

Thus, in this thesis, I have intended to raise understanding about the six categories of Chinese character and Radical, which is the basic knowledge to perceive Chinese character, and analyze examples and genesis of “radical” came from the principle of creating Chinese character, the six categories as pragmatic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creating Chinese character through “Various Goods Chapter”.

From this point of view, I hav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 of learning material of “JIJIUPIAN”, focusing on the six categories of Chinese character and Radical expressed “Various Goods Chapter” of “JIJIUPIAN”.

본 ABSTRACT은 필자의 아들인 梁 禧 碩이 작성한 것이다.

## 附 錄

### 『急就篇』原文

원문의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원문의 구분대로 붙여놓은 일련번호이다.

#### 序文章

##### 一章

001 急就奇觚與衆異. 002 羅列諸物名姓字. 003 分別部居不雜廁. 004 用日約少誠快意.  
005 勉力務之必有喜. 006 請道其章.

#### 姓名章

##### 一章

007 宋延年. 008 鄭子方. 009 衛益壽. 010 史步昌. 011 周千秋. 012 趙孺卿.  
013 爰展世. 014 高辟兵.

##### 二章

015 鄧萬歲. 016 秦妙房. 017 郝利親. 018 馮漢強. 019 戴護郡. 020 景君明.  
021 董奉德. 022 桓賢良. 023 任逢時. 024 侯仲郎. 025 由廣國. 026 榮惠常.  
027 烏承祿. 028 令狐橫. 029 朱交便. 030 孔何傷. 031 師猛虎. 032 石敢當.  
033 所不侵. 034 龍未央.

##### 三章

035 伊嬰齊. 036 翟回慶. 037 畢稚季. 038 昭小兄. 039 柳堯舜. 040 樂禹湯.  
041 淳于登. 042 費通光. 043 柘溫舒. 044 路政陽. 045 霍聖宮. 046 顏文章.  
047 管財智. 048 偏呂張. 049 魯賀喜. 050 觀宜王. 051 程忠信. 052 吳仲皇.  
053 許終古. 054 賈友倉. 055 陳元始. 056 韓魏唐.

##### 四章

057 液容調. 058 柏杜楊. 059 曹富貴. 060 尹李桑. 061 蕭彭祖. 062 屈宗談.  
063 樊愛君. 064 崔孝讓. 065 姚得賜. 066 燕楚莊. 067 薛勝客. 068 聶干將.  
069 求男弟. 070 過說長. 071 祝恭敬. 072 審毋妨. 073 龐賞贛. 074 來士梁.  
075 成博好. 076 范建羌.

##### 五章

077 閻歡欣. 078 寧可忘. 079 苟貞夫. 080 苗涉臧. 081 田細兒. 082 謝內黃.  
083 柴桂林. 084 溫直衡. 085 奚驕叔. 086 邴勝箱. 087 雍弘敞. 088 劉若芳.  
089 毛遺羽. 090 馬牛羊. 091 尙次倩. 092 丘則剛. 093 陰賓上. 094 翠鴛鴦.  
095 庶霸遂. 096 萬段卿. 097 洽幼功. 098 武初昌.

## 六章

099 褚回池. 100 蘭偉房. 101 滅罷軍. 102 橋寶陽. 103 原輔輻. 104 宣棄奴.  
105 殷滿息. 106 充申屠. 107 夏脩俠. 108 公孫都. 109 慈仁他. 110 郭破胡.  
111 虞尊偃. 112 憲義渠. 113 蔡游威. 114 左地餘. 115 譚平定. 116 孟伯徐.  
117 葛懋軻. 118 敦倚蘇. 119 耿潘扈. 120 焦滅胡.

## 七章

121 邢麗奢. 122 晏奇能. 123 邵守實. 124 宰安期. 125 俠卻敵. 126 代焉于.  
127 司馬褒. 128 尚自於. 129 陶熊巖. 130 解莫如. 131 樂欣諧. 132 童扶跣.  
133 痛無忌. 134 向夷吾. 135 閔并訢. 136 竺諫朝. 137 續增紀. 138 遺失餘.  
139 姓名訖. 140 請言物.

## 諸物章

### 八章

141 錦繡縵絁離雲爵. 142 乘風縣鐘華洞樂. 143 豹首落莫兔雙鶴. 144 春草鷄翹鳧翁濯.  
145 鬱金半見緗白藪. 146 縹緗綠紈阜紫砭. 147 烝栗絹紺縉紅縑. 148 青綺綾縠靡潤鮮.  
149 綈絡縑練素帛蟬.

### 九章

150 絳緹絀紬絲絮綿. 151 帋敞囊橐不直錢. 152 服瑣綸帔與繒連. 153 貫貸賣買販肆便.  
154 資貨市贏匹幅全. 155 綌紵袞縑裹約纏. 156 綸組縑綬以高遷. 157 量丈尺寸斤兩銓.  
158 取受付予相因緣.

### 十章

159 稻黍稷稷粟麻稭. 160 餅餌麥飯甘豆羹. 161 葵韭葱薑蓼蘇薑. 162 蕪荑鹽豉醢酢醬.  
163 芸蒜薺芥茱萸香. 164 老菁蘘荷冬日藏. 165 梨柿柰桃待露霜. 166 棗杏瓜棗餽飴餹.  
167 園菜果蓏助米糧.

### 十一章

168 甘麩殊美奏諸君. 169 袍襦表裏曲領裙. 170 襜褕袷復褶袴禪. 171 禪衣蔽膝布母縛.  
172 鍼縷補縫綻紵緣. 173 履渴鞞褰絨緞紉. 174 鞞鞞印角褐鞞巾. 175 裳韋不借爲牧人.  
176 完堅耐事踰比倫.

### 十二章

177 屐屨繫羸羸婁貧. 178 旃裘鞞鞞蠻夷氏. 179 去俗歸義來附親. 180 譯導贊拜稱妾臣.  
181 戎伯總閱什伍鄰. 182 稟食縣官帶金銀. 183 鐵鈇鑽錐釜鍍鑿. 184 鍛鑄鉛錫鎧錠鏃.  
185 鈐鑄鈞鈇斧鑿鉏.

### 十三章

186 銅鍾鼎鏗鎗鉞鈹. 187 鈺鑄鍵鈇冶錮鑄. 188 竹器箏笠箏籟箴. 189 箴篳篥筥篥箏箏.  
190 箏箏箏箏箏箏. 191 橢杆槃案杯盃盃. 192 蠡升參升半卮觥. 193 樽榼裊榼匕箸簋.  
194 甌缶盆盎甕罍壺.

### 十四章

195 甌觥甌甌瓊瓊盧. 196 纍繙繩索絞紡纏. 197 簡札檢署槩牘家. 198 板柞所產谷口斜.  
199 水蟲科斗蠅蝦蟆. 200 鯉鮒蟹鱉鮓鮑鮓. 201 妻婦聘嫁齋媵僮. 202 奴婢私隸枕床杠.  
203 蒲蒻藺席帳帷幢.

### 十五章

204 承塵戶幰條績總. 205 鏡奩䟽比各異工. 206 芬薰脂粉膏澤箒. 207 沐浴揃搯寡合同.  
208 椽飾刻畫無等雙. 209 係臂琅玕虎魄龍. 210 璧碧珠璣玫瑰甕. 211 玉玦環佩靡從容.  
212 射魃辟邪除群凶.

### 十六章

213 竽瑟空侯琴筑箏. 214 鐘磬鞀簫鼗鼓鳴. 215 五音總會歌謳聲. 216 倡優俳笑觀倚庭.  
217 侍酒行觴宿昔醒. 218 廚宰切割給使令. 219 薪炭萑葦炊孰生. 220 臙膾炙臠各有形.  
221 酸醎酢淡辨濁清.

### 十七章

222 肌膈脯腊魚臭腥. 223 醕酒釀醪稽極程. 224 碁局博戲相易輕. 225 冠幘簪篸結髮紐.  
226 頭頰頰頰眉目耳. 227 鼻口脣舌斷牙齒. 228 頰頰頸項肩臂肘. 229 捲挽節瓜拇指手.  
230 腫腴胸脇喉咽膈.

### 十八章

231 腸胃腹肝肺心主. 232 脾腎五藏臄齊乳. 233 尻髑脊膂腰背呂. 234 股脚膝臘脛爲柱.  
235 膊踝跟踵相近聚. 236 矛鋌鑲盾刃刀鉤. 237 鉞戟鉞鎔劍鐔鍔. 238 弓弩箭矢鎧兜鍪.  
239 鐵錘槌杖柅秘投.

### 十九章

240 輻輳輶軸輿輪轅. 241 輻輳輶輶輶輶輶. 242 軹軹軹軹軹軹軹. 243 蓋轅俾倪柅縛棠.  
244 轡勒鞅鞅鞅鞅鞅. 245 鞅鞅鞅鞅鞅鞅鞅. 246 靳鞅鞅鞅色焜煌. 247 革鞅鞅漆油黑蒼.  
248 室宅廬舍樓殿堂.

### 二十章

249 門戶井竈廡困京. 250 椽椽構樞瓦屋梁. 251 泥塗堊墍壁垣墻. 252 榦楨板栽度園方.  
253 壘壘層廡庫束箱. 254 屏廁清溷糞土壤. 255 確磴扇墮春簸揚. 256 頃町界畝畦埒封.  
257 疆畔啜伯耜犁鋤.

### 二十一章

258 種樹收斂賦稅租. 259 摺穫秉把插捌杷. 260 桐梓樅松榆椿樗. 261 槐檀荊棘葉枝扶.  
262 駢駢駢駢駢駢駢. 263 駢駢駢駢駢駢駢. 264 牂羖羯羴豕羴. 265 六畜蕃息豚豕豬.  
266 豸豸豸豸豸豸豸.

### 二十二章

267 慘特特特特特特. 268 雄雌牝牡相隨趨. 269 糟糠汁滓藁莖芻. 270 鳳爵鴻鵠鴈鶩雉.  
271 鷹鷂鴟鵂鷂鷂尾. 272 鳩鴿鷂鷂中網死. 273 鳶鷂鷂鷂鷂相視. 274 豹狐距虛豺犀兕.  
275 狸貍飛鼯狼麋麋.

### 二十三章

276 麋塵麋麋皮給履. 277 寒氣泄注腹臙脹. 278 痲疔疥癬癢癢盲. 279 癰疽癰瘰癢癢痕.

280 疝瘕顛疾狂失響. 281 瘡痂疥痛癩溫病. 282 消渴歐逆欬瀝讓. 283 痺熱瘰痔眇曠眼.  
284 篤癯衰癈迎醫匠.

#### 二十四章

285 灸刺和藥逐去邪. 286 黃芩伏苓礬菘胡. 287 牡蒙甘草菀藜蘆. 288 烏喙附子椒芫華.  
289 半夏阜莢艾橐吾. 290 芎藭厚朴桂栝樓. 291 款東貝母薑狼牙. 292 遠志續斷參土瓜.  
293 亭歷桔梗龜骨枯.

#### 二十五章

294 雷矢藿菌蠹兔盧. 295 卜問譴崇父母恐. 296 祠祀社稷叢臘奉. 297 謁禡塞禱鬼神寵.  
298 棺槨櫛櫛遣送踊. 299 喪弔悲哀面目腫. 300 哭泣祭醜墳墓冢. 301 諸物盡訖五官出.

#### 五官章

#### 二十六章

302 宦學諷詩孝經論. 303 春秋尚書律令文. 304 治禮掌故砥厲身. 305 智能通達多見聞.  
306 名顯絕殊異等倫. 307 抽擢推舉白黑分. 308 迹行上究爲貴人. 309 丞相御史郎中君.  
310 進近公卿傳僕勳. 311 前後常侍諸將軍.

#### 二十七章

312 列侯封邑有土臣. 313 積學所致非鬼神. 314 馮翊京兆執治民. 315 廉絜平端撫順親.  
316 姦邪並塞皆理訓. 317 變化迷惑別故新. 318 更卒歸誠自詣因. 319 司農少府國之淵.  
320 遠取財物主平均.

#### 二十八章

321 臯陶造獄法律存. 322 誅罰詐僞劾罪人. 323 廷尉正監承古先. 324 摠領煩亂決疑文.  
325 變鬪殺傷捕伍鄰. 326 亭長游徼共雜診. 327 盜賊繫囚榜笞臀. 328 朋黨謀敗相引牽.  
329 欺誣詰狀還反眞.

#### 二十九章

330 坐生患害不足憐. 331 辭窮情得具獄堅. 332 籍受證驗記問年. 333 閭里鄉縣趣辟論.  
334 鬼薪白粲鉗鈇髡. 335 不肯謹慎自令然. 336 輸屬詔作谿谷山. 337 孤筴起居課後先.  
338 斬伐材木斫株根.

#### 三十章

339 犯禍事危置對曹. 340 謾訑首匿愁勿聊. 341 縛束脫漏亡命流. 342 攻擊劫奪檻車膠.  
343 嗇夫假佐扶致牢. 344 痕瘡保辜謾呼號. 345 乏興猥逮訶譴求. 346 輒覺沒入檄報留.  
347 受賂枉法忿怒仇.

#### 三十一章

348 讒諛爭語相舐觸. 349 憂念緩急悍勇獨. 350 迺肯省察諷諫讀. 351 涇水注渭街術曲.  
352 筆研籌筭膏火燭. 353 賴赦救解貶秩祿. 354 邯鄲河間沛巴蜀. 355 潁川臨淮集課錄.  
356 依溷汙染貪者辱.

#### 三十二章

357 漢地廣大. 358 無不容盛. 359 萬方來朝. 360 臣妾使令. 361 邊境無事.

362 中國安寧. 363 百姓承德. 364 陰陽和平. 365 風雨時節. 366 莫不滋榮.  
367 災蝗不起. 368 五穀孰成. 369 賢聖並進. 370 博士先生. 371 長樂無極老復丁.

### 加筆章

#### 三十三章

372 齊國給獻素繒帛 373 飛龍鳳凰相追逐 374 河南洛陽人蕃息 375 與天相保無窮極  
376 眞定常山至高邑 377 乘而嘉寵升進立 378 建號垂統解鬱悒 379 四民康寧咸來服集  
380 何須念慮合爲一

#### 三十四章

381 山陽過魏 382 長沙北地 383 馬飲漳鄴及清河 384 雲中定襄與朔方  
385 代郡上谷右北平 386 遼東賓西岡 387 酒泉彊弩與敦煌 388 居邊守塞備胡羌  
389 遠近還集殺胡王 390 漢土興隆中國康